

정 기간 행 물

2020-16-024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2020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발간사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 도입 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산업구조의 고도화·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고용형태의 다양화·사회보장 욕구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일 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공단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해 재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단이 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자체 확인하여 재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조사 및 심의회의 구술참여 확대, 증거조사 신청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9년 한 해 동안 결정한 심사청구 사건 중 주요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하여 공단 원처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했습니다. 특히, 2018년 시행된 출퇴근 중 사고의 심사결정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공정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돕고, 재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구제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 순 희**

Contents

| | |
|-----------------------------|-----|
| I. 최초/유족(사고) | 1 |
| 1. 업무시간 중 사고 | 3 |
| 2. 휴게시간 중 사고 | 33 |
| 3. 출장 중 사고 | 41 |
| 4. 출퇴근 중 사고 | 73 |
| 5. 기타사고 | 183 |
| II. 최초/유족(질병) | 211 |
| 1. 뇌심혈관계 질환 | 213 |
| 2. 근골격계 질환 | 257 |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281 |
| 1. 근로자 여부 | 283 |
| 2. 적용관계 | 353 |
| IV. 추가상병 및 재요양 | 375 |
| 1. 추가상병 | 377 |
| V. 간병료 및 요양비 | 395 |
| 1. 요양비 | 397 |

Contents

| | |
|------------------------|-----|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411 |
| 1. 평균임금 | 413 |
| 2. 휴업급여 | 449 |
| VII. 장애급여 | 485 |
| 1.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 | 487 |
| VIII. 진폐 | 509 |
| 1. 진폐 | 511 |
| IX. 기타 | 521 |
| 1. 기타 | 523 |
| 2. 부당이득 | 533 |

SUMMARY

• I. 최초/유족(사고) / 1

| | |
|--|----------|
| I-1. 업무시간 중 사고 | 3 |
| 1.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5 |
| 2.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 14 |
| 3. 청구인의 5. 14. CT 상 대뇌경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5. 25. CT 상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 요추부 MRI 상'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21 |
| 4. 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28 |

I-2. 휴게시간 중 사고 33

1.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결승 종료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축구대회의 일정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35

I-3. 출장 중 사고 41

1.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43
2. 청구인은 근무일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소속직원 3명과 함께 사업주 소재 농장에 갔으며 매실청 담그는 일은 매년 해오던 업무이고 매실청 용도가 사업장 호텔 뷔페 등에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52
3. 타 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함에 있어 영업용 차량이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한 것은 합리적인 출장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팀원 중 청구인의 출장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만나기로 했던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64

I-4. 출퇴근 중 사고 73

1. 청구인이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75
2. 중앙선 침범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해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80

3. 현장소장이 우천으로 중지된 작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인팀을 포함한 현장 작업자에게 대기를 지시했으나 팀장과 소속 팀원 11명은 퇴근한 반면 나머지 현장 작업자 40여명은 대기 후 작업을 재개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정식 명휴 명령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86
4.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은 청구인의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모임에 소요된 비용도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를 사용했으며 모임 주최자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93
5.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 전 교회를 다녀온 뒤 발생한 사고로, 출근 경로에서 개인적 사유로 경로를 이탈한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서 이동 중에 발생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01
6. 청구인의 사고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05
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격수당 등의 성격으로 보이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타사업장에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외부 학원 강의 후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11
8. 사고 전날 업무가 끝난 후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자택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연고지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동료근로자 자택을 비연고지 주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20
9. 청구인은 사고 당일에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학업중단속려제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간 행위는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의 예외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24

10. 청구인은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고, 비록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이 있긴 하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31
11. 사고발생 시간 및 경로가 재해 당일의 출근 시간 및 경로와 일치하며 사고 발생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고 사업장과 공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36
12. 출근하기 위해 자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이동 중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사고 지점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사적인 주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44
13. 청구인은 관행적으로 사전 배차신청 없이 휴일 근무를 했고 사업장에 연락하여 데려와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해 장소도 사업장과 380미터 떨어진 장소로 출근 경로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51
14. 청구인의 재해는 출근 중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상 청구인이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했으므로 재해 발생 원인이 오로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59
15. 청구인의 자택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자친구의 집 또한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64
16.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자 사업장에서는 제출 마감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업무상의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근 시간은 오후이나 청구인은 오전에 면허증을 발급을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71

- 17. 청구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상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76

I-5. 기타사고 183

- 1. 전달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85
- 2. 청구인은 상대방을 당일 처음 보게 된 작업자로 청구인과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용접을 하기 위해 준비한 선을 상대방이 운전한 테이블 리프트 차가 밟고 지나가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앞서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93
- 3. 청구인과 노인복지센터 시설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상 재해일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시설장의 폭행행위 원인이 청구인이 과도하게 도발시켰다고 불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은 직무에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99
- 4. 회사 임원이 업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청구인의 아내가 해당 임원에게 항의하던 중 발생한 싸움이 발생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당 임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5

• II. 최초/유족(질병) / 211 •

II-1. 뇌심혈관계 질환 213

- 1.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취소”한 사례 215

2.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25
3.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 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엔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근무의 30% 가 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35
4. 뇌경색으로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는 상태로 좌측 하지의 동맥 경화성폐쇄에 의해 근육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횡문근융해증으로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투석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248

II-2. 근골격계 질환 257

1.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은 과거 건봉합술 수술력 등이 있고, 회전근개 급성 파열 소견은 없으나, 좌측은 청구인이 고령이 아니고 관절경 소견에서 만성 병변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외상성 파열이라는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59
2.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모두 진단되며,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오른 손 한쪽 손에 국한 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64
3.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기초암반면을 조사하는 작업에서 14년간 일한 것으로 보여 어깨 부하력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며,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깨 관절에 신체부담이 있었고 MRI상 연령에 비해 부분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272

• **Ⅲ.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281** •

Ⅲ-1. 근로자 여부 283

1. 작업 장소와 기간 및 재료를 지정해줬고 작업 완료 후 일당 및 재료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85
2. 사업장은 도계장 내 부산물 가공을 일시 위탁하였으나 위탁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정해진 작업 단가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자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299
3.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 1,600원을 받기로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에게는 일반직원과 달리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적이 없음을 종합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305
4.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 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으며 사업장으로부터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왔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313
5.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 등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당을 반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임금지급 내역이 확인됐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324
6. 청구인은 건축주가 창고 수리를 위한 자재를 구매 후 시공할 인력으로 소개받아 현장에 가게 되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고 건축주의 승인 하에 작업을 시작했으며 청구인과 같이 작업하기로 한 동료근로자의 진술 역시 각각 일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은 노무만 제공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332

7. 사업주는 최초 출근일인 재해당일까지도 청구인의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해발생 당일 사업장에 출근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당일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여 근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재해발생일은 사실상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338
8. 청구인은 사업주의 배우자로, 동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청구인 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는 없으며, 출퇴근 카드나 출근대장 등 청구인의 근태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없고, 사업주에 의해 근무시간이 구속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345

III-2. 적용관계 353

1. 청구인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을 대표가 직접했고 청구인이 당일 시행한 작업은 지휘 감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펠감용 목재 절단 뿐 아니라,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의 청소 및 잡초제거, 체험 학습관옥상에 위치한 창고 정리 등도 상당시간 일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의 자녀의 소유인 주택의 가구내 고용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는 어려워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355
2.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에 채용되어 임금을 수령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팀장의 지휘 아래 근무하였는데, 팀장은 국내 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모바일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361
3.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받았으며, 국내 사업장에 주로 업무보고 및 지휘를 받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서 봄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368

• IV. 추가상병 및 재요양 / 375

IV-1. 추가상병 377

-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IASP 진단 기준 4개의 증상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의 3개 범주에 해당되고, 4개의 징후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등 2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ASP식 진단 인정기준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해 추가상병 신청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을 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379
- 2. 청구인은 복부피판술 후 고정으로 인해 금번 동결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해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례 384
- 3. 청구인은 재해 당시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하게 느끼고 있고, 요추 및 흉추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당하여 수상이 중하였으며, 심리검사에서 불면, 우울증상 등이 있어 신청 상병명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진단 기준에 부합하나 적응장애는 발병 시기 등에 비추어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388

• V. 간병료 및 요양비 / 395

V-1. 요양비 397

- 1. 고인의 상병상태는 의식저하와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양한 경우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399
- 2. 청구인은 동료근로자가 무빙워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일 불안감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로도 불안, 불면, 사고의

재경험, 악몽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한 요양비 중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목적인 진료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403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411

VI-1. 평균임금 413

1.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 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을 180,000원으로 본 사례 415
2. 청구인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병원에서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4,100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사례 ... 422
3. 재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에서는 일당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료 근로자 진술 및 통장 임금내역을 확인할 때, 청구인의 일당은 18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429
4. 청구인은 사업주가 출근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하지 아니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부가세경감세액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미배차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부가세경감세액 또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434

5.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두 금액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원처분은 위법하고 실제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441

VI-2. 휴업급여 449

1. 우 폐하염 절제술 시행 후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이 면역치료 및 추적 관찰 시행한 상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451
2.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457
3. 청구인은 재해일 이후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수술 이전에도 취업요양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간 전체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한 반면, 사업장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 9,860,000원은 공제(조정)함이 타당해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463
4. 청구인은 요양원에 입사하기 이전 시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가세 신고내역을 보면 요양원 입사한 이후 기간에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 469
5. 신고된 소득금액 19,370,968원 중 본인 의료비 등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법률상 휴업급여와 성격이 동일한 금품에 한해 휴업급여를 조정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476

• VII. 장애급여 / 485

VII-1.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 487

1. 좌측 반신마비, 인지 기능의 상당한 저하로 정상적인 식사나 배변활동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우안 실명상태, 좌안 시야 협착 등으로 인한 반맹이 관찰되므로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489
2.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특별진찰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뇌 MRI 상 우측 전두엽의 심한 손상 외에 뇌 위축, 뇌실질 확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뇌 MRI 상 혈관성 병변이 심하고, 수두증 및 중등도 이상의 인지 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496
3. 청구인의 경우 뇌 MRI상 좌측 뇌의 손상으로 언어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시신경의 완전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남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애 2급에 해당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502

• VIII. 진폐 / 509

VIII-1. 진폐 511

1. 고인은 2018. 12. 18.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말기 췌장암이지만, 심폐기능에 있어 일초량이 고도 장애 수준이었고, 췌장암 진단은 사망 2개월전 복통에 따른 검사로 진단된 것으로 일반적인 췌장암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고인은 진폐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결정 함.

그러나, ‘유족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한 사례 513

IX. 기타 / 521

IX-1. 기타 523

- 1. 청구인과 동거인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연금)를 일부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525

IX-2. 부당이득 533

- 1. 청구인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사정이 궁극하여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벽 5:30 출근하여 업무 후 오후 2~3시경 퇴근한 것이 확인되고, 동 기간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으므로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급여액의 2배의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535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I

최초/유족(사고)

1. 업무시간 중 사고
2. 휴게시간 중 사고
3. 출장 중 사고
4. 출퇴근 중 사고
5. 기타 사고



1

업무시간 중 사고

1

»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013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별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2019. 2. 8.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별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의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12. 20. 사장에게 재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심한 통증에도 파스와 진통제로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2018. 12. 26. 처음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이○○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장이

○ I. 최초/유족(사고)

산재 확인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이 건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산림개발
- 현장 소재지: ○○시
- 업종: 벌목업

나) 재해일 및 재해발생이후 근무 관련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2019. 2. 8.)

- 2018. 12. 26. 오전 10시경 나무로 인한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음

(2) 재해사실확인서(청구인, 2019. 2. 26.)

- 언제: 2018. 12. 26. 10시
- 무엇을: 엔진톱 벌목 작업중 다리 골절상
- 어떻게: 나무가 굴러서

(3) 진료기록 발췌(○○정형외과의원, 2018. 12. 26.)

CC: Rt ankle painful swelling

Onset: 2018. 12. 20.

Vector: 나무에 맞음

(4) 청구인은 재해발생일이 2019. 12. 20.이고 2019. 12. 26.까지 상기 현장에서 근무 후 ○○정형외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함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동료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출근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보험가입자(○○산림개발)는 날짜별로 근로자 개개인의 출근여부는 모르고 해당 일에 총 몇 명이 근무하였는지 여부만 알고 있다며 이를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날짜 | 청구인 제출 | | | 보험가입자 제출 | 비 고 |
|----------------------|----------|----------|-----|-------------|--------------|
| | 청구인 | 이○일 | 이○상 | | |
| 2018. 12. 10. | 0 | 0 | 0 | 3명 | |
| 2018. 12. 11. | 0.5 | 0.5 | 0.5 | 1.5명 | |
| 2018. 12. 12. | 0 | | 0 | 3명 | |
| 2018. 12. 14. | 0 | 0 | 0 | 3명 | |
| 2018. 12. 15. | 0 | 0 | | 2명 | |
| 2018. 12. 17. | 0 | 0 | 0 | 3명 | |
| 2018. 12. 18. | 0 | 0 | | 2명 | |
| 2018. 12. 19. | 0 | 0 | | 2명 | |
| 2018. 12. 20. | 0 | 0 | | 2명 | 재해발생일 |
| 2018. 12. 22. | 0 | 0 | | 2명 | |
| 2018. 12. 23. | 0 | 0 | | 2명 | |
| 2018. 12. 24. | 0 | 0 | | 2명 | |
| 2018. 12. 25. | 0 | 0 | | 2명 | |
| 2018. 12. 26. | 0 | 0 | | 2명 | |

(6)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산림개발)가 제출한 자료 상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후 2018. 12. 26.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 I. 최초/유족(사고)

다) 청구인의 근로자성 관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 상호: ○○원목
- 개시일: 2014. 7. 1.
- 사업의 종류: 임업

(2)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전산 상 2013. 2. 21.부터 2018. 4. 30.까지 11건의 임목벌채공사를 하였고, 2010년 11월부터 2018. 12. 9.까지 ○○군 산림조합에서 일용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일당 및 지급 관련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상기 현장에서 근무하였음
- 한○○이 ○○산림개발 사업주를 대신하여 3명의 임금 총액 670만원을 지급하였음
- 동료근로자 이○상에게 90만원, 동료근로자 이○일에게 235만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345만원은 청구인의 임금임
- 전체 일당은 22만원이고 이는 기름값 1만원, 교통비 1만원, 식대 7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2) 보험가입자(○○산림개발) 주장

- 3명의 임금 총액 약 68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동료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 순수노무비 22만원, 기름값 1만원, 식대 1만원, 교통비 3만원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음

(3) 원처분지사 확인사항

- 총지급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 22만원과 동료근로자 2명의 임금인 22만원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음
-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노무비, 기름값, 식대, 교통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군 산림조합에서의 받은 주된 일당은 2018년 3월까지 15만5천원, 그 이후는 17만원임(과거 10만5천원 1회, 18만원 1회, 20만원 1회 지급 받은 내역 확인됨)

마) 수술내역: 2018. 12. 28. MIPO

바) 원처분기관 의견

- (1) 청구인은 임업을 사업으로 하는 ○○원목이라는 사업장이 있고 11건의 별목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 (2) 2018. 4. 30. 이후에 진행된 별목공사가 없고 2010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군 산림조합에서의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하여 재해발생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3) 청구인 및 사업장 제출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초병원의 진료기록 일시를 종합한 바, 2019. 12. 20. 재해발생 이후 2018. 12. 26.까지 별목현장에서 정상근무 후 ○○정형외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 (4)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별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5) “재해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 2인의 공통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불승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 심사청구시 제출한 동료근로자 이○일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2019. 5. 9.).
-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였고, 나무에 맞아 소리 질러 가보니 다쳐서 응급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었습니다.

○ I. 최초/유족(사고)

3) 담당 심사장이 2019. 5. 22. 보험가입자(○○산림개발)와 동료근로자 이○○과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가입자(○○산림개발)

문: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어디서(평지 또는 산) 작업하는지요?

답: 벌목 작업(톱)이며 산에서 작업한다.

문: 청구인이 다친 것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나요?

답: 청구인 본인에게서 당일 전화로 들었고 다음날 현장 점검을 가서 만났다.

문: 산에 있는 벌목장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답: 4륜구동 1톤 차량이 벌목장 근처까지 가면 벌목장까지 도로로 약 5분이면 갈 수 있다.

문: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있는지요?

답: 일당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다.

문: 현장의 작업일지와 출력일보가 있는지요?

답: 작업일지와 출력일보는 없다.

문: 출력일보가 없다면 근태관리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 작업 면적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작업했는지 알 수 있어 출력일보 등은 따로 없다. 일당은 몇 명이 근무 하였는지만 출·퇴근때 전화로 말해주면 메모해 두었다가 일괄 지급한다.

문: 다른 근로자 일당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금액이 적어서 청구인에게 한번에 입금한 것이다.

문: 입금자 이름이 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누구인가요?

답: 정비 일하는 근로자로 대신 입금을 부탁하였다. 경리 업무 등 사무를 혼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남 에게 부탁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나) 동료근로자 이○○

문: 2019. 5. 9.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본인이 작성한 사실 있다.

문: 청구인이 다친 것을 목격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는지요?

답: 다친 날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이었고, 눈이 오기 며칠 전이었다.

문: 진술서에 기재한 응급조치는 무엇이며, 당일 작업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항상 응급을 위해 비상 물품 등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봉대로 감은 후 현장에서 바로 내려왔다.

문: 재해일 이후에도 청구인은 일을 하였나요?

답: 청구인은 반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지시 등을 위해 계속 현장에 나와야 했고, 그 이후에도 본인과 같이 현장에 나왔으나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

문: 현장에는 청구인과 진술인 외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답: 당시 장비업체 사람도 있었다.

문: 재해 당일 벌목 작업자 2명이 빠지면 장비업체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답: 기존에 벌목한게 있기 때문에 장비업체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문: 재해 당일 청구인이 다친 사실과 당일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 하였나요?

답: 보고는 모두 반장이 할 일이므로 본인은 모른다.

문: 진술인은 어떤 경로로 채용되었고,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 청구인이 일을 소개하였고, 일당은 19만원이며 식대 등은 별도다.

문: 크리스마스에도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당일 날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 휴일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2. 8.)

- 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로 수상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과 진료기록지상의 재해일과의 시차가 일주일간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고 후 경미한 재해로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작업 중 다리를 다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8. 12. 27. 촬영된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2. 20.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2018. 12. 20. 재해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반장으로서 부득이 재해 이후 수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2018. 12. 20.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은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079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1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 사업주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걷던 중 좌측 발이 꺾이며 몸이 휘청거렸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족부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9. 2.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사적인 사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병문안을 가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9. 3. 12.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9. 1.29. 11:50경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관리 중인 장○○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택에 모셔다드린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최○○, 이○○ 어르신을 병문안 가기 위해 주차 후 병원 입구로 가던 중 발이 꺾이며 휘청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주로서 평소 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 당시 병문안 대상자인 최○○, 이○○를 추후 동 사업장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것을 목적에 두고 병문안을 간 것이다. 퇴원 후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모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병문안을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대표자로서 2018. 2. 23.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2)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주로 평소 요양서비스,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9. 1. 29. 사업장 소속 수급자 어르신의 내원을 동행하고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최○○ 등이 생각나서 병문안을 가기 위해 ○○요양병원을 갔고, 병원에 도착하여 주차 후 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하던 중 발이 꺾이며 몸이 휘청하는 재해가 발생함
 - 병문안 대상인 최○○, 이○○는 현재 입원 중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며, 최○○은 사업주와 인척(외숙모의 모친) 관계라고 진술함
- 3)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9. 1. 30.○○의원에 내원하였고, 해당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I. 최초/유족(사고)

- 차에서 내리며 삐끗함
- 2019. 1. 30. 당원에 내원
- 이학적 검사 및 진찰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단하지 부목고정술 및 처치 후 입원가료한 환자로 약물, 안정가료 시행한 환자임

4) 원처분기관은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사업장 소속 수급자의 내원을 동행하는 출장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관리 대상이 아닌 인척관계의 환자 병문안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획된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5) 산재심사실은 청구인의 재해관련 사실관계 확인차 2019. 7. 29. 병문안 대상이었던 최○○과 유선 연락을 취했고, 최○○의 병환으로 최○○의 딸(청구인의 외숙모)과 유선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1: 최○○이 고관절 수술로 요양병원에서 요양한 바 있나?
- 답1: 2017. 11.경에 수술하셨다.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입원하셨다.
- 문2: 최○○은 언제 퇴원했나? 현재 상태는?
- 답2: 1년 6개월가량 입원하시고, 재활치료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아 집에 모셔서 돌봐 드리려 했다. 퇴원하셔서 한 두달간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요양보호대상2급)를 받으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요양병원으로 2019년 6월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 문3: 김○○가 최○○ 병문안을 오다가 다친 사실이 있다. 들은 바 있나?
- 답3: 들었다. 병문안 올 때 나한테 연락을 하고 오는 데. 그날은 내가 병원에 없었고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방문길에 다쳤다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었다.

- 문4: 이전에도 김○○가 병문안을 왔나?
 - 답4: 왔었다. 한 달에 1~2번, 나한테 전화 주고 올 때도 있고 연락 없이 왔다 간 적도 있다.
 - 문5: 김○○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최○○을 돌볼 계획이었다고 하는 데 알고 있는지?
 - 답5: 몇 번 나한테 본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관리 받는 것을 얘기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주간보호를 받으신 것도 그곳을 통해서인 듯하다.
- 6) 산재심사실은 청구인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확인 차 2019. 9. 6. 청구인을 만나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 문1: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답1: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재가방문요양을 주로 하고 있다. 우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 대상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 문2: 인력 등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 답2: 현재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5~6명이고, 수급자는 7명이다. 예전에 이보다 더 많기도 했으나, 최근 내가 아프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어야 한다.
 - 문3: 대표로서 평소에 업무내용을 설명해 달라.
 - 답3: 가장 중요한 일은 수급자 유치이다. 워낙 노인복지센터가 많고,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센터로 바로 옮겨가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확보가 중요하다. 대표이지만 나도 요양보호사여서 다른 요양보호사의 자리가 비거나 할 때, 수급자들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등도 한다. 매월 말이면 요양서비스가 없더라도 수급자들을 찾아뵙는 일도 한다.

○ I. 최초/유족(사고)

- 문4: 고객유치를 위한 활동 등 활동일지나 출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나?
- 답4: 소규모의 영세한 노인복지센터이다 보니 그런 것은 없다.
- 문5: 수급자 유치를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 답5: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나 향후 퇴원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면 병원을 방문해 고객 유치를 한다.
- 문6: 상시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방문하는 병원 등이 있나?
- 답6: 그런 것은 없다. 우리 서비스를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기시는 분들에게 병원을 소개해드리기는 하나, 아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병원을 홍보차원에 다니지는 못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우리가 환자를 빼 갈까봐 신경쓰기 때문에 아는 분이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차 방문하면서 고객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다.
- 문7: 최○○의 병문안은 어떻게 이뤄졌나?
- 답7: 최○○어르신은 외숙모의 친정어머니다. 시골에 내려와 계신다고 해서 몸 상태는 좋지 않으시나(약간의 치매만 있고) 특이사항은 없고, 배뇨의 문제가 있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외숙모가 나한테 물어봐 시골로 오시게 되면 우리 센터의 요양보호사와 연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숙모에게 말했다. 그러던 중 최○○어르신이 고관절 골절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골절 입원이니 퇴원하고 우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번, 적어도 두 달에 한번 병문안을 갔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이○○씨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고 수급자로 우리 센터의 서비스를 받게 되신 거다.
- 문8: 최○○ 병문안시 외숙모에게 별도로 연락을 했나?
- 답8: 할 때도 있고 안하고 갈 때도 있었다. 최○○ 어르신이 다 알아보고 기억했다가 외숙모에게 내가 갔던 것을 얘기하곤 했다고 들었다. 다친 날도 내가 다친 것을 최○○ 어르신에게 말했더니 외숙모가 어르신을 통해 다친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 문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특례가입을 어떻게 하게 됐나?
 - 답9: 센터들의 협회가 있다. 그 협회에 공인노무사가 있다. 센터 직원들만 산재보험이 되는 줄 알았으나,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들어서 가입하게 되었다.
- 7)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확인서에 따르면, 수급자 최○○은 2019. 6. 11. 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2019. 6. 11. ~ 2020. 4. 23.) 계약을 맺은 바 있고, 이○○은 2019. 4. 23. 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2019. 4. 23. ~ 2020. 4. 18.)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9. 2. 22.)

- 상병명: 좌측 족관절, 족부 염좌, 요추부염좌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1. 30.(타의료기관)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2. 8.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10일 전 차에서 내리다가 좌측 족관절이 심하게 꺾었다고 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Lt ankle pain
- 종합소견: 타원에서 치료 후 내원한 환자로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해 단하지 부목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약 2~3주간 안정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료 검토 결과 재해와 신청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요양기간 타당한 자임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6 판단 및 결론

- 가. 청구인은 사업장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것을 목적에 두고 병문안을 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2019. 1. 29. 어르신인 병문안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걷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청구인의 업무를 특정할 만한 증빙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통상적으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재해당일 청구인이 병문안한 환자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이미 여러 차례 병문안 대상자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옮기라는 제안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오롯이 사적인 용무로 방문을 하였다 보기 보다는 고객 유치를 위해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의 5. 14. CT 상 대뇌검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5. 25. CT 상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 요추부 MRI 상 '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6648호
- ➔ 사건명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7. 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5. 9. 09:00경 작업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제5번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아 2019. 5. 30.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2인의 『① 요추 5번 추체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자료 확인되지 않아서 불승인됨. 나머지 상병은 승인 타당함. 요양기간은 신청기간 이후 증상고정 검토 요함. ②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두 개강 내 경막하 혈종과 제5요추체 압박골절은 확인되지 않아 승인하기 어렵고, 요추 제1·2·3·4번 및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은 확인이 되어 승인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7. 4.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하였으나, 상병명 "요추 제5번

○ I. 최초/유족(사고)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원처분기관은 상병명 “요추 제5번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치의사들의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병원(2019. 7. 9.)

상기환자 2019. 5. 9. 1m 높이에서 낙상한 후 발생한 SDH on falx cerebri 및 T12-L4까지의 Rt. TP fx.외 요추 제5번 추체 하방의 골절 소견 관찰되어 본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 분으로 향 후 타합병증 및 후유증, 미발견증이 병발치 않는 한 수상 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합니다.

2) ○○대학교병원(2019. 7. 9.)

상기 55세 여자 환자 2019. 5. 9. 외상 후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대뇌 껍질막의 경막하 출혈, 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되어 보존적 처치 시행함. 향후 임상적 영상학적 추시 요하며 미발증 발생 시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 ○○대학교병원 및 ○○병원의 추가 소견서 내용과 같이 상병이 확인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I

최초 / 유족 (사고)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19. 5. 9. 09:00경 작업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제5번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아 2019. 5. 30.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을 받고 ○○대학병원, ○○병원 등에서 2019. 5. 9. ~ 2019. 9. 10. (입원 62일, 통원 63일)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주요 의무기록(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Brain CT(○○대학교병원, 2019. 5. 14.)

- Acute SDH along posterior falx
- No large infarction
- No hydrocephalus
- No detectable fracture of cranial vault

나) Abdomen CT(○○대학교병원, 2019. 5. 14.)

- Fractures at left 11, 12th rib, L1-L4 transverse process.
- Minimal amount of fluid collection(probably hemorrhagic) in left poerior pararenal space.

○ I. 최초/유족(사고)

다) L- SPINE MRI(○○병원, 2019. 5. 16.)

- mild central protrusion of L2-L5 disc is seen.
- back subcutaneous portion에 diffuse edema가 있고, L2,3 level에도 high signal이 보임
- otherwise nonspecific.

라) Brain CT(○○병원, 2019. 5. 25.)

- Nonspecific finding.

- 5)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두부 및 허리’ 부위의 골절 등과 관련된 청구인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일: 2019. 5. 9.).
- 6)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2019. 7. 9.)’와 ‘소견서(○○병원, 2019. 7. 9.)’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추가로 제출한 소견서(○○병원)

- 병 명: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2019. 5. 9. 1m 높이에서 낙상한 후 발생한 SDH on falx cerebri 및 T12-L4까지의 Rt. TP fx.외 요추 제5번 추체 하방의 골절 소견 관찰되어 본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 분으로 향 후 타 합병증 및 후유증, 미발견증이 병발치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합니다.

2) 추가로 제출한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2019. 7. 9.)

- 병 명: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Multiple fracture of unspecified ribs, closed, Multiple fracture of lumbar vertebra level unspecified, closed

- 임상 소견: 상기 55세 여자 환자 2019. 5. 9. 외상 후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대뇌 경상막의 경막하 출혈, 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되어 보존적 처치 시행함. 향후 임상적 영상학적 추시 요하며 미발증 발생 시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최초요양신청서(○○병원)

- 신청 상병명: 요추 제1·2·3·4번 가로돌기 골절,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제5번 추체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요양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5. 9.(타 의료기관)
- 본원 최초 도착일시: 2019. 5. 15.
- 재해경위: 일 하던 중 발판이 부러지며 1.5m 아래로 추락함
- 재해 시 최초 증상: 두통, 어지러움, 허리 통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두통, 어지러움, 허리 통증, 메스꺼움
- 주요 검사 및 결과: X-ray, CT, MRI
- 종합 소견: 허리 압통 심하며 보행 시 허리 통증 및 복부 통증, 어지러움, 두통 호소
- 신청 기간 및 사유: ① 2019. 5. 15. ~ 2019. 6. 18.(입원 5주) 통증 조절, 약물치료, 물리치료 ② 2019. 6. 19. ~ 2019. 8. 6.(통원 7주) 약물치료, 물리치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요추 5번 추체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자료 확인되지 않아서 불승인됨. 나머지 상병은 승인 타당함. 요양 기간은 신청기간 이후 증상 고정 검토 요함

자문의사 2)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두 개강 내 경막하 혈종과 제5요추체 압박골절은 확인되지 않아 승인하기 어렵고, 요추 제1·2·3·4번 및 흉추 제12번 가로돌기 골절은 확인이 되어 승인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19. 5. 14. ○○대병원에서 시행한 CT에서 뒤쪽 대뇌경의 경막하 출혈이 있고, 2019. 5. 25. CT에서 출혈은 줄어들어 있어서 대뇌경의 경막하 출혈 진단은 타당함 - ‘경막하 출혈’

자문의사 2) 상기자는 2019. 5. 9. 추락 재해 후 발생된 요추 골절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수상 직후인 2019. 5. 14. 시행한 CT를 보면 대뇌경 주변으로 경미한 경막하 출혈이 있었고, 2019. 5. 25. CT에서는 출혈이 상당 흡수되었음이 확인되기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임 - ‘경막하 출혈’

자문의사 3) 청구인의 첨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자기공명 영상검사와 복부 CT 검사 등을 종합한 결과, 요추 5번에는 피질골의 파단이 확인되지 않음.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추체골수 음영변화가 일부 확인되나 시상면에서의 다 확인되지 않고, 위치도 일정하지 않음. 따라서 요추 5번 골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요추 5번 골절’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양쪽 (사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생한 상병과 재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기초 또는 기존질환인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가 상병의 정도를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추가 소견서(○○대학교병원 및 ○○병원)를 참고하여 신청 상병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2019. 5. 14. CT 상 대뇌경 부위에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2019. 5. 25. CT 상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이 시간이 경과하여 흡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인정함이 타당하나, 요추부 MRI 상 '요추 5번 골절'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 중 상병명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이 건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10193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8. 25.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및 열상, 어깨 및 팔꿈치의 좌상,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이 건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 중 임의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 10. 10.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차량 운행을 위해 후진기어를 놓고 출발을 위해 뒤를 보다가 어깨에 붙은 썩기벌레를 보고 놀라서 기어를 P에 놓고 황급히 내렸으나 당황해서 기어를 R에 놓은 상태였고, 차량이 후진을 하여 급히 차에 타고 기어를 P로 바꾸려는 중 왼발이 좌측 바퀴에 깔려서 청구인이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간 사고이다. 청구인은 식사를 위하여 집으로 간 것이며, 고추화분을 옮긴 것도 미리 예정된 일이 아니고, 또한 일단 문을 닫고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엄연히 업무의 시작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초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택시
-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2) 청구인 관련

- 채용일자: 2019. 2. 10.(2019. 9. 30. 퇴사)
- 담당업무: 운전원(상용직)
- 사고 차량: 소속 사업장 소유의 차량임.
- 재해 경위: 2019. 8. 25. 16:05경 자택 앞 경사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몸에 별레가 붙은 것을 확인하였고, 당황하여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고 그 결과 차가 후진하여 왼쪽 발이 차량 내로 말려들어가 발생한 사고
- 신청 상병: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및 열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 I. 최초/유족(사고)

3) 초진기록 (2019. 8. 25. ○○대학교 병원)

- O: 2019.8.26 17:30

- V: 택시기사로 비탈길에서 차량 side가 걸리지 않아 바퀴에 깔림

- N: 내원 당시 Lt. medial malleolous open Fx. 관찰됨. 일부 anterior tibial artery 분지 관찰됨. NPO: 2019. 8. 25. 16:00

- 과거력: HTN, DM, hyperlipidemia로 복음내과에서 medication

4) 2019. 11. 25. 청구인은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청구인은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2019. 11. 12. 퇴원하여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 청구인은 “○○순대”라는 곳에서 주로(이들에 한번 정도)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 식사는 보통 6,000원씩이나, 기사님들에게는 현금으로 하여 5,000원씩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식사시간에 인근에 있으면 보통 거기서 식사를 한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안쪽 (사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집에서 나와 차량 탑승 후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업무의 시작이므로 이 건 재해를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2019. 8. 25.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휴게시간 중 사고

1

»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결승 종료일 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축구대회의 일정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739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7. 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5. 20. 점심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염좌'를 진단받아 2019. 6. 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참석행사는 사내 축구 동호회 주관하에 계획되어 행사 참가의 강제성 및 미참석의 불이익이 없는 점,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 중 실시되며 해당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행사 참석에 대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참가 희망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점 등, 사내 동호회 주관 하에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된 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9. 7. 4.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서대항전 축구대회에서 재해를 입었다. 연구소에서 평소 휴식시간 중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이 아니라는 이유는 부당하다. 또한 동일한 행사에서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산재 승인이 난 바 있으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 재해발생 일시: 2019. 5. 20. 12:40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매년 실시되는 2019년 ○○축구대회 운동장에서 오후 12시 30분경 상대팀 선수에게 왼쪽 발목을 차이면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넘어짐

2) 재해발생 이후 최초 내원한 병원의 2019. 5. 20.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오늘 점심 때 축구하다가 왼쪽 발목 주변이 붓고 아파지고 있다 함
인대 손상 가능성이 높아서 초음파 찍겠음
Partial tear of ATFL
- R/O Near complete tear.
No remarkable finding in CFL...

3) 원처분기관에서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2019. 5. 20. 신청인이 참여한 축구경기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2019년 ○○축구대회”로 2019. 5. 16. ~ 결승 종료일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점심시간 (12:10 ~ 12:50)을 이용해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실시한 동호회 축구대회이며 사고당시 대회 참석에 대한 사업주 지시는 없으며 강제성 및 미참석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 사고당시 동호회 축구대회는 점심시간에 실시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축구대회의 일정안내는 회장이 연구소 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2019. 5. 14. 게시하였음. 사업장의 별도의 내부결재 및 비용지급은 없으며 사적인 모임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월 회비를 거두어 비용처리함
- 4)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가) 사내 축구 동호회의 주관 하에 실시된 행사로서 대회 참가의 강제성 및 불참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점
 - (나) 행사 시행 시 결승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대회가 실시되었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 (다) 행사 참석에 대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참가 희망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점
- 5) 원처분기관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이 2019. 6. 13. 점심시간 중 축구 동호회 주관으로 개최된 부서대항전 축구경기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 인정 하에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휴게시간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2019. 8. 19.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1) 2019년 ○○축구대회로 청구인이 참석한 대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서(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9. 6. 4.)

-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경추염좌
- 예상기간: (입원) 2019. 5. 31. ~ 2019. 6. 20.
(통원) 2019. 5. 24. ~ 2019. 5. 30. / 2019. 6. 21. ~ 2019. 8.15.
- 수술여부: 2019. 5. 31. 좌측 족관절 변형된 브로스트롬 술식
- 종합소견: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병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타병원 MRI&본원 CT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좌측 족관절에 대해 2019. 5. 31. 좌측 족관절 변형된 브로스트롬 술식 시행 후 하지 부목 고정 처치 하에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술후 1주 이후 보장구 착용 후 부분적 체중 부하(6~8주 보조기 착용 예정), 4주차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6주차 전체 체중 부하 허용 예정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족관절부 동통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상병 요할 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타당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양쪽 (사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축구대회에서 재해를 입었고, 평소 휴식시간 중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점심시간 중 회사내 운동장에서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경기가 매년 실시 되어 왔고, 경기 준비를 위해 2019. 5. 16.부터 결승 종료일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동호회 회장이 축구대회의 일정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1호마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출장 중 사고

1

»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89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1. 1. 16:00경 ○○물류센터 내에서 3m 높이에 있는 벽시계를 떼어 내기 위해 0.8m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대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글라스(주) ○○물류센터 내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관

○ I. 최초/유족(사고)

작업 후 남은 물품들이 필요하여 이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출장 여부의 판단 등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글라스(주)의 포괄적 지시 내지 승인이 있는 점, 출장 방문 과정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경로를 이탈한 바가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한 주장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만 30년간 근무하여 생산기능직 품질보증과의 책임자로 17년간 반장 직책을 수행함
- 주된 업무: 제품의 최종 품질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등. 근무(관리) 영역 내 수시 출장을 통해 사업장 단위의 품질점검, 품질교육, 품질사전예방활동 수행함(품질 보증팀 업무분장표 참조)
- 근무(관리) 영역: ○○물류센터, ○○자동차 (사업주의 사고사실확인서 상 담당업무 내용 중 확인 가능함)
- ○○물류센터 서브 이관 작업은 2018. 10. 6. 시작으로 2018. 11월 중순까지 진행됨
- 2018. 10. 23. 설치작업 종료 후 기타 정리 작업 과정에서 ○○물류센터(임차 사업주)의 총괄관리자 ○○부장이 현장에 남은 물품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를 가져다 사용 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타 물류센터에서 도 평소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2018. 11. 1. 16:00경 해당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 ○○ 물류센터로 이동 후 3m 높이의 벽에 걸린 벽시계를 떼던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짐. 당시 수거대상 보수작업대,

- 캐비닛, 벽시계는 ○○공장 현장 및 사무실에 비치됨(이동차량 및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 관련 사진 참조)
- 청구인은 품질점검 등 업무 특성 상 주변 이동에 대해 사전 연락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영역내에서 이동하며 업무 수행하고, 사업주에게 상시 보고하지 않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업무보고로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각 지역 물류센터도 청구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출장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 역시 문제 삼은 사실이 없음. 즉, 사업주는 평소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출장업무의 수행을 일임하였다.
 - 청구인은 품질교육 실시를 위해 ○○물류센터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2016년 7회, 2017년 5회, 2018년 재해일 이전에 4회 출장 방문함
 - 보수작업대는 사업주 소유, 캐비닛과 벽시계는 (주)△△의 소유물이나 청구인이 떼어 내려던 벽시계가 (주)△△ 소유라는 것을 이유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확인서 상 청구인 근무지인 ○○물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음
 - (주)△△ 소속 정○○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주)△△은 ○○에 본점, ○○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서 자동차 유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자동차사에 납품하고 있음. (주)△△는 ○○자동차 공장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청구인은 (주)○○ 직원으로 자동차에 공급된 제품의 최종 품질점검 및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 업무도 진행함. (주)△△에 공급된 제품의 품질점검도 포함됨. 주 담당지역은 ○○자동차 공장이며 필요시 중부권지역은 수시로 지원업무를 수행함. 수시 출장 업무 영역은 자동차 유리 서열 업체, ○○ 자동차사, 자동차 출고 사무소 등이며 세부적으로 ○○공장, ○○자동차이며, 유리 서열/공급업체로는 진영, ○○(재해발생 장소) 등이 있음. (주)△△는 자동차 수요 급감으로 수익성악화 및 운영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납품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고 폐업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이관 정리 후 폐기 예정이었던 일부 장비가 필요하면 가져가 사용하라고 청구인에게 언급을 하여 보수작업대를 가져가기 위해 ○○를 방문함. 벽시계를 추가로 가져가기 위해 부수대위에서 탈락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주)△△ 소속 ○○물류센터 현장 소장 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 2013.

○ I. 최초/유족(사고)

5. 24. 입사하여 퇴직 시까지 (주)△△ ○○물류에서 근무함. 2013년 ○○물류센터 개업 시부터 자주 방문하여 자동차 유리 품질점검 및 품질교육을 실시함. 2018년에도 (주)△△ ○○물류에 몇 차례 방문하여 품질 교육 및 설비 점검을 함

2) 원처분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

- 사업장명: ○○(주) ○○물류센터
- 소재지: ○○시
- 사업종류: 판유리제조업
- 성립일: 2000. 10. 1.

나)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02. 4. 1.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직, 정규직
- 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다) 재해조사 내용

- 재해 일자: 2018. 11. 1. 16:00
- 재해 장소: ○○시 ○○면
- 재해 경위: 2018. 11. 1. 16:00 경 ○○글라스(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에 위치한 (주)△△ ○○지점(2018. 10. 21. 사무실 퇴거 및 이전, 2018. 11. 13. 폐업)으로 이동하여 폐업으로 인해 이전한 이후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벽시계를 떼어내다가 떨어짐
- 담당 업무 및 범위: ○○자동차(주) ○○공장에 납품된 자동차 유리의 품질관리 및 납품된 유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외근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외근시 별도로 출장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 진행사항을 업무보고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이메일로 보고함. 주된 근무영역은 ○○자동차(주) ○○공장, 등이며, 재해일 이전 4개월(18. 7월 ~ 10월) 동안의 업무보고내용 확인 결과 ○○으로의 출장 및 업무수행 내역 없음

라) ○○(주)가 사고사실확인서(2019. 1. 17.)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주된 업무가 출장업무로서 업무영역 내 이동은 사전 보고 등 상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안 발생 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며, 각 지역 물류센터도 청구인의 업무영역으로서 필요여부를 본인이 판단하여 출장 근무함

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평소 출장업무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사안 발생 시 본인이 판단하여 업무 수행 후 사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보고하는 형태로 근무함. 재해 당일에도 ○○의 사무실이 이전한 후 남아 있는 물품 중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본인이 판단하여 업무시간 중에 회사 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주)△△에 함께 갔음

바) (주)△△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 11. 10.) 상 진술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장소는 (주)△△으로 (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 중이었고 공식적으로는 2018. 11. 13. 폐업하였으나 이미 2018. 10. 21. 전직원이 퇴사처리됨. 비품 이관작업이 끝나서 재해당일은 사무실이 비어 있었음. 사무실의 모든 집기와 사무용품은 (주)△△ 소유였으며, 벽시계도 (주)△△ 소유임

사) 조사자 의견

- 청구인에 대한 업무분장 상 맡은 업무는 ○○자동차(주) ○○공장에 납품한 자동차 유리의 품질관리 등이 주 업무로서 업무일지 확인 결과 주된 근무 영역은 ○○자동차(주) ○○공장으로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이전 4개월간의 업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발생 지역인 ○○으로의 출장 내역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 바, 벽시계 취득 등은 청구인의 통상적인 수행업무가 아니며, 재해 발생 장소 역시 평소 재해자의 통상적인 근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I. 최초/유족(사고)

- 재해 발생 장소는 소속 사업장이 아니라 협력업체인 (주)△△ 사무실로서, 재해 당일엔 이미 사무실내 모든 근무인원과 집기가 퇴거된 채 비어있던 상태였으며, 3m 높이에 걸려있던 벽시계는 (주)△△ 소유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무용품으로 보기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또한 떼어낸 벽시계를 청구인이 근무하는 ○○물류센터내 사무실에 걸어놓으려고 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불명확하며(개인용도로 취득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업무상 사유로 벽시계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출장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재해장소로의 이동 및 벽시계 취득 등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사업주 승인을 받은 내역도 없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도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 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사업주가 작성한 사고사실확인서(2019. 1. 17.)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사고경위: ○○물류센터 이관 후 폐쇄 전 남아있던 글라스 보수작업대, 캐비닛, 벽시계를 ○○물류센터에서 필요하여 가져오기 위해 ○○물류센터를 방문함. 벽면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보수작업대 위에서 떼어내려는 중 떨어짐
- 사고 장소로의 이동 시 이용 차량의 종류 및 소유자: 회사 차량, 봉고3
- 이동 및 물품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자: ○○(주)
- 동행자 또는 목격자: (주)△△(○○물류센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
-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이유: 청구인 근무지인 ○○물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었음

4)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장 업무보고 자료 기간: 2018. 7. 2. ~ 2018. 10. 31.
 - 작성·보고일: 출장당일의 다음 날
 - 출장지역 현황: ○○항 40회, 연구소개발팀○○품질본부 2회, 출고장 2회, ○○자동차 1회
- 5) (주)△△의 폐업사실증명원(2018. 11. 13.) 상 폐업일은 2018. 11. 13.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 소견서, 2018. 11. 22.)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 수상하여 내원.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우측 발목 통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검사상 우측 발목 후방 골절, 우측 비골 골절
- 치료 예상기간
 - 입원: 2018. 11. 2. ~ 2018. 11. 14, 수술, 상기 진단하에 2018. 11. 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 통원: 2018. 11. 15. ~ 2019. 1. 3. 수술후 골유합 및 재활위해 외래 추시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기간 타당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 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7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출장 경위, 출장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 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재해 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근무일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소속직원 3명과 함께 사업주 소재 농장에 갔으며 매실청 담그는 일은 매년 해오던 업무이고 매실청 용도가 사업장 호텔 뷔페 등에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847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8. 2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6. 11. 11:00경 사업주 소유 농장에서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를 진단받아 2019. 7. 8.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총무, 회계 등 관리업무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소유의 농장에서 매실청을 담그는 일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업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행위가 산재보험의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사적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8. 22.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9. 6. 11.에 사업주 소유의 매실농장에서 사업주 및 같은 사업장 직원 2명(운전기사, 시설관리반장)과 함께 매실을 따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미끄러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및 요추염좌’의 상병이 발생

하였다. 처음에 청구인은 물파스를 바르고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2019. 6. 21. 통증이 심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고, 2019. 6. 24. 정형외과를 방문해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9. 7.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 중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근로자인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빌딩'의 사업주는 '○○빌딩' 외에도 (주)○○ ('○○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빌딩은 3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로 3곳의 임차인 매장이 있어 ○○빌딩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도 없고, 수행할 업무가 많지 않아 ○○빌딩 소속근로자 총 3명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주)○○에서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도 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주)○○에서 경리,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빌딩 경리 업무도 겸하고 있다. 본 건 관련하여 원처분 기관에 제출한 사업주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무장소가 ○○빌딩의 주소지가 아닌 ○○호텔이 위치한 주소로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이곳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를 부동산 임대업인 ○○빌딩 업무로 국한해서 판단할 수 없고, ○○호텔을 운영하는 (주)○○의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 매실작업의 수행은 해마다 (주)○○ 소속근로자 및 ○○빌딩 소속근로자 구분 없이 3~5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작업을 하며, 매실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업무적으로 사용되어, 매실청은 ○○빌딩 및 (주)○○ 소속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직원들의 음료용, 방문객 접대용 및 ○○호텔 뷔페의 식재료 및 고객 후식용 음료로 대부분 사용된다. 따라서 매실작업이 비록 사업주 개인농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주)○○ 식재료, 음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바, 매실작업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제출 요양신청서(2019. 7. 8. 작성)

- 회장님께서 매실이 많이 열렸으니 매실청을 담자고 하셔서 농장에 감. 2019. 6. 11. 11:00경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살짝 미끄러짐. 2019. 6. 18./6. 19./6. 20. 3일 동안 300kg 가까이 되는 매실을 물에 닦고, 꼭지 따고 말리고 저울에 재어서 매실청을 담기 위해 매실과 설탕을 통에 담는 작업까지 하였음.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받음

나) 진료기록지(2019. 6. 24. ○○병원 내원)

- LBP (2wa) 최근에 일하면서 무리했음 -agg: 움직일때마다, LMR: ACF, T12, BMD: -4.5(L2,3,4)

다) 청구인 진술(2019. 7. 31. 원처분기관 유선통화)

- 2019. 6. 11. 농장에 가서 식사 준비작업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넘어지진 않고 허리를 삐끗하기만 하였음
- 2019년 6. 18. ~ 6. 20.까지 농장에서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였음
- 농장은 사업장 회장님 소유의 농장으로, 매실이 많이 달려서 회장님이 가자고 하여 매실청을 담그러 갔었음

2)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2019. 5. 1. 작성) 확인

- (1) 사용자: ○○빌딩 대표
- (2) 근로계약기간: 2016. 7. 1.(입사일)부터 임(임금 적용기간은 2019. 5. 1.부터 임금의 변동시까지 임)
- (3) 부서·직종: 근로부서는 ○○빌딩이며, 직종은 경리차장임

(4) 근로시간, 휴게·휴일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로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
- 휴(무)일: 주중 2일을 주휴하며, 휴무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함
- 기타휴일: 근로자의 날

(5) 임금 등(월간 임금구성 항목 및 산정내역)

- 기본급(209시간): 금 2,553,000원(1주 48시간)
- 식대: 금 100,000원
- 합계: 금 2,653,000원
- 임금 지급일은 매월 초일부터 일일 분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함

나) 피보험자 취득 등의 정보조회 결과

(1) 4대보험 취득 이력

| 사업장명 | 취득일자 | 월평균보수 | 비고 |
|------|-------------|-----------|-----------|
| ○○빌딩 | 2016. 7. 1. | 2,500,000 | 고용 및 산재보험 |

(2)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 소속 사업장명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근로소득계 |
|---------|-------------|---------------|------------|
| ○○빌딩 | 2016. 7. 1. | 2016. 12. 31. | 14,400,000 |
| | 2017. 1. 1. | 2017. 12. 31. | 29,150,000 |
| | 2018. 1. 1. | 2018. 12. 31. | 29,880,380 |

3) 청구인 소속 사업장 개요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소속 사업장(○○빌딩)

(1) 노동보험시스템 상 보험관계 적용

- 성립일: 2016. 7. 1.

- 사업종류: 산재보험(부동산업), 고용보험(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2) 사업자등록증 확인

- 개업년월일: 1993. 9. 9.

-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주장한 소속 사업장(주식회사 ○○)

(1) 노동보험시스템 상 보험관계 적용

- 소재지: 서울 ○○구

- 성립일: 2016. 4. 1.

- 사업종류: 산재보험(음식 및 숙박업), 고용보험(호텔업)

(2)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설립: 2009. 10. 15. 등기

- 본점 소재지: 서울 ○○구

- 목적: 부동산 관련(매매업, 임대업 등), 식자재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주류판매업, 호텔 및 숙박업(2010. 1. 14. 목적 추가)

다) ○○빌딩의 사업주는 (주)○○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주)○○의 공동 대표는 아들로 확인된다. 또한, ○○빌딩 소속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확인되고, (주)○○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소속 근로자는 총 32명으로 확인된다.

4)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진술(2019. 7. 31. 원처분기관 유선통화)

-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건물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확인 등 빌딩(사업장)의 총무, 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 ○○구 소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음
- 2019년 6월 급여는 지급을 해주었으나 7월부터는 무급으로 알고 있음

나) 사업주 진술(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사업장확인서, 2019. 7. 9. 작성)

- 사업장 명칭: ○○빌딩
- 입사일 및 담당업무: 2016. 7. 1. 경리업무
- 임금: 월급 2,653,000원
- 근무장소: 서울시 ○○구

다) 청구인이 재해당일 작업 경위(사업장확인서, 2019. 7. 9. 작성)

- 작업기간: 2019. 6. 11. 09:00 ~ 18:00
- 작업장소: ○○도 ○○시
- 농장주소지 및 소유주: 작업장소와 동일. 회장 소유
- 상기 작업을 한 이유: 매실 양이 많아 인원들이 필요했음
- 작업장소까지 이동방법: 차량 탑승 이동(소유주 차량)
- 작업에 소요된 비용부담 주체: 소유주
- 작업 참석 인원: 4명

5) 산재심사실에서 이 사건 재해 관련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11. 5. 청구인 근무장소 출장(서울 ○○구 소재 ○○호텔, 청구인과 ○○호텔 뷔페 주방장 면담 및 담당업무 확인)

(1) 재해경위 확인(일시, 장소, 내원일자)

- 2019. 6. 11. 청구인은 ○○시 소재의 회장님 소유의 농장에 매실청에 필요한 매실을 따기 위하여 ○○빌딩 소속 남자 직원 2명과 회장님을 모시고 농장에 방문하였고, 오전 11시경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진 후 허리를 삐끗 하였음. 사고 당일 ○○빌딩 소속 동료직원 운전기사에게 다친 사실을 말하였음
- 2019. 6. 18. ~ 6. 20. 농장에 방문하여 남자직원들이 매실을 따면 청구인은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였고, 2019. 6. 11. 다친 허리에 계속 통증이 와서 2019. 6. 24. ○○병원에 가기 위해서 상무님께 재해에 대하여 최초 보고하였음. 2019. 7. 31. 까지 한달 동안 병원치료를 위해서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쉬다가 2019. 8. 1. 사업장에 복귀하였음

(2) 재해당일 작업 경위, 사업주의 지시여부, 참석인원 확인

- 회장이 농장에 매실이 많이 달려있으니 매실을 따기 위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딩 소속 직원 남자 2명(운전수, 시설직)과 청구인이 사업주 소유의 차량을 타고 ○○시 소재 농장을 방문하였음
- 농장에는 매실나무와 고추 등 각종 야채가 많이 심어져 있고, 매년 5~6월경에 매실이 많이 달려있었음. 회장님이 운영하는 ○○호텔 웨딩뷔페에 필요한 식자재 들을 수시로 공급하며, 특히 매실청에 필요한 매실이나 고춧가루가 식자재로 주로 이용되었음

(3)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입사경위 및 근무장소

-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는 2016. 7. 1. ○○빌딩에 입사한 근로자로 확인되지만, 10년 전인 2006. 12. 15. 서울시 ○○구 소재의 음식점에 최초 입사 하였고, 음식점이 없어지고 사업장이 있던 부지에 호텔이 새로 지어진 이후에도 3층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였음

- 회장님은 ○○빌딩 뿐 아니라 여러 건물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뿐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는 (주)○○도 경영하는 사업주임. ○○호텔은 회장님 아들이 대표 이사로서 공동경영을 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은 회장님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뿐 아니라 호텔의 여러 업무 등을 함께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빌딩은 서울시 ○○구 소재에 있는 3층 건물로 ○○패션과 ○○ 대리점들이 입주하여 ○○빌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고, 회장님이 근무하는 ○○호텔 3층 경영지원사무실에서 모두 같이 근무하고 있음

(4) 청구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업무를 ○○빌딩 소속 경리업무로 명시하였지만, 회장님이 운영하는 ○○빌딩 뿐만 아니라 (주)○○의 ○○호텔에서 비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6년 입사 이후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며, 회장님실 옆방에는 회장님의 아들인 대표 이사가 근무하고, 청구인은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침에 회장님께 물을 끓여드리고 음료를 대접하고, 병원예약 및 진료, 건강 체크 및 점심을 챙겨드리는 등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빌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입금 확인 등 경리업무 뿐 아니라 호텔의 직원들 퇴직금 관리 및 근로계약서 작성, 주말에는 호텔 웨딩뷔페의 식권 관리, 정산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는 대표업무인 빌딩의 경리업무만을 명시한 것임

(5) 이 사건 재해 당시의 매실청을 담그는 일이 정기적으로 수행 하는 등 사업장 내 관행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실작업의 수행은 해마다 (주)○○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빌딩 소속 근로자들 구분 없이 매년 3~5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작업을 하며, 매실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뷔페의 식재료 및 고객후식 음료로 대부분 사용되며, 사업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의해서 매년 매실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2019. 11. 11. 사업장 상무이사 유선통화

- 청구인은 2019. 6월 중순경 매실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겠다고 이 사건 재해를 최초 보고하였고, 2019. 7. 31.까지 병원 치료를 위해 한달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현재는 복귀하여 근무 중임
- 청구인은 2006년경 호텔의 전신사업장인 예식장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비서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음. 호텔은 이전에 개인 사업장이었던 예식장이 없어지고 법인으로 변경된 사업장으로 회장님과 아들인 사장님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빌딩 뿐만 아니라 회장님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온갖 잡다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청구인뿐만 아니라 예식장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호텔에도 계속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에 소속사업장 및 담당업무는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빌딩 경리업무만을 명시한 것이며, 청구인의 근무일정은 회장님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보통 휴일은 주말 및 평일 포함 2회 정도임
- 청구인은 회장님이 근무하는 집무실인 ○○호텔 3층에서 같이 근무하며 아침에 차 끓이는 일, 일정관리 등 개인적인 비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빌딩은 임대사업 건물로 사무실이 별도 없고, 회장님 소유의 모든 건물들의 임대사업은 ○○호텔 3층의 경영지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물의 경리로서 수행하는 일은 한달에 한번 임대료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전부이며, 대부분 회장님의 개인적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호텔에서는 웨딩홀 뷔페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장이 소유한 개인농장에서 매실 및 각종 야채들을 식자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회장님의 지시로 매년 매실 농장을 방문하여 매실청을 담그는 일을 하며, 담겨진 매실청은 호텔 지하 1층 지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다) 노동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의 취업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빌딩 사업주인 회장과 아들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4대보험 취득내역 상 사업장 명만 변경된 것으로 근무장소는 '서울 ○○구'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명 | 취득일자 | 상실일자 | 업종 | 보험관계 |
|----------|-------------|--------------|----------|-----------------|
| ○○ | 2008. 1. 1. | 2012. 1. 1. | 음식 및 숙박업 | 2013. 11. 1. 소멸 |
| (주)○○글로벌 | 2012. 1. 1. | 2016. 6. 30. | 부동산업 | 2011. 7. 1. 성립 |
| ○○빌딩 | 2016. 7. 1. | - | 부동산업 | 2016. 7. 1. 성립 |

- 라)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사업장인 '○○예식장'은 ○○빌딩 사업주인 회장과 아들이 공동 대표자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2013. 11. 1.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후 예식장이 있던 부지에 (주)○○가 운영한 호텔이 새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사업주 및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휴(무)일은 주중 2일을 주휴하고, 휴무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하며, 청구인은 보통 토·일요일에 쉬지만 토요일에 일을 하면 목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재해일인 2019. 6. 11.은 화요일로 근무일이고, 2019. 6. 18.(화)~6. 20.(목) 기간도 청구인의 근무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서(최초요양신청서, 2019. 7. 8. ○○병원)

상기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소견으로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침상안정 등) 증으로 필요 시 척추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흥·요추부 MRI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결과 확인시 신청 상병 인정 타당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1호(업무상 사고)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빌딩의 부동산 업무뿐만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는 (주)○○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호텔 뷔페 식재료로 사용되는 매실청을 담그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빌딩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장소는 ○○시 ○○구 소재 호텔(주)○○) 내 3층 경영지원사무실로, 청구인 포함하여 빌딩 소속으로 등록된 총 3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호텔 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빌딩과 (주)○○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예식장에 2008. 1. 1.자로 최초 채용된 이후 사업장 명만 변경되고 소재지는 동일한 호텔(주)○○)에 계속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 뿐만 아니라 (주)○○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당일인 2019. 6. 11. 청구인이

사고 장소인 ○○도 소재의 농장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동 농장은 사업주 소유의 농장으로, 사고 당일은 근무일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빌딩 소속 직원 총 3명이 모두 농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전에도 사업주 지시하에 직원들이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고, 매실청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호텔 뷔페의 식재료, 고객 후식용 음료 및 방문객 접대용 음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근무시간에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타 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함에 있어 영업용 차량이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한 것은 합리적인 출장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팀원 중 청구인의 출장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만나기로 했던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645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5. 9. 4.(금요일) 아침에 회사 출근 후 지인분 소개로 브로셔 전달을 위해 ○○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팀장에게 보고한 후 시승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던 중 터널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내용, 관련 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법률자문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해경위 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발생 1주일 전 쯤 기존 고객으로부터 ○○에 거주하시는 구매 예정 고객을 소개 받게 되었고, 2015. 9. 4.(금요일) 오전 9시경 회사 직속 상사(팀장)에게 구매예정

고객을 만나고 오겠다는 보고를 한 후 청구인이 구매 예정이었던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하던 중 10:30경 팀장님께 전화가 와서 현재 위치와 퇴근 6시 전에는 회사 복귀하겠다는 2차 보고를 하였다. ○○로 이동하던 중 빈혈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터널에서 단독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저녁 8시경 사고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청구인이 신청하기 전에 회사 관리담당자를 통해 들은 내용인 즉, 청구인의 사고를 지점장은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왜 보고를 안했는지는 이해 할 수가 없다. 회사는 기간 내에 직원의 업무 중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처리가 된다면 징계처리가 될 것이며 최근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어 지점장이 징계처리 된 사실이 있다. 지점장과 통화해 보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지점장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본사 담당자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청구인은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점장이 작성한 회사 측 입장서 내용은 동호회를 해본 적도 없는 청구인의 동호회 활동을 추측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외근한 내용 또한 지점장이 사정상 은폐하고 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증인이 되어줄 팀장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청구인은 기존에 장기간을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던 이력이 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장비(헬멧, 옷, 부츠)등을 구매한 상태였고 지점장 포함한 전 직원들은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객 또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셨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어차피 구매하기 전 한번은 타봐야 할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따라서 2015. 9. 4. 터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 사고는 청구인이 업무상 외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5. 9. 4. 아침 회사 출근 후 지인 분 소개로 차량 브로셔 전달을 위해 이동하였으며 당시 팀장에게 보고한 후 시승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던 중 터널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의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고발생 일시: 2015. 9. 4.(금) 17:10
 - 발생장소: 터널 내
 - 사고내용: #1 차량은운전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전도된 단독 사고임(사고현장 약도 참조)
- 3)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 초진 기록지 내용
 - ○○병원(2015. 9. 4. 17:59) 진료기록 발췌
 - s) painful bleeding lower leg Lt. wrist. Lt. Lt thigh pain. neck pain.
bike TA로 수상 터널 내에서 수상
 - p) iv anti
adm and OP(emergency) → refused(동행한 남자 두명)
 - 연고지 병원으로 가겠다.
 - 다시 본원에서 수술 원한다.
 - 환자 친보호자에게는 연락 아직 하고 싶지 않다
 - 환자에게 직접 수술 설명 후 동의서 받음
 - 2015. 9. 4. 18:06 Arrived at ER by S-car from 119(with 보호자)
- 4) 사업장에서 출발 기준으로 재해 현장까지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271.93Km, 3시간 25분 소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352.82km(자전거 23시간 31분 소요, 청구인 오토바이 속도 미상으로 확인 불가)

- 출발지: △△도 △△시

- 사고지점: ○○도 ○○군 ○○터널 내

- 도착예정지: ○○도 은행

5) 재해 사실 확인서 상의 청구인 진술

- 2015. 8월경 기존 고객으로부터 구매 예정인 형님을 소개받아 만남을 약속하였고 2015. 9. 4.(금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후 2시30분경 터널에서 빈혈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왼쪽 터널벽을 다리로 쓸고 가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고 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는 고객 상담 및 계약을 위해서이다. 2015. 9. 4. (금요일) 8:00 출근 도장을 찍고 9시쯤 팀장에게 상담이 있어 외근한다고 1차 보고 후 차량 브로셔와 가격표를 챙겨 전시장을 나왔으며 오토바이를 렌트 후 장비를 착용하여 오전 10:30분경 약속 장소 도착지 ○○도 은행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오전 11시경 통화로 팀장에게 현재 위치와 고객 상담내용을 다시 보고 드렸으며 퇴근 전 까지 복귀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

- 2015년 기준 재해자의 판매 비율은 소개 건 40%, 내방 60%이며, △△지역 외의 타지역 비율도 이에 비례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로 이동하였다.

- 시승차는 시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고객은 정확한 차종이 정해지지 않아 상담이 우선이었기에 유대관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토바이를 선택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 사고 당일 사용한 오토바이는 △△에 위치한 오토바이 렌트샵 소유의 차량이며 고객의 소개를 받아 렌트하게 되었다.

- 카레이싱은 회사 입사 전의 취미로 재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

- 재해 당일 영업1팀 팀장에게 보고 드린 사항이나 팀장은 현재 미국으로 이민 간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 사고 당시 가방에 있던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고객들이 전시장으로 찾는 전화가 많으니 빨리 고치라고 해서 2015. 10.월경 병원에서 외출하여 휴대폰을 복구

○ I. 최초/유족(사고)

하였지만 아이폰 복원 페어링 작업이 8개월 전으로만 가능하여 그 이후 저장된 모든 고객 연락처를 잃어 확인이 불가하였다. 성명은 모르고 ○○도 형님이라고 저장했었던 기억이 난다.

- 사고 당시에는 본인 사고가 산재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되어 업무상 개인 자가로 이동 중 사고였기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재해관련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시 영업직 직원으로 먼 지역의 다른 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할 이유가 없음
- 영업차가 있음에도 재해자 임의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함
- 차량 브로셔를 전달해야 할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브로셔 전달을 위한 당시 지점장,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보고가 없었음
- 당시 재해자는 개인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음
- 당시 재해자는 카레이싱 또는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어 지점장이 안전상의 주의를 당부 했으며 근무시간 이탈로(레이싱 참석 등) 추정하고 있음

7) 동료근로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료근로자 진술

- 동 사는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출퇴근 및 출장 시에 별도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으며 자기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만 고객이 시승차를 원할 경우에는 직접 시승차를 운행하여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
- 외근 업무시 목적지에 대하여 팀장한테 보고하거나 팀원들 사이에 목적지에 대하여 공유하기도 하나 주된 곳 위주로 보고하고 방문, 면담하는 고객에 대하여 100% 보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외근 후 사무실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고하고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기도 한다.
- 재해자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출근 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본 적은 없다.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서 옷차림이 정장차림에 가까워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영업사원들의 업무일지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다고 함
- 재해자가 사고 당일 ○○로 외근 가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팀이 아니라 사전에 보고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당시에 재해자의 팀장이 현재 미국에 이민간 상태라고 알고 있다.

나) 동료근로자(확인서)

- 동 사의 영업사원들의 외근 업무시 별도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다.
- 외근 업무시 목적지에 대한 사전 보고는 특별한 보고 없이 외근 나가는 경우가 보통 이고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재해자의 사고 당일 ○○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에 같은 팀에서 근무했었지만 외부활동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아서 몰랐다.

8)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 관련하여 법률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자문번호사)

재해자는 ○○시의 수입차 영업직 사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점 영업직 사원이 다른 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할 이유가 적다고 할 것이고 재해자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영업직 사원이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외지로 출장 가는 것이 일상적인 영업이고 외근 업무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인분 소개로 알게 된 ○○의 고객에게 차량 브로셔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점 영업차가 있음에도 카레이싱 및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어 지점장이 안전상의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하는데도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 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한 차량 브로셔를 ○○에 전달해야 할 업무상의 이유로 ○○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에 관하여 지점장,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없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사유로 오토바이로 ○○로 이동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팀원 중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사고 당시의 파손된 차량 브로셔에 관한 사진도 제시된 바 없으며 재해자가 당일 보고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팀장의 확인서나 보고서 등도 없으며 차량을

○ I. 최초/유족(사고)

구입하는 ○○ 고객이 정확한 차종이 정해지지 않아 상담이 우선이어서 유대관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벤츠 차량과 상관없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오토바이로 ○○까지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고 당시 재해자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산재신청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 고객을 상담하러 가면서 지점장 또는 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점의 영업차를 제공받아 이동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평소 출·퇴근시 이용한 적도 없던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하게 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업무상의 사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로 이동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게 된 것에 관한 입증에 관하여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업무보고 했다면 팀장과는 연락두절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이고, 사고당일 만나기로 했다면 고객의 연락처도 사고 당시 휴대폰 파손으로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고 당시 고객을 재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지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있어, 카레이싱이나 바이크를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 레이싱 참석 등을 위해 근무시간에 이탈해 ○○를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업주의 의심을 해소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에 지점장이 특히 주의를 당부 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에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9) 청구인은 2019.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기존 고객 소개로 고객과 상담하러 가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음. 팀장님께 보고를 했음. 혼자 갔음. 빈혈 때문에 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음. 시승차가 시승이 예약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구매할 계획이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은 마음에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였음. 팀장님께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는데 답이 없음. 이름은 모르고 형님이라고만 들었고 소개해 준 지인은 구치소에 있음. 은행 근처에 가서 전화하기로 했음.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을 못했음. 산재에 대해 몰랐음. 이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출장을 간 적이 있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8. 3. 2. 병원)

- 1) 요양 신청 상병: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피부 결손
- 2)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 사고
- 3) 종합 소견: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은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및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 I. 최초/유족(사고)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사고 당일 업무상의 이유로 ○○에 갔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출퇴근 중 사고

1

»

청구인이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7408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8. 2. 1. 08:40경 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며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8. 2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2. 25. 식당에 입사하여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8. 1. 18. 사업주가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하자 2018. 1. 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 2. 1.부터 복직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3. 26. 제출한 인터넷재해발생신고서 상 재해경위는 “2018. 2. 1. 근무지로 출근하던 도중에 계단에서 왼쪽 발을 접질리며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8. 8. 24.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는 “2018. 2. 1. 08:40경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거주지에서 이동하던 중 거주지 아파트 계단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재해 발생 장소의 CCTV 기록이 삭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확인이 불가하다.

마) 청구인이 2018. 2. 1. 방문한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초진일시: 2018. 2. 1. 08:53
- 환자진술: 내원 당일 좌측 발을 접질림
- 진단명: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바) 청구인이 2018. 1. 31. 방문한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초진일시: 2018. 1. 31. 18:30

- 환자진술: 파레트가 발등에
 - 진단명: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사) 청구인은 2018. 9. 4.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시 2018. 1. 31. 양지에서 개인적인 불일을 보러 걸어가던 중 넘어졌으며 △△의원의 진료기록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회의는 청구인의 CT 사진 상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에 골절 선이 확인되고 이는 접질림에 의한 견열골절로 판단된다고 심의 결정하였다.
-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8. 1. 31. 신청 상병과 같은 부위를 다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경위를 매번 다르게 주장하는 등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3) 산재심사실이 2018. 11. 28. 실시한 유선 조사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8. 1. 31. 물류센터에 취업하여 사업장 내에서 걸어가던 중 파레트에 발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1. 31. 퇴근하던 중 △△의원에서 X-ray를 촬영한 결과 주치의가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진통제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조사 당시 2018. 1. 31. 재해의 발생경위 및 취업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의원, 2018. 8. 20. 발행 최초요양소견서)

방사선 소견 상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소견 보여 석고붕대 고정 및 물리·약물 치료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지명한 골절 소견 관찰되지 않음

2) 자문의사 2

CT 상 증족골 기저부의 골절선이 확인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방사선 및 CT 상 기저부 하부 선상골절이 확인되며 접질림에 의한 Lisfranc관절 염좌에 의한 견열골절로 봄이 타당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X-ray, CT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소견이 X-ray 상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CT에서도 한 컷에서만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이나 수상 기전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유족 (사고)

- 가. 청구인은 2018. 2. 1.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2018. 2. 1.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중앙선 침범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해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38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0.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5. 23. 17:50 퇴근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지게차와 충돌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부신파열, 우측 신손상 및 혈종'을 진단받아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 지름길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8. 10. 29.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I

최초 / 유족 (사고)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응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유)○○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2.부터 ○○건설(주)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 2) 2018. 10. 7.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 발생일시: 2018. 5. 23. 17:50
 - 발생장소: ○○시
 - 사고유형: 차대차
 - 사고원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피해내용: 부상 1명, 물피 5,966,000원 상당
 - 사고내용: #1차량과 #2차량이 충돌한 사고
 - 사고개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차량(이○○차량)은 ○○계전 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짐을 싣고 전방 진행하던 2)차량(1.5톤 지게차)의 전면부 철재 돌출 부위에 충격한 사고임
- 3) 청구인의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고내용: 본 건은 2018. 5. 23. 17:50경 1.5t 지게차량을 운행하여 작업 중이던 피의자는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도로상황에 서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 피의자(1.5.톤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수사한 바, 중략...,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진술된 피해자 진술서가 제출되었기에 본 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 I. 최초/유족(사고)

4) 원처분기관이 이 건 교통사고 피의자인 지게차량 기사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사고장소는 택배 작업장 물건 상하차 하는 곳임
- 사고경위는 2018. 5. 23. 택배 작업장에서 물건 상차작업을 전동지게차로 하던 중 운전석 쪽에 돌아가서 물건을 상차하고 다시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전동지게차를 택배 트럭 뒤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피해자가 택배 영업소 큰 길이 퇴근길로 막혀 있어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인도를 타고 택배 옆 도로 인도를 타고 넘어와 ○○택배 작업장으로 들어와 택배 트럭 조수석 쪽으로 직진하여 바렛트에 물건을 실으러 가는 본인의 전동지게차와 충돌한 사고임

5)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건설(주))가 제출한 사고경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5. 23. 18시경 근로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을 하여 정상적인 주행 노선이 아닌 택배 작업장 내에 있는 통로로 진입하다 작업 중이던 택배 소속 지게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
- 이○○도 사고 발생 후 처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산재를 신청하여 기각되면 본인의 책임 보험사에서 책임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산재 처리를 신청한다고 얘기함

6) 원처분기관이 이 건 재해의 사실관계를 조사 후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GATE C에서 출발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
-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진 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자택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로임
- 지름길로 가려고 교차로 도달 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여 인도를 넘어 ○○계전 사업장 앞에서 지게차와 충돌하여 수상
- 동 재해 건 의학자문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퇴근 경로 상 순로를 따르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는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순로를 이탈하여

사고 장소에 도달하였고 이는 통상의 퇴근 경로라 볼 수 없는 순로의 이탈 중 발생한 재해임

- 7) 심사청구 이후인 2019. 3. 19.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이 사고 장소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누나²⁾와 유선으로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근 경로 상 순로를 이용할 경우 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분 15초의 신호대기가 있음
 -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청구인은 교차로로 가기 이전에 신호를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고, 거리상의 단축 효과가 있어서 ○○계전 앞(사고 장소)으로 진입한 후 목적지로 가는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함
 - 사고 주변 거리의 교통 체증 여부를 확인³⁾한 바 ○○디스플레이 ** 사업장 내의 근무자로 인해 퇴근 무렵 다소 교통 체증이 있다 함
 - 청구인의 사고 이후 ○○계전 앞에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설치했으나, 보도의 폭이 넓어 연석을 피해 일반 차량, 이륜차 등 출입이 잦음이 확인됨
- 8) 2019. 5. 9. 개최된 2019년 제9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이○○⁴⁾은, “퇴근을 하고 도로로 주행하다가 집으로 가는 샛길에서 ○○택배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서도 사고 장소는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이고 사업장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산재심사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군 복무 중으로 청구인의 누나가 진술한 내용임

3) 이 건 사고 시간과 동일 시간에 현장 확인 및 주변 상가 입주자들에게 확인한 내용

4) 청구인의 누나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8. 6. 26.)

- 상병명:우측 부신파열, 우측 신손상 및 혈종
- 추적검사(CT)에서 아직까지 혈종이 남아 있으며 통증을 호소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기환자에서 시행한 CT에서 관찰되는 우측 부신 주위 혈종과 신손상은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임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5. 23. 퇴근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한 바, 청구인이 재해일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확인되나, 중앙선 넘은 이후 퇴근 경로 주행 중 재해가 발생하여 중앙선 침범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해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고, 경찰서 조사결과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다니던 경로였음이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2018. 5. 23.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안전 (사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2018. 5. 23. 퇴근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한 바, 청구인이 재해일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확인되나, 중앙선 넘은 이후 퇴근 경로 주행 중 재해가 발생하여 중앙선 침범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해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고, 경찰서 조사결과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다니던 경로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18. 5. 23.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현장소장이 우천으로 중지 된 작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인팀을 포함한 현장 작업자에게 대기 를 지시했으나 팀장과 소속 팀원 11명은 퇴근한 반면 나머지 현장작업자 40여명은 대기 후 작업을 재개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정식 명휴 명령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62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1. 16. 14:50경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퇴근을 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14:30까지 명휴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어기고 14:20경 사업장을 벗어났고 이는 사업주의 대기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통상의 퇴근으로 보기 힘들어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수행한 후 우천으로 인해 13:00부터 비를 맞고 일을 하다가 13:30경부터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14:00경 현장소장이 휴게실로 와서 14:30까지 대기하다가 비가 계속 내리면 퇴근하라고 하였고, 14:25경 비가 계속 오자 작업 반장이 현장을 정리하고 퇴근하자고 하여 작업장 정리 후 퇴근하던 중 동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기업에 2018. 10. 22. 입사하여 블록절단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상 7:40에 출근해 18:00에 퇴근한다.

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8. 11. 16. 14:50경 퇴근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 가드레일에 부딪힘

2) 청구인의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상 확인되는 시간은 통상 1시간

나) 청구인은 평소 회사동료와 카풀로 출퇴근 함

3) 이 사건 당일 작업 상황 및 청구인의 퇴근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주)○○기업 대표, 2018. 12. 7.]

- 2018. 11. 16. 청구인은 오전 작업 후 13: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 현장소장에게 비를 피해서 대기하다가 비가 그치면 일을 진행하자고 통보
- 14:00경 원청사와 회의 결과 14:30까지 비가 계속 내리면 14:30~15:00경에 명휴를 할 것이라고 전작업자에게 통보한 상태에서 반장팀 전원은 14:20 대기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후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2018. 11. 19. 팀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음
- 일과시간에 대기지시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와 연관 없다고 생각됨

나) 목격자 진술 내용

(1) 조○○ 현장소장(2018. 12. 14. 진술)

- 2018. 11. 16. 오전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13: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비를 피해서 대기 후 비가 그치면 작업을 진행하자고 작업자들에게 통보
- 14:00경 원청과 회의 결과 14:30까지 비가 내리면 14:30 ~ 15:00경 명휴를 한다고 전 작업자들에게 통보한 상태에서 팀원 전원이 14:20 대기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현장 이탈
- 그 후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자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2018. 11. 19.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2) 동료근로자

- 2018. 11. 16. 오전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13: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 비를 피해 대기 후 비가 그치면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4:30경 비가 오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날 정상 퇴근(18:00)을 하였음

다) 청구인 확인서(2018. 12. 14.)

- 청구인은 절단 작업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며, 평소 회사 동료의 자동차에 동승해 출퇴근 함
- 재해 당일인 2018. 11. 16. 13:00부터 비를 맞고 일하고 있으니 반장이 13:35경 비를 피하라고 하였음. 휴게실에서 비를 피하고 대기하고 있으니 14:00 ~ 14:10경 현장소장이 와서 비가 14:30까지 계속 오면 퇴근하라고 하였음
- 14:25경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반장이 현장 정리 후 퇴근하라고 하여 현장 정리 후 퇴근하였으며 무단으로 퇴근한 사실이 없음
- 현장소장이 작업현장 정리하러 가는 것을 보았고 반장과 현장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퇴근하자고 하여 퇴근하였음
- 현장소장이 퇴근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퇴근하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았음

라) 원처분기관 유선통화복명서 발취

(1) 반장(2018. 12. 14. 14:30경 통화)

- 본인은 재해자 3명을 포함한 11명 작업자의 반장으로 2018. 11. 16.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려 현장소장이 14:30쯤에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 퇴근하자고 작업자들에게 얘기를 하였음
- 작업자들 전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본인도 현장소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4:25경에도 비가 그치지 않아 재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 일부가 퇴근해 본인도 퇴근 함
- 현장소장과 본인이 입구에 서 있었고 만류하거나 막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단퇴근은 아니라고 생각함

(2) 현장소장(2018. 12. 14. 16:00경 통화)

- 2018. 11. 16. 오전에 작업 이후 비가 내리고 날도 추워서 작업 중지를 하고 대기 하라 함
- 14:00경 사업주에게 명휴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를 하니 원청과 협의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길래 작업자들에게 “14:30 ~ 15:00 정도까지 대기 하고, 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명휴를 하겠다”라고 전달을 하였음
- 직후 사무실 현장 바깥에서 재해자 팀장인 반장과 업무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4:20경 8~9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가길래 “왜 퇴근합니까?”하고 물어봤는데 대꾸도 없이 퇴근하였고, 반장에게 “저사람들 왜 가냐”하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관리 안 됩니까?”라고 말했음
-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올 줄 알고 일단 두고 내일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그쳐 다른 작업자들 40여명은 여섯시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음. 퇴근한 사람들은 무단 퇴근이 맞음

○ I. 최초/유족(사고)

마) 심사청구 후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진술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술서

- 반장은 직급상사로서 작업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 지시에 따르는 것 역시 정당화 된다고 하겠음. 퇴근은 회사 사용자 지시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합법적 지시에 의한 조치임. 비록 일부 직원들은 퇴근하지 않고 통상시간인 18:00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퇴근이 부당한 퇴근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 동료근로자 3명: 절단 작업 중 계속된 비 때문에 13:30경 작업반장으로부터 비를 피해 블록 밑에서 대기하다가 13:50경 휴게실로 이동해서 비를 피하는 중 14:00경 현장소장이 14:30분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면 퇴근하자고 해서 14:25경 비가 계속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반장이 현장 정리 후 퇴근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리 후 퇴근 하였음

(3) 동료근로자 (2019. 1. 4.): 절단 작업 중 비를 피해 대기하다가 계속해서 비가 오면 정리하고 퇴근하라는 소장님의 말에 14:25경 휴게실에서 나와 퇴근

(4) 작업반장 (2019. 1. 2.): 8:00 ~ 15:00 절단 작업 진행 중 비 때문에 현장소장이 13:28경 전화로 작업중지 지시가 내려져서 작업자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다들 비 때문에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본인은 뒷정리를 하고 휴게실로 복귀하는데 먼저 휴게실에서 소장님이 작업자들에게 14:30까지 비가 오면 정리하고 집으로 가 자고 이야기 중이었음. 14:25경 작업자 동료들은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뒷정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나와서 퇴근을 하였음. 본인은 휴게실 앞에서 소장님과 대화 중 작업자 동료들이 퇴근하는 것을 소장님과 같이 보고 퇴근 인사 후 본인도 같이 퇴근을 하였음

4) 산재심사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상 근무시간은 08:00 ~ 18:00 이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확인된다.

- 나) 2018. 10월 급여명세서(기간 2018. 10. 22. ~ 10. 31.)상 청구인은 하루 7.7시간 근무하고 일급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으며 지급내역은 기본급 1,155,000원 및 안전교육비 31,200원으로 확인된다.
- 다) 이 사건 재해당일 2018. 11. 16. 인원현황 및 작업일보를 살펴본 바, 2018. 11. 16. 목요일 날씨는 흐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블록철거팀 인원은 총 51명으로 청구인은 철거 작업을 담당하였다.
- 라) 현장 작업팀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작업반장팀(총 12명)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출근현황표에서 통상 근무(08:00 ~ 18:00)를 하면 “1”로 표시되고, 청구인 소속 팀 12명 모두는 사고 당일(2018. 11. 16.) “0.7”로 표시되어 있어 18:00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및 제8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라.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공단지침 제2017-48호)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주)○○기업 소속 현장작업자로서 작업반장팀에서 블록철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8:00 ~ 18:00이나, 2018. 11. 16. 재해당일 오전으로 13:30부터 작업을 중지하였고, 현장소장은 기상 상태에 따라 원청사와 협의하고 14:30 이후 작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인팀을 포함한 현장작업자 약 50여명

에게 대기 를 지시하였으나 팀장과 그 소속 팀원 11명은 14:25경 퇴근한 반면 나머지 현장 작업자 40여명은 15:00부터 작업을 재개한 점을 볼 때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명휴명령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

6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8. 11. 16.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수행한 후 우천 관계로 13:30경부터 비를 피해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14:25경 비가 계속 오자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을 정리하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작업반장 팀원으로 블록철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이 8:00 ~ 18:00이나 재해 당일 우천으로 13:30부터 작업을 중지하였고, 현장소장은 기상 상태에 따라 원청사와 협의하고 14:30 이후 작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인팀을 포함한 현장작업자에게 대기 를 지시하였으나 팀장과 소속 팀원 11명은 14:25경 퇴근한 반면 나머지 현장 작업자 40여명은 15:00부터 작업을 재개한 점을 볼 때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명휴명령이 있기 이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은 청구인의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모임에 소요된 비용도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를 사용했으며 모임 주최자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1672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로서, 재해발생 전일 감독관 회의차 □□에 갔다가 모텔에서 1박 후 재해 당일인 2018. 8. 26. 07:30경 ○○ 현장으로 출근하던중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상병명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제4경추의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간 탈구”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이 참석한 미팅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공식적인 미팅에 참석한 후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 현장(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8. 4. 10.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8. 26. 07:30경 고속도로 IC 근처에서 재해발생 전일 □□에서 업무관련 감독관 미팅을 하고 1박을 한 후 재해 당일 6:30경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택이 아닌 숙소에서 상주하였고 평소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재해발생장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

나) 실제 거주지: 숙소(△△시)

다) 근무장소: ○○(△△시 현장)

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

- 출발장소: 숙소(△△시 **읍)

- 도착장소: ○○(△△시 **읍)

마) 재해장소: 고속도로 IC 인근

3)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시공사) 개요

- 사업장명: (주)○○

- 성립일자: 2017. 2. 3.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4003)

나) 공사현장 개요

- 공사명: P○○
- 소재지: △△시
- 발주자: ○○(주)
- 원수급인: (주)○○
- 공사기간: 2018. 4. 11. ~ 2018. 9. 30.

다) 재해자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8. 4. 10.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2018. 4. 10. ~ 2018. 8. 31.)
- 근로형태: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8:30 ~ 17:00(현장여건에 따라 18:00 ~ 21:00 연장근로)
- 담당업무: 프로젝트 매니저(품질관리 등)

라) 이 건 재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 그 외 관련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주장(유선통화 복명서, 2018. 10. 26.)

- 회사에서 2018. 8. 25.(토) 14:30경 퇴근 후 미팅 장소인 □□로 출발했고 미팅 시간은 당일 18:00 이었으며 주최자는 △△회사 감독관이라고 진술함
- 미팅 취지는 본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으로 △△회사 감독관이 비슷한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진행된 미팅이었음. 프로젝트 납기 일정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 하던 중이었고, 급하게 토요일에 미팅을 잡게 되었음

○ I. 최초/유족(사고)

- 미팅은 □□시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요일이라 사무실이 닫혀 있어 외부 벤치에 앉아 들어서 18:00경에 시작하였고, 위 프로젝트 완성 관련 주제이었다고 함
- 재해자는 이후 별도의 일정은 없었고 귀가하기엔 늦은 시간이라 하루를 □□에서 숙박하였고, 숙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숙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취침하였음
- 출장 중 업무의 사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현금을 사용하였고,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함
- □□에서 1박 후 재해 당일인 2018. 8. 26. 6:30경 근무지인 ○○로 출발하였고, 출근 예정시간은 8:00 이었으며, 일요일에도 출근한 이유는 미팅 내용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함

(2) 사업주측 주장(문답서/전무 박○○, 2018. 10. 23.)

- 재해자가 참석한 미팅은 2018. 8. 25. □□ 인근에서 저녁식사로 이뤄졌으며 미팅 목적은 가스개발 프로젝트 기기관련 납품 일정으로 진행된 미팅이라고 함
- 미팅은 △△회사 감독관 주최로 열렸고, 재해자가 미팅 참석에 대해 2018. 8. 25. 출발 전에 전화로 보고한 적이 있었으며, 일상적인 출장지시 방법은 구두 지시로 이뤄진다고 함.
- 재해자의 미팅 경로는 자택 → 고속도로 → □□ 회사 퇴근 → 저녁식사 → 인근 모텔 숙박(21:00경)으로 이뤄졌으며, 미팅과 관련된 하이패스 내역이나 일정표 등의 자료는 없다고 함
- 재해자는 출장 과정에서 사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평소 근무지는 ** 소재로 출근한다고 함

(3) △△회사 감독관(모임 주최자)

(가) 유선통화복명서(2018. 11. 14.)

- 미팅을 주최하게 된 과정은 공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사 측(△△회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자와는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으며, 당시 품질파트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했었다고 함
- 장소섭외가 안 되어 사무실 근처 벤치에서 17:00경 미팅을 시작한 후 18:00경에 마쳤으며 다른 일정으로 인해 식사·음주 등의 행위는 없었음

(나) 출장복명서 및 문답서(2018. 11. 29.)

- 메신저 채팅방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사모임으로 본인이 총무를 맡고 있고, 정기 행사가 연 1~2회 개최(이외에도 경조사 등은 별도)되며 모임은 구성원의 찬조로 운영됨. 찬조는 여유 있는 구성원이 더 많이 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소정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돌려주고 있음. 또한, 채팅방 내 이 건 모임인 O.B.M.T도 본인이 주최하였으며 모임의 회비가 사용되었다고 함
- O.B.M.T일정은 점심식사, 관광, 저녁 겸 워크숍(회식), 숙소 이동 순으로 진행되었고 재해자를 포함하여 총 8명 참석함. 저녁 겸 워크숍에서 음주도 있었고 숙소는 펜션이었으나 정확한 상호는 모름
- 재해자는 본 미팅에 지각하였으나 위 미팅의 저녁 겸 워크숍(회식)에 참석은 하였고 숙소에는 동행하지 않았음
- 본 미팅은 회사에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적 없고 개인적인 모임임

(4) 회사 안전담당자

- 감독관이 참석한 모임은 사적인 미팅으로 회사 측에서 별도로 주최하거나 연락을 통해 이뤄진 미팅이 아님. 친분이 있는 동종업계 감독관들이 업계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상담을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음
- 미팅 당일(2018. 8. 25.)은 휴무일인 토요일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적인 모임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담긴 공문 회신은 어려움

○ I. 최초/유족(사고)

마)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는 채팅방의 O.B M.T에 참석한 것이 △△회사 감독관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됨. 또한, △△회사 감독관이 제출한 자료인 메신저 채팅방에도 재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O.B M.T에 참석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출장과 관련된 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전일인 2018. 8. 25.은 △△에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재해 당일까지 □□에서 별도로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음
- 재해자의 실제 자택은 **시로 확인되나, 업무상 출근거리가 멀어서 △△시 **의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고지점은 IC근처로 확인되며, 재해자가 개인적인 모임에서 주최한 미팅에 참석하여 □□에서 숙박한 후 사고발생지점에 이른 경로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바)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

- 재해자는 재해 전일 업무관련으로 참석한 미팅 이후, 2018. 8. 26. 출근을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팅 주최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참석한 미팅은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의 △△회사 소속 직원이 주최하였고, △△회사는 무관한 모임이며 모임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진행된 비공식적인 미팅으로 확인되므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는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재해자가 신청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배변, 제4경추의 좌측외과 골절, 제4/5번 경추간 탈구”는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4) 심사 청구 이후 산재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8. 8. 25.(토) 퇴근 이후 □□에 소재한 △△회사 사무실 인근에서 감독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동 사업장은 □□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함
- 나) 2019. 4. 16.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이 청구인과 유선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시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해당 모임에 매년 참석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으로 동종업계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이라 조언을 듣고자 모임에 참석하였음
- 워크숍 장소에 가기 전에 재해자를 포함한 4명이 밖에서 따로 만났으며 본인은 다음 날 출근 예정에 있어 펜션에는 가지 않았고 □□회사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였음
- 한편, 청구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일요일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출근 중 재해가 분명함에도, 원처분기관은 □□에 왜 갔는지 여부만 조사한 것이 부당하고, 개인적인 모임이나 볼 일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I. 최초/유족(사고)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참석한 모임은 청구인의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모임에 소요된 비용이 구성원들의 찬조 및 회비로 진행된 점, 모임의 주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점, 업무적 만남의 장소는 □□이나 △△회사의 소재지는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 후 다음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 전 교회를 다녀온 뒤 발생한 사고로, 출근 경로에서 개인적 사유로 경로를 이탈한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서 이동 중에 발생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1737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실업에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2. 4.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상병명 '좌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 당일 대중교통 사용내역의 승하차 지점이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출근 순로로 보기 어려운 점,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한 점에서 보아 통상적인 출근경로에 중단이 있었고 그 중단이 통상의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30분 내외 경미한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재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아파트 청소용역으로 근무하며 평소 교회에서 6시 새벽예배를 드린 후 사업장으로 출근했다. 재해 당일도 역시 평소 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역으로 이동해 △△역으로 이동, △△역에서 버스를 타려던 중 빗길에 미끄러

졌다. 재해 당일 비록 교회를 가기는 하였으나 교회를 들러서 출근하던 중의 재해이므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소 취업시간: (시작) 07:20 ~ (종료) 15:00 (월~토요일 근무)
- 사고발생일시: 2018. 12. 4. 07:30
- 출발장소: ○○교회 앞 버스정류소
- 사고장소: △△역 하차 및 갈아타던 중
- 도착(목적)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실
- 통상 통근 소요시간: 1시간 5분
- 사고 상황도: △△역에서 나와 03번 버스를 빨리 타려고 버스 정류소 모서리를 돌다 미끄러짐

2) 산재심사실 추가 확인사항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은 주 3~4회 정도 출근 전 새벽기도에 참여한다고 진술하였고, 자택에서 사업장까지의 이동경로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 당일

자택(05:40)에서 도보로 ○○교회 이동(도보 17~18분) → 교회 도착(06시 조금 전 도착) → 새벽기도(06시:00 ~ 06:30) → 교회 인근 ○○고등학교에서 버스 탑승

(06:35) → ○○역(06:41, 지하철 5호선)에서 △△역(07:33)으로 이동 → △△역에서 마을버스 환승 중 재해발생/ 버스 환승(07:43) → 소속 사업장(○○아파트) 도착

(나)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이동경로

자택(06:40)에서 버스로 □□역 이동 → □□역에서 △△역으로 이동 → △△역에서 버스 환승(07:20 ~ 07:45분 사업장 도착)

3) 재해당일 이동 경로

출발: 자택 → 경우1: 도보로 교회 도착 → 경우2: 버스 및 지하철로 △△역 이동 → 도착: 버스로 사업장 출근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3호(출퇴근 재해)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중의 사고)제2항

라.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 1. 1.시행)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 전 교회를 다녀온 뒤 발생한 사고로, 출근 경로에서 개인적 사유로 경로를 이탈한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서 이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의 사고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429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운수(주)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2. 21. 05: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가스(주)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결장손상, 장간막 손상, 제4요추 기저부 골절,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2,3중수골 기저부 골절, 흉골의 골절, 우측 제3번-11번늑골 골절'을 진단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실률이 100%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산재보험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5) 원처분기관 구상대상 여부 법률자문 결과

2 청구인 주장(요약)

청구인은 ○○운수(주)소속 버스 운전기사로서 5일 동안은 오전 05:00경 출근하고, 하루 휴식한 후 5일간은 오후 2시경 출근하는 특수한 근무 형태이다. 청구인의 졸음운전은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오는 신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고의나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없음을 경험칙 상 명백한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동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도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졸음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조사내용)

1)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운수(주)
- 업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관계

- 채용일: 2013. 4. 10.
- 담당업무: 시내버스운전
- 근무일: 5일 근무 후 1일 또는 2일 휴무

2) 출·퇴근 재해 여부

○ 출·퇴근 및 교통사고 과정

- 출·퇴근 수단: 자차
- 출·퇴근 소요시간: 15~20분
- 인터넷 지도 경로 상 출근 소요시간 및 거리: 15분, 11.8km
- 재해당일 자택 출발시간 및 사업장 도착예정시간: 04:55 / 05:10~15
- 재해당일 예정된 배차시간: 05:50
- 재해일시: 2018. 12. 21. 05:10
- 재해원인: 졸음운전
- 자택과 사업장간의 최단 및 통상적인 출근 경로: 고속화도로에서 네거리 방향으로 진출
- 재해 당시 재해자의 출근경로: 재해자는 재해 당시 자택에서 사업장까지의 주요 출근경로인 고속화도로에서 재해 당시 운행경로를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재해 장소는 사업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운행경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실내용 등

- 발생일시: 2018. 12. 21. 05:10
- 사고유형: 차대차
- 재해자의 가해자 / 피해자 여부: 가해자
- 사고내용: 재해자 차량이 중앙선은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대방 차량 전면 부위를 재해자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 I. 최초/유족(사고)

4) 119 구급증명원

○ 사실내용 등

- 신고일시: 2018. 12. 21. 05:14
- 환자발생위치: ○○가스 앞 도로
- 환자발생장소: 도로
- 환자발생유형: 교통사고
- 구급대원 평가소견: 현장 도착 시 운전석에 환자 앉아 있던 상황으로 목, 오른쪽 팔, 가슴 앞쪽 갈비뼈 부분으로 통증 호소하며, 숨쉬기가 조금 답답하다 함. 의료지도 받아 산소 3L 투여하며 이송함. 에어백(+), 안전벨트(+).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의식은 양호함

5) 재해자 사고차량

○ 사실내용 등

- 차량운전자 재해자
- 차량소유자: 재해자
- 보험사: 화재보험(지급된 보험금 내역 없음)

6) 상대차량

○ 인적사항 등

- 차량운전자: 김△△

7) 구상권 행사 대상 여부 법률자문 결과

○ 회신내용

재해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상대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재해자의 100%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으로써 공단은 상대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 상대 차량 가입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소견

○ I. 최초/유족(사고)

이므로 청구인의 2018. 12. 2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격수당 등의 성격으로 보이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기 않으며, 청구인이 타사업장에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외부 학원 강의 후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045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8. 29.(수) 21:00경 퇴근 중 내리막길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91년 경영지도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경영지도, 업무시스템 개발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강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의에 종사를 하고 있다.

○ I. 최초/유족(사고)

- 나. 이진 재해 당일 교통카드 사용시간은 2018. 8. 29.(수) 12:25 ~ 12:32(청소년수련관 승차, 성당 하차) 교육훈련 제공 기관인 학원까지 갔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교육 용역 수행, 16:56 ~ 17:05(○○시장 승차, 평생교육센터 하차) 회사로 복귀 전 도서관에 방문하여 교육과 관련된 도서 참조 및 강의 연구, 18:44 ~ 18:52(청소년수련관 승차, □□시장 하차) 교육 훈련/강의와 관련된 다른 전문가(회계사)와 업무협의를 위해 만남, 승용차로 사무실로 이동(△△으로 출발), 사무실 도착 후 19:40경부터 21:00경까지 사무실에서 업무협의 및 잡무 정리 후 퇴근, 다시 승용차로 ○○으로 이동해 아파트 앞 정류장에 내려줘 마을버스로 갈아탄 시간 이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 다. 2018. 8. 29.(수) 밤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왔고 버스에 내려 양손에 우산, 휴대폰, 등에는 무거운 서류가방을 들고 있어 순간적으로 내리막길 빗길에 넘어져 사고를 당했고 스스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퇴근 중 재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응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및 근로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컨설팅(주)
- 소재지: △△시

나) 근로관계 개요

- 입사일자: 2017. 2. 1.

- 담당업무: 컨설팅 및 교육

-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 업무성격상 외근 후 현지 퇴근인 경우가 많음

- 거주지: ○○시

2)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

- 2018. 8. 29.(수) 사무실에서 21:00경까지 업무처리 후 통상적인 퇴근과정에서 마을 버스 하차 후 내리막길에서 낙상사고로 무릎이 파열됨(당일 태풍으로 인한 우천으로 비가 많이 옴.) 일어서기 불가능한 증상을 깨달아 휴대폰으로 119 구급차를 요청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 2018. 8. 29.(수) 18:44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를 타고 18:52 남부시장에서 내린 후 회계사와 업무협의를 하였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도착 후 19:40 ~ 21:00 업무협의 및 잡무 정리를 하였고, 퇴근 시 카풀(승용차)로 아파트 앞 정류장에 내려주어 22:20 고용지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22:27 청소년수련관에서 내렸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고 양손에 우산과 휴대폰, 등에는 무거운 서류가방을 메고 있어 순간적으로 내리막길(빗길)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했고 스스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확인서(컨설팅(주))

- 청구인은 2018. 8. 29. 22:30경 퇴근길에 ○○시에서 빗물에 의한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2018. 8. 30.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출퇴근 기록은 업무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유동성이 커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관리한다.

라)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이용수단

- 대중교통 또는 카풀을 주로 이용

○ I. 최초/유족(사고)

- 출·퇴근: 마을버스 ↔ 지하철(or 시외버스) ↔ 직장

마) 2018. 8. 29. 기상청 날씨정보: 비, 박무 / 일 강수량 8.5mm

3)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증거 조사한(출장복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면담(2018. 8. 29. 10:30 ~)

- 학원에서 실업자 훈련과정(300시간) 교육을 시작하면서 공인회계사와 업무협의(세무 회계 취업시장 현황과 올해 개정 세법 특강)를 위해 2018. 8. 29. 18:52경 회계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본사(컨설팅(주)) 사무실에 갔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회계사가 아파트 앞 정류장에 내려줘서 22:20경 마을버스를 탄 후 비가 많이 와서 양손에 우산과 휴대폰, 서류가방을 메고 가던 중 내리막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직접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일 오전에 비가 왔는지 기억은 없으나 17:06경 강한 비가 예상된다라는 재난안전문자가 왔다.
- 사업주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은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므로 당일의 증빙은 없다. 사고 당일 회계사를 만났는지 여부, △△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1년 전 상황이라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 지방강의가 아닌 수도권 강의인 경우 월 1, 2회 정도 사무실을 들어간다.
-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 소재 사무실을 회계사와 동행한 목적은 △△ 사무실 (컨설팅(주))에서 강의 초기에 정식으로 업무협약의 강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다.

나) 공인회계사 유선 통화 결과(2019. 7. 29. 12:07 ~ 12:15)

- 청구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까이 살고 있어 일주일에 1~2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집에서 얘기도 한다.
- 2018. 8. 29. 청구인을 만나서 △△ 사무실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에 1~2개의 거래 업체가 있어 거래업체 방문시 청구인의 사무실에 몇 번 데려다 준적이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청구인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에서 만났다면 청구인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을 것이며 청구인 소속

사무실에 간 기억은 없다. ○○에서 △△에 갈 때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하이패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청구인은 2019. 7. 29. 오전 면담 후 당일 14:00경 유선으로 재해경위를 반복하였다.

[재해경위: 사무실에서 업무 후 귀가 중 재해 → 저녁 학원 강의 후 귀가 중 재해로 변경함.]

라) 컨설팅(주) 출장 조사

- 조사자: 컨설팅(주)

- 2018년도 청구인의 활동과 관련된 소속 사업장 매출액은 전혀 없다(실적 올린 것은 없으며, 회사명이가 아닌 개별적으로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사무실에는 주로 본인 혼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의 본적이 없다.

마) 컨설팅(주) 대표이사 유선 통화(2019. 7. 29. 16:50 ~)

- 청구인의 업무는 강의와 컨설팅이고 컨설팅은 거의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며 가끔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할 때도 있다. 강의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2/3 정도 되고 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는 1/3 정도 될 것이다. 청구인과 비슷한 형태의 소속 직원은 3~4명 있고, 직원별로 계약내용이 상이하다. 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계약시에는 강의, 컨설팅 등의 활동시 발생하는 매출액의 7천만원까지는 청구인이 모두 가지고 가고,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7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

- 2018년도에는 청구인의 활동과 관련된 법인 매출이 전혀 없으나 월별로 기본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는 컨설팅을 하는 법인의 특성상 직원들 간 지식과 경험 등 공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을 하려는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소속직원들의 경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 창업 멘토링 등 청구인과 컨설팅 업무를 같이 할 경우에는 △△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 논의, 지시를 하지만 학원 강의 건은 청구인에게 참견, 지시할 일이 없다. 다만,

○ I. 최초/유족(사고)

청구인의 학원 강의 일정은 알고 있어야 컨설팅 발생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강의는 관여하지 않지만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보고는 받고 있다.

- 청구인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학원과 강의계약을 했고 강의료도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 지시를 할 일은 없다.

바) 학원 유선 통화(2019. 7. 29. 16:30 ~)

- 2019. 8. 29.(수) 야간에 전산회계과정의 강의를 있었고 강의 시간은 19:10 ~ 22:10 이다. 강사와 개인자격으로 강의를 하였고, 소속 회사로는 하지 않았다.

사) 학원 자료 회신 내용

(1) 위촉계약서(2018. 8. 8. 계약)

- 계약자: 학원, 청구인
- 위탁업무 내용: 전산세무회계과정에 대한 강의
- 위탁업무 처리기간: 2018. 8. 9. ~ 2019. 8. 8.(12개월)
- 위탁수수료: 금 20,000원(시급기준), 월별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2) 이체확인증

- 수취인: 청구인
- 처리일시: 2018. 9. 10. 15:53:40
- 이체금액: 986,340원

(3) 훈련일지

- 훈련강사: 청구인
- 훈련과정명: 전산세무2급 취득과정

- 훈련기간: 2018. 8. 13. ~ 2018. 10. 15.
 - 훈련시간: [월, 수, 금] 19:10 ~ 22:10
 - 훈련일: 2018. 8. 29.(수)
 - 재적 10명, 출석 8명
- 4) 청구인은 2019. 7. 30. 개최된 2019년 제16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건설(주)의 소속 근로자로 전문 강사이다. 근로계약서는 사무실에 있고 업무의 성격상 매일 사업장에 출퇴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본급의 대가는 기본 활동비 및 자격증 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일도 따오고 큰 프로젝트는 다른 강사들과 같이 하기도 한다. 재해경위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변경하며, 재해가 발생한 날은 밤에 발생한 큰 사고였다. 강의료는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해경위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재해경위 변경 요청서(2019. 7. 30. 작성)
- 당초 재해경위: 19: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처리 후 업무협의차(회계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사에서 내려줌. 마을버스로 환승 후 내려서 귀가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빗물에 낙상하여 무릎 사고 발생함
 - 변경 재해경위: 2018. 8. 29.(수) 오후 19:10 ~ 22:10까지 강의 후 학원 앞 마을버스 탑승 후 집 앞 정류장에 내려 귀가하던 중 사고 발생함
 - 변경사유: 7~8개월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 가운데(본 제도의 존재여부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알려줌) 몇 가지 교통카드에 의존하여 퇴근경로를 복원하다 보니 밝혀짐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소견서, 병원, 2019. 4. 2.)

- 상병명: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 I. 최초/유족(사고)

- 예상기간: 2018. 8. 29. ~ 2018. 1. 27.(입원 9주), 2018. 10. 28. ~ 2019. 2. 26. (통원 18주)
- 종합소견: 상기환자 상기증상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x-ray, CT, 2018. 8. 31. 수술(관혈적정복술 및 장력대 강선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외래 통해 약물, 물리 치료,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진행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타당함

5 관계법령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라.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 제2017-48호(2018. 1. 1. 시행)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학원에서 전산세무회계과정에 대한 강의 후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2018. 8. 29. 학원에서 강의를 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재해 경위를 변경하였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때 통상적인 경로라 함은 자택 등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격수당 등의 성격으로 보이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타사업장에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수행한 강의를 사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학원과 전산세무회계과정에 대한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강의 후 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8

»

사고 전날 업무가 끝난 후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자택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연고지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동료근로자 자택을 비연고지 주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327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레미콘(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2. 16. 동료 근로자 자택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 중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이탈한 사고로 상병명 ‘폐 타박상(양측), 외상성 피하기종,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1번-4번), 외상성 혈기흉(좌측), 좌측 어깨의 탈구(분리), 머리의 열린 상처, 상악골의 폐쇄성골절,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악 좌측 측절치의 파절(#22)’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 당일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 동료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출근하였고,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당일 자주 이용하였던 동료의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해당 동료의 자택은 이용횟수·회사와의 거리·추후 지속적 이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비연고’ 주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출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취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점, 재해 발생 지점은 평소 자택(○○소재)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순로 상에 위치한 교차로 지점으로 사실상 ‘연고지 주거’에서 회사까지의 순로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통상적인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 상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8. 10. 8.부터 레미콘트럭 운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 ~ 18:00(동절기는 08:30부터 근무)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는 “2019. 2. 16. 08:15 ○○동 부근에서 본인이 출근하던 중 개가 튀어나와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남”으로 확인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재해경위는 “사고 승용차(청구인 운전)가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게 되었다는 진술임”으로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자가용(청구인 아버지 소유)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는데, 자택에서 07:20 ~ 07:30경 출발하여 혁신도시를 지나서 ○○교차로에서 이동하면 08:00 ~ 08:10경 회사에 도착한다.

○ I. 최초/유족(사고)

- 4) 재해 당일인 2019. 2. 16.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 자택에서 08:00경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하는 중, 08:15경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은 동료 근로자 자택에서 회사로 가는 순로 상에 있다. 동료 근로자 자택에서 출근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 전일 18:30경 업무가 끝난 후 동료 근로자의 집으로 퇴근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출근하였다. 위 동료 근로자와는 입사 이후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월 2~3회 정도 해당 자택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청구인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와 동료 근로자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가 ○○교차로에서 합류되는데, 사고는 ○○교차로 가기 전 약 100m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 6) 회사는 원처분기관에 “재해 발생 장소는 평소 출퇴근 경로에 있지 않은 장소이다. 청구인은 재해 발생 당일 새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재해 발생 경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재해를 산업 재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3호, 제3항

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라.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17-48호, 2017. 12. 28. 제정)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3호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 자택을 비연고지 주거로 볼 수 있는 등 사회통념 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9. 2. 16. 동료근로자 자택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평소 연고지 주거인 본인 자택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퇴근하는 반면, 사고 당일에는 본인 자택이 아닌 동료근로자 자택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었으며, 전날 18:30경 업무가 끝난 후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자택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근하게 된 것으로, 월 2~3회 정도 동료근로자 자택에서 출퇴근하였다고 하나, 연고지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동료근로자 자택을 비연고지 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9

청구인은 사고 당일에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학업 중단숙려제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간 행위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373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0. 22. 10:30경 학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정차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골절, 족관절 외과골절(우), 족관절부, 열상(우), 족부 심부찰과상(우), 슬부 및 하퇴부 다발성 찰과상(우), 비골 원위경비인대 견열골절(우), 족부 거골골절(우), 족부 좌상 및 염좌(우), 완관절부 좌상 및 염좌(우), 전완 좌상(우), 수부 좌상 및 염좌(우)”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①출발지인 고등학교는 주거지와 사업장의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하지 않는 점, ②사고 당시 이동 경로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일탈 사실이 있는 점, ③사적 행위(학업중단숙려제 상담)를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출근 경로 중단 사실이 있는 점, ④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오토바이)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오토바이 리스비(92,500원)를 신청인의 임금에서 공제한 점, ⑥재해일 이전 주말(토, 일)은 오후 출근하였으나, 재해 당일은 평일임에도 오전 출근하여 사고 발생 시각을 통상의 출근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사업주도 학생은 오후 출근을 지시)을 확인하여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에서 정의하는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나, 상기 법 규정뿐 아니라 다른 법 규정에도 '취업'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취업 장소'는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재해자의 경우 학생이므로 본업인 학교를 취업 장소로 보아 학교에서 이 사건 사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출퇴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출근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본업이 학생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권해석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학생인 점과 재학 중인 학교에 들어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평소 학교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길과 같다면 이동 방법으로 사용한 오토바이가 평소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수단이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인 이상 출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업무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기에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출퇴근 여부를 떠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승인 처분은 법리해석의 오인과 채증법칙의 위반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마땅히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시
- 성립일자: 2018. 10. 1.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2) 재해자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8. 10. 20.
- 고용형태: 비정규직(주간 고등학생)
- 근무시간: 10:30 ~ 익일 1:00(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여건에 따라 유동적임)
- 직종: 퀵서비스기사(입직일: 2018. 10. 20.)

3)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과 병행하면서 2018. 10. 1. ~ 2018. 11. 4.(35일간)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10. 22. 10:30경 회사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부주의로 정차된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우측 발목에 상해를 입음”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재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가 주장하는 각각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주장(신청인 의견서, 출퇴근 재해사실 확인서 등)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1:00 ~ 01:00까지이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시간 안에 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면 됨. 공고에도 근무시간이 11:00 ~ 01:00

라고 구인공고 되어 있음.(사고 이전 재해자는 2018. 10. 20.(토) 12:00 ~ 01:00과 2018. 10. 21.(일) 17:00 ~ 01:00, 총 2일 근무함)

- 오토바이를 두고 다니라고 말한 적 없고 배달일 하는 직원들은 모두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은 없음
- 놀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숙려제 기간이기에 09:00 ~ 10:10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학교에서 나온 것임
-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고 전 통화한 동료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프로그램은 사무실에 도착해서 매번 컸음

※ 출근 사실 보고 시 배달전용프로그램 구동함

(2)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사실 확인서 등)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주말 17:00 ~ 22:00이고, 평일 18:00 ~ 22:00임
- 출근 첫날 오토바이를 놔두고 퇴근하라고 했으나 오토바이를 갖고 감.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가 오토바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함
- 사고발생한 날이 2018. 10. 22.(월) 10:00경인데 사업장 오픈시간은 11:00이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아침부터 일하게 하지도 않음. 본인이 놀다가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임
- 출근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켜고 출근버튼을 눌러 일했을 텐데 전산 상 아무런 데이터도 없음

(3) 동료근로자 진술(재해사실 확인서, 확인서 등)

- 재해자가 사고당시 본인과 통화 중 교통사고를 당함. 사고 당일 10:20경 통화를 하였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사무실(바○○)로 간다고 하였음

나)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

(1) 출퇴근 수단의 관리, 이용권의 근로자 전속성 여부

- 교통수단: 오토바이(리스)

○ I. 최초/유족(사고)

- 오토바이 리스비는 주 1회 92,500원을 재해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확인됨 (신청인 의견서)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험료 및 사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성인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맞지만, 신청인의 경우 학생이라 퇴근 시 오토바이는 두고 오후부터 출근하라고 했다고 진술함

(2)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여부

- 재해자의 주거지는 '○○시 아파트', 취업장소는 '○○시'로, 재해 발생일 출발지인 고등학교에서 취업장으로 이동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고등학교는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의 경로 상에도 위치해 있지 않음

※ 사고 장소는 학교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순로에 있음

(3) 일탈 및 중단 여부

- 고등학교는 주거지와 취업장소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지 않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며, 숙려제 상담이라는 출퇴근과 관련이 없는 행위 사실이 확인됨

다)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

- ①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재해자와 사업주의 진술이 달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②오토바이 리스비 92,5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며 출퇴근 목적이 아닌 사적 행위(상담숙려제 등교)를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수단의 관리와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2) 통상의 출퇴근재해

- ①출발지인 고등학교는 주거지-취업장소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있지 않아 통상적인 출근경로에 포함되지 않고, ②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탈에 해당

되며, ③이동 중 사적행위(숙려제 상담)를 위한 중단 사실 있으며, ④오토바이를 통상의 출퇴근수단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 따라서 사고 당시 재해자의 이동 경로 및 수단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동 중 일탈 및 중단이 확인됨

(3) 판단 및 결론

-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 통상의 출퇴근재해 두 가지 모두 해당 없음으로 불승인 처분이 타당함

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는 2019.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타고 계속 출퇴근했음. 전에도 3-4월경 사장님 바뀌기 전에 일을 했었음. 사장님이 시간을 딱히 안 정해주었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라고 했음. 일찍 나오면 10시 정도에 마쳤고 오후에 나오면 1시까지 일했음. (모) 부모에게 말도 안하고 일을 시켰음. 사장님이 산재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말을 번복하고 있음"이라고 진술했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

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출근 중 재해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인과 채증법칙의 위반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마땅히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10. 22. 사고 당일에도 학교에서 09:00 ~ 10:00 까지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간 행위는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의 예외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인 공고를 보면 근무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을 보더라도 실제로 10시 30분 전후로 업무를 시작한 동료근로자들의 내역이 확인되며, 사고 장소는 학교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순로상에 있고, 달리 청구인이 사적 행위를 하던 중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0

»

청구인은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고, 비록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이 있긴 하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765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퀵서비스기사로 2018. 11. 23.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에 가입된 자로서, 2019. 5. 4. 16: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 사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주행 중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휴대전화 사용 및 전방 미주시)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 당시 운전 중 휴대폰을 본 이유는 업무상 오더(주문)을 보기 위해 한 행위 이었고, 운행에 방해가 될 만큼 집중하여 보지 않았으며, 고의·자해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이 건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퀵서비스 중소기업사업주로 2019. 5. 4. 16: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 사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주행 중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여 부상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사업주
- 성립일: 2018. 11. 23.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50111)
- 재해일(2019. 5. 4.) 당시 보험료 체납 여부: 체납액 없음

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적시된 조사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 중 사고 사실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급변 사고는 청구인이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여 일어난 것임.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발생일시: 2019. 5. 4. 16:00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차종: 이륜차

- 사고내용: #1오토바이가 시장 사거리에서 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휴대폰을 보며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2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1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5) 119구급대 환자 이송내역(소방서)

- 발생장소: ○○구

- 사고경위: 오토바이 대 SUV 차량 교통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말에 의하면 신호대기 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다고 함. 헬멧 착용, 우측 손, 좌측 무릎 단순 타박상으로 환자 본인이 따로 병원 가보겠다 하여, 현장 처치 후 경찰 인계

6) 청구인이 2019. 5. 6. 진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지 상 적시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C.C: 2019. 5. 4. 일하는 중 교통사고 이후 좌측 무릎, 우측 발목, 우측 손목, 목 통증 매우 심하여 내원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최초요양 소견서, 2019. 5. 7.)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5. 6. 14:20 본원

- 재해경위: 2019. 5. 4. 오후 4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도중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여 오토바이에서 넘어짐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목, 우측 손목, 우측 발목, 좌측 무릎에 통증이 심함

- 종합소견: X-Ray 검사 상 골절 소견은 없으나 염좌 및 타박으로 수상부위 통증이 심함

- 치료예상기간: 2019. 5. 6. ~ 2019. 6. 29. 입원(8주)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특히 범죄행위 중 교통사고의 경우 그 간의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요인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중 경미한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사고인 경우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재해자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사고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 경위를 참고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다. 청구인의 교통사고 관련 사실관계 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고, 비록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이 있긴 하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1

»

사고발생 시간 및 경로가 재해 당일의 출근 시간 및 경로와 일치하며 사고 발생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고 사업장과 공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502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1. 2. 작업반장으로부터 철야근무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짐'은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작업반장이 2018. 11. 2. 청구인에게 철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일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심사청구 시 주장

- 청구인이 근무한 건설 현장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는 현장이 아님

- 2018. 11. 1. 퇴근 무렵 11. 2. 휴무를 지시받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18. 11. 2. 작업반장이 전화하여 철야근무를 지시하였으며, 동료근로자와 전화 통화로 철야근무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료와 오후 4시30분경 만나기로 하였음
- 출근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상이 있었으나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나오던 중 동료근로자 이○○을 만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음. 작업반장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음. 당일 동료근로자들과 철야근무를 하였음
- 따라서, 청구인은 작업반장의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재해로 승인하라는 주장이다.

나. 심사청구 이후 주장

1)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일 단위로 출퇴근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평소 작업 중 작업 반장이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퇴근 후 동료들 간의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결정되고 그 동안 청구인의 근무 또한 대부분 당일 결정된 것이 아닌 한번의 업무 지시로 여러 날이 근로가 결정된 것임
- 2018. 11. 1. 퇴근 무렵의 공사 물량으로는 11. 2.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퇴근하였으나, 동료와 반장으로부터 11. 2. 밤부터 철야근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동료와 오후 4시30분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
- 동료 이○○, 작업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동료 두명과 11. 2. 출근하여 근무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고 사실을 알고 있음

2) 원처분의 위법·부당성

- 이 사건 현장의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작업 참여는 매일 작업반장이나 오야지가 개별 근로자에게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지시하거나 특정 반장이 특정 근로자에게 연락하면 그 내용을 동료 간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 I. 최초/유족(사고)

- 오래 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이 사건 11. 2. 작업 참여와 관련 하여서도 반장에게 전화를 직접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동료와 출근 시간 약속을 잡은 것을 돌이켜 보면 동료에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출근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1. 2. 당일 작업은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동료 등이 당일 작업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 동료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서 동료, 작업반장 등에게 사고로 인하여 당일 공사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한 사실, 당일 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출입한 기록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 원처분기관은 이를 모두 배척한 채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통화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이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실제적 진실에는 눈 감고, 산업재해 은폐를 일삼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건설사 관계자의 주장만을 인정한 처분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업무행태는 가장 빨리 추방되어야 할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으로서, 이러한 폐단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8. 11. 2. 작업반장으로부터 철야근무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출근 경로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액정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전송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다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짐'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을 진단 받고 원처분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 개요

- 공사명: ○○
- 현장 소재지: ○○도
- 사업장명: ○○건설(주)
- 청구인 소속 업체: (주)○○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3) 청구인의 근로 내역

- 소정 근무시간: 주간 7:00 ~ 17:00, 야간 17:00 ~ 익일 7:00
- 담당 업무: 철근 조립
- 근무 기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7.부터 약 1년 4개월간 근무함

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및 사업장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1) 통상의 출퇴근 경로 및 수단

- 출발지: 자택
- 도착지: 사업장
- 주거지와 사업장 간 거리: 약 6.19km이며 오토바이 이용 시 약 19분 가량 소요됨
- 교통수단: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

(2) 재해 당일 출근부터 재해 발생 시까지의 경로

- 오후 4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출근 경로 상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러 휴대전화 액정 파손금 보험금 신청서를 보험사에 팩스 전송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진입을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순간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짐

○ I. 최초/유족(사고)

- 재해발생 장소: ○○거리

※ 지도 검색 결과 재해발생 장소는 출근 경로 상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됨

(3) 재해발생 후 조치 사항

- 재해 발생 즉시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던 동료와 철근 반장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함

- 다리 통증이 있었으나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있던 책임자에게 사고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현장에서 나오던 중 출근하던 동료근로자와 마주쳐 사고 사실을 알림

(4) 2018. 11. 2. 출근 지시 관련 사항

- 2018. 11. 1. 부장이 11. 2.부터 휴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

- 2018. 11. 1. 오후부터 11. 2. 오전 사이(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인력관리를 담당자로부터 11. 2. 철야작업이 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동료근로자도 동일한 연락을 받았으며, 동료와 만나서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나) 청구인 제출 자료 상 내용

(1) 동료근로자1 진술서

- 본인은 청구인의 동료근로자로서, 2018. 11. 1.은 오전 근무만 하고, 부장이 당시 작업하던 현장의 물량이 줄었으므로 2018. 11. 2.부터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휴무를 지시하여 2018. 11. 2.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오전 경 반장으로부터 철야 작업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청구인에게 연락해 보니, 청구인도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청구인을 만나서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오후 5시경 청구인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음. 본인은 당일 철야 근무를 하였음

(2) 동료근로자2 진술서

- 현장 정문을 통과하여 출근하던 중 다리를 절며 현장에서 나오던 청구인을 만났음. 청구인은 출근하다 다쳐서 당일은 휴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고 하였음. 평소 작업 배치 및 출근 지시를 하는 자는 반장임

(3) 사고 목격자 진술서

- 2018. 11. 2. 오후 4시 20분경 ○○거리 앞에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도왔음. 당시 운전자는 작업복 차림이었음

다) 재해와 관련한 사업장 의견

(1) 재해 사실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음

(2) 사유

- 청구인은 평소 근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당시 공사 현장의 작업량이 줄어 철근 부장이 청구인에게 구두로 2018. 11. 2.부터 휴무할 것을 지시하였음
- 청구인은 하도급사인 ○○건설로부터 퇴직일자를 2018. 11. 1.로 확정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은 사실이 있음
- 재해 당일 청구인의 출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인지, 당 사 현장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발생 시간이 출근을 하려고 한 시간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당 사 현장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현장으로서, 사업장이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와서 일을 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건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서

- 철근 작업 부장: 청구인은 평소 결근, 지각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 바, 2018. 11. 10.경 장기간 무단결근 사유를 작업반장으로부터 확인한 바, 이 사건 재해 사실을 보고 받음. 청구인은 퇴근 후 또는 휴무일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실이 있음
- 목작업반장: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함(2019. 2. 8. 작성)

○ I. 최초/유족(사고)

- 작업반장: 2018. 11. 1. 오전 철근 부장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이 거의 끝나 가니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본인은 2018. 11. 2. 청구인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본인은 철근 부장의 지휘를 받는 직위에 있으며, 상급자의 휴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근로자들에게 출근 지시를 할 수 없음 (2019. 2. 19. 작성)

(4) 반장의 통화기록에서 2018. 11. 1. ~ 11. 2. 청구인, 동료근로자에게 발신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의학적 의견

가. 주치의 소견

- 상병명: 우측 입방뼈(발) 골절
- 재해자 진술 재해경위: 오토바이에서 낙상함
- 종합 소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신청 상병 타당함(골편 골절), 요양기간 타당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제1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2항

6 판단 및 결론

I

최초 / 야근 (사건)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작업반장의 통화기록에서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발신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동료근로자들은 재해 당일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고 발생 시간 및 경로는 재해 당일의 출근 시간 및 경로와 일치하는 점, 사고 발생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린 점,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공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1. 2.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2

출근하기 위해 자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이동 중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사고 지점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사적인 주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34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4. 30. 8:30경 출근하려고 개인 소유의 자택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로 이동하다가 개를 묶은 무릎 높이의 와이어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태양광 설치판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명 ‘흉추 8번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출퇴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다친 재해경위는 확인되나, 지적도·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해사실 확인서상에 재해발생 장소가 재해자의 소유인 땅으로 확인되며, 재해발생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재해자가 걸려 넘어진 장소가 재해자의 사적 영역인 주거장소 안에 있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함이 타당함”이라는 조사 결과와 자문의사의 “신청상병명 중 제8흉추의 압박골절이 과거에 존재한 흔적은 있으나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상당한 과거의 손상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명 불인정할 것이 타당할 것임. 기타부위 염좌는 재해 경위 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흉추부 MRI 검토한 바 신청상병 흉추8번 압박골절 폐쇄성 확인되지 않음. 좌측 늑골 염좌 긴장, 무릎 타박상은 재해 경위 상 발생 가능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근하려다 넘어진 곳은 땅을 양도한 전주인이 이미 보상을 받은 정부 땅으로 사적영역이 아니며, 신청상병명 중 ‘제8번 흉추의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과거에 제12번 흉추압박골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제8번 흉추가 골절되어 신청상병명이 과거의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잘못되었다며 최초요양 신청상병을 출퇴근재해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이 2019. 5. 13.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 및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상 적시된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

- 재해발생일: 2019. 4. 30. 8:30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택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로 이동하다가 개를 묶은 와이어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태양광 설치판 기둥에 부딪힘

나)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 출퇴근 형태: 통상의 출퇴근
- 출퇴근 구분: 출근중 사고
- 사고유형: 도보 등 기타사고(넘어짐)
- 사고 발생 일시: 2019. 4. 30. 8:30

○ I. 최초/유족(사고)

- 평소 취업시간: 8:50 ~ 16:00
- 통상 통근소요시간: 1:10
- 출발장소(주소): 집
- 출발일시: 2019.4.30. 8:25
- 사고장소(주소): 집 주차장
- 도착(목적)장소(주소): 근무지
- 일탈/중단 사실 유무: 없음

2) 청구인이 2019. 5. 30.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 상 적시된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 재해발생경위 및 치료과정: 4.30. 오전 8:30경 차에 타려고 차 있는 곳으로 가면서 자택 주차장에 매어놓은 와이어 개줄에 걸려서 넘어지며 기둥에 부딪힘.
- 재해발생 장소(주차장)의 소유자: 청구인 본인 소유
- 강아지 집과 태양광 설치판 기둥 위치
- 대문에서 나와 주차장까지의 이동경로

3)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면사무소
- 사업장 소재지: ○○시 ○○면
- 입사일자: 2019. 4. 8.
- 업무내용: ○○면 국화꽃 가꾸기(공공근로)
- 통상적인 근무시간: 9:00 ~ 16:00(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일: 월~금요일,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나) 출퇴근 재해 관련 조사 내용
- 출퇴근 형태: 통상의 출퇴근
 - 출퇴근 구분: 출근중 사고
 - 사고유형: 도보 등 기타사고(넘어짐)
- 다)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 출발장소(주소): 집
 - 출발일시: 2019. 4. 30. 8:25
 - 사고장소(주소): 집 주차장
 - 사고일시: 2019. 4. 30. 8:30
 - 도착(목적)장소(주소): 근무지
 - 통상 출퇴근 소요시간: 10분
 - 인정여부: 재해발생 장소가 청구인 소유의 땅인 것이 확인되어 불인정함
 - 일탈/중단: 없음
- 라)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관계
- 청구인 2012. 5.11. 이후 소유
- 마) 조사내용(구체적 사실관계) 및 판단
- 출퇴근 경로 상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10분 정도 소요되어 출근 시간 9시에 맞추어 출근하려 한 재해경위는 확인되나, 지적도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해사실확인서상 재해발생 장소가 재해자의 소유인 땅으로 확인되고, 재해발생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재해자가 걸려 넘어진 무릎 높이의 와이어 줄이 재해자의 사적영역인 주거장소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함이 타당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최초요양 소견서, 2019. 5. 13)

- 1) 신청 상병명: 흉추 8번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 2)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집 앞 주차장에서 개 목줄에 걸려 넘어짐
- 3)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 허리, 옆구리, 무릎 통증
- 4) 종합소견: 보존적 치료 필요
- 5) 치료 예상기간
 - 입원: 2019. 4. 30. ~ 2019. 6. 10. 안정 및 보호, 보조기 착용, 통증 치료, 안정, 경과관찰 필요
 - 통원: 2019. 6. 11. ~ 2019. 7. 22. 통증치료, 물리, 재활치료, 경과관찰 필요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신청상병명 중 제8흉추의 압박골절이 과거에 존재한 흔적은 있으나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상당한 과거의 손상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명 불인정할 것이 타당할 것임. 기타부위 염좌는 재해경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2: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흉추부 MRI 검토한 바 신청상병 흉추8번 압박골절 폐쇄성 확인되지 않음. 좌측 늑골 염좌 긴장, 무릎 타박상은 재해 경위 상 발생 가능하나, 재해 장소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라.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제2017-48호)

〈주거의 경계〉

-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함
 - 공동주택(다가구 포함):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됨.
 - 단독주택: 대문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9. 4. 30. 8: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이동하다가 개를 묶은 무릎 높이의 와이어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태양광 설치판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 청구인의 사적인 주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5조제8호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판문이 주거의 경계가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을 기준으로 주거의 경계를 판단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사고발생장소는 사적영역이 아니며, 과거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이 있었으나 금번 사고로 제8번 흉추가 골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9. 4. 30. 8: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이동하다가 개를 묶은 무릎 높이의 와이어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태양광 설치판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청구인의 사적인 주거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원처분기관이 2019. 6. 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3

청구인은 관행적으로 사전 배차신청 없이 휴일 근무를 했고 사업장에 연락하여 데려와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해 장소도 사업장과 380미터 떨어진 장소로 출근 경로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59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3. 10. 08:2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2019. 3. 10.)은 휴무일로 확인되고, 차량운행을 위한 준비 시간 및 평소 차량 출고시간대를 감안한 일반적인 출근시간과 119구급대 출동시간을 고려할 때 자전거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3. 10.(일)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발생 시각인 08:20경은 청구인의 평소 출근시간대(07:30 ~ 08:30경)에 해당하여 취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3. 10. 08:20경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회사 앞 전방 150~200m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옆으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사고 당일 지인에게 구조요청 하였고, 지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상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 3)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나)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16. 3. 1.
 - 근무형태: 1일 2교대,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1일 6시간, 1주 36시간(오전반 05:00 ~ 15:00, 오후반 17:00 ~ 03:00),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범위 내
 - 직종: 택시 운전직
 - 임금지급: 운송수입 책임 납입제(1일 오전 125,000원, 오후 150,000원)
- ※ 매월 26일분 운송수입금을 책임 납입하되, 기준액을 미달한 경우 임금에서 차감 지급

다)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 (출발장소) 주거지
- (사고장소) ○○아파트 앞(08:20)
- (도착/목적장소) 근무지
- 출퇴근 소요시간: 15~20분(자전거 이용하여 출퇴근함)
- 주거/취업장소: 인정
- 일탈/중단: 없음

라) 119 구급대 출동내역

- 신고일시: 2019. 3. 10. 09:09
- 이송병원: ○○병원
- 구급대원 소견: 자전거 타고 출근 중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 호소.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고 함

마) 진료기록 발취

(1) 초진기록(대학교병원)

- 내원일시: 2019. 3. 10. 09:28
- 상태: 1시간 전 자전거 타다가 생긴 좌측 허벅지의 통증
- 내원경위: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차를 보지 못하고 차 뒤쪽을 받은 후 왼쪽으로 넘어짐. 헬멧과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 좌측 허벅지 외에는 다친 곳 없다고 하며 두부의 외상 없는 상태, 목의 통증 없음

(2) 재진기록(병원)

- 내원일시: 2019. 3. 10. 15:00
- 발생일: 2019. 3. 10.

○ I. 최초/유족(사고)

- 내원경위: slip down(BTA, 자전거를 타던 도중 넘어짐)

바) 신청인의 평소 휴무 패턴 확인(2018. 12 ~ 2019. 3)

- 2018. 12월(8일): 12. 2.(일)/ 12. 3.(월)/ 12. 7.(금)/ 12. 12.(수)/ 12. 14.(금)/ 12. 17.(월)/ 12. 20.(목)/ 12. 31.(월)
- 2019. 1월(8일): 1. 1.(화)/ 1. 4.(화)/ 1. 7.(월)/ 1. 9.(수)/ 1. 14.(월)/ 1. 21.(월)/ 1. 27.(일)/ 1. 30.(수)
- 2019. 2월(6일): 2. 4.(월)/ 2. 5.(화)/ 2. 6.(수)/ 2. 10.(일)/ 2. 13.(수)/ 2. 21.(목)
- 2019. 3월(2019. 3. 1. ~ 3. 9. 3일): 3. 1.(금)/ 3. 3.(일)/ 3. 9.(토)

사) 신청인의 차량 출고시각 확인

- 차량종합 운행내역상 2019. 3월 출근일수는 총 6일(휴무일 총 3일)이며, 동 기간 동안 차량출고시각을 확인한 결과 가장 이른 시각은 06:44이고 가장 늦은 시각은 08:48임(차량출고 시각은 차량운행이 시작되고 차량속도가 20km/h 이상일 때부터 체크됨)

아) 근로계약서상 관련 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 제8조(운송수입금 책임 납입제 특약)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1일 2교대 이고, 월간 26일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기로 하며 제3항에서는 월간 만근(26일분에 대한 책임운송수입금 납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일요일)에 운행하여 납입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을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명시함
- ※ 2018. 4월부터 2019. 3월까지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른 월간 만근(26일)을 달성한 경우는 2018. 10월 밖에 없음
- 근로계약서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에 따르면 제3항에서 오전반일 경우, 차량 출고 및 입고시간은 05시부터 15시까지임

자) 청구인 주장 및 사업주 진술

(1) 청구인 주장(신청인 의견서 2019. 4. 3.)

- 2019. 3. 10. 08:20경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회사 전방 150~200m 앞에서 주차된 차와 부딪치며 옆으로 넘어져 다침
- 일요일에 일을 하는 편이고 출근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하며 출근시간은 07:30 ~ 08:30 사이에 한다고 진술함

(2) 사업주 측 진술(재해사실확인서 2019. 3. 29.)

- 신청인은 2019. 3. 10.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사고당일 10:00경 전화가 왔음
- 재해발생일은 휴무일이고 간혹 평일에 결근을 하거나 만근(26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체 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요일 대체 근무시 미리 배차실과 일정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일은 사전 대체근무신청이 없었던 상황으로 근무일이 아님
- 신청인 근무시간대는 오전반이고, 통상의 교대시간(출근시간)은 05:00 ~ 07:00 인데, 재해발생 시간과 출근 시간이 서로 맞지 않다고 진술함

차)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26일간 운송수입금 책임제를 시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간 만근(26일)을 달성한 해당월은 2018. 10월 밖에 없고, 최근 3개월의 휴무일 패턴을 확인한 바, 휴무일(일요일)에 즐겨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휴무일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차 및 근무인원의 조정, 차량의 정비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로부터 미리 승인을 득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해 사업주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 2019년 3월 차량 종합운행내역 상 신청인의 평소 차량 출고시간이 06:44부터 08:48이고, 차량 운행기록이 일정 속도 이상일 경우 체크되는 점을 제외한다고 해도,

○ I. 최초/유족(사고)

이를 위해서는 출근 후 차량의 인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30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119구급 신고시간은 2019. 3. 10. 09:09으로 재해발생 시간 또한 평소 출근 시간과 다르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출퇴근 재해는 주거지에서 취업장소까지의 통상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경우 인정되나, 신청인의 경우 상기 조사내용을 감안하면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한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4) 심사 청구 이후 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항 | 조사내용 |
|---|---|
| <p>과거 휴무패턴 고려할 때 휴무일(일요일)인 재해발생일을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납금제도에서 평소 재해자의 휴무 패턴 고려시 휴무일 대체근무 불가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규정에는 월 26일 만근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에 운행하여 미납입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음 - 재해자는 평소 주중에 결근이 잦았기에 휴일 대체근무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잦은 편이었음 ○ 재해자의 평소 휴무 패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월 이전 3개월(2018. 12. ~ 2019. 2.)간 주중 1~2회 결근 또는 연차한 후 일요일에 근무하는 패턴을 보임 - 사고발생월 이전 3개월간 휴무일(일요일)근무 비율은 약 69%에 달함 ○ 사고발생 당월의 휴무 패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월인 2019. 3월에는 26일 만근 기준으로 볼 때 최대 5일의 휴무만 가능한 상태였음 - 재해자는 사고당일인 2019. 3. 10.(일) 현재 이미 3회의 휴무(결근)를 하였기에 일요일 대체근무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 |
| <p>휴무일(일요일) 근무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당일 출근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측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근로계약 상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 ○ 실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납입제 하에서 미납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차량보유 대비 택시기사 부족한 상황 등으로 휴일 대체근무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임 - 따라서 재해자 뿐 만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휴무일(일요일) 당일 출근 후 배차를 받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통용된 업무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함(동료근로자 진술 및 2019. 9. 4. 심사실 출장조사 시 확인) |
| <p>재해자의 평소 차량 출고시각 고려 시 11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평소 출근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 차량 출고시각(시속 20km이상 시점부터 기록) 및 운행 전 준비 |

| 쟁점사항 | 조사내용 |
|---|--|
| 구급차량 신고시각 (09:09)을 사고발생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p>행동 등을 감안하면 재해자의 평소 출근시간은 07:30 ~ 08:30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p> <p>○ 119구급대 신고시각과 차이 발생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직후 회사 배차실 및 배우자 등에게 차례로 전화한 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인이 현장에 온 뒤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거동이 어려워 뒤늦게 11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재해자 통화기록 확인함) - 따라서 119 신고접수 시각이 사고시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사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08:20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p>○ 주변인에 대한 재해자 진술의 일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급대원, 의사, 간호사 등이 작성한 당시 현장기록을 보면 사고발생이 8:30경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견됨 |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청구인은 사고 당일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 시각도 평소 출근시간대에 해당하는 바,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휴일 근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재해 이전에도 사전 배차신청 없이 청구인이 휴일 근무를 하였었고, 119 구급 신고시각이 9:09 이지만 이전에 이미

○ I. 최초/유족(사고)

사업장에 연락하여 데려와 줄 것을 얘기 하였으며, 재해 장소도 사업장과 380미터 떨어져 있었고, 출근 경로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로 출근 중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2019. 3. 10.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4

>>

청구인의 재해는 출근 중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청구인이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했으므로 재해 발생 원인이 오로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92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3. 22. 21:00경 근무지인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요추 3번 척추체 골절, 허리의 염좌, 경추의 염좌, 어깨의 염좌, 뇌진탕'을 진단받아 2019. 4. 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경찰조사 결과상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총 4대의 차량을 연쇄 충격한 범죄사실이 확인되며, 고객님이 이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임이 확인되며,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9. 6. 14.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2차로의 정차를 피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이 건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 급번 사고로 인해 요추압박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고, 다수의 피해자는 차량의 파손 및 경상을 입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상식을 가진 청구인이 출근 과정에서 출근하기 싫어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가장 크게 다칠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과실에 해당하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현재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급번 사고로 청구인의 차량은 폐차하였고, 별점으로 면허도 정지된 상황이다. 청구인의 차로 변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경과실 및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로서, 2019. 3. 22.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 터널을 이용하였고 이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2019. 4. 1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일시: 2019. 3. 22. 20:45

- 사고유형: 차대차

- 사고원인: 진로변경 방법위반

- 피해내용: 부상 7명, 물피 9,114,000원 상당
 - 사고내용: #1사고차량은 터널 방향에서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2차량의 우측 앞 휨터부분을 #1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 후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며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3, #4 차량 앞부분을 #1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 후 좌측 골목으로 진입하여 마주선 #5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1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한 사고임
 - 위반 법규내용: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 현장상황
 - 기상상태: 맑음
 - 노면상태: 포장, 건조
 - 도로형태: 교차로내
 - 중앙분리시설: 노면표시
 - 교통장애: 장애없음
 - 차량적 유발요인: 없음
 -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없음
- 3)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조사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경위: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 차량 충격 후 연이어 반대편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음
 - 진로변경 이유: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이 쉽게 운전하는 것 같아 변경하였음
 - 충격 당시 상황: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기는 1차로에 있는 차량을 못보고 차로 변경함. 충격한 차량은 총 4개임

○ I. 최초/유족(사고)

4) 원처분기관이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결과, 해당 사고 확인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로변경 위반), 경찰조사결과(위반사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신청인(재해자)이 가해자이며,
- 법률자문에서 주로 재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
- 일탈 및 정지 없이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주로 신청인(재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으로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9. 4. 5.)

요배부통과 그로 인한 운동제한 호소하며 정밀검사(MRI) 상 요추체(3번) 골절 있어 안정가로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됨.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 기간 승인 타당

다. 자문변호사 소견

주로 재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임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2차로의 정차를 피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경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재해는 2019. 3. 22. 출근 중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청구인이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인이 오로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5

»

청구인의 자택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자친구의 집 또한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6093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5. 3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4. 29. 05:40경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됨'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흉추3.4번째 압박골절, 흉추5.6번째 압박골절, 흉추9번째 압박골절, 흉추11번째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진단받고 2019. 5.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3호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1) 청구인의 주거장소는 '○○시'이나, 재해 당일 출발장소는 청구인의 주거 장소가 아닌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군'임
- 2) 청구인은 평소 주중에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군 소재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됨
- 3) 재해 당일 출발장소인 여자친구의 주거지(△△군)는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상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자친구와 2019년 7월 기준으로 약 2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로서 1년 전부터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여자친구의 직장과 가까운 △△군 소재 장소에 집(이하 '△△집'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여자친구의 사실확인서 첨부)에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의 출근 중 재해의 출발장소인 △△집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하는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4. 29. 05:40경 새벽 출근길에 빗길로 인하여 차가 미끌어지서 차량이 전복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보험)가 2019. 5. 23. 발행한 보험금지급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일시: 2019. 4. 29. 05:35
- 사고장소: △△군
- 사고유형: 차량단독/ 전도(전복)
- 치료병원: ○○병원

○ I. 최초/유족(사고)

- 상병명: 흉추 안정성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 보험금 지급내역: 0원

다) 이 사건 재해 후인 2019. 4. 29. 06:03 청구인이 내원한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상기전: 교통사고
- C.C) Pain. Backache
- P.I: 내원 전 In car TA로 수상 후 상기 증상 발생하여 119 통해 내원함

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사 내용

가) 청구인이 2019. 5. 22.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일시: 2019. 4. 29.
- 사고유형 등: 출근 중 교통사고
- 출발장소: △△군
- 사고장소: △△군
- 도착(목적)장소: ○○시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주식회사 ○○)은 '○○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은 2017. 7.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 ~ 17:00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19. 5. 23.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자택: ○○시

- (2) 사업장: ○○시
- (3) 평일의 출퇴근 경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함
- (4) 2019. 4. 2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군'에서 출발하게 된 이유: 매주 주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기에 월요일(2019. 4. 29.) 출근하기 위해 출발하게 됨
- (5) '△△군'에서 주말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한 기간: 약 1년 6개월 이상
- 마)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2019. 5. 31.자 소속 사업장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인은 상용·정규직으로 2017. 7. 1. 소속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생산 계획 작성 및 관리 등 현장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 ~ 18:00임
- (2) 청구인이 출퇴근과 관련하여, 매주 △△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내려가서 월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당초 원처분기관에 재해조사 시 여자친구라고 확인한 여자친구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여자친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여자친구는 청구인과 2년 전부터 만남을 지속하였고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군에 집을 마련하였음. 청구인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중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집에서 출퇴근하였고 금요일 퇴근 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집에서 생활하였음. 생활비의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같이 살 집을 구한 사실이 있음
 - 여자친구와 청구인의 친지 및 친구들은 여자친구와 청구인을 부부라고 여기고 있어 부부동반 모임이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고 내년엔 결혼식을 할 예정임
- 사)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18. 5. 25. ~ 2019. 4. 26. 기간의 후불교통카드 내역서(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확인상, 청구인은 주로 금요일(가끔은 토요일과 평일) 오후 퇴근 시 약 20시경에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나왔고, 이후에 월요일(평일에 출발한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고속도로 △△TG에서 출발해 06시경 ○○TG 쪽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 I. 최초/유족(사고)

아)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평일의 출퇴근 경로: 자택(○○시)에서 사업장(○○시)으로 출퇴근: 인터넷 지도 (Daum 카카오맵) 확인상, 거리 2.8km로 약 6분 소요됨
 - (2) 주말의 출퇴근 경로: 사업장(○○시)에서 여자친구의 집(△△군)으로 퇴근 후 월요일에 사업장에 출근
 - (가) 사업장에서 퇴근 시 경로: 인터넷 지도 확인상,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약 20시 전·후에 고속도로 TG를 통과하여 여자친구의 집까지 거리 59.1km로 약 48분 소요됨
 - (나)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근 시 경로: 인터넷 지도 확인상,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하여 약 06시 전·후에 고속도로 TG를 통과하여 사업장까지 거리 63.2km로 약 50분 소요됨
 - (3) 청구인이 출근 시 고속도로 동 TG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경로 에 청구인의 자택이 있고, 인터넷 지도 확인 상 고속도로 TG로부터 자택을 경유하여 사업장까지 거리 7.4km로 약 11분 소요됨
- 자) 청구인이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되며, 6월 8일 이후 통원치료’이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8호(출퇴근)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신설]

다.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7-48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주거의 개념)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

- ① (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 ②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
- ③ (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연장근로 및 조기출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숙박하는 그 장소
 -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사정이나 교통기관의 파업 및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두절로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숙박하는 그 장소
 -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노동자가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의 그 장소
 - 사업주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휴가장소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하고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재해 당일 출발장소인 △△군 집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광주 자택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군’ 소재 여자친구의 집 또한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6

»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의 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자 사업장에서는 제출 마감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업무상의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근 시간은 오후 이나 청구인은 오전에 면허증을 발급을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7017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2019. 4. 5. 10:10 출근 중 △△에 제출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부받은 후 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구청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견관절부 쇄골 원위부 골절’등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평소와 달리 09:00에 집을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관청으로 향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의 출근 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의 용도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평소 출근시간(13:00), 사고 발생 시간(10:10), 예상 이동 경로(집 → 운전면허 시험장 → △△구청)를 고려하면 다시 접근적인 △△구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09:00 ~ 13:00 전체를 출근 과정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4. 5. 출근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구청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의 성격과 동시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9. 2. 18.부터 △△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3:00 ~ 21:00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는 “2019. 4. 5. 10:10 출근길에 회사에 제출해야 할 지게차안전교육증을 받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음. 4차선 주행 중 이었고, 옆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물류창고로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여 진로를 완전히 막아서 본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짐.”으로 확인된다.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2019. 4. 5. 10:10, ○○시에서, 화물차량이 물류창고로 우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청구인 차량)와 비접촉되어 발생된 사고임.”으로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오토바이(청구인 소유)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는데, 이동거리는 약 5.2Km로 업무 시작(13:00) 약 10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한다.
- 4) 청구인은 재해 당일인 2019. 4. 5.에는 “자택 출발(09:00경) → 운전면허시험장 도착

(09:50경)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10:00경) → [사고 발생(10:10)], (이후 사고가 없었다면 예상 경로) → △△구청 도착(11:10경)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11:40경) → 근무지 도착(12:10경)”의 경로로 출근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경로별 이동 시간(인터넷지도 상 최적 경로와 자동차 이용한 이동시간 참조)은 다음과 같다.

- 자택 → 운전면허시험장: 14.6Km, 33분
- 운전면허시험장 → △△구청: 14Km, 26분
- △△구청 → 근무지: 6Km, 16분
- △△구청 → 자택: 1Km, 5분

6) 위 경로로 출근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9. 4. 4. △△ 소속 차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운전 업무와 관련)을 다음날인 2019. 4. 5.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받아, 2019. 4. 5. 출근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의 필수 서류이나, 분실)을 발급받은 후 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고 출근하기 위함
- 2019. 4. 2.에도 동 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운전면허증이 없어 반려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관련, 2019. 3. 23. ~ 24.(2일) 중장비운전학원에서 교육 수료 후 발급받게 되었는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에서 지원함

7) ㈜○○가 제출한 확인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2019. 4. 5.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음. 2019. 4. 5. 09:00 ~ 13:00 근태처리 여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함. 사고 당일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짬나는 시간을 이용한 것임.”의 내용이 확인된다.

8) 방○○ 차장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2019. 3월 중순 이후 ㈜○○ 본사 담당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2019. 4. 4.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였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3호, 제3항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마.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17-48호, 2017. 12. 28. 제정)
-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의 성격과 동시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자 사업장에서는 2019. 4. 5.까지 제출 마감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업무상의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근 시간은 13:00이나 청구인은 자격증 제출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받은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가던 중 10:10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7

»

청구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851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5. 12. 06:20 “정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왼쪽편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 전면과 청구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가 충돌한 사고임.”이라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Traumatic EDH, Blow out fx., Skull fracture(open)’를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출근 경로 상의 재해인 점과 상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법률자문 결과 정차해 있는 선행 차량을 우회한 후 신호 위반하여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한 업무수행과 무관한 행위로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법 위반 행위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5. 12. 06:20경 출근 도중 곧 신호가 바뀔 것을 대비해 옆 차량이 예측

출발을 하려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예측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측면에서 오는 음주 차량과 본인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으며 현재 직장도 잃고 몇 달 째 통원 치료 증으로 생활이 넉넉지 않아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믿을 건 산재 요양 승인이므로 부디,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5. 12. 차돌길 삼거리에서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자가용과 충돌'이라고 확인된다.
- 2) 산재보험 적용 관계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명: 주식회사○○
 - 나) 채용일자: 2019. 3. 19.
 - 다) 담당 업무: 기관 유리패널 포장 관련 업무
 - 라) 임금: 시급 8,350원+상여 200%(월할 지급)
 - 마) 출퇴근 시간: 오전 7시(3조 3교대), 오후 3시
 - 바) 보통 사용하는 출퇴근 방법: 통근차량 이동 외 자가용 출퇴근(주차장 차량등록 완료), 회사에서 출퇴근용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지급한 사실 없음
 - 사) 사고에 대한 재해사실 의견: 육아휴직자 대체 근무로 3개월 계약직으로 파견 근무 중이며 면접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자가용 운행시 주차장에 차량등록 후 자차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출퇴근 사실은 알지 못 하였음

3) 2019. 6. 7.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 5:30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타려고 했으나 앞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 운전이 불가능 해 보였고 출퇴근 버스는 이 상황을 파악한 5:40경 타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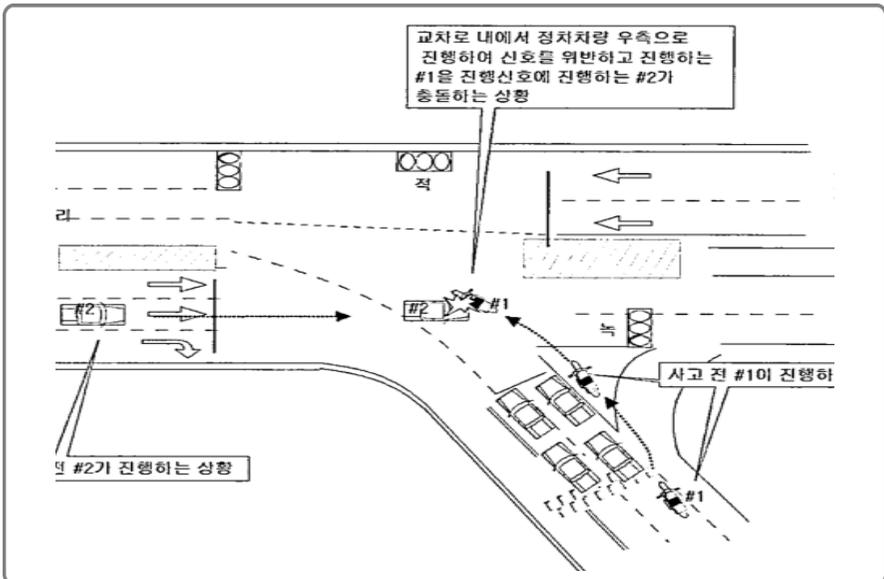
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 일시: 2019. 5. 12. 06:20

나) 사고 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다) 사고 내용: 2019. 5. 12. 06:20 #1은 정지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마침 원편에서 2차로를 진행신호에 직진하는 #2가 피하지 못하고 #2 전면과 #1 좌측면 부위가 충돌한 사고임

라) 사고 현장 약도



6) 재해자는 #1 오토바이임, #2 음주운전 차량

5) 원처분기관에서 의뢰한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회신은 다음과 같다(발췌).

가) 법률자문 요청 내용: 출퇴근재해 해당여부 및 구상권 행사 실익 관련

나) 답변 내용

- 청구인은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회사제공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재해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침 05:30경 출근을 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타려고 했지만 앞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 운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출퇴근 버스는 그 상황을 파악한 05:40경 타게 되면 지각을 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재해 당시 신호위반 건에 대하여 교통량이 많은 3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들이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사정임에도 무리하게 정차해 있는 선행 차량들을 안전지대로 우회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신호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시킨 사고로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췌).

- 조사자 의견: 상기 재해는 2019. 5. 12. 재해자가 자택에서 회사에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출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상의 출퇴근 방법은 사업장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이나 재해 당일엔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통상의 출퇴근 경로는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인 점, 경로상 일탈/중단이 없는 점은 확인되나, 법률자문 결과, 신호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시킨 사고로 보여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5. 21.)

- 1) 상병명: Traumatic EDH, Blow out fx., Skull fracture(open)
- 2)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현재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함몰 두개골 골절은 잘 수술 치료되었음. 이마의 상처가 오염된 창상이어서 추후 감염의 위험이 있으나 현재는 특이 소견 없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9. 5. 12. 뇌 CT 소견, 좌측 안구 주위로 'blow out fracture' 확인되며, 좌측 전두골 개방성 골절 소견 있음. 이 부위 하방으로 경막의 혈종 소견 확인됨.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타당, 입통원 요양기간 승인 타당

5 관계법령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예측 출발한 과실은 있으나 측면에서 오던 음주 차량에 의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9. 5. 12.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 large, bold number '5'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one above and one below, each with a gray border. The background consists of a dark gray upper half and a light gray lower half, separated by a curved line.

5

기타사고

1

»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8106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9. 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 및 배관 업무보조를 하던 자로서, 2018. 5. 30.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려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시각장애·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시각장애, 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는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 외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뇌진탕’은 사고 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확인되지 않아 타당성 부족함.”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해경위 상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발생 전일 동료근로자 가해자와 업무관련 다툼이 있었고(가해자가 수도 부속 50×15T를 찾아오라고 하여 찾아줬으나 잘못 찾아왔다고 성질을 부려 다툼이 있었음),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 중에 잦은 다툼이 있자 다른 동료근로자가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료 근로자가 화해시키다가 업무 관련으로 다투면서 가해자에 의해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회사가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사인 (주)△△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5. 30. 08:10경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사고로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시각장애·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를 진단받고 2018. 7. 3.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2) 원처분기관의 이 건 처분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자 근로관계

- 채용일: 2017. 10. 16.
- 소속(하도급사): (주)△△
- 근로시간: 08:00 ~ 17:30

- 담당업무: 조공, 신축현장 배관(소방설비 설치)업무 보조
- 일당: 13만원(매월 15일에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

나) 가해자 인적사항

- 동 현장 채용일: 2018. 5. 22.
- 소속(하도급사): (주)△△
- 담당업무: 기공, 배관사

다) 재해경위에 대한 재해자 진술(2018. 7. 17. 공단 내방하여 문답한 내용 요약)

- 재해발생 전일(2018. 5. 29.) 14:00경 가해자가 부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재해자가 부품을 찾던 중 해당 부품이 없어 다른 부품을 가져다주자, 부품을 잘못 가져왔다고 회를 내서 말다툼을 함.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끝에 가해자가 연장(스페너)을 들고 재해자를 치려고 하자 재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음. 이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일하다가 당일 업무 종료하고 귀가하였음
- 재해발생 당일(2018. 5. 30.) 07:00경 출근하여 현장 소장이 재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팀으로 일하라고 지시함. 08:00경 작업 장소에 모여 다른 근로자들이 재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말을 붙이는데, 가해자가 '저 인간과 일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싸움을 시작함. 서로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는 등 욕심각신하다 인부들이 말려서 서로 떨어졌는데, 이후 가해자가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서 재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타격하였음(안전모 착용)
- 사고 발생 직후 재해자는 머리에 통증을 느껴 팔로 머리를 움켜쥐고 현장 사무실로 가서 현장 소장에게 이야기 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갔음

라) 재해경위에 대한 가해자 진술(2018. 8. 9.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2018. 8. 17.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요약)

(1)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상 사건개요

-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동료인 자들로, 피의자는 2018. 5. 30.

○ I. 최초/유족(사고)

07:30경 신축건설현장에서 피해자와 전일 작업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공사자재(직경 약 2.5cm, 길이 약 30cm, 소재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것임.

-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 진단 받음

(2) 피의자신문 조서 상 진술 내용 요약

- 공사현장에서 피의자는 배관사이고 피해자는 조공이라 일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현장 소장과 인맥도 있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고집대로 행동을 하여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함
- 재해발생 당일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피의자가 '뭘 불만이 많냐, 말이 많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덤비자 피의자가 현장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워서 피해자의 머리(안전모)를 장난삼아 툭 쳤다고 함
- 사고 당시 바로 아프다고 하지는 않았고 1시간 정도 지나 사무실에서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였음. 피의자가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였고,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였음

마) 보험가입자 의견(2018. 7. 13. 보험가입자의견서 내용 요약)

- 피해자와 가해자는 2018. 5. 22.부터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작업 중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며칠 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음. (㉸)△△(하도급사) 내부적으로도 둘의 관계를 인지하여 둘이서만 있으면 다툼이 예상되어 이△△(2018. 5. 28. 입사)을 같이 배치함
- 사고 당일 현장에서 둘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이 두 사람에게 화해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와는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하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급수용 배관 파이프를 집어서 피해자를 가격하려 함
- 이△△이 가해를 말리고 진정시키는 도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때릴 테면 때려 보라면서 머리를 들이 밀고 상대방을 자극시켜 순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안전모 착용) 파이프로 내려침

바)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

- 위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해자는 사업장(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로하던 동료 근로자 가해자와 평소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당일 함께 일하기 싫다며 상호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는 등 시비가 붙었고, 이후 화가 난 가해자가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서 재해자의 머리(안전모 착용)를 1회 타격한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단 자문의사(안과 2인, 신경외과 1인, 정형외과 1인)의 의학적 자문결과, 신청 상병 중 ‘시각장애, 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은 명확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 외상(재해경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뇌진탕’은 사고 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증상 등 근거소견 확인되지 않아 타당성 부족하다는 소견임
- 따라서 재해자가 신청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이 타당함

- 3) 청구인은 2019. 2. 11.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업무상 08:30경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어 일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음. 부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잘못 가져왔다고 해서 다했으며, 다음날 전날 여파로 가해자가 일을 못 하겠다 하면서 업무로 다투다 머리를 맞았음. 당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맞았는데 의식을 잃지 않았고 어지러웠음. 회사에서 가해자와 같은 조로 짜 주어서 4~5명이 당시 일을 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1) 최초요양 소견서(정형외과의원, 2018. 6. 27.)

- 2018. 5. 30. 병원에서 X-선 및 CT(두부)촬영 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심한 두통, 어지러움, 경추부 동통 운동장애 호소하여 본 의원으로 전원 입원하였음.

○ I. 최초/유족(사고)

- 안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입원 2018. 5. 31. ~ 6. 20.)
-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통원 2018. 6. 21. ~ 7.14.)

2) 진단서(병원, 2018. 5. 30.)

- 병명(임상적 추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두통, 턱관절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 후 입원한 환자로 이학적, 신경학적, 영상의학적 소견 상 상기명으로 판명되어 진료중이며 입원치료와 향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대한 관찰을 요함(신경외과 영역)

3) 일반소견서(△△병원, 2018. 6. 7.)

- 병명: 시각장애, 시야장애
- 상기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 상 우안 교정시력 0.8 좌안 교정시력 0.2 측정되나 안저검사 및 망막단층 촬영 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1) 자문의사1(안과): 의무기록 검토 시 재해자는 머리타박상 이후 주관적인 시력저하를 호소하나 현재 저명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 내원한 두 병원에서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된 상병확인 시 재판정함이 타당함
- 2) 자문의사2(안과): 의무기록 및 검사자료를 토대로 하였을 때 현재의 교정시력 0.8/0.2를 설명할 망막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 시각장애 상병은 '시신경 및 뇌병변에 의한 시력 저하'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안과 또는 신경과 진료를 필요로 함. 외상 이전의 안과 진료 기록이 판단에 도움이 되겠음
- 3) 자문의사3(신경외과): 뇌진탕은 사고당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일시적 신경학적 결손 증상 등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타당성 부족하다고 사료됨

- 4) 자문의사4(정형외과):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 타당. 통원 3주 타당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업무 관련으로 다투던 중 가해자의 폭행에 의해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 경위 상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동료근로자의 폭행이라기 보다는 전날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재해 당일 회사에서 가해자와 청구인을 같은 조에 배치하여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관련한 언쟁 중에 폭행이 이루어져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되나, 재해 당시 의식 소실 및 두부 외상의 의학적 소견이 없고, 시각 장애 및 시야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 없어 신청 상명명 중 ‘뇌진탕’ 및 ‘시각장애, 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상명명 ‘두부(좌측 측두부), 관자놀이, 턱 좌상’ 및 ‘경추부 염좌’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I. 최초/유족(사고)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 중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는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두부(좌측 측두부)·관자놀이·턱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상대방을 당일 처음 보게 된 작업자로 청구인과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용접을 하기 위해 준비한 선을 상대방이 운전한 테이블 리프트 차가 밟고 지나가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앞서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5224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9. 5. 15:30경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근로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사실은 확인되나, 수사 자료 검토상 확인된 공동폭행 사실은 직무내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나 가해동기 및 가해의 원인이 업무수행 중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역 근처 건설현장 기계실에서 냉동기 배관설치 작업 중 청구인과 동료와 같이 그라인더 컷팅 작업을 하였고, 등 뒤로 렌탈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보았는데, 뒤로 임시 배전반까지 연결된 용접 전원 선과 그라인더 전원 선을 렌탈 바퀴가 밟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 바퀴가 전원 선을 합선시킬 위험이 있어 ‘스톱’이라 외쳤다. 청구인이 동료에게 “렌탈 지나가는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고 상대방 2명 중 렌탈 운전자가 내려와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하여 청구인은 “렌탈 선을 밟으면 되느냐”하자 렌탈 운전자가 청구인 목을 찔고 순간 사람들이 말렸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일해야 되니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렌탈 운전자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청구인 얼굴을 때려 쓰러졌다. 그 뒤 두 사람이 함께 폭행을 했다. 청구인은 발목을 다쳐 따라 갔고 한층 올라간 곳에서 더 폭행을 당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란 걸 알았다. 동영상을 찍으려 하자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기도 맞았다며 거짓말만 늘어놓았고 현재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청구인 회사 사장님도 외면하고 사고 후에 일도 못하고 있다.

경찰 및 검찰 자료도 쌍방폭행이 인정된다 하여 업무수행 중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어느 업체인지도 몰랐다. 당시 여러 위험요소가 혼재한 가운데 우리 회사의 작업 마무리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 2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사유로 재해와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지만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재해 경위에 기술하였듯이 타 업체 작업자(가해자)의 위험한 행위(렌탈바퀴로 작업선을 밟는 상황)를 보고 제지시키려 했던 상황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폭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작업 중 안전 작업을 위해 동료도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이다. 작업과정 중 안전사항에 관한 행위였고,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I

최초 / 양쪽 (사건)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최초요양 불응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피의자 두 명은 부자기간으로 ○○ 소속 근로자들이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이다.

○ 피의자 폭력행위 등(공동상해)

피의자들은 2018. 9. 5. 15:30경 위 건설현장 지하 기계실에서 설비배관관련 작업을 하던 중

1. ‘테이블 리프트’라는 렌탈 기계를 운전하다가 같은 공사장에서 냉동장비 설치 하던 청구인이 바닥에 깔아놓았던 전선을 밟았고 이를 본 청구인이 큰소리로 “스툼”이라는 소리를 지르자 기계를 멈추고 내린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 라며 인쟁을 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가해자 손으로 청구인의 목 부위를 치고, 옆에서 일하던 아들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청구인에게 던지며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청구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가해자 두명이 청구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2. 다른 인부들이 말려 가해자들이 기계실 윗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청구인이 뒤따라가 ‘너는 왜 끼어드냐, 더 때려라’하고 하자가해자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 청구인의 상해

피의자는 2018. 9. 5. 15:30경 위 건설현장 지하 기계실에서 냉동장비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배관커팅 장비의 전원선을 ‘테이블리프트’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밟고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가해자를 향해 샷대질하고 이에 테이블 리프트에서 내린

○ I. 최초/유족(사고)

가해자가 '부서진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자 '이런 또라이***'라며 욕설하여 가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밀치자 오른발로 가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가해자가 더 때리라고 하며 다가서자 주먹으로 가해자의 뒷동수를 1회, 턱부위를 2~3회 때리고, 가해자의 아들 및 인부들이 달려 가해자가 기계실 윗층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가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두통증, 경추염좌, 좌측 흉부염좌' 병명의 21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

○ 사건인지경위

- 사건 직후 경찰 신고하였음. 가해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가해자도 청구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제출

○ 가해자(부)의 진술

- 피의자는 청구인이 욕설하여 왜 욕을 하나며 밀치자 발로 폭행하여 자신도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웠고, 함께 있던 아들 및 인부들이 달려 윗층으로 피했는데 청구인이 따라와 다시 말다툼 중 청구인이 또 폭행을 가했으며, 자신만 청구인과 싸웠고 아들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가해자(아들)의 진술

- 가해자(부)가 청구인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청구인을 말렸으며 말리는 과정에서 몇차례 바닥에 넘어졌을 뿐 아버지와 함께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폭행당한 것도 없다는 진술로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주장이다.

○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 청구인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면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폭행당해 경추 염좌 등 피해를 입었다며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를 제출함

- 당시 함께 일하던 인부 세명은 가해자 아들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
- 청구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현장을 떠나는 가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및 피해사진, 사건경위에 대한 진정서, 직장동료가 작성한 탄원서(청구인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를 제출하였음

○ 조사자 의견

- 가해자는 서로 주먹질하며 싸웠다고 인정하였고, 가해자 아들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청구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두 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현장에 있던 일행의 진술, 제출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으로 보아 공동으로 청구인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이고
- 청구인은 가해자 둘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제출된 상해진단서 등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임

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8. 9. 5. 8번 게이트 경비실에 경찰차가 도착했다는 연락받고 이동해 상황을 보고 받음
- 지하 2층 기계실이다 보니 작업 여건상 여러 공정이 모여 있고 시끄러운데 재해자가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자기 동료에게 렌탈이 작업 전선을 밟고 지나가는데 관리 제대로 못하냐고 큰소리로 말할 것을 렌탈 상부 작업자가 본인한테 소리를 지르는 줄 알고 오해가 생겨 말다툼 끝에 서로 싸웠다고 알고 있음
-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을 때 개인적인 다툼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법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기에 개인적인 다툼으로 전달 받았음
- 비록 당사 관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나 개인 간의 다툼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다툼 당사자 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1호(업무상 사고)
-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가해자들과는 현장에서 처음 보는 사이이며, 가해자의 위험한 행위(렌탈 바퀴로 작업선을 밟는 상황)를 보고 제지시키려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장 안전업무에 기인된 업무수행 중 재해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상대방은 청구인이 당일 현장에서 처음 보게 된 작업자로 청구인과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용접을 하기 위해 준비한 선을 상대방이 운전한 테이블 리프트 차가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앞서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과 노인복지센터 시설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상 재해일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시설장의 폭행행위 원인이 청구인이 과도하게 도발시켰다고 볼만한 정도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은 직무에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537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6.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1. 13.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열린 구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어깨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재해는 2018. 11. 10. 청구인이 시설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2018. 11. 13. 시설장과의 다툼으로 발생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해고 통지를 받아들인 후 발생한 폭행사고이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 6. 10.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의 처리 내용 중 청구인의 해고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 2018. 11. 12.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았고, 청구인은 거짓말로 청구인을 해고하고, 근무지에서 모함, 폭언을 한 시설장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위하여 2018.

11. 12. 오후에 사회복지사에게 거절의 문자를 보냈으나, 사회복지사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답을 하지 않았고, 시설장 또한 업무정지 및 해고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시설장의 폭언으로 기분이 상하여 일시적으로 퇴사 의지를 밝혔음에도 시설장이 이를 수긍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후 2018. 11. 29. 시설장이 청구인에게 요양보호대상자인 할머니 (이하 “요양보호대상자”라 한다.)를 타 센터로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문자를 보냈고 청구인은 법대로 하겠다고 답장을 하면서 퇴사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8. 11. 29. 전에는 시설장과 청구인 양쪽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 적이 없었으므로 2018. 11. 29.까지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였으므로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였다.
 - 근로기간: 2018. 11. 1. ~ 2018. 11. 10.(4대보험 기준)
 - 재해경위: 청구인이 2018. 11. 13.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함(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 원인)
 - 청구인에 대한 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 처리 내역

| | | | |
|--------------------|---------------|------------|---------------|
| ○ 소속 사업장명: ○노인복지센터 | | | |
| 고용일자 | 2018. 11. 1. | 고용신고 접수일자 | 2018. 11. 30. |
| | | 고용신고 처리일자 | 2018. 12. 3. |
| 고용종료일자 | 2018. 11. 10. | 고용종료신고접수일자 | 2018. 12. 28. |
| | | 고용종료신고처리일자 | 2018. 12. 29. |

2) 청구인 소속 사업장(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확인)

| 연번 | 소속사업장 | 고 용 기 간 | 비 고 |
|----|----------|-----------------------------|-----|
| 1 | ○○재가복지센터 | 2019. 1. 2. ~고 용 중 | |
| 2 | ○○노인복지센터 | 2018. 11. 1. ~2018. 11. 9. | |
| 3 | △△노인복지센터 | 2018. 9. 21. ~2018. 10. 31. | |
| 4 | □□재가복지센터 | 2018. 7. 2. ~고 용 중 | |
| 5 | ○○재가복지센터 | 2018. 7. 1. ~2018. 10. 12. | |
| 6 | XX간호요양센터 | 2018. 2. 21. ~2018. 4. 28. | |
| 7 | ○○재가복지센터 | 2018. 2. 1. ~2018. 9. 30. | |

- 연번 7의 “○○재가복지센터”는 이 사건의 시설장이 대표였으나, 폐업 후 연번 2의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시 요양보호대상자의 확인서, 방문서비스요양 일정표 등과 이 사건 발생 전후 시설장과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첨부하였다.

4) 요양보호시스템 운영(2019. 7. 31. 16:40 시설장 유선 확인 사항)

- 요양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증서 및 전자태그를 발급하여 요양보호대상 수급자의 집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복지센터는 수급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 요양보호사는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스캔하여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각각의 복지센터는 전산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있으며, 1명의 수급자가 2곳의 복지센터에 등록될 수 없으며, 센터를 옮길 경우 기존의 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운 복지센터에서 이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인증서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딸은 2019. 7. 5. 대리인선임 신고 및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시설장의 폭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몇 번 거절하였으나, 그 거절로 인해

○ I. 최초/유족(사고)

청구인을 해고한 사람이 없었고, 재해 당일인 2018. 11. 13.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

- 2018. 11. 12. 시설장이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 2018. 11. 12.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로부터 다시 출근해 달라는 요청 문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절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설장이 “이를 받아들일것음. 계약을 해지함. 해고함”과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

6) 이 사건 관련 검찰 및 경찰 조사 결과

- 시설장은 2018. 11. 13. 11:10경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자신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구인이 요양보호대상자를 다른 복지센터로 옮겨 자신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그 곳에 있던 나무 그릇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5~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좌측 어깨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음
- 청구인은 시설장의 행위에 대하여 손으로 시설장의 목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시설장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경추부·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7) 소속 사업장은 청구인에게 2018. 11.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급여 내역서 확인).

- 청구인은 2018. 11. 9.(금) 근로 후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2018. 11. 10.(토)~2018. 11. 11.(일) 휴일을 보낸 후 2018. 11. 12.(월)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으로 정상 출근하였고, 미리 와 있던 시설장으로부터 폭언과 업무지시를 받으며, 3시간 근로를 하였고, 재해 당일(2018. 11. 13.(화))에도 정상 출근하였다가 시설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의 출근 사실은 시설장과의 SNS 대화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시설장은 해고통보 이후 다시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통보 전인 2018. 11. 9.까지만 근로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8) 초진기록(2018. 11. 13. 병원)

Parietal scalo painful swelling facial abrasion Lt hand abrasion

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 참조함. 상병 인지됨.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I. 최초/유족(사고)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8. 11. 13.에도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노인복지센터 시설장과의 SNS 내용 상 재해일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폭행행위에 있어 재해 당일 청구인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도발하였다고 불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은 직무에 수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18. 11. 13.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회사 임원이 업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청구인의 아내가 해당 임원에게 항의하던 중 발생한 싸움이 발생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당 임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07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장례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8. 3. 2. 08:30경 장례원에 있는 매장 안에서 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사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처 간의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말리려다 화가 난 상사에게 청구인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I. 최초/유족(사고)

청구인은 사건 발생일 전 2018. 3. 1. 10:00경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는 중 외부에서 직장 상사인 이○○이 사무장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화장 예약을 잡아라” 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신상 정보도 없이 어떻게 잡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 대뜸 욕설을 하며 앞서 간다면서 또 욕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3. 2. 05:3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장례비 작성 등 업무수행 중 08:30경 첫 상가집 발인을 위해 수급하여 매점에 보관하기 위해 들어왔다. 청구인의 처가 이○○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전날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 물어보기 위해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언성과 폭행이 시작되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에게 안면부를 맞아 치아가 흔들리고 여러 곳에 타박상 흔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화장예약이라는 업무로 욕설이 기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이○○ 간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입은 부상이었던 점과 2018. 12. 12. 업무상 질병으로 “적응장애”를 승인 받아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사적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및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지방법원 약식명령상에서 확인되는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2018 **** 가. 상해
(2018형제****) 나. 폭행

○ 피고인: 이○○

○ 주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08:30경 ○○시에 있는 ○○장례원에 있는 매점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간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술 내용(2018. 3. 11.)

- 청구인: 제가 일하고 있는 장례원은 대표자가 큰 처남, 이사는 둘째 처남이고, 부장은 동서인 친척관계입니다. 저는 사무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8. 3. 1. 오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이 전화를 하더니 “고인을 ○○화장터로 잡아”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있어야 잡죠?”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이나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일처리를 하니깐요. 그런데 이○○이 갑자기 “앞서가지 말아라 이 **놈아”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한참 후에 전화를 끊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손님이 계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제가 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이 전화로 이○○의 가족들 음성이 들리고 차로 이동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안에 초등학생 조카 목소리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 내가 조카뻘 되는 아이 앞에서 욕을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과 같이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2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의 모욕감을 느끼면서 참아 왔는데 이○○은 그 동안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참고

퇴근을 하였는데 저녁에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가 못해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 놓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 청구인의 처: 그래서 제가 2018. 3. 2. 아침에 출근해서 오빠 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오빠가 매점 문 앞에서 있길래 제가 오빠한테 잠깐 매점으로 들어와 보라고 했고, 오빠가 매점 안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문을 닫고 어제 남편과 있었던 일을 물어 보았죠,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이 기집애가 한 사람 말만 듣고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처리의 질차가 인적사항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따지게 되었는데 제가 따지니까 화가 났는지 매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서 제 얼굴로 던졌고, 제 우측 콧등에 맞아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더 때려 보라고 했더니 오빠가 주먹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고 시늉을 하며 다가오길래 제가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다가 침상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옆에 복도에서 듣고 남편과 언니가 듣고 매점으로 들어와서 언니는 저를 말리고 남편은 오빠를 말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청구인: 제가 말리려고 이○○의 양팔을 붙잡았더니 뿌리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제 입술과 얼굴을 2회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이 멍해서 있는데 이○○이 욕을 하면서 제 목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길래 저도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이○○이 제 목살을 잡아서 제 상의 단추가 모두 뜯어졌고, 밖으로 나가서 저도 때려보라고 하였더니 이○○이 “너 이 **놈아 내가 오늘부로 내 손으로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나) 이○○(가해자)

-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동생(청구인의 처)이 “오빠 나 좀 봐”라고 해서 매점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왜 우리 남편한테 욕을 했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해 줬더니 “오빠가 뭘데 우리 신랑한테 욕을 해?”라고 하면서 악을 쓰며 덤비길래 제가 “이런 **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탁상용 달력을 집어 들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다시 저한테 달력을 다시 집어 던졌던 것이고요. 제 가슴에 맞았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제 주먹을 머리 위로 쳐들면서 “이* * 같은 년이 어디서 오빠한테 덤벼”라고 때릴 것처럼 시늉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청구인이 들어와서 양손으로 제 목살을 잡으면서 저를 밀치길래 제가 뒤로 넘어지려다가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린 것입니다.

- 3)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은 2008. 7. 1.부터 2018. 6. 30.까지 장례원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18. 3. 5. ‘장례식장에서 20년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업무로 시신이 들어오면 시신 안치부터 염, 발인, 영구차에 인도하여 장지로 보낼 때까지 장례절차 일체를 청구인 책임하에 하였고, 사업장내 이사에게 상습 폭행과 언어폭력 등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적응장애, 공황장애’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이 장례원에서 10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사의 상습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하여 법원에서 판결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일백만원을 처한 심리적 외상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적응 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공황장애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 재해)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3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화장예약이라는 업무로 욕설이 기인되었고, 이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2018. 3. 5. 진단받은 상병명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등 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18. 3. 2. 발생한 이 사건 폭행의 원인이 전날 이사 이○○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사업장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아내가 이○○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따지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Ⅱ

최초/유족(질병)

1. 뇌심혈관계 질환
2. 근골격계 질환



1

뇌심혈관계 질환

1

»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취소"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4525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5.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II

최초 / 업무 (재보험)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08. 7. 26.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던 바, 음주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격년으로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심하여 약물을 복용하라는 말을 전혀 들은바가 없으므로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는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월당 4일의 휴무일 중 2일은 쉬고 나머지 2일은 휴일 근무를 하였다.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를 확인해보면, 매월 정기 월급(4,000,000원)에 휴일 근무 추가 급여 300,000원(1일 150,000원×2일)을 추가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2015. 11. 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규정상으로는 09:00 ~ 21:00가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 정도 이른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조식시간도 30분에 불과함에도 1시간으로 산정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조기 출근시간, 조식시간 및 휴일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재판단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

청구인은 2015. 11. 6.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조리 중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단받은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에 대하여 요양신청함

2)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발췌

가) 근로관계

- 입사일: 2015. 11. 6.

- 직책: 주방장

- 근무시간: 09:00 ~ 21:00

※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 사업주는 09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08시경 출근하여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진술함

- 휴게시간: 조식 10:00 ~ 11:00 중 약 30~40분, 중식 15:00 ~ 16:00

- 휴무일: 1주에 6일 근무 후 1일 휴무

※ 원처분기관 조사 시 사업주와 청구인 모두 1주일에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실제로는 1개월에 4일의 휴무일 중 2일은 쉬고 2일 정도는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청구인의 담당 업무 및 급여

- 담당 업무: 2015. 11. 6. 입사 시에는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도부터 메인 주방장으로 근무함

- 급여 내역: 사업주는 청구인에 대한 급여는 2017년까지는 매월 190만원이었고, 2018년부터는 메인 주방장이라 매월 40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급여내역)'를 확인한 바, 2018. 1. 10. 4,300,000원, 2018. 2. 10. 4,300,000원, 2018. 3. 7. 4,300,000원, 2018. 4. 11. 2,250,000원을 대표자로부터 입금 받았음이 확인됨(청구인은 2015. 11. 6. 입사하여 급여기산일은 전월 6일 ~ 당월 5일이며, 2018. 4. 11. 입금액은 2018. 3. 20. 재해 발생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급여액이라고 진술함)

※ 청구인은 매월 정기 급여(4,000,000원)에 휴일근무 수당으로 300,000원(1일 150,000원 × 2일)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다) 청구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판단

- 청구인은 오전 9시가 공식적인 업무 시작시간이지만, 보통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여 재료준비 등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재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업무 시작(9시) 이전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사업주와의 유선통화 과정에서 일찍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임을 확인하였음
 - 청구인은 1주당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2일 정도 휴무를 하였고 나머지 2일은 일당(추가 급여)을 받고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에는 사업주 확인서 및 재해자 문답서상에는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고 답변한 바가 있음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식사시간은 보통 10~20분이며, 간단한 식사 후 주문이 있으면 조리를 하였고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조사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주장한바 없음
 -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09:00 ~ 21:00(12시간)가 근무시간이며, 조식 1시간(10:00 ~ 11:00), 중식 1시간(15:00 ~ 16:00)의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음. 또한 1주일에 1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으로 산정
 - 발병 전 4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으로 산정
 -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 58시간 20분으로 산정
- ※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 산정에는 설날 휴무(2018. 2. 15. ~ 2018. 2. 17.)가 반영되었음

라) 돌발상황 등 스트레스 요인 조사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마)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7. 2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1회 진료
 - ※ 2008. 7. 26. 병원/ C.C) 상기 환자는 내원 1일 전 저녁 10시 30분경 음주상태(사고 후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되었음. 혈중알콜농도 0.177)에서 오토바이 TA발생하여 local에서 ○○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사진 및 Brain CT상에서 skull Fx., C-sprain, occipital lobe의 ED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됨./ 혈압: 180/90mmHg
 - ※ 청구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체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바) 건강검진 내역

- 2009. 9. 1. 정상 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5. 9. 23. 정상 B(빈혈),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2017. 3. 15. 정상 B, 일반질환의심(비만, 이상지질혈증)

사)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5kg
- 음주: 무
- 흡연: 유(1일 1갑)
- 가족력: 없음

아)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발취

- 2018. 3. 20. 18:54 병원/ C.C) dizziness, 힘이 없다, 왼쪽이 좀 더 심하다/ P.I) 금일 내원 30분 전 일하고 있다가 어지럼증, 힘이 없다, 왼쪽이 더 심하다/ Brain MRI: Acute infarction in right basal ganglia

○ II. 최초/유족(질병)

- 2018. 3. 20. 20:14 △△병원/ C.C) Left hemiparesis, onset: p.m 6:30경(2시간 전)/ P.I) 과거 2년 전까지 heavy alcoholics 였던 분으로 2년 전부터 술을 전혀 안하고 있으며 하루에 담배 1갑 smoking 하시는 분임. 기저질환은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경 일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증상으로 병원에서 Brain MRI/A 시행 후 본원으로 내원하심. /Imp) Rt. LSA T infarction/ Golden time 이내에 오셨으나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처음보다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tPA indication이 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Sx progression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병변이 있음을 말씀드렸으며, 이후에는 tPA 사용이 불가함을 재차 설명드립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주요 내용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가)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는 근무형태로 09:00 ~ 21:00(12시간)의 근무시간 중 조식 및 중식 각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1일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한 후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8시간 20분으로 산정되었다.

- 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조식 및 중식 각 1시간을 휴계시간으로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식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에 사업주도 조식 시간은 약 30~4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1일 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20~30분 정도를 추가로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 청구인과 사업주는 청구인의 월급여는 4,000,000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개월에 4일 정도의 휴무일 중 실제로는 2일 정도 휴무를 하고 2일 정도는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상에서 사업주로부터 매월 4,300,000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정기 월급여 4,000,000원과 휴일근무 2일치의 추가 급여 300,000원(1일 150,000원×2일)을 합산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 마)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1개월에 2일의 휴일근무 근무시간(1일 10시간×2일)이 추가로 합산될 경우, 청구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산정된다.
- 바)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2018. 3. 28.)

- 신청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 종합소견: 상기 환자 우측 렌즈핵 선조체 동맥 뇌경색에 의한 좌측 반신 마비 증상에 대해 절대 안정과 2차적인 예방 및 원인 평가 위해 입원하였고, 이후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호전 양상 평가 위해 외래 추시 요함/ 신청기간:2018. 3. 20. ~ 2018. 4. 17.(입원 2주, 통원 2주)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8. 4. 23.)

- 제반 영상검사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미세혈관 뇌경색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뇌경색

○ II. 최초/유족(질병)

병변은 동맥경화성 뇌허혈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초래된 병변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2018. 5. 15.) 발췌

- 청구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청구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중요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계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은 산재 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청구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발생한 '뇌경색'을 요양신청한 사건임. 청구인의 작업 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5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약 65시간이어서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급격한 업무강도나 업무량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고 특별한 개인질병은 없었음. 청구인은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여 '뇌경색'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8. 1. 1. 시행)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의1에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 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휴일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 만성 과로 상태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II. 최초/유족(질병)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6646호
-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는(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전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은 자료검토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 4월에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요일 격주에 휴무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배송일지를 확인해 보면 원처분기관 조사와는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톡 내용 등을 볼 때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배송오더가 많아 고인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고인은 ○○건설(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2) 청구인은 고인이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시멘트를 쌓는 작업과 팔레트를 회수하여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4. 15. 자재배송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과로가 심하였고, 담당 영업부장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고인은 2015. 9. 7.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9.5시간(평일 07:30 ~ 18:00, 단 격주 토요일 근무 시 07:30 ~ 16:00), 1주 평균 5.5일 (약 52시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었다.

4) 업무내용

고인은 시멘트, 레미탈 등을 지게차로 5톤 화물차량에 상차하여 동 차량을 운행해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멘트 배송업무

- 원처분기관 조사에 따르면, ○○건설(주)의 ○○본부사무소는 주요 고정거래처가 20여개소가 있으며, 자재배송은 운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배송을 하지 않으며, 1일 최대 4~5회에 왕복 최대 200km정도를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를 배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재배송 직원들은 눈이나 비가 오거나, 주문량 감소로 자재배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본인 책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멘트 포대를 팔레트에 다시 쌓는 하화 작업을 하였다.

나) 시멘트 하화작업

- 시멘트공장에서 팔레트 위에 50포대가 쌓여 배송 온 시멘트 포대를 그대로 배송을 하게 되면 무너져 넘어지고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1팔레트에 실려 있는 시멘트 50포대(1포대 무게 40kg)를 지게차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포대를 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격자 형태로 다른 팔레트 위에 다시 쌓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하화작업이라 한다.
- 하화작업은 외주를 주어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으로 고인의 담당 업무는 아니나, 자재 배송이 없거나 여유시간이 있는 경우 금전적 이유로 자재배송을 하는 직원들이 본인들도 하화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알아서 하화작업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하였다.

○ II. 최초/유족(질병)

- 단, 고인은 2017. 4. 22.까지는 시멘트 하화작업을 한 이후 2017. 4. 23. 이후 부터 발병일인 2017. 7. 3.까지는 성수기(4월~6월, 9월~11월)로 배송량이 증가 되었으며, 배송업무를 혼자서 하였으므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시멘트 하화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팔레트 회수 및 보수 작업 등

- 시멘트와 레미탈은 나무로 짠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5톤 트럭에 상차하여 배송을 하는데, 시멘트와 레미탈을 배송하기 위하여는 항상 팔레트가 필요 하다. 따라서 팔레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구매 또는 제작을 하여야 하나 구매나 제작보다는 기존의 거래처에 나가 있는 팔레트를 수거하여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 자재배송직원들이 거래처에 나갔다가 팔레트를 수거해 오면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였다.
- 단,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팔레트가 망가져 못 쓰게 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여 가끔 팔레트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대서 못을 박는 등의 보수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수를 하지 않는 팔레트가 더 많았다.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원처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상기 근무시간은 고인의 배송 후 회사복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지정된 출, 퇴근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발병 전 12주간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 | 총 배송횟수 | 1일평균 배송횟수 | 1일평균 배송거리 | 1일평균 시멘트 하화작업 | 1일평균 팔레트 회수개수 |
|---------|--------|--------------|--------------|------------------|------------------|
| '17. 3월 | 57회 | 2.59회 | 72.59km | 11.5개 | 21.13개 |
| '17. 4월 | 62회 | 2.95회 | 110.38km | 9.5개 | 22.78개 |
| '17. 5월 | 87회 | 3.22회 | 114.88km | 6개 | 36.41개 |
| '17. 6월 | 97회 | 3.88회 | 149.68km | 0개 | 60.83개 |
| '17. 7월 | 1회 | 1회 | 90km | 0개 | 59개 |

- 2017. 3. 1. ~ 2017. 4. 15. 기간 동안 총 31일간 실 근무일수 중 자재배송 건수 77회, 배송거리는 왕복 2,422km, 하화작업은 29일간 335팔레트, 팔레트 회수는 24일간 500개 회수
- 2017. 4. 17. ~ 2017. 7. 3.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65일간의 실 근무일수 중 자재 배송 건수 227회, 배송거리는 왕복 8,427km, 하화작업은 6일간 34팔레트, 팔레트 회수는 24일간 1,012개 회수
- 자재배송업무를 함께 하던 동료근로자 퇴사(2017. 4. 17.) 이후 작업량

| | 1일평균 배송횟수 | 배송거리 | 시멘트 하화작업 | 팔레트 회수개수 |
|--------------------|-----------|----------|----------|----------|
| 2017. 4. 17. 이전 | 2. 48회 | 78.13km | 11.55팔레트 | 20.83개 |
| 2017. 4. 17. 이후 | 3. 49회 | 129.64km | 5.6팔레트 | 42.66개 |

-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업무량은 배송일지에 기초할 때 현저하게 적으며, 원처분기관의 설명대로 배송일지에 2번 기재된 동일한 배송지를 1회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아 고인의 업무량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 주장대로 중복된 배송지를 1회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산정했을 때 배송 일지에 기록된 총 배송횟수와 이를 토대로 한 1일 평균 배송횟수는 다음과 같다.

○ II. 최초/유족(질병)

| | 총 배송횟수 | 1일평균 배송횟수 |
|---------|--------|-----------|
| '17. 3월 | 56회 | 2.55회 |
| '17. 4월 | 67회 | 3.19회 |
| '17. 5월 | 107회 | 3.96회 |
| '17. 6월 | 113회 | 4.52회 |
| '17. 7월 | 1회 | 1회 |

- 고인은 토요일 격주 휴무였으나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2017. 4. 15. 이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4. 22. 이후 실질적으로 주6일 근무를 하였고, 5. 1.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 고인은 배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레트 회수 실적도 증가하였고, 대신 시멘트 하화작업 실적은 감소하였다.
- 고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과 관련하여 배송일지 상 배송횟수를 기준으로 조사해볼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평균 배송횟수는 20회이며,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배송횟수는 22.1회이다.

다)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영업부장과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상하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 이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구체적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배송물량이 증가하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2018. 1. 1. 시행된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기타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2008. 4. 22. ~ 2017. 6. 19. 기간 동안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음주는 주 2회, 소주 1~2병 정도, 흡연은 1일 1갑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8. 3. 25.)

- 1)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
- 2) 1)의 원인: 폐렴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료 검토 한 바,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와상으로 생긴 폐렴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2017. 7. 3. 07:15경 출근하던 중 집 앞 출근 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요양하여 오던 중 2018. 3. 25. 사망(사인: 급성호흡부전(추정), 폐렴)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성남지사에서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시멘트를 쌓는 작업과 팔레트를 회수하여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4. 15. 자재배송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과로가 심하였고, 담당 영업부장과외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의학적으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추정)’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II. 최초/유족(질병)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급성호흡부전(추정), 폐렴,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1) 자문의 1: 상기 1980년생 남성 피해자는 기존의 현 흡연력과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7. 7. 3. 출근 중 자택 앞에서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심폐소생술을 거쳐 전벽 심근경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응급 중재술을 통해 좌전 하행지 병변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체외보조순환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 손상에 따른 폐렴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임

피해자의 경우 업무 조사 상 피해자가 근무시간이 재해발생 전 55시간에 이르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존재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액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다소간의 과로는 존재하나 다른 업무요인이 부재하며 개인질병 측면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2형 당뇨병과 흡연력이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자문의 2: 청구인은 1980년생 남자로 2015. 9월부터 시멘트 배송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7. 7. 3. 출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급성 전층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8. 3. 25. 사망한 경우임

고정 주간 근무형태로, 발병 전 1주가 30% 이상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55시간 15분으로 12주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발병 약 3개월전부터 배송횟수가 상당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됨

2008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만, 고인의 발병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 가. 산업보험법 제5조(정의)1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2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II. 최초/유족(질병)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에 시달렸고 원처분기관의 조사와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증가된 배송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 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엔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8149호
- ➔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재해근로자(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4. 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사유를 축약하면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 II. 최초/유족(질병)

지금까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의하면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병이 있고, 그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부정맥 등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냉동기 관련 제품 판매에서 수급·영업총괄 책임, 영업부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 업무 외 냉동기기 견적작성, 견적제시 미팅, 사양검토·견적작성, 컬러 납품, 냉동기 시운전, 냉매분배기 교체, 냉동기 점검 요청 등 A/S, 승인도 작성 및 송부 등으로 퇴근 후 자택에서도 작업을 했으며, 갑작스러운 출장 스케줄로 인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내 관리인력 부족·내부갈등, 거래처 수급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했음에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부담과 관련지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기초 질환으로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재해 당시 망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점, 사체 검안의 소견 상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고인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존질병(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4 사실관계

가. 소속사업장 및 고인 근로내역(업무상질병판정서 확인)

- 1) 사업장명: ○○기기(주)

- 2) 산재보험 사업종류: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 3) 고인 채용일자: 2013. 5. 13.(근로계약서 확인), 경력직으로 채용
- 4) 재해일자: 2017. 11. 24.
- 5) 고인의 직위: 영업부 상무이사
- 6) 고인의 업무 내용
 - 냉동기 제품관련 판매에서 수급 영업총괄책임, 영업부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
 - 주간 업무 보고에서 확인된 담당업무: 냉동기기 견적, 견적제시 미팅, 사양검토 견적, 클러납품, 냉동기 시운전, 냉매분배기 교체, 냉동기 점검기 요청 등 A/S, 승인도 작성 송부 등
 - 2017. 4. 17. 조직도상 영업부 고인 포함 6명, 영업지원부 4명으로 부서총원 10명 (독자적 운영 A/S팀 2명 제외)
- 7) 고인 근무시간: 통상 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점심시간 60분
 - 고인은 영업부 상무이사로 상무 이상 임원은 출퇴근 및 근태 기록을 하지 않아 근무 시간에 대한 객관적 확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출장, 개인휴가 등 근태 관련 자료 없음)
- 8) 고인 출퇴근 시간
 - 고인은 자차 출근하였고,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40분 정도 소요됨
 - 청구인은 고인이 매일 06:00 자택에서 출발하여 06:40분 사업장 도착, 20:00 퇴근하여 자택에 20:30 ~ 21:00에 도착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장 확인 결과 관리부장이 평소 07:40경 출근하면 고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고 한다.
 - 고인은 출근 후 사업장에서 제공한 아침식사 함
조·석식은 회사 인근 지정식당에서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식대는 사업장에서 일괄 결제

○ II. 최초/유족(질병)

나. 소속 사업장 이전 근로 이력

- 1999. 12. 1. ~ 2013. 5. 17.
: 냉장유한회사, 냉동기관관련 기술영업업무
- 1996. 5. 13. ~ 1999. 12. 1.
: (주)○○, 냉동기관관련 도면작성업무

다. 재해 당일 고인은 2017. 11. 24. 정상 출근하여 근무 후 오후 휴가를 내어 병원에 입원 중인 장인을 만난 후 김장하던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하여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병원→교회 (차량으로 58분 소요/인터넷 지도 확인)

라. 청구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전일.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내용

- 재해발생일 전일은 고인 자녀의 수능 시험일이었고, 고인은 정상 근무하였다.
- 고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역에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다.
- 발병 전 1주일내: 45시간 근무

| 날짜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비고 |
|------------------|-------|---------|---------------|
| 2017. 11. 24.(금) | 04:13 | | 상병 발병 당일 |
| 2017. 11. 23.(목) | 09:00 | 특이사항 없음 |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 |
| 2017. 11. 22.(수) | 09:00 | | 상병 발병 전 1주간 |
| 2017. 11. 21.(화) | 09:00 | | |
| 2017. 11. 20.(월) | 09:00 | | |
| 2017. 11. 19.(일) | 00:00 | | |
| 2017. 11. 18.(토) | 00:00 | | |
| 2017. 11. 17.(금) | 09:00 | | |

2)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상황

| 발병전 | 기 간 | 근무 일수 | 총업무 시 간 | 야간 근무 | 주간별 근무시간 (주당 평균) |
|------|-------------------------------|----------|------------|------------------|---|
| 1주간 | 2017. 11. 17. ~ 2017. 11. 23. | 5 | 45:00 | 해 당 없 음 | ▶ 4주간 근무내역 - 총 185시간 16분 (주당 평균 46시간19분) - 총 28일중 20일 근무 (휴무일 8일) ▶ 12주간 근무내역 - 총 550시간 58분 (주당 평균 45시간55분) - 총 84일 중 55일 근무 (휴무일 29일) |
| 2주간 | 2017. 11. 10. ~ 2017. 11. 16. | 5 | 46:50 | | |
| 3주간 | 2017. 11. 3. ~ 2017. 11. 9. | 5 | 45:31 | | |
| 4주간 | 2017. 10. 27. ~ 2017. 11. 2. | 5 | 47:55 | | |
| 5주간 | 2017. 10. 20. ~ 2017. 10. 26. | 5 | 48:54 | | |
| 6주간 | 2017. 10. 13. ~ 2017. 10. 19. | 5 | 49:23 | | |
| 7주간 | 2017. 10. 6. ~ 2017. 10. 12. | 3 | 27:19 | | |
| 8주간 | 2017. 9. 29. ~ 2017. 10. 5. | 2 | 18:00 | | |
| 9주간 | 2017. 9. 22. ~ 2017. 9. 28. | 5 | 49:40 | | |
| 10주간 | 2017. 9. 15. ~ 2017. 9. 21. | 5 | 64:03 | | |
| 11주간 | 2017. 9. 8. ~ 2017. 9. 14. | 5 | 56:34 | | |
| 12주간 | 2017. 9. 1. ~ 2017. 9. 7. | 5 | 51:49 | | |

-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6:19시간,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 된 사실은 없다.

3)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만성적 과로)에서는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 없었음.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1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55분 근무

-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05시간 58분이며 1주 평균업무 시간은 46시간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발병 전 1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은 50시간45분간, 이전 4주간은 55시간 2분, 이전 12주간은 52시간 9분으로 주장한다.

마. 원처분기관 근무시간 산정

- 1) 재해당일 04:40 업무 관련 카톡 발송 사실 있으나, 단순 답변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2) 발병전일 22:29, 23:06 업무 관련 카톡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단순 답변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3) 청구인은 06:00 자택에서 출발하여 06:40분 사업장 도착, 30분 조식 후 07:10 업무 시작시간으로 산정하며, 퇴근 후 자택에 20:30 ~ 21:00 도착하는 점과 20:00 ~ 21:00 퇴근했다는 동료근로자 진술로 20:00까지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근무 외 시간에 메일, 카톡, 메시지, 파일 저장, 법인카드내역 등 확인 자료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재해발생일 이전 1주간 50시간45분간, 이전 4주간은 55시간 2분, 이전 12주간은 52시간 9분으로 산정을 요구하였다.

4) 보험가입자 의견

상무이사 임원은 출퇴근 및 근태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며, 휴가도 상급자 승인 없이 구두, 메일 등 간단한 통보로 하며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08:30 ~ 17:30)내에서도 자율성이 많고 출퇴근시간도 많이 구애 받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시간 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5) 원처분기관의 판단

- 업무시작시간: 08:30(근로계약에 의함)
- 휴게시간: 중식 12:00 ~ 13:00 (1시간), 조식 07:00 ~ 08:20(시간 내 30분 인정), 석식 17:30 ~ 19:00(시간 내 30분 인정)
- 업무종료시간: 17:30(근로계약에 의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 시간인 07:10이후 20:00 이전에 메일, 카톡, 메시지, 법인카드 내역, 파일 저장 등 관련자료 있을시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현지출장 중에는 확인 자료로 업무시간 인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외(새벽포함)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불인정(휴일근무 및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상급자나 사업주 지시 없으며, 고인은 평소 04:00 기상 후 04:50~05:30 새벽기도 다녀와서 출근하는 자로 업무관련 된 새벽 파일 저장, 메일 송부 등은 생활습관으로 판단되어 근로시간으로 불인정)

6) 2019. 1. 18. 사업장 출장(심사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매일 8시전에 사업장에서 제공한 아침식사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근무 시간에 1시간을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 식사장부 확인 및 식당운영자 유선 확인

바. 업무부담 가중요인

1) 업무부담 요인

| 업무부담가중요인 | 해당여부 |
|-------------------------------------|-----------------------------------|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청구인 주장) 잡은 출장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음 |
| 교대제 근무 | 해당 없음 |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해당 |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한랭, 온도변화, 소음) | 해당 없음 |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해당 없음 |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해당 없음 |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청구인 주장) 영업부 상무이사로 스트레스가 심했음 |

2) 유족 주장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

- 사내에 공장장, 생산관리부, 품질관리부가 없어서 고인이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많았으며, 지시 업무 수행 후 일에 대한 상사의 질타, 생산부서와의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져 출고시기가 맞지 않을 때, 냉동 창고 설치를 위한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거러쳐 수금관련 특히 고인의 경우 거러액수가 1~2억에서 40~50억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큰 업체의 수금을 담당하여 스트레스 받음.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냉동이 수금 관련하여 날짜를 지키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 II. 최초/유족(질병)

금액만 줘서 고인이 곤란한 입장이 되었으며 사장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아 스트레스 받음

- 새로 입사한 상무와 의견충돌이 잦고, 상무가 사업장내에서 사적인 통화를 크게 하여 스트레스 받음. 상무와 의견이 맞지 않아 관리부장, 이사도 퇴사함
- 주 2~3회 업체미팅, 거래처관리, A/S 관련 갑작스러운 출장이 많다. A/S팀은 별도로 있으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고인이 출장 감

사. 고인의 신체, 건강 등 개인적인 특이 사항

1)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82kg

2) 음주 및 흡연: 해당없음

3) 고인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권사의 직책을 맡고 있다.

- 월~토요일 04:50 ~ 05:30 ○○교회 예배를 하고 있으며, 새벽기도는 한 달 평균 약 20일정도 하며,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 고인 자택에서 ○○교회까지는 2.7Km(약 7분정도 소요)이며, ○○교회에서 사업장까지는 22Km(약 29분정도 소요)이다(네이버지도 확인).

4) 건강검진내역

(가) 2016. 11. 23. 검진

- 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 바람.
(비만, 혈압, 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
- 허리둘레: 96cm(질환의심), 체질량지수: 30.9kg/m²(질환의심)
- 혈압 134/83 mmHg, 공복혈당 111 mg/dL, 총콜레스테롤 256 mg/dL,
LDL콜레스테롤 188 mg/dL

(나) 2017. 11. 10. 검진

- 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저지방식이요법, 운동 및 내과 진료 요함
(비만 관리) 운동 및 식이조절 요함
(당뇨 관리) 식이조절, 운동 및 추적 관찰 요함
- 허리둘레: 89cm(정상A), 체질량지수: 31.8 kg/m²(질환의심)
- 혈압 118/76 mmHg, 공복혈당 106 mg/dL, 총콜레스테롤 236mg/dL,
LDL콜레스테롤 163 mg/dL

5) 보험가입자는 위로금으로 24,164,8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아. 119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7. 11. 24. 15:28
- 사고발생장소: ○○교회
- 구급대원 평가소견: 현장도착시 무호흡, 무 맥박, 심실세동 관찰 즉시 제세동 실시 후 자가 호흡 하다 다시 심실세동 지속적으로 관찰 총 7회 제세동 실시함

자. 의무기록

1) 초진기록(2017. 11. 24.)

- 환자는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119가 현장 도착 후 자동제세동기가 7차례 제세동을 시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부정맥이 강하게 의심됨
-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상 cardiac marker의 상승이 보이지 않았으나, 매우 빠르게 진행된 심근경색의 경우 혈액검사는 오르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검사 수치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도 급성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함

○ II. 최초/유족(질병)

2) 시체검안서(2017. 11. 24.)

- 사망 일시: 2017. 11. 24. 15:28
- 사망 원인: (가) 직접사인: 심장 부정맥
(나) (가)의 원인: 심근경색추정
- 사망의 종류: 병사(부검 미실시)

차. 청구인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2018. 6. 5.)

- 본 소견은 고인 측에서 제공한 업무 내용기록, 의무기록 사본과 고인측 진술 및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재해와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평가: 고인의 재해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고인의 사인은 돌연사로 볼 수 있으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 문헌 고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1항 2호와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재해발생 3개월 이상 지속된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 게다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업무와 재해의 발생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 2019. 3. 7. 심의회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구술 참석을 이유로 보류요청 하여 보류되었다.

- 이후 2019. 3. 25. 2회차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청구인과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9월부터는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으며, 주말에도 전화가 많고 일이 많았으며, 냉동기 납품에 대하여 체크 및 제작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고인의 야간 근로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심의함의 타당하다는 이유로 2차 보류되었다.
- 2019. 5. 16. 3회차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대리인이 참석하여 고인의 경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출장, 정신적 긴장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과로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다시 진술하였다.

5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부검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 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살펴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3. 5. 13. 입사하여 영업부 상무이사로 냉동기 제품관련 판매에서 수급 영업총괄책임, 영업부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41시간 19분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한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불확실하나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고인의 경우 업체발주를 받으면 설계 장비구매 등 모든 작업을 혼자 해결하는 상황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의 상병(사인) “심장부정맥, 심근경색(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인은 냉동기제조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약 5년 정도 업무를 하였고, 2017년 11월 발생한 “심장부정맥, 심근경색 추정”으로 유족급여 신청한 사건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상기인의 작업시간은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직 특성상 장거리 출장이 많았으며, 직원들과의 단톡방 등에서 볼 때, 퇴근 후 업무지시, 저녁시간 출장 그리고 영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의무기록 상에서 상기인이 쓰러져 응급실 도착 당시 심실세동(심장부정맥)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음.

○ II. 최초/유족(질병)

상기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 상 정상B로 특이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비록 상기인의 근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지는 못하나, 여러 스트레스와 기록 되지 않은 출장업무 등을 판단할 때 상기증과 업무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항

바.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18-2호)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2018-2호)에 따른 개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개정(2018-2호)에 따르면,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하고,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인정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으로 기준을 추가하되, 업무무담 가중 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 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2017. 11. 24.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뇌경색으로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는 상태로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폐쇄에 의해 근육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횡문근 응해증으로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투석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577호
- ➔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함)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6. 8. 1.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2016. 10.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인은 2017. 4. 29.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나.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제2018-2호,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수급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8. 4. 2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2019. 3. 14. 원처분기관으로부터 고인이 진단받은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경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뇌경색에 기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피부괴사는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한 이후 발병된 것으로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뇌경색과 폐쇄성축삭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질환으로 고인의 사망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 병원 주치의가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이 뇌경색 발병 이후 관급식을 하는 등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과 재해 및 기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고인은 아파트경비원으로서, 2016. 2. 2. 16:00경 경비실에서 근무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된 후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고, 2016. 8. 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2016. 10.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2) 이후 고인은 2017. 4. 29.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3)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제2018-2호,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상 보험 급여수급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8. 4. 2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 II. 최초/유족(질병)

4)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 교대제 업무형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2019. 3. 14. 고인이 진단받은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5)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요양기간 | 병원 | 입원 사유 및 진료 내역 | 주진단 |
|---------------------------------|------|---|---|
| 2016.2.2. ~2016.2.23. | ○○병원 | 뇌경색으로 요양 (2016. 8. 31.까지 산재 요양 기간으로 승인) | |
| 2016.3.1. ~2016.8.6. | △△병원 | | |
| 2016.11.28. ~ 2016.12.12. | □□병원 | 8.6. Lt lower leg쪽 ischemic wound로 ○○병원 입원하여 anti.치료받던 분으로 9.12.부터 persistent proteinuria 및 generalized enema 동반 및 kidney 기능 저하로 투석 시작함. 현재 Lt. iliopsoas abscess anti.치료 중임. 본원에서 투석 및 보존적 치료 위해 ○○병원에서 전원 음 | 만성 신장병(5기) |
| 2016.12.16. ~2017.1.11. | □□병원 | 약 5일 전부터 객담 증가 양상 보여 CXR상 폐렴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 중으로 금일 CXR상 악화 소견으로 전원 혈액투석, 항생제, 수액 | 만성 신장병(5기) 상세불명의 폐렴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 관리 체외투석 |
| 2017.1.11. ~2017.2.6. | ○○병원 | Lt. Lt. gluteus muscle aspiration | ESRD HTN MRSA infection Lt. gluteus muscle abscess |
| 2017.2.6. ~2017.3.23. | □□병원 | 만성 실질환으로 투석 중인 환자로 투석받는 혈관문제로 3차 전원 약물치료, 혈액투석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흉막삼출액 만성 신장병(5기)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기능성 설사 슈도모나스 |

| 요양기간 | 병원 | 입원 사유 및 진료 내역 | 주진단 |
|----------------------------|------|--|-------------------------------------|
| 2017.3.23. ~ 2017.3.29. | ○○병원 | Rt. AVG(proshtetic brachio-axillary upper loop) revision | Rt. AVG occlusion HTN old CAV |
| 2017.3.29. ~ 2017.4.29. | □□병원 | for conservative care 투석 치료 시행하면서 폐렴에 대해 항생제 투여, r/o GI bleeding에 대해 PPI 등 약물치료 도중 pneumonia 약화되어 사망 | 만성 신장병(5기) |

6) 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기간 | 주상병 | 비고 |
|--------------------------|---|-------------------|
| 2012.9.25. ~ 2012.11.14.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요추부) | 일주일에 1~2회 진료 |
| 2013.5.7. ~ 2014.5.26. | 신경부리병증(요추부) | 일주일에 2~3회 진료 |
| 2014.12.4. ~ 2015.12.11. | 근근막통증증후군(발목 및 발) | 일주일 2~3회 진료 |
| 2016.1월 |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16.2.2. ~ 2016.8.1. | 뇌경색, 경막하출혈 | |
| 2016.8.5. | 상세불명의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 |
| 2016.8.6. ~ 2016.11.29. |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신증후군 상세불명의 화농성관절염(골반부 및 대퇴) 요로감염 | ○○병원 입원 |
| 2016.11.28. ~ 2017.4.29. | 만성 신장병기(5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상세불명의 폐렴 | ○○병원 및 □□병원 입원 |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2017. 4. 29.)

- 1) 직접 사인: 폐렴
- 2) 1)의 원인: -

○ II. 최초/유족(질병)

3) 2)의 원인: -

4) 3)의 원인: -

5) 1)~4)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말기신부전

나. 주치의사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1) □□병원

가) 2019. 2. 11. 회신

- 요양기간: 2016. 11. 28. ~ 2016. 12. 12./ 2017. 2. 6. ~ 2017. 3. 23./ 2016. 12. 16. ~ 2017. 1. 11./ 2017. 3. 29. ~ 2017. 4. 29.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만성신부전증, 폐렴, 설사, 혈액투석, 수액, 영양 공급, 항생제 치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2016. 11. 28. 본원 입원 전 특이사항 언급 없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만성신부전,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 등으로 폐렴 가능

나) 2019. 3. 27. 회신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본원 내원 시 이미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이었음
- 다리동맥 폐색(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동맥경화증이 주된 원인

2) ○○병원

가) 2019. 2. 12. 회신

- 요양기간: 2016. 2. 2. ~ 2016. 2. 23.(입원)/ 2016. 3. 7. ~ 2016. 6. 10.(통원)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좌측 편마비, 뇌경색 급성기치료 진행. 경막외출혈 동반으로 혈전 용해제 사용 금기였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좌측 경막외출혈 동반되어 있었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음. 다리동맥 폐색으로 인한 괴사 및 이에 의한 합병증이 관련 깊음

나) 2019. 3. 27. 회신

- 2016. 11월 입원 당시 신장기능 평가 결과: 2016. 2. 2. 입원 당시 정상 소견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 이식부위 염증으로 인해 입원하였고, 이후 감염조절 되지 않아 균혈증, 요로감염으로 장기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 다리동맥 폐색(이로 인한 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하지 혈압 측정되지 않아 시행한 대퇴동맥혈관조영술에서 대퇴동맥, 장골동맥의 혈관폐색소견 보임

다) 2019. 5. 2. 회신

-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이식 부위 염증으로 입원 관련, 피부이식 시기 및 이유(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여부):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당시 좌 하지의 혈압 측정되지 않아 시행한 검사에서 폐쇄성 죽상동맥경화 등 소견 보였으며, 이로 인한 피부괴사로 피부이식 시행함. 해당 질환과 뇌경색의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유무: 2016년 발생한 뇌경색 이후 좌측 편마비로 인해 와상의 상태로 지내던 환자로, 상기 상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 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6. 2. 2. 뇌경색 발생 이후 사망 시까지 전반적인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6. 2. 2. 뇌경색 이후 좌측 완전 편마비로 와상 상태로 지내던 환자임. 장기간 와상 요양 상태로 인한 호흡기계 합병증 발생 위험 높으나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1) 자문의 1: □□병원 사망진단서 상 말기 신부전 및 폐렴이 기재된 점, ○○병원 소견 조회 상 사망원인과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판단한 점으로 보아 뇌경색에 의한 폐렴이 사망원인이 아닌 것으로 소견됨.
- 2) 자문의 2: 뇌경색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하지 동맥경화에 의해 하지 기능이 거의 없었던 환자로 판단됨. 뇌경색에 의한 의식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치의 소견 조회에서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좌측 하지의 폐쇄성 죽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한 피부괴사가 있었고 피부이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뇌경색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기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뇌경색 발생 당시 이미 개인적 질병인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2016. 2. 2.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는 상태로 2016. 10월경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폐쇄에 의해 근육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횡문근용해증으로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투석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일련의 과정은 연결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근골격계 질환

1

»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은 과거 건봉합술 수술력 등이 있고, 회전근개 급성 파열 소견은 없으나, 좌측은 청구인이 고령이 아니고 관절경 소견에서 만성 병변 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외상성 파열이라는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169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1. 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한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1. 24. 11:40경 사업장 창고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박스를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를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 하였으나,
- 나. 원처분기관은 "과거력상 우측 어깨에 대한 건봉합술 수술 이력이 있으며 이번 수상 전에도 어깨 동통으로 인한 수진 이력이 있음. 양측 MRI상 우측의 일부 재파열 및 좌측의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거나 수상 기전 역시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성 떨어짐. 재해 경위에 대해 타박상은 인정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II

최초 / 오차 (결론)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11. 24. 사업장에서 근무 중 일하다가 상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재해경위 및 주요 치료 경과

가) 청구인은 2018. 9. 25. ○○회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매장관리 및 판매를 담당한 자로,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8. 11. 24. 11:40경 백화점에 사업장 창고에서 물건을 찾던 중 박스가 넘어져 손으로 받히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옆으로 넘어져 어깨가 빠지는 듯이 아파 매니저에게 말했으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그 상태로 근무했으나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MRI를 찍으니 양쪽 어깨 인대파열의 결과가 나옴"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4. 재해 이후 2018. 12. 4.까지 사업장에 근무하고 퇴사한 이후 2018. 12. 5.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18. 12. 12. △△병원에 외래 내원 후 2018. 12. 19.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견봉성혈술 및 이두근 저제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2018. 12. 24.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음이 청구인 진술 및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된다.

2) 이 사건 재해 이후 내원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발췌

가) ○○병원(2018. 12. 5. 내원)

- C/C: Pain shoulder Lt.>Rt

- O: 15DA, 직장 창고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박스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깔림

나) △△병원(2018. 12. 12. 내원)

- both shoulder pai, 11/24 일하다가 박스가 떨어지면서 다침
- 우측은 예전에 수술하셨는데 창원 2015경 수술 했다 >> 재파열이 의심 됨. 좌측이 이번에 RCT가 있음. 만약 수술하시게 되면 좌측 먼저 해야 됨

3) MRI 검사 판독결과 발췌(2018. 12. 5.)

Lt. shoulder MRI
Near full thickness AC tear

Rt. shoulder MRI
Full thickness AC tear Rt(S/P OP)

4) 수술기록지 발췌(△△병원, 2018. 12. 19.)

Surgical Findings & Procedures

1. regional anesthesia 하에
2. routine drapping was done.
Brièvement force 시험 : mechanical block(+), full ROM (+)
3. Intraarticular 관촬
4. severe synovitis and adhesive capsulitis 소견 보여 capsulotomy 시행
5. SLAP lesion 관찰 : biceps tenotomy 시행
6. SAS 에서 이동
7. Acromial spur : acromioplasty 시행
8. chr. SA bursitis 심하여 bursectomy 시행
9. SST medium size PTRACT (medial size) : AC repair 시행 (cross FT anchor 이동 double row technique)
10. Ab. brace apply

5) 이 사건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2008. 11. ~ 2018. 11.)

- 2015. 9. 8. ~ 2015. 9. 10. 섬유근통, 어깨부분(3회)
- 2015. 10. 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II. 최초/유족(질병)

- 2015. 11. 30. ~ 2015. 12. 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회)
- 2016. 3. 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7. ~ 2016. 12. 7. 어깨의 충격 증후군(5회)
- 2016. 12. 14. ~ 2017. 2. 8. 회전근개증후군(10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서(△△병원, 2018. 12. 21. 최초요양신청서)

- 1)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18. 11. 24. 일하다가 박스가 떨어지면서 수상
- 2)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쪽 어깨가 아파요
- 3) 종합소견: 타병원 MRI, X-ray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 진단됨

나.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 진단서(△△병원, 2019. 1. 2.)

- 1) 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 2)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18. 12. 19.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및 이두근 절제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개월간 안정가료요함

다.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 소견서(△△병원, 2019. 1. 9.)

- 1) 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 2) 소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18. 12. 19. 관절경하 변연 절제술, 견봉 성형술 및 이두근 절제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환자의 나이와 기왕력이 전혀 없다는 점 및 수술장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상해 기여도는 80%정도로 사료됨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환자는 과거력상 우측 어깨에 대해 건봉합술 수술력이 있으며, 이번 수상 전에도 어깨 동통으로 인한 수진 이력이 있음. 양측 MRI상 우측의 일부 재파열 및 좌측의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나, 수상 기전 역시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성 떨어짐. 재해경위에 대해 타박상은 인정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5 관계법령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1호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 일하다가 상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좌우 어깨관절 영상자료 소견 상 우측은 과거 건봉합술 수술력 등이 있고, 회전근개 급성 파열 소견은 없으나, 좌측은 청구인이 고령이 아니고, 관절경 소견에서 만성 병변 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외상성 파열이라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한해 2018. 11. 24.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열'에 한하여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모두 진단되며,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오른 손 한쪽 손에 국한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08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후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 통증이 발생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팔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좌측 손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상 손가락에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이나 급격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팔목터널 증후군'은 폐기물 파쇄 등으로 과도한 힘과 반복 작업이 포함되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2018. 12. 17.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우측 팔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는 최초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95. 2. 6.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24년간 근무하는 동안 생활폐기물, 음식물 처리, 대형 폐기물, 가로 미화원 등의 고된 업무를 하면서 좌 우측 손 및 손가락, 팔꿈치 등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
- 나. 대형 폐기물 작업의 경우 주로 나무를 망치로 짧게 부수거나 톱으로 나무를 나르거나 빠루라는 공구를 이용하여 못을 뽑아 소각장에 반입하고 유리, 화분, 장롱 등을 화물 칸에 상차하고 나서 손과 손가락으로 바를 고정시켜야 하는 작업이고 이를 오랫동안 해옴
- 다. 가로 미화원을 할 때도 부르와(약 10~15kg) 공구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쥐고 고정된 자세로 움직이며 낙엽을 불어내어 한 곳으로 모인 낙엽과 쓰레기를 자루에 담고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거나 끌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
- 라. 청구인은 업무의 고단함과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손을 사용하는 취미생활을 가져 본적이 없음
- 마.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과거병력 및 진료차트를 다시 확인해보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 명확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불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본인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 청소 및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청소 및 대형 폐기물

○ II. 최초/유족(질병)

청소를 하다보니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이 아프고 팔꿈치와 손목이 계속 부어 올라 신경외과 등 개인병원에서 통증주사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측 팔목터널증후군, 우측 제3,4수지 방아쇠 증,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진단 받고 산재 신청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발췌).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구청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나) 근무기간 현직력

- 1995. 2. 6. 입사 ~ 1997. 2. 5. 대형폐기물차량운전 / 본인진술
- 2007. 3. 1. ~ 2008. 2. 29. 대형폐기물차량운전 / 본인진술
- 2009. 1. 2. ~ 2010. 3. 31. 일반쓰레기수거
- 2010. 4. 1. ~ 2011. 7. 7. 신공차운전
- 2011. 7. 8. ~ 2012. 6. 30. 음식물쓰레기 수거
- 2012. 7. 1. ~ 2013. 7. 17. 대형폐기물 및 차량운전
- 2013. 7. 18. ~ 2013. 12. 31. 불법투기단속
- 2014. 1. 1. ~ 2015. 1. 25. 음식물쓰레기 수거
- 2015. 1. 26. ~ 2015. 3. 10. 불법투기단속
- 2015. 3. 11. ~ 2015. 3. 25. 민원 및 기동처리
- 2015. 3. 26. ~ 2015. 7. 21. 가로환경정비

- 2015. 7. 22. ~ 2016. 10. 16. 가로환경정비
- 2015. 10. 17. ~ 2018. 2. 12. 불법투기단속

다)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1995. 2. 6.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대형폐기물차, 음식물차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승차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수거업무를 돕기도 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업무 및 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가로환경정비 업무에 종사하기도 함(빗길, 마대수거등의 가로 청소)

○ 업무 부담 작업

① 대형 폐기물 적재작업(전산 상 확인되는 기간: 12개월, 미확인기간: 3년)

- 관할지역(2013년 당시 재개발지역이라서 특히 힘들었다고 함)
- ○○구(21개 동) 2.5톤 총 4대(재해자포함 12명) 1대 당(총 3명, 운전자포함) 08:00 출근 후 당일 수거량 파악하여 구역을 나눔(총 4개)
- 작업내용: 매일 아파트 등 대형폐기물(장롱, 냉장고, 가전제품 등) 하루 당일 양을 모두 수거하는 작업을 하며, 장롱 등은 망치, 바루 등을 이용하여 못을 뽑아 부피를 작게 하여 상차하고, 냉장고 등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통으로 상차 시 나일론 밧줄을 힘껏 당겨 흘러내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고정 시킴
- 장롱, 서랍장 등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유리, 화분, 냉장고 등은 상차하여 차고지로 운반하는 작업을 1회로 보고 1일 2~3회 이상 반복함(무게는 70~100kg 이상)
- 업무 효율성을 위해 되도록 많은 양을 상차하기 위해 2.5톤 차량의 차 고리에 흘치기 하여 힘껏 묶는 작업을 반복함

② 빗자루로 바닥 쓰는 작업(전산 상 확인되는 기간: 25개월)

○ II. 최초/유족(질병)

- 작업내용: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부르와(무게: 10~15kg, 낙엽을 모으는 기계)를 들고 낙엽을 모으는 작업을 한 후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마대 및 공공용 봉투에 담은 작업을 반복함(1일 작업량: 30마대 이상, 1마대당 20kg 정도이고, 비가 와서 물이 묻은 낙엽은 무게가 2배인 40kg 이상 나간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높음

- ② 사유: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총 23년 동안 근무함. 대형 폐기물 처리 4년 가량, 가로수 낙엽청소 25개월(낙엽을 마대자루에 담은 작업 20~40kg, 하루 30 마대정도 수집함. 폐기물 처리시 장롱과 책꽂이는 망치(무게 2~3kg)를 이용하여 분해해서 처리, 2.5톤 트럭 적재시 밧줄을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을 하루 3회 이상 수행. 장롱을 분해할 때 망치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지와 수부에 과도한 힘과 반복 작업이 포함되며 밧줄로 적재물을 고정시키는 동작에서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사용되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3.17.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희활막염
- 2010.3.26.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희활막염
- 2010.8.20.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2554 관절통, 손
- 2011.2.9.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희활막염
- 2013.1.21. / ○○신경외과의원 / M770 내측상과염 M6599 상세불명의윤희활막염
- 2013.2.25. ~ 2013.2.26.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 불명의윤희활막염
- 2013.3.5.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M770 내측상과염
- 2013.3.8. ~ 2013.6.13. 총8회 / ○○신경외과의원 / M770 내측 상과염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 2013.7.1. ~ 2013.8.9. 총3회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M770 내측상과염
- 2013.8.23.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M770 내측상과염
- 2013.9.10. ~ 2013.11.18. 총4회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 2013.3.12. ~ 20174.1.129. 총4회 / ○○의원 / M6583 기타 윤희막염 및 힘줄활막염
- 2014.8.11. / ○○병원 / M770 내측상과염
- 2014.5.29. / ○○한의원 / M6083 기타근염, 아래팔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 양손 저림증상, 수지굽힘시 통증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병원 제출 수진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재해자 업무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2018 판정 제778호)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제출된 조사내용 일체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좌측 손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상 손가락에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이나 급격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주관절 외상

○ II. 최초/유족(질병)

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팔목터널 증후군'은 폐기물 파쇄 등으로 과도한 힘과 반복작업이 포함되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1) 자문의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측 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손목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수지의 반복된 굴곡 및 신전시 발생할 수 있음
- 2) 자문의2: 상기인의 개인력은 2010년부터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이 확인됨.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은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과 관련하여 올 수 있는 상병을 확인하였음. 상기인이 상기증은 환경미화 업무 특히 대형 폐기물 처리 등에서 업무부담 작업이 있음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장기간 어깨와 팔목 및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모두 진단되며,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오른 손 한쪽 손에 국한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로 좌측 팔목 및 수부에도 신체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팔목 터널증후군, 좌측 제3수지, 우측 제3수지 및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수지의 반복된 굴곡 신전 작업으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발생하였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이라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기초암반면을 조사하는 작업에서 14년간 일한 것으로 보아 어깨 부하력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며, 작업자세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깨 관절에 신체부담이 있었고 MRI상 연령에 비해 부분 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216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4. 4. 1. (주)○○컨설팅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기초암반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어깨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상병명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18. 11. 2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해머작업 시 우측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관찰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 업무이고 현장조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 요인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아니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사무 업무 시 사용하지 않던 어깨 근육(우측 견관절)이 오히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 시(일시적으로) 평소 보다 과도하게 사용되어 어깨 근육이 손상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8년 '○○' 공사 현장에서 본 현장 조사를 시행하던 중 심한 어깨 통증이 최초로 유발 되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10년간 계속된 현장 조사 업무로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회사에서 토목설계와 고층빌딩 공사 시 기초암반을 조사하는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고 있음. 재해발생 2~3개월 전부터 1주에 2~3회 정도 ○○빌딩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무거운 망치로 암반을 가격하여 암반의 강함과 약함을 평가하는 조사 작업을 수행함. 재해일 당일 동일 작업을 수행하다 오른쪽 어깨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며 일정 방향으로 작업 수행이 힘들어짐. 그 후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동일 업무를 10여년 진행 중에 있음. 최근 ○○병원 진료결과(MRI 검사)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임”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한의원(통원확인서, 2018. 8. 7.)

- 병명: 타박어혈견비통,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 시작일: 2008. 10. 31. / 종료일: 2014. 4. 17.

○ II. 최초/유족(질병)

- 진료일자: 상기 환자 2008. 11. 27.(총 1건) 초진일 약 3개월 전 무거운 망치로 두드린 후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침, 부항, 한약 치료 등으로 진료 받았음. 2014. 2. 5./ 8.(총 2건) 우측 어깨 통증과 뒷목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침, 부항, 경피 적외선 조사 용법 및 한약 치료 등으로 진료 받았음

나) ○○대학교 ○○병원(2018. 9. 11.)

- RT. shoulder pain 망치. 2008년 이후 계속 통증
ABER ans cross adduction 시 불편 함. 밤에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 MRI 검사결과 보고서) Low grade articular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at anterior portion of SST tendon, underlying tendinopathy. Small calcific deposition at upper portion of SSC tendon, probable calcific tendinitis.

3) 청구인의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19 제93호)에 적시된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04. 4. 1.
- 근무시간: 고정 주간근무,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1주 2~3회 연장근무 19:00 ~ 22:00)
- 담당업무: 토목설계, 기초 암반면 조사

나)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이력

- 1995. 10. 11. ~ 1998. 8. 31. 사무직(고용보험)
- 1999. 1. 4. ~ 1999. 11 .24. 기술공(고용보험)
- 1999. 12. 1. ~ 2004. 3. 31. 사무직(고용보험)

다)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상시 작업(내근 시): 컴퓨터를 이용한 토목설계 업무(마우스, 키보드로 작성)
- 간헐 작업(외근 시):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 암반을 지질해머 또는 clegg impact hammer로 평가 작업
 - ※ 현장조사 업무 수행기간: 1년 중 평균 약 60일 정도 수행함.
- 업무과정: 부지 지반조사 → 설계(지하굴착 및 초고층 빌딩 기초 설계) → 현장 기초 암반면 조사 → 종합보고서 작성

○ 업무비중

-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보고서 작성: 70%
- 현장조사: 20%
- 기타 회의 참석 등 외부업무: 10%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 조사업무는 청구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지하 굴착이 최종 완료 되면 기초 바닥 암반 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로서 주로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함.

① 지질해머 작업

- 작업내용: 암반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서 보통 허리를 굽히며 때로는 서서, 또는 높은 벽면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지질해머를 들고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망치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굴곡, 신전하면서 암반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해머로 내리치면서 해머의 타격음과 관입 정도로 암반을 평가함
- 작업량: 해당 작업일의 경우 최소 500, 최대 1,000회 정도 타격
- 취급도구 무게: 해머 약 500g

○ II. 최초/유족(질병)

② Clegg Impact Hammer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장비를 두 발로 밟고 고정 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clegg impact hammer(4.5kg)를 들어 올린 후 hammer를 놓아서 바닥을 타격함
- 취급도구 무게: 전체 무게 약 10kg(해머 무게 4.5kg)

마) 현장업무 이력

- 정확한 현장작업 일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추정하면 현 사업장에서 총 14년 근무하는 동안 현장 업무는 총 435일 정도임

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재해자는 기초 암반면 조사 및 토목설계 작업을 14년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토목설계 작업으로 간헐적으로 기초암반 작업조사를 수행하였으며, 7개월 간 60일 정도의 간헐 작업으로 암반 작업을 수행하였음. 동영상 결과 500g 정도의 망치 무게로 단단한 암반을 일일 500~1,000회 타격하며, 임팩트 해머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벌림이 인정되어 업무와 관련성 높음으로 인정됨

사)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2. 6.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1. 11. 9.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2. 6. 손처짐 또는 발처짐(후천성), 아래팔
- 2014. 8. 4. 기타근통, 위팔
- 2014. 10. 25.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8. 8. 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9. 11. 회전근개증후군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대학교○○병원, 2018. 10. 29.)

- 1)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오랜 기간 동안 망치질 작업 후 발생한 우측 견관절 통증
-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견관절 전방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
- 3) 종합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극상견,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소견이 보임
- 4) 치료 예상기간: 2018. 9. 11. ~ 2018. 12. 26.(통원 14주)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해머작업 시 우측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관찰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업무이고 현장조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 요인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아니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1) 정형외과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견관절 MRI 상의 회전근개 관절낭측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며 비후된 점액낭염, 상완골 대결절 경화소견 등 진구성 병변 확인 됨. 작업의 성격 상 어깨 관절에 부담 작업으로 생각되며,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소견 관찰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 2) 직업환경의학과
 - 청구인은 1970년생 남자로, 2004년부터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 조사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8년 9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주로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업무이며, 현장 업무시 지질해머를 사용하여 윗 팔을 거상

하거나 해머로 내려치는 동작을 수행하였으나 연중 평균 60일(총 14년 근무기간 중 435일 가량 해머작업 수행) 가량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어깨의 누적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을 조사하는 작업을 약 14년간 근무하였고, 설계자

들의 어깨 부하력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작업 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깨 관절에 신체부담은 인정이 되고, MRI 상 연령에 비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인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Ⅲ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1. 근로자 여부
2. 적용관계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 large, bold number '1'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one above and one below, and a small gray circle above the '1' circle.

1

근로자 여부

1

»

작업 장소와 기간 및 재료를 지정해줬고 작업 완료 후 일당 및 재료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6570호
- ➔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故 강○○(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 10. 22.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이○○ 이사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 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재해경위 및 공사현황

고인은 2017. 10. 22. 아이스크림 가게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내부 페인트 작업 중 약 1.5m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7. 11. 15.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사업장명: (주) ○○건축
- 공 사 명: 아이스크림가게 실내외공사
- 공사기간: 2017. 10. 13. ~ 2017. 10. 27.
- 총공사금액: 67,000,000원

2) (주)○○건축에서 제출한 고인과의 거래내역

- 2013~2017년까지 ○○건축과 고인과의 거래내역

| 연번 | 거래연도 | 거래일시 | 출금액 | 거래기록사항 | 이체메모 |
|----|-------|-------------|-----------|--------|------|
| 1 | 2013년 | 2013.02.06 | 3,600,000 | ○○페인트 | |
| 2 | | 2013.03.06 | 1,650,000 | ○○페인트 | |
| 3 | | 2013.05.31. | 2,000,000 | ○○페인트 | |
| 4 | | 2013.09.12. | 2,200,000 | ○○페인트 | |
| 5 | | 2013.12.24. | 7,500,000 | ○○페인트 | |
| 6 | 2014년 | 2014.05.19. | 4,500,000 | ○○페인트 | |
| 7 | | 2014.07.29. | 2,300,000 | ○○페인트 | |
| 8 | | 2014.11.25. | 6,000,000 | ○○페인트 | |
| 9 | | 2014.12.31. | 4,000,000 | ○○페인트 | |
| 10 | 2015년 | 2015.02.13. | 3,500,000 | ○○페인트 | |
| 11 | | 2015.03.31. | 3,000,000 | ○○페인트 | |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3) 일용근로신고(세무서) 내역(2013~2017년)

| 연도 | 월 | 일 | 일수 | 단가 | 합계 | 비고 |
|-------|----|----------------|----|---------|---------|---------------------------------------|
| 2013년 | 8월 | 10,11,12,13,14 | 5일 | 160,000 | 800,000 | 배우자 김○○도 근무일수 동일. 김○○는 일당 150,000원 |
| 2014년 | 4월 | 27,28,29 | 3일 | 130,000 | 390,000 | 배우자 김○○도 근무일수 동일. 김○○는 일당 130,000원 |
| 2014년 | 6월 | 14,15,16,17,18 | 5일 | 130,000 | 650,000 | 배우자 김○○도 근무일수 동일. 김○○는 일당 130,000원 |

- 2015년 및 2016년 신고내역 없으며 2017년은 재해자 사망 후 2018년에 소급하여
 지급계정별원장에 재해자와 청구인에게 1월~9월까지 각 1,00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4) 청구인 문답서(2018. 5. 8.)

- 현장공사 연락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여부
 - ㈜○○건축 현장소장에게서 올 때도 있고, 사무실 직원이 연락을 줄 때도 있음. 10년
 이상 일하면서 계약은 한번도 한 적이 없이 연락오면 일을 하였음
- 연락오는 내용
 - '장소(현장), 며칠정도'라고 알려주고 금액은 정하지 않음
- 재료관련 및 비용 지급 관련
 - 현장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건축 담당직원이 페인트 색깔을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페인트가게에 페인트 번호 등을 카톡으로 알려줌. 재료비는
 현장이 끝나면 임금과 재료비를 받아서 현금으로 페인트 가게에 지불하였음
- 페인트 가게의 ㈜○○건축 지정 여부
 - 페인트가 특별한 번호가 있는 것으로 페인트 가게만 정해서 했음

○ 한 현장당 페인트 비용

- ○○현장은 100만원 미만 정도. 비용은 현장 크기마다 다름

○ 인건비 금액

- 둘이 일하고 40만원 또는 50만원은 되어야 함. 재해자(고인)와 진술인(청구인)이 얼마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었음. 구두로 얼마 주겠다고 한 적이 없음. 다른 사람보다 재해자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일거리를 계속 주었음

○ 공사내역서 2면의 공사 투입인원 수

- 재해자와 진술인 두명이 공사한 것임. 공사평형이 크지 않아 두명이 한 것으로 보임. 2014. 9. 12. ○○동 현장은 재해자와 진술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당은 이실장님에게 300만원을 받아 근로자에게 진술인이 주었음

○ 공사평형이 큰 공사의 페인트 공사 투입인원 수

- 본 현장은 크지 않음. 전에는 ○○만 하였는데 현장이 크지 않았음. 2014년 이전에는 공사했었음. 2015년 1월 ○○ 현장 이후 2016년도까지 페인트 업무 하지 않았음. 2017년도에는 재해자와 진술인만 페인트 칠 하였음

○ 공사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 페인트 비용지급 방법

- 진술인과 페인트 가게는 오래 거래를 했으므로 페인트 가게에서 진술인측에 페인트 비용에 대해 독촉은 없었음. 페인트 가게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회사 공사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진술인은 먼저 지급하였음. 페인트 비용을 몇 개월씩 연체할 수 없으므로 먼저 지급하였음. 매장 상황에 따라 고유색 번호가 조금씩 필요하고 고유색 번호를 까다롭게 주문해야 되므로 페인트 가게에는 페인트를 팔아주어도 미안하기도 하였음

○ 남은 페인트 사용 여부

- 내부 도색 칠은 고유색이 많아서 다른 곳 사용이 어려움. 현장을 칠하고 남았으면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다음 현장에 사용함. 페인트가 남으면 폐기처분이 어려워서 처분이 곤란함. 페인트가 남은 것은 현장에 놓아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에 놓아둠

○ 재료비(자재비) 금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이유

- 재료비 내역을 잘 모름. 사무실에서 재료비 내역을 다 알고 있음. 재료를 사무실에서 사준 적도 있음. 특수칠 이외에는 사무실에서 사주기도 함. 페인트 재료가 부족하면 재해자가 현장소장에게 페인트 사오라고 부탁해서 현장소장이든 직원이든 페인트를 사옴

○ 작업시 지시 여부

-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페인트를 칠함. 정해진 페인트색깔이나 디자인이 있어서 지시를 받아서 페인트를 칠함. 타일, 목공, 전기공사도 정해진 디자인, 틀이 있어서 그에 따라야 하므로 직원 지시를 받음

○ 작업완성 기일 여부

- 담당직원들이 계획서가 있을 것이며 재해자나 진술인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일 시켜 주는 것에 감사해서 일을 하였음

5) 사업장(이○○ 이사) 문답서(2018. 4. 16.)

○ 귀사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 일하는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므로 건건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일 때는 공사내역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내역서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음. 고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건비 처리하였음(목공, 타일은 인건비 처리, 전기, 금속은 세금계산서 발행)

○ 자재구입 관련

- 평수를 알려주고 현장상황을 알려주면 고인이 평수와 상황에 맞게 페인트를 가지고 옴.
(※○○에서는 영수증을 받지 않고 페인트자재비용은 고인에게 지급함. 페인트 자재

대금 영수증은 없음. 고인이 페인트 소요량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인이 페인트를 구입해 오며 그 자재 영수증을 따로 (주)○○에서 받지 않았음

○ 작업일지 여부

- 공사일정이 15일 내외이고 일정이 짧아서 목공, 타일, 페인트 등 작업일지 작성하지 않음. 계획된 하루, 이틀 차이가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음. 오픈 일정이 연기되지 않음. 예정된 날짜에 공사는 끝남

○ 유족 합의 여부

- 보상금 합의했음. 2013년부터 2017년 공사미수금 2,000만원. 2018. 2. 12.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합의금(위로금) 합의했음

○ 공사미수금이란

- 공사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 공사 후 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고인이 청구한 금액을 (주)○○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합했더니 2,000만원이 됨. 내역은 고인이 가지고 있었음

○ 이 현장 외에 작업현장의 범위가 넓은 경우 작업수행 내용

- 이 현장 외에 작업현장의 범위가 넓어서 여러명이 들어온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였고 공사에 대한 범위 및 작업기간, 인력 요구 현황을 회사에서 알려 주면 고인이 자재 및 인력을 수급해서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함

○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

- 작업지시는 회사에서 함

○ 현장 투입 근로자의 급여 및 지급방법

- 페인트공 인건비는 기본 200,000원에서 25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고인이 당일 작업한 인원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면, 인원에 대한 일당 및 재료비(평당 대략 70,000~80,000원 정도)를 고인 통장으로 일괄 지급함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재해자 및 현장직원들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 2016년도에는 고인께서 노령연금 수령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7년 자료는 고인이 사망 후 2018년에 소급해서 신고하였으며, 그 이전 13년도 1건, 14년도 1건이 있고 15년도 신고자료는 없으며 관련 신고자료 추후 제출 예정

6) 전화문답서(타일반장, 2018. 6. 4.)

○ ㈜○○건축에서 공사대금 미수금 여부

- 있다. 덜 받기도 오래전 것은 다 못받아서 조금씩 받고 있기도 함. 공사대금을 덜 받으면 진술인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는 인건비를 주지만 진술인 몫은 덜 남는 셈임. 페인트도 진술인과 같다. 강사장(고인)이 페인트 공사를 맡아서 했고 공사 일정에 맞춰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강사장이 받았다.

○ 페인트의 경우 재해자 부부 두 사람이 하기 힘든 평수일 경우 추가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여부

- 아이스크림 가게 공사를 할 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단기간에 완성을 해야 하므로 강사장이 페인트가게에 부탁해서 기술자 2명, 보조자 3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공정을 채용. 그들의 인건비는 강사장이 지급함

○ 2016, 2017년도 재해자 페인트 공사 여부

- 강사장이 언젠가 다리를 다쳐서 산재처리 해서 일을 못했는데 공백기간에 강사장 부인이 사람을 사서 페인트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사장 부인이 강사장 없이 사람 사서 알아서 하려니까 고생했다고 들었음

○ ㈜○○건축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 직접 일용근로자 채용 시공 여부

- 없음. 모두 업자에게 맡김. 모두 업자에게 맡기지 직접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시공하는 것은 없음

7) 전화문답서(○○페인트)

○ 고인에게 페인트 판매 여부

- 오래전부터 거래함. 2007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판매하다가 중간에 잠시 공백이 있음. 2015, 2016, 2017년에 다시 정기적으로 거래함. 중간에 공백기간에는 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6년도에는 페인트를 발송해 준 적이 있음. 그때는 페인트 업체 본사에 요청해서 직접 발송함. 2016년도에도 많이 거래함

○ 주문 및 대금 지급 방식

- 페인트가게와 고인의 집이 가까우며 고인에 집에 창고가 있음. 며칠 뒤 사용할 페인트는 미리 주문하면 고인의 집 창고에 배달했고 한달 뒤 정도에 현금으로 결재를 아주머니가 해주었음. 보통 한번 결재할 때 100만원 정도이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 페인트업무 인부 추천 여부

- 페인트 인부 연락처 받아두었다가 강○○ 사장이 인부 연락처 달라고 하면 연락처 주었음. 인부가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진술인은 모름. 인부 연락처만 전달함

8) 페인트 공급업체 확인서

○ ○○도장

- 고인과 페인트 작업을 위한 자재들을 거래함. 사모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수시로 전화로 자재 주문을 하였고 자재를 준비해 놓으면 강사장님이 방문하여 자재를 가져감. 자재비용은 구입할 때마다 현금 결재함

○ ○○페인트

- 고인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함. 고령이시고 휴대폰 문자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에서 배우자께서 자재의 자재번호(시리얼넘버)를 휴대폰으로 보내면 배우자가 본인에게 전달하여 자재를 준비함. 현장별로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오면 수시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준비해 두었음. 비용은 구두로 이야기 하고 해당 현장이 종료되면 자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결제 후 그 내역은 보관 또는 폐기처분함. 평소 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에만 집중하고 배우자가 현장업무와 자재주문관리, 자재대금결제 도맡아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9) 경찰서 진술조서

○ 고인과 ㈜○○건축과의 관계

- 2012년도부터 고인의 부인과 함께 페인트공으로 저희 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해왔음. 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당 25만원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용노동자로 저희 회사 일을 함께 해왔으며 저희 회사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

○ 재해 당시 공사현장

- 2017. 10. 15.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와 6,700만원에 실내외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맺고 2017. 10. 1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공사현장 소장은이 기사로서 공사를 총 지휘했고, 타일 4명, 페인트 고인 부부가 함께 공사를 했음

10) 재해자의 기존 사업자등록 내역 및 산재승인 내역 등

○ 사업자등록 내역

- 2008. 10. 31.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전문건설하도급) → 2008. 12. 31 폐업
- 2010. 1. 1.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하도급공사업) → 2013. 6. 30 폐업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전산 내역

- 사업주: ○○산업(주)
- 현장: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 2016. 11월 16일간 근무, 일당: 200,000원(고용보험일용근로신고)

○ 산재승인내역

- 재해경위: 2015. 7. 12.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페인트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로 발 뒤꿈치 골절
- 사업장명: ○○건설(주)
- 평균임금: 73,000원
- 요양기간: 2015. 7. 12. ~ 2016. 9. 14.(입원 71일, 통원 202일, 총 273일)

11) 심사청구 시 추가 사실확인서(청구인)

○ 2015, 2016년 일용근로신고내역이 없는 이유

- 고인은 2015. 7. 12.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고 2016. 9. 17. 치료종결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17. 3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아 근로한 사실이 없음

○ 2015년 고인 산재 후 청구인은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은 2015년 고인의 산재 사고 이후 단 1건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내용은 (주)○○건축에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음

○ 평상시 공사시 다른 근로자 사용 여부

- 평상시 부부가 함께 일하였고 다른 근로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타일반장은 고인과 본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 번 작업한 사실이 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업주도 진술하지 않는 부분인 '페인트공사를 맡아서 했다. 페인트 가게에 부탁하여 사람을 채용하였다'라고 답변한 통화문답서는 절대 사실이 아님

12) 심사장 유선 통화 확인(타일반장 및 이사)

○ 타일반장 확인사항

- 재해 당시에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였고 목격자 진술서 작성함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고인과 작업은 오래되었고 아이스크림 가게 작업시 파트너사가 겹쳐서 작업을 자주 같이 함
- 2015년 산재사고 후 한동안 작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소에는 내외분이 같이 작업하는데 우리(타일작업)도 평소에 작업 시 바쁘거나 현장이 넓으면 일용직 써서 했는데 그분들도 바쁠 때는 일용직을 씬

○ 이○○ 이사 확인사항

- 재해 당시 페인트작업 중 마무리 작업만 하고 빠질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고 그때는 타일작업도 있어서 타일반장도 현장에 있었음
- 타일작업과 페인트작업이 항상 같이 이루어 질수는 없고 같은 현장에서 같이 할 때도 가끔 있지만 타일과 페인트를 같은 공간에서 작업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현장이라도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거나 날짜를 달리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서(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2017. 10. 22.
- 사망일시: 2017. 11. 15. 05:27

| | | |
|-----|---------|----------------|
| (가) | (가)직접사인 | 심폐부전 |
| (나) | (가)의 원인 | 폐색전증 |
| (다) | (나)의 원인 |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출혈 |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와 재해조사의견서 상 재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확인됨

5 관계법령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
-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
-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등
- 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청구인은 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이사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 및 고용노동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공사의 원수급자인 (주)○○건축에서는 고인을 도장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신고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구체적인 작업형태를 보면 작업 장소와 기간 및 페인트 번호 등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페인트를 구입하여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완료 후 일당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및 재료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3자를 고용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재해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사업장은 도계장 내 부산물 가공을 일시 위탁하였으나 위탁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정해진 작업 단가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자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7338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에서 닭 근위 속의 이물질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8. 5. 26.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늑골 골절(10, 11, 12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출·퇴근에 강제성이 없는 점,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한 점, 생산량에 따라 계산된 도급금액에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점, 사업주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작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III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가 “서울에 있더라도 데리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구두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 회사가 제공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 원재료인 닭 근위와 작업도구인 모자·앞치마·작업복·장화·작업대·양동이 등을 회사에서 제공한 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작업시간 내내 작업의 속도, 작업물의 상태, 앉는 자리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회사 과장 및 주임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지위를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주)○○에서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던 자로서, 2018. 5. 26. (주)□□ 내 도계장에서 물통을 들고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늑골 골절(10, 11, 12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 2) (주)○○는 2015. 8. 1.부터 식육 가공 및 포장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위 법인은 2018. 4월부터 (주)□□ 내 도계장에서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을 수행하였는데, 도계장에서 작업자들이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하면 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그 날의 작업량을 기록·수거한 후, 이를 본사로 가져가 세척 및 포장을 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 2월~3월은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타 사업장(상호 “△△”)에 위탁하였으나, 2018. 4월 계약 해지 후 위 법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하였다.
- 3) 청구인은 △△ 소속으로 (주)□□ 도계장 내 근위 작업장에서 1년 이상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2018. 4월부터 (주)○○ 소속으로 변경된 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로 등으로 청구인 포함 9명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4) 청구인과 (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채용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사업주가 ‘△△에서 일했던 사람 중 계속 일할 사람들은 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출·퇴근 시켜주면 일하겠다’고 하여 이전 △△의 근로 조건과 동일하게 (주)○○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주)○○는 “△△이 도계장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으로부터 도급을 받았던 작업자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을 받기로 하여 4월~5월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주)○○로는 작업량 1kg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고,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다음달 10일 청구인 등에게 작업대가를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근무일수 | 작업량 | 급여 | 사업소득세 | 실 지급액 |
|----|------|--------|------------|---------|------------|
| 4월 | 20일 | 1535kg | 1,381,140원 | 45,578원 | 1,335,562원 |
| 5월 | 18일 | 1318kg | 1,186,110원 | 39,142원 | 1,146,968원 |

6) 청구인 등 작업자들은 월요일~토요일(토요일은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간헐적으로 휴무일 때도 있음) 근무하고, 휴무 시에는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점심시간은 11:00 ~ 12:00로, (주)□□ 내 식당에서 식사하였고, 식대를 별도로 지불하지는 않았다. 근무 시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간 관리자 차량으로 출근하였고, (주)□□에서 닭 근위가 넘어오는 시간에 맞춰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08:00 ~ 18:00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주)○○는 “(주)□□의 근무시간 및 장소는 정해져 있으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다. 지각·조퇴·결근 시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장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오사장이 처음 보름 정도 출·퇴근 시켜주고, 이후 보름은 회장과 친하다는 과장이 출·퇴근 시켜주었으며, 그 이후는 남자 주임이 계속 출·퇴근 시켜주었다. 청구인 포함 6명이 해당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비는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주)○○는 “최○○과장 및 남자 주임은 타 업체 소속으로 청구인 등 도급자들과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호의적으로 카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주)○○에서 청구인 등 작업자들에게 모자·앞치마·작업복·장화·작업대·양동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도구는 장갑·토시·칼·도마이다. 이에 대하여 (주)○○는 “제공한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앞치마 등은 작업기간이 짧아 작업비에서 공제하지 못하였고, 퇴사할 때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사업주 등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과장 및 남자 주인이 수시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음박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작업장 내에서 자리도 지정해 주고 있다”고 진술하나, (주)○○는 “작업장 내 지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므로 별다른 지시 없이 출근해서 작업을 하면, 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작업자의 작업량을 확인 후 수거할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10) 그 외 청구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근로자 가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과장 및 남자 주인이 타 업체 소속이라는 (주)○○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사원 모집 공고 하단의 전화번호는 ‘최○○과장의 핸드폰 번호’에 해당하고, 최○○과장과 남자 주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청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였다. 또한, ○○ 도계장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래 공장도 ‘사원 모집, 직원 모집’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실에서 최○○과장과 전화 통화한 결과, 최○○ 과장은 “본인과 남자 주인은 (주)○○ 소속 임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계장 내에서 기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장’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 ‘사장’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이다. (주)○○ 사업 일부를 도급받고자 자발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직원 채용 광고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것은 지역적 특색과 공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도와주기 위함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휴대폰에 “최○○과장”이라는 명칭으로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최○○과장과의 대화 내용(2018. 6. 14. 전화통화)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는 바, 다음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 산재 처리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최○○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의적인 입장에서 회사와 조율하여 병원비를 해 드리려고 한다.

라) 청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실이나 식당에서 위생교육 등을 20분간 받은 후 교육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실에서 (☞□□에 확인한 결과, 공장 내 작업자 전체(타 업체 포함)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명을 받은 참석자 명단 등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주)○○는 2015. 8. 1. 개업하여 서울 본사에서 식육 가공 및 포장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 소재 (주)□□ 도계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하면 서울 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그 날의 작업량을 기록 후 수거하여 이를 본사로 가져가 세척 및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도계장 내 부산물 작업과 관련하여 ‘△△’이라는 사업장에 가공을 위탁하였으나, 2018. 4월 계약 해지 후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년 4월 이전부터 (주)□□ 도계장 내 근위 작업장에서 ‘△△’ 소속으로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고 2018. 4월 이후에도 별다른 근무형태의 변동 없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온 점,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정해진 작업 단가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 1,600원을 받기로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에게는 일반직원과 달리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적이 없음을 종합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0091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0. 15. 사업장 경계석 작업 라인에서 석제품 크레인 작업바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작업바가 석제에서 이탈하면서 석제품이 낙하하여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 하였고,
- 나. 원처분기관은 관련 자료 검토, 청구인 및 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이 ○○기업(주)의 소사장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등을 적용받지 않는 ‘○○석제’의 개인 사업소득자인 점 등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무 및 제반현황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

근로자
여부
판
계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기업(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이 ○○기업(주)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체 개요

가) 사업장명: ○○기업(주)

나) 소재지: **시 □□면

다) 산재보험 성립일: 2015. 3. 10.

2) 청구인의 사업체 개요(○○기업(주)과 물량단위 계약을 맺고 거래)

가) 사업장명: ○○석재

나) 대표자: 신○○(청구인)

다) 소재지: **시 △△면

라) 사업자 개업/폐업: 2013. 10. 15. / 2018. 12. 10.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이 있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

나)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취업하게 되었고 ○○기업(주)에서 전적으로 일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여 오로지 ○○기업(주)에서만 일하였고 재단 라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였음

다) 비록 일이 없는 날에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먼저 퇴근하거나 결근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모든 업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 감독 받음

- 라) 청구인의 업무는 구체적인 지시대로 작업하는 것인지 청구인의 맘대로 규격이나 수량 등을 정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해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임
- 마) 청구인의 담당이 아닌 경계석 라인에서 일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다치는 상황이 된 것임
- 바) 청구인의 보수는 이미 정해진 단가에 따라, 작업 수량을 환산하여 정산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일에 지급 받았음
- 자) 청구인의 국세청 신고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것은 맞지만, 사업활동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임
- 차) 오로지 ○○기업(주)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발생한 부가세 및 소득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을 얻거나 비용처리를 하여 그 이익이나 손실을 떠안은 사실이 없이 오로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임
- 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 가) 청구인 입사 및 자격 취득 내역: 2017. 5월경부터 소사장으로 재단라인에 들어와 일을 했고 4대보험 해당 없음
- 나) 청구인의 담당업무: 재단
- 다) 청구인의 급여 책정액 및 근거자료(노무비 명세서 등): 해당 없음
- 라) 청구인 업무에 대한 계약서 유무: 소사장(재단 라인) 구두 계약
- 마) 청구인의 소득 신고: 청구인이 사업소득 신고
- 바) 청구인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대상: 해당 없음
- 사) 청구인은 사업주에 의해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받는지 여부
- 해당 없음,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정함
- 아)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자) 사업주의 정상적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 가능 여부: 가능

차) 청구인의 작업도구는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 작업도구는 별도로 없고 재단기만 필요

카) 청구인의 출퇴근 관리

- 해당 사항 없음, 자율적임

타) 기타

- 청구인은 ○○석재 사업주로 ○○기업(주) 근로자가 아니며 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

5) 산재심사실에서 청구인과 ○○기업(주) 사업주에게 징구하여 받은 문답 내용

가) 청구인과 ○○기업(주) 대표의 일치하는 주장

- 작업 공정 흐름: 원석 → 활석 → 버너, 연마, 잔다듬 → 재단 → 출고
(청구인 작업)

- 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m²))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

- 일반적 근로 계약이 아닌 물량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식은 최초 면담시 쌍방간의 합의 하에 정해짐

※ 일방의 요청이 아닌 상호 협의 하에 물량 단위 대금 지급 방식 결정

- 청구인은 ○○석재라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기업(주)에 대리석을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음

- 부가세 신고: 2017년 2기(2017. 7. 1. ~ 2017. 12. 10.), 2018년 1기(2018. 1. 1. ~ 2018. 6. 30.), 2018년 2기(2018. 7. 1. ~ 2018. 12. 10.)

- (주)○○기업 대리석 관련 작업 공정 흐름은 『원석 → 활석 → (버너, 연마, 잔다듬) → 재단 → 출고』임

- 청구인이 ○○기업(주)에 장비, 공간 사용 등의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음

- 작업 공정(대리석 재단)에서 다이아몬드 톱과 같은 소모성 자재가 있었고 이는 ○○기업(주)이 구매
- ○○기업(주)에서는 명절 등의 시기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선물 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선물세트만 지급함
 - ※ 청구인은 수당에 대해서만 언급(지급받은 사실 없음)
- ○○기업(주) 내 소속 직원 중 청구인이 담당하던 대리석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었음
 - ※ ○○기업(주) 대표: 대리석 재단기가 두 대가 있고, 이 중 한 대는 청구인이 도급으로 전담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기업(주) 소속 직원 중 유휴인력이 생길 때 가동
- 청구인이 ○○기업(주)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 물량단위로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없었음
 - ※ ○○기업(주) 대표: 청구인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2017. 6. 1.)부터 제조업을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대리석 등 관련 도·소매업을 하였음
- 근무시간은 08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 차량, 숙소는 제공되지 않았고 식사는 제공됨

나) 청구인과 ○○기업(주) 대표의 상반되는 주장

| 구 분 | 청 구 인 | ○○기업(주) 대표 |
|---|---|--|
| ① 대리석 재단이 아닌 경계석 재단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재해일 이전부터 재해일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를 당한 날 공장장이 “오늘까지 납품해야해서 급하니 경계석 라인으로 가서 일하라”는 지시가 있어 경계석 라인으로 이동하여 작업 • 2018. 6월 이후부터 4개월 동안 8일 정도에 걸쳐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석 재단업무를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6월경 사전 협의 하에 경계석 재단 작업도 청구인 동의하에 하기로 함 - 조건: 1,000원/EA • 2018년 상반기 대리석 재단 발주량이 많지 않아 청구인이 받아가는 정산 금액도 매우 적어 ○○기업(주) 대표가 청구인에게 경계석 재단(개당 1,000원)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쌍방 합의 하에 2018. 6월부터 경계석 재단작업까지 하게 되었음(사업주 구두 설명) - 경계석 재단 업무 5회(5일), 3,540천원 |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구 분 | 청 구 인 | ○○기업(주) 대표 |
|----------------------------|---|--|
| | | * 근거: ○○석재(신○○) 외주가공 현황 및 지급내역 |
| ②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출퇴근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몸이 아픈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작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른 양식에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었음 - 이런 날은 몇 차례만 있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두로 공장장이나, 사무실에 의사를 전달하고 특별히 제출하는 서류 없으며 제출 받은 서류도 없음 |
| ③ 독자적인 작업 수행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작업 흐름에 맞춰 대리석 재단 업무를 하였고 - 작업이 일찍 끝나면 상황에 따라 공장장이 다른 작업 수행을 지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은 발주 받은 물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업 - 정상 발주시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하고, - 발주 물량이 없을 시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됨 |
| ④ 보수(대금) 지급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월 10일에 지급 받았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적으로 월 1~3회 정산 지급 - 지급일: 1.10. 2.12. 3.9. 4.11. 6.1. 6.18. 7.10. 7.27. 8.10. 8.27. 9.4. 9.14. 9.21. 10.3. 10.29. 11.12. |

다) 외주가공 현황 및 (대금) 지급 내역

| 구 분 | 근무일수 | 재단량 | 재단 금액 | 지금액 | 잔 액 (월말 정산 후) |
|-----------|------|----------|------------|----------------|------------------|
| 2018. 1월 | 22일 | 2,223.4 | 3,963,300원 | 4,000,000원 | 12,223,900원 |
| 2018. 2월 | - | 56.55 | 90,480원 | 4,000,000원 | - |
| 2018. 3월 | 6일 | 998.73 | 1,767,420원 | 4,000,000원 | 6,081,800원 |
| 2018. 4월 | 10일 | 792.12 | 1,410,200원 | 2,000,000원 | 5,492,000원 |
| 2018. 5월 | 1일 | 135.46 | 216,736원 | - | - |
| 2018. 6월 | 8일 | 3,099.46 | 4,509,964원 | 3,500,000원(2회) | 6,718,700원 |
| 2018. 7월 | 3일 | 1,105.26 | 1,449,800원 | 3,000,000원(2회) | 5,168,500원 |
| 2018. 8월 | 10일 | 2,521.62 | 5,418,600원 | 2,200,000원(2회) | 8,337,100원 |
| 2018. 9월 | 8일 | 1,352.01 | 2,406,800원 | 4,000,000원(3회) | 6,743,900원 |
| 2018. 10월 | 2일 | 1,826.04 | 2,923,800원 | 4,000,000원(2회) | 5,667,700원 |

※ ○○기업(주) 대표 제출 자료로서, 2018년 8월에는 7월 1일분 468,560원이, 10월에는 11월 지급금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2018. 8월 조의금 50,000원 미반영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인 사업주(○○석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물량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주) 소속 직원들에게는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에 따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근무 및 제반현황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은, 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인 사업주(○○석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물량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주) 소속 직원들에게는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으며 사업장으로부터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왔
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95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7. 3.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시스템(이하 '사업장'이라 칭함)이 시공한 '주차설비 설치공사' 준비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정화조로 추락한 사고로 상병명 '좌측 2,4,5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좌측), 폐의 타박상(좌측), 눈 주위 열상(좌측), 경추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치골의 골절, 좌측 절구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볼·양측 가슴·좌측 골반·양측 위팔 표재성 손상'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 나.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일용직 급여지급 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작업일지 및 출근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 없이 스스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고 당일 청구인이 현장에 간 이유는 명일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므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건축현장 소장과 통화 후 사업주의

III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청소 지시에 따라 사업주와 함께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급여내역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국세 미납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비규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8. 7. 3. 15:00경 ○○시 ○○구 ○○동 숙박시설 신축현장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청소작업 중 정화조 맨홀을 점검하다 발이 미끄러지며 정화조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2) 공사 현장 개요

| | |
|-------------------|--|
| 원도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명: 숙박시설 신축공사 - 발주자: 김○○ - 원도급자: (주)△△ - 공사금액: 1,700,000,000원 - 공사기간: 2017. 7. 3. ~ 2018. 10. 31. |
| 하도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명: 화물승강기설비공사 - 하수급자: ○○엔지니어링(주) - 공사금액: 39,000,000원 - 계약일자: 2018. 4. 30. - 납기일자: 2018. 7. 31. |
| 재하도급 (이 사건 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명: 주차설비설치공사 - 재하수급자: (주)○○시스템 - 공사금액: 39,000,000원 - 계약일자: 2018. 5. 2. - 납기일자: 2018. 8. 31. |

3)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 재해 현장은 △△(주)가 시공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엔지니어링(주)가 화물용승강기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턴키 방식으로 (☞)○○시스템에 재하도급함
- 주차설비 설치공사 외 다른 건설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현장 작업인원은 (☞)○○시스템 대표(이하 '사업주'라 칭함) 및 청구인으로 총 2인임
- 사업주는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작업인 취부, 용접 등은 청구인이 담당함
- 청구인이 재해 당시 수행한 업무(주차기계설치 장소 청소)는 ○○엔지니어링(주)나 이 사건 사업장이 도급받은 공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한 것임

나) 근로계약 및 근로형태

- 청구인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신청 시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제출하였는데, ○○엔지니어링(주)와 사업장이 공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어차피 동일한 공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어느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건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임
- 사업주는 청구인을 상용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가 될 경우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 없거나 바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사업주와 10년 이상 함께 일을 하였고, 10년 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있었으며, 당시는 설치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일용직 형태라는 진술임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다) 보수 지급 관련 사실관계

-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 계좌 입금, 사업주 명의 신용카드(4매)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내역을 사후 공제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에게 보수 명목의 카드를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작업 중 필요한 공구 또는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라고 진술함.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노임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노임과 경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노임은 매일 지급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100~200만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며, 통상 기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 노임을 미리 지급하기도 한다는 진술임
- 매 3개월마다 청구인이 일한 날을 노무비대장으로 작성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요일 외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근무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는 않음

4) 제출된 자료 및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4대보험 취득 신고 내역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사업장명 | (주)○○시스템 | (주)○○시스템-○○공장 | (주)○○시스템 | 지역세대주 |
| 취득일자 | 2014. 12. 1. | 2014. 12. 1. | 2018. 6. 1. | - |
| 시스템 반영일자 | 2017. 10. 31. | 2017. 10. 31. | 2018. 10. 2. | 2017.12.5. |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이력

| 사업장명 | 취득일 | 상실일 |
|--------------|--------------|--------------|
| (주)○○시스템 | 2008. 1. 25. | 2008. 9. 28. |
| ○○산업주식회사(지점) | 2012. 7. 17. | 2012. 9. 25. |

| 사업장명 | 취득일 | 상실일 |
|----------|--------------|--------------|
| ○○무역 | 2013. 4. 1. | 2013. 6. 28. |
| (주)○○시스템 | 2014. 12. 1. | |

다) 이 사건 사업장 취득 이전 일용근로 신고 내역

| 년월 | 사업장명 | 근로일수 | 보수총액(원) |
|-----------|-------------------|------|-----------|
| 2013. 6. | 제13차숲가꾸기사업(○○영림단) | 5일 | 600,000 |
| 2013. 7. | 제19차숲가꾸기사업(○○영림단) | 16일 | 1,920,000 |
| 2013. 10. | ○○기술(주) | 9일 | 1,350,000 |
| 2014. 10. | ○○기술(주) | 10일 | 1,980,000 |

라)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내역

| 구분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근무 일수 | 금액 |
| 1월 | | | 24 | 2,400,000 | 20 | 2,000,000 | | | 19 | 1,900,000 |
| 2월 | | | 19 | 1,900,000 | 20 | 2,000,000 | | | 19 | 1,900,000 |
| 3월 | | | 26 | 2,600,000 | 20 | 2,000,000 | | | 19 | 1,920,000 |
| 4월 | | | 26 | 2,600,000 | 25 | 2,500,000 | | | 25 | 3,750,000 |
| 5월 | | | | | 6 | 600,000 | | | 24 | 3,600,000 |
| 6월 | | | | | 25 | 2,500,000 | | | 24 | 3,600,000 |
| 7월 | 27 | 2,700,000 | | | 26 | 2,600,000 | 19 | 2,100,000 | | |
| 8월 | 23 | 2,300,000 | | | 26 | 2,600,000 | 19 | 2,600,000 | | |
| 9월 | 21 | 2,100,000 | | | 23 | 2,300,000 | 19 | 2,600,000 | | |
| 10월 | 25 | 2,500,000 | 23 | 2,300,000 | 25 | 2,500,000 | 19 | 1,900,000 | | |
| 11월 | 25 | 2,500,000 | 23 | 2,300,000 | 7 | 700,000 | 19 | 2,100,000 | | |
| 12월 | 26 | 2,600,000 | 23 | 2,300,000 | | | 19 | 2,070,000 | | |
| 계 | 147 | 14,700,000 | 164 | 16,400,000 | 223 | 22,300,000 | 114 | 13,370,000 | 130 | 16,670,000 |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마)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카드 사용내역, 일용근로소득내역, 계좌 입금내역

| 해당월 | 일용근로소득내역 | 카드사용액 | 계좌입금액 |
|----------|------------|------------|------------|
| 2018. 4월 | 3,750,000원 | 1,039,020원 | 1,000,000원 |
| 2018. 5월 | 3,600,000원 | 1,563,440원 | 2,768,080원 |
| 2018. 6월 | 3,600,000원 | 1,473,662원 | 500,500원 |

바) 2017. 8. 1. ~ 2018. 7. 31. 기간 중 사업장 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월일 | 법인계좌 → 청구인 입금액 | 청구인 → 법인계좌 |
|---------------|----------------|------------|
| 2018. 6. 29. | 100,000 | - |
| 2018. 6. 7. | 400,500 | - |
| 2018. 5. 29. | 2,700,500 | - |
| 2018. 5. 18. | 67,580 | - |
| 2018. 4. 4. | 1,000,000 | - |
| 2018. 3. 21. | 2,000,500 | - |
| 2018. 2. 10. | 1,000,500 | - |
| 2018. 2. 7. | - | 5,000,000 |
| 2018. 2. 5. | - | 3,000,000 |
| 2018. 2. 5. | - | 5,000,000 |
| 2018. 1. 10. | 1,000,500 | - |
| 2017. 12. 15. | 1,000,500 | - |
| 2017. 11. 30. | 1,000,500 | - |
| 2017. 8. 18. | 1,000,500 | - |
| 2017. 8. 16. | 1,000,500 | - |
| 계 | 12,272,080 | 13,000,000 |

- 청구인 → 법인계좌 입금 내역: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피○○이 약 3천5백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장 명의로 계약 및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인 1천5백만원은 사업장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이 현금으로 받아 본인 몫을 자의적으로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사업장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임(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과 사업주 합동 면담조사 시 확인함)

-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피○○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고 진술함
- 사)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아) (주)○○시스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산재심사실에서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에게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

- 청구인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100~200만원씩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존적으로 카드를 지급하였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된 내역에 따라 추후 임금을 정산할 예정임
- 이 사건 주차설비는 1~2개월간 청구인과 함께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를 하기 전 현장 점검 및 작업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청소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나) 청구인에게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

〈청구인의 주요 업무 및 (주)○○시스템과의 관계〉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5년 전부터 일 하였고, 통상 월 20일 전후로 일을 하며, 일당 15만원으로 산정함
- 주요 업무는 주차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이며, 주요 작업도구는 용접기, 절단기 등으로 사업장 소유임
- 사업장 내 작업자는 주로 청구인과 사업주이며, 추가 인력 필요시 청구인 또는 사업주가 섭외하고 일당은 사업주가 지급함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인건비 정산 관련〉

-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된 임금은 있음. 금액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통상적으로 한달간 일한 날자를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카드사용 내역도 정산 당시에 확인하여 인건비에서 공제하고 받을 것으로 판단했음
- 사업주로부터 전(2002~2003년경)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신뢰 관계로 인해 정확하게 일한 날을 따져서 인건비를 정산할 의도는 없음
- 사업주가 부도를 맞고 통장에 압류가 돼 있어서 현금이 잘 융통되지 않는 사정이 있고, 이를 이해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며, 두어번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으나 그때마다 사업주가 얼마간 돈을 주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카드도 받게 되었음. 카드를 사용한 것은 2~3년쯤 되었음

〈이 사건 공사 관련〉

- 이 사건 공사는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에게 계약 건을 말하였고, 제작은 사업주와 둘이서 대략 15일~20일 동안 작업했으며, 제작을 마무리한 후 현장을 갔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해보면 6월 초중순쯤 주차기계 제작을 시작한 듯함
- 통상적으로는 설치는 외주를 주는데 이번 건은 주차대수 11대짜리 공사로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어서 사업주가 직접 설치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현장 설치 상황을 점검 하러 간 것임.
- 해당 현장은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건설사에서 남은 자재 등을 청소해 두어야 하는데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주차설비 들어갈 자리에 건설자재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었음) 사업주가 "내일 자재가 들어와야 하니 오늘 우리가 청소하자"고 해서 둘이서 같이 청소를 하기로 하고 잡자재 등을 치우려다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공사는 2명에서 대략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완성할 수 있는 공사였음
- 제작기간을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하면 대략 3~4백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받을 수 있는 공사임

〈근로계약서 관련〉

- ○○엔지니어링(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는, 최초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엔지니어링(주)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

〈청구인이 2018. 2. 5. 및 2018. 2. 7. (주)○○시스템의 계좌에 1300만원을 입금한 사실 관련〉

- 지인이 은행 건물 주차기 수리 공사를 수주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주)○○시스템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자재를 (주)○○시스템이 공급하고, 청구인과 피○○이 수리작업을 하였음. 발주자가 현장에서 피○○에게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피○○이 청구인에게 (주)○○시스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하였음

다) 청구인 진술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실관계

- 청구인이 (주)○○시스템에 입금한 1,300만원과 관련하여 진술한 주차기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시스템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발행일자 | 공급자 | 공급받은자 | 공급가액 | 공급받은자의 주소 |
|--------------|----------|-------|-------------|-----------|
| 2018. 1. 25. | (주)○○시스템 | ○○빌딩 | 35,750,000원 | ○○시 |

- 인터넷 검색사이트 지도에서 ○○빌딩의 1층에 은행이 입점한 사실이 확인된다.
- (주)○○시스템 법인 계좌 거래내역 상 2018. 2. 5. 2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2.7. 5백만원 입금내역의 적요는 'CD공동', 의뢰인/수취인은 '신○○'으로 확인된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7. 3.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받은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하였고,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시스템은 주차설비, 리프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작업일지나 출근부 또는 정기적 급여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2.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던 점, (주)○○시스템 법인 계좌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가량의 금원이 지급된 점, 재해 발생 당시 시행한 청소작업이 (주)○○시스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 왔던 점, (주)○○시스템으로부터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 온 점, 재해 발생 당시 시행한 청소작업이 (주)○○시스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을 도급사업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 등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당을 반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임금지급 내역이 확인됐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2559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2. 13. 11:00경 ○○포장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쇄기 작동) 벨트 수리 과정(벨트가 벗겨져서 벨트를 제자리에 끼우려다 목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우측 손, 손목부위 압괴상, 우측 제3중수골 기저부의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소속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포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제출된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각서를 통해 신청인의 임금 및 고용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신청인이 이전에 ○○포장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신청인이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리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대리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사업주와 배우자 관계이고, ○○포장의 이전 대표자라는 사정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대표자로 명의변경 이후 공장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 가끔 공장에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로서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대가의 임금은 통장을 통해 정산받았다.

청구인은 기계조작 및 수리라는 정해진 전문적인 업무를 사용자의 목시적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였고, ○○포장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로서 1일의 계약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일당으로 10만원을 정산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및 사업주 개요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신청인

- 성명: 박○○
- 사업주와의 관계: 배우자(남편)

○ 사업주

- 성명: 우○○
- 주소: ○○시

나) 신청인 고용사항

- 채용일자: 2018. 12. 13.
- 4대 보험 취득 내역: 취득내역 없음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 채용 형태: 일용직
 - 급여지급 형태: 현금
 - 일급여: 220,000원

다)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조사내용

- 신청인은 ○○포장 사업주와 부부관계로 동일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무에 따른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
- 사업주와 신청인의 거주지
 - 사업주와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자정보 조회상 동일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4대보험 가입자정보 조회상 주소지는 ○○포장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근로 형태 및 급여의 지급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임. 급여가 일급 22만원이라는 증빙서류로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각서를 2019. 1. 8. 소속 사업주가 제출하였음.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서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재해일 이전에도 종종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하였으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음(2019. 1. 11. 원처분기관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신청인은 일용직이고, 작은 회사라 출근 내역을 체크한 것이 없으며, 돈도 현금으로 신청인에게 주어서 내역이 없다고 했다는 것임)

○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신청인의 역할

-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조회상 신청인은 2001. 9. 1.부터 2014. 5. 20.까지 ○○포장의 대표자였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사업장총괄카드 조회상 신청인과 사업주의 아들인 '박○○'이 2014. 6. 1.부터 2018. 8. 2.까지 대표자였고, 2018. 8. 3. 배우자인 우○○이 대표자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아들이자 이전 대표자인 박○○의 4대보험 가입자정보 조회상 주소지가 신청인과 동일한 ○○포장 주소지임. 신청인은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으며 근로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요양급여 신청 시 신청인과 사업주가 부부관계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부부가 아님을 주장해왔음

라) 원처분기관 담당자 유선통화 복명서 내용(일부 발췌)

○ 신청인에 대한 조사(2019. 1. 11.)

- (안녕하십니까. 박○○ 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 (재해일인 12월 13일 이전 ○○포장에서 근무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가끔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장 주소지가 회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업주였는데, 그 때 해놓고 안바꿨습니다.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현재 사업주가 다른 분이시고 이전에 사업주가 여러번 바뀐 걸로 확인되는데 다른 사업주분들께서 주소지와 관련하여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아들이 사장이어서 괜찮았습니다.
-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입니다 .
- (우○○ 님과 부부관계가 맞으신지요) 아닙니다.
- (우○○ 님과 전화통화 시 우○○ 님의 아드님 성함도 박○○ 님이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 (우○○ 님과 부부관계가 맞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 (처음에 왜 모르는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부 사이인 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박○○ 님이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몇 번 가서 근무만 했을 뿐입니다.

○ 사업주에 대한 조사(2019. 1. 11.)

- (안녕하세요. 우○○ 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 (12월 13일 발생한 박○○ 님의 재해와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우○○ 님께서는 회사에 계속 출근하십니까?) 제가 요즘 몸이 안좋아서 잘 못나갑니다.
- (그렇다면 사업장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공장장이 나가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다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 님께서 사장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 (사장님이신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모르십니까?) 원래 이쪽이 사람이 자주 바뀌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 (사업장 관리를 우○○님이 하시는게 맞습니까?) 제가 하기도 하고 아들이 가끔 와서 관리했습니다.
-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입니다
- (아드님은 현재 ○○포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 통화 종료 후 재통화

- (안녕하십니까. 우○○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 씨와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박○○ 씨와 부부관계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사이만 아닐 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입니다.
- (왜 이전에는 박○○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부부관계인 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 (우○○님께서 실사업주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전에 아들이 하다가 저로 바뀌었고 아들이랑 같이 하다가 제가 단독으로 한지는 일년정도 됐습니다. 남자 일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도와달라고 아들 부르고, 바쁠 때 일당쳐서 박○○ 씨를 불렀습니다.
-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2명이고 그중에 오○○ 씨가 있는데 이분은 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입니다.
- (아드님은 ○○포장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까?) 네 아들은 현재 시급 만원인 판 일을 하고 있고 사정상 공장 내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 (아드님이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겠지만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작업 중 손, 손목이 롤러에 끼이는 수상 후 증상 발생하여 창상 관리 및 보존적 치료 중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재해 관련성 인정되어 상병 및 요양기간 승인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포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다.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포장은 2018. 8. 3.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2001. 9. 1.부터 2014. 5. 20.까지 청구인이 사업주였고,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 등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최초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연대 각서(사업주 서명)에 기재된 일당은 22만원인데 반해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일당을 10만원으로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처분기관의 이 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

청구인은 건축주가 창고 수리를 위한 자재를 구매 후 시공할 인력으로 소개받아 현장에 가게 되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고 건축주의 승인 하에 작업을 시작했으며 청구인과 같이 작업하기로 한 동료근로자의 진술 역시 각각 일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은 노무만 제공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3640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0. 2. 07:30경 김○○ 소유의 가정집 지붕수리를 위하여 지붕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다쳤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요추3번 방출성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 받아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5조 2호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수급자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근로자이며, 이번 김○○씨 소유 창고의 지붕공사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자재 판매자 신○○씨에게 소개를 받아 일당 20만원씩에 근로자 2명과 함께 2일간 공사할 예정으로 작업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청구인을 도급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국내의 모든 작은 집수리는 청구인과 같이 일당으로 작업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고 현장의 공사도 도급으로 정할 정도의 공사가 아니고 일당으로 할 정도의 공사이며 청구인은 도급을 받아서 할 정도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으로부터 공사를 부탁 받아 현지에 동료 2인과 함께 가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동료 2인이 2일 정도 작업하면 되는 정도여서 건물주와 1일당 20만원씩 2일간 작업하기로 하였다. 건물주가 도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 정도의 작은 공사는 도급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당시에 소개한 지인 신○○과 동료 2인도 같이 있었다. 신○○씨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8. 10. 2. 07:30경 김○○ 소유의 가정집 창고 지붕수리를 위하여 지붕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였다.

2) 재해현장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 김○○

나) 시공자: 윤○○

다) 공사명: 김○○ 지붕개량공사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라) 공사소재지(재해발생): ○○시

마) 실 착공일: 2018. 10. 2.

바) 공사금액: 1,200,000원

3) 공사 계약 관계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주자는 지붕개량공사를 위해 신○○에게 자재 구입
- 발주자는 신○○의 소개로 시공사 윤○○과 공사금액, 공사기간을 구두로 협의하고, 윤○○이 제시한 금액 및 기간으로 공사를 의뢰
- 윤○○이 현장 방문하여 발주자에게 공사 진행 관련 금액, 기간을 제시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은 윤○○이 자체 채용 및 조달하기로 하였다.

4) 원처분기관이 발주자 김○○과의 면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 9월경 기존 축사의 낡은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지붕 슬레이트 등을 구입하면서, 지붕교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 소개를 부탁
- '신○○'의 소개로 윤○○이 방문하여 지붕 상태와 구입 재료 직접 확인한 후, 2일에 걸쳐 3명이 작업을 하면 교체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하였고, 1명당 일당 20만원으로 총 금액 12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공사금액 제시
- 내심 비싸다고 생각하였으나 윤○○이 요즘 시세라고 하여 구두로 수락, 청구인이 인부를 구하여 며칠 후 오겠다고 답변하고 돌아감
- 윤○○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몰라 '신○○'에게 연락하자, '신○○'이 일정 확인 후 2018. 10. 2. 공사를 하러 온다고 알려 줌
- 2018. 10. 2. 윤○○과 인부들이 포터 차량에 싣고 온 사다리 등 장비 하차 후, 윤○○이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119로 후송 후 전원 철수함
- 이후, '신○○'에게 연락하여 다른 건축업자를 소개 받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건축업자의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2일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 한 후 120만원 지급

- 본인은 공사 진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윤○○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함

5) 청구인의 형 윤○○과의 유선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 추석 연휴기간(9. 23. ~ 9. 26.) 목장을 운영하는 친구 '신○○'이 자택을 방문하여, 동생 윤○○이 건설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지붕 판넬공사를 할 수 있는냐고 문의하였고, 신○○의 소개로 동생 윤○○과 건물주 김○○이 유선 연락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동생 윤○○ 외 2명이 함께 공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6) 목격자 유선확인 내용(전○○철2019. 2. 7. 15:11, 목격자)

- 2018. 10. 2. 3인이 주택 지붕판넬 공사 현장에 도착
- 사고 발생 약 2일 전 윤○○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체에 필요한 판넬 등을 확인 후 제조업체에 주문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8. 10. 2. 낡은 지붕 판넬을 제거 후 교체 작업만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사 시작 후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 중단되었다.

7) 심사 청구시 추가 제출 자료

- 신○○ 확인서: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자신의 주택 지붕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본인에게 구입하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소개를 부탁받아 윤○○을 소개하고 사고 전날에 본인과 윤○○, 같이 작업할 동료 근로자 2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작업을 의논하던 중 건물주 김○○과 본인이 윤○○에게 본 공사를 도급을 맡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윤○○은 여지껏 자신은 도급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본 공사는 도급으로 공사할 여건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급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은 건물주에게 1일 20만원씩 2일간 동료들과 작업하겠다고 해서 건물주로부터 그럼 내일부터 작업하라 해서 작업 시작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본인이 김○○에게 판매한 자재대금 160만원과 2일간 작업일당 40만원 합계 2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동료 확인서: 김○○ 주택 창고 지붕수리 공사를 평소 같이 작업해온 윤○○으로부터 1일당 20만원씩 2일간 같이 작업할 것을 약속하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9. 1. 23. ○○병원)

- 1) 신청 상병명: 요추3번 방출성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다발성 타박상
- 2) 요양신청기간: 2018. 10. 2. ~ 2018. 11. 9.(입원), 2018. 11. 10. ~ 2019. 2. 8.(통원)
- 3) 상병상태: 뇌출혈 및 척추손상으로 ○○병원에서 척추수술 및 뇌치료 후 현재 포천시 신북면 소재 힐링 요양병원에서 전원 치료 중임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제2호 근로자, 임금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재해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작업 도중 이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처분 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건축주가 창고 수리를 위한 자재를 구매하면서 작업을 시공할 인력으로 소개를 받아 현장에 가게 되었고, 수리작업에 대해 이틀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120만원을 산출하고 건축주의 승인 하에 작업을 시작한 점, 청구인과 같이 작업하기로 한 동료근로자의 진술 역시 각각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주가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은 노무만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동 현장에 대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았거나 일당 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서 작업도중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7

»

사업주는 최초 출근일인 재해당일까지도 청구인의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해발생 당일 사업장에 출근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당일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여 근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재해발생일은 사실상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3934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 21. 13:30 ~ 14:30 사이에 기계 가동 중 외아령 및 청소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 중 2m 정도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다발성 늑골골절(3-8번), 좌측 두피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아 2019. 2. 21.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사업장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재해 발생일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나간 3일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해 당일은 청구인의 작업 결과를 보고 사업장에서 실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써 채용 확정 전 사업주가 요구하는 기계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면접의 일환으로 기계 가동 여부 시연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해당 업체에 출근하여 3일 간 작업을 하였다. 첫날인 17일에 면접 겸 09시에 사업장으로 출근하자 사장이 있었고, 악수를 나눈 뒤에 바로 지시를 받고 용접작업을 하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기계를 가동했으나 결함으로 인해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동을 껐고, 그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 5일 근무, 휴무일, 월급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결정(구두로)하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1/17일, 1/18일 모두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사업장에서 작업하였으며, 사고 날인 1/21일 아침에는 사장으로부터 빨리 출근하라는 전화까지 받았다. 사업장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면접의 일환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 둘째 날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뒤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어느 누가 3일 동안 면접 테스트를 보러 ○○까지 가겠는가? 분명 본인은 근로자로서 채용이 되었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의 최초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는 “2019. 1. 21. 회사에 출근해서 13:30 ~ 14:30 사이에 기계 가동 중 외아링 및 청소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 중 2m 정도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 2) 구급 활동 일지 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자 사고 위치에 앙와위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의식 명료, 부축거동 가능, 목격자(직장 동료) 말에 의하면 환자 신고 전 계단형 사다리 3번째 칸(1m 이하)에서 우레탄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며 넘어진 직후 2분 이상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2분 동안 가슴압박 실시했다고 함. 환자 상태 확인한 바 흉벽 외 외상 및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통증 부위 없다고 하며 사고 상황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했던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 보임. LOC(+)

3)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종합병원 2019. 1. 21. 15:41

상병내역: 주 상병 concussion of front wall thorax, 부 상병: 기타 실신 및 허탈
사고 현장에서 119 a-car로 응급실 도착
c. c: chest pain
headache, 아까 기억이 안나요

나) ○○병원, 2019. 1. 21.

- 경과 기록지

rib Fx Rt 3-7th

cbr concussion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후 타병원 진료 후 상기 진단으로 연고지 관계로 전원 오심.
당시 LOC

외부 촬영상: 폐기종, 우측 3~7 늑골 골절

흉부외과 입원 관찰

4) 사업주는 당시 바로 옆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 청구인은 계단에서 발을 헛딛으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졌다. 청구인을 부르면서 달려가 보니 하늘을 본 상태로 대자로 누워 있었고 청구인과 함께 왔던 다른 면접자가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이 본인이 11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이다.

5) 목격자는 기계 앞에 서 있는데 사장이 뛰어가서 가보니 청구인이 누워있는데 동공은 돌아갔고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중 꺾꺾 하면서 숨을 쉬면서 동공이 돌아오고 의식을 회복했다는 진술이다.

6) 청구인은 정확한 경위는 의식을 잃어서 자세히 설명할 순 없으나 본인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했고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7) 근로자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가) 사업장 주장(대표자)

- 청구인은 당사에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당일 사업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설비를 조작할 수 있음을 사업장에 보여주어야 채용이 확정되는 일종의 면접자였다.
- 비록 3일 간 사업장에 나왔으나 첫째 날(1/17), 둘째 날(1/18)엔 시연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다시 돌아갔고, 주말 사이에 장비를 받은 뒤 재해 당일(1/21) 다시 청구인에게 면접을 보러오라고 요청한 것이다.
- 말 그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금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 주장(심사 청구시 추가 주장 포함)

- 비록 금품을 받은 사실과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둘째 날 근로조건 및 급여에 관해 주 5일 근무이고 빨간 날이 5일 중 가운데 있으면 앞 아니면 뒤로 쉬고 월급은 400만원으로 하자고 구두로 얘기하였다. 1월 21일 아침 식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김대규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출발했냐고 묻길래 “저 나가기 좀..” 했더니 18일날 이야기 다 되고 끝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했고 혼자 나오라는 것을 주·야 근무이니 정○○씨와 같이 나간다고 설득하여 같이 나갔고 이후 기계를 점검하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 일자별 근무시간(심사 청구시 추가 주장)
 - 2019. 1. 17. 오전 09:00시 ~ 퇴근 17:40
 - 2019. 1. 18. 오전 09:10시 ~ 퇴근 18:30
 - 2019. 1. 21. 오전 09:20시 ~ 오후 14:30 사고 발생

8) 산재심사실 추가 조사 내용

- 가) 재해 당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정○○은 수차례의 유선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도 남겼으나 응답이 없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불가하였다.

나) 사업장 현지 조사(2019. 9. 24.) 내용

▶ ○○회사 사업주와의 면담 내용

- 재해자는 비닐팩 원형 생산설비를 들여다 본 후 옆 철제 계단을 다 내려와서 털썩 주저 앉으면서 쓰러짐과 동시에 눈동자가 돌아가고 주먹을 꽉 쥐 상태로 실신하였다.
- 사업주인 본인이 기계 설비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았고 목격자가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본인이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펴려 했으나 손이 안펴졌다. 갈비뼈가 골절된 것은 쓰러지면서 부딪쳐 다친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분명히 개인 질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장은 비닐팩을 제조하는 회사로 현재 근로자는 기술자 2명,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있다. 공장 준공은 2019. 5. 20.이며,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2019. 5. 23.경부터이다.
- 재해발생 당시인 2019. 1월은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이며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시운전 과정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시운전은 박○○씨가 하였고 박○○의 경우에는 하루에 30만원씩 일당제로 1주일 돌리고 1개월 기계를 정지하는 형태로 하였다.
- 재해자는 다른회사의 소개로 오게 되었으며, 특수한 기계이므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고 채용 여부를 할 예정이었다.
- 공장에 설치된 비닐팩을 생산하는 설비는 4시간 예열을 해야만 가동되며, 동 기계는 기술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룰 수 없고 관련 기계를 다뤄본 사람이어야 설비를 제대로 작동시켜 정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면접자들에게는 급여는 400만원, 기계를 토요일 일요일 연속하여 가동시켜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연속해서 5일간 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 당시 심폐소생술을 한 정○○씨는 재해자 보다 2일 정도 먼저 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고 김기사라는 사람은 와서 며칠간 기계를 점검해 보고 기계를 다룰 수 없어서

자진해서 못하겠다고 나오지 않았다. 면접 과정이었으므로 기사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연히 지급하지도 않았다. 정○○도 동일한 경우이다. 재해자는 10여일 정도 작업하였으나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량이 발생하여 그만두게 했다.

- 재해자는 3일간 나오긴 했으나 생산 설비를 부릴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 있었고 당시에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았으며 채용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급여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았다.

- ▶ 재해 발생 장소: 원형 설비의 높이는 대략 2미터 정도, 계단은 설비의 중간 윗부분 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 높이는 1개단 약 25Cm정도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상, 2019. 2. 11. ○○병원)

- 1) 신청 상병명: 다발성 늑골 골절(3-8), 두피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 요양신청기간: 2019. 1. 21. ~ 2019. 1. 23.(입원), 2019. 1. 24. ~ 2019. 2. 20. (통원 4주)
- 3)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1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의식 소실, ○○중앙 종합병원 경유 후 연고지 관계로 전원
- 4) 종합 소견: 다발성 늑골 골절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상병 및 기간 타당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제2호 근로자, 임금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재해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작업 도중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하나,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재해발생당일 사업장에 출근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9. 1. 17. 과 2019. 1. 18. 사업장에 나가 본 결과 근로조건 및 급여를 사업주와 구두로 논의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재해당일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여 근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2019. 1. 17.과 2019. 1. 18.은 근로 관계가 체결 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해발생일은 사업주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출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전날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사실상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8

»

청구인은 사업주의 배우자로, 동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청구인 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는 없으며, 출퇴근 카드나 출근대장 등 청구인의 근태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없고, 사업주에 의해 근무시간이 구속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각” 결정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4875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5. 8.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9. 5. 15.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재해 발생 당시 소속 사업장에는 재해자와 배우자인 사업주 2인만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에 대해 비교 가능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점, 재해자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하고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세무상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받아 조세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업장에는 출근 대장 등 근태를 확인할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등 재해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을 밝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해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친족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 ‘요추염좌’가 2019. 5. 8. 발생한 재해와

III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5. 29.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산재승인이 왜 안되는지, 산재가 안되면 산재보험 가입한 건 의미가 없네요.
- 현장에서 계속 굵은 일을 하니까 목,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재해일 아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병원가서 그 비싼 MRI 촬영도 하고 낮고 싶은 마음으로 치료 요양 중입니다.
- 평상시 감기에 걸려도 약 사먹고 파스 붙이고 말지 병원이랑 먼 사람입니다. 요양 후에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진단명이 '요추염좌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추간판)가 변성되면서 섬유륜이 찢어져서 그 사이로 디스크 수액이 흘러들어가니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 저는 서있거나 누워있는 자세로 허리를 펴고 있으면 좀 괜찮지만 수그린다든지 앉아 있는 자세는 많이 당기고 쿡쿡 쑤십니다. 더 전문적인 소견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산업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사업주 문답서

- 가) 재해자의 근무시간 및 일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시~17시(일용직 근로자 근무시에도 시간은 동일)
- 나) 근로자의 출퇴근 카드나 근태 관리 대장이 있나요? 없음
- 다) 재해자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매일 출근
- 라) 재해자 근무(출근)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대표
- 마) 재해자의 업무 내용은?
현장 가로등 작업(가로등 카바 완성품), 소형제품 담당
- 바) 재해자의 업무는 누가 판단하여 결정하는가?
대표자가 지시함
- 사) 재해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 직원과 같은 보수 규정을 적용 받나요?
매월 300만원 책정, 따로 근로자의 규정은 없음
- 아) 기 타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적게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득을) 낮춰 신고함

2) 보험 가입자(사업주) 의견서 <발췌>

- 가) 재해발생 원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척추)에 무리가 갔을 거라 생각
- 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진○○(관계: 거래처)
- 다) 사업장 생산품: 가로등
- 라) 재해자 관련

- 입사일: 2015. 1. 1.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담당업무: 현장근무(생산직) 현장청소
- 임금: 월급 300만원
- 재해 발생 후 사업장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상 및 배상내역
치료비 100만원

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 적용관계

- ① 사업장명: ○○산업
- ② 사업종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나) 인정 사실

- ① 청구인은 사업주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임
- ② ○○산업으로 4대 보험 취득 이력 없음
- ③ 2015. 1. 1.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10만원, 8시간(1일)
- ④ 2018년 일용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사실 확인됨

| 구 분 | 2018. 2월 | 2018. 4월 | 2018. 6월 | 2018. 8월 | 2018. 10월 | 2018. 12월 |
|------|----------|----------|----------|----------|-----------|-----------|
| 근무일수 | 6일 | 6일 | 6일 | 6일 | 6일 | 6일 |
| 지급액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 ⑤ 2018년 급여 이체내역 확인

| | | | | | | |
|-------|------------|------------|------------|------------|------------|------------|
| 구 분 | 2018. 1월 | 2018. 2월 | 2018. 3월 | 2018. 4월 | 2018. 5월 | 2018. 7월 |
| 이체 금액 | 1,5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3,500,000원 | 6,000,000원 |
| 구 분 | 2018. 8월 | 2018. 10월 | 2018. 11월 | 2018. 12월 | | |
| 이체 금액 | 3,000,000원 | 3,5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 |

⑥ 사업장 현장 확인(원처분기관, 2019. 4. 29.)

- 상시근로자 없음
- 출근대장
상시 근로자가 없고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부르기 때문에 근태현황을 기록한 출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재해자의 근태 기록 없음
- 단체협약 및 규칙은 별도로 없음
- 사업주 면담
 - 재해자의 배우자인 사업주와 함께 월 26일 이상 함께 출·퇴근함(08시 출근, 17시 퇴근)
 - 사업주 부재시에는 따로 업무 대행자 없음.
 - 매일 출근하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나 적게 신고한 사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5. 15.)

- 1)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5. 8. 14:00, 본원
-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가 아프다.
- 3) 상병명: 요추부 염좌
-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재해자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CT,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상병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태임

나.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1) 자문의A

진료기록 및 재해 경위로 보아 신청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문의B

재해경위, 요추부 X-선 촬영(요추부 만곡의 변화 없음) 결과로 보아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호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제1호

라.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1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산재승인이 왜 안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소 몸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마는 정도이지 병원에 간 적도 없는 상황에서 재해일 아침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염좌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을 진단받아 요양 중이니 산재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사용자와 사용자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적용관계

1

»

청구인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을 대표가 직접했고 청구인이 당일 시행한 작업은 지휘감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땀감용 목재 절단 뿐 아니라,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의 청소 및 잡초제거, 체험 학습관옥상에 위치한 창고 정리 등도 상당시간 일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의 자녀의 소유인 주택의 가구내 고용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는 어려워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8853호
-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0. 8. 땀감용 목재 절단 중 부상을 당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엄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 우측 엄지손가락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엄지 손가락의 외상성 원위지 부분 절단”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과 재해경위와 인과성은 확인되나,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심사청구 의견(2019. 1. 10. 제출)

- “(주)○○”은 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 10. 8.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17:00경 체험학습관 옆에서 목재절단 작업 중 재해를 당했다. 청구인은 2018. 10. 8. 07:00 ~ 12:00경 체험학습관

III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옆 사택 주변의 장작 등 정리 작업, 13:00경 ~ 13:30경 체험학습관 근처에 세워져 있던 통나무를 잘라서 놓히는 작업, 13:30 ~ 17:00 체험학습관 옥상 창고에서 의자, 락메 등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후 17:00경부터는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였고, 목재 절단작업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 청구인은 2018. 10. 8. 13:00경 ~ 13:30경 (주)○○ 대표의 지시로 통나무를 잘라서 놓히는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작업한 통나무는 대표가 몇 년 전부터 체험학습관 앞에 세워둔 것으로 통나무로 인하여 체험학습관 방문 어린이가 다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2018. 10. 8. 청구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므로 이 작업은 체험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작업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2018. 10. 8. 13:00경 ~ 17:00경 체험학습관 방문 아이들을 위하여 체험 학습관 앞에 세워져 있던 통나무를 놓혀놓는 작업 및 체험학습관 창고 정리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을 고용한 행위는 가구 내 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요양 승인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 제출 의견서(2019. 1. 21. 원처분기관을 통하여 제출)

재해발생일 체험학습관 옥상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 주기 바라며, 13:00경 대표의 지시로 통나무를 잘라서 놓히고 적당한 자리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당시 대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가 청구인의 작업을 도와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최초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재해 장소

- 소재지: ○○군 ○○면

- 건축물현황: 목조 단독주택
- 소유주: (토지)김○○/(건물) 건축물대장 미 정리로 타인 소유

2) 재해 당일 청구인의 작업 내용

가) 마당에 있던 장작을 집 근처로 나른 후 정리하기, 길이가 맞지 않은 장작 자르기, 마당정리, 창고(공방)에 있던 물건 정리하기 등(근로계약서 미 작성)

나) 청구인 제출 의견서 상 시간별 세부 작업 내용

- 07:00 ~ 12:00경: 체험학습관 옆 사택 주변의 장작 등을 정리
- 13:00경 ~ 13:30경: 체험학습관 근처 목재를 잘라서 눕히는 작업
- 13:30 ~ 17:00: 체험학습관 옥상 창고에서 의자 등 물건 정리
- 17:00경 이후: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절단 작업

3) 청구인의 근로 현장인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주택은 부모님과 노후생활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였다고 하였고 진술하였다(2019. 2. 13. 15:29 심사장 유선 확인).

- 단독주택은 법인소유가 아닌 김○○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으로 김○○ 및 부모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주하는 세컨하우스이며, 김○○보다는 부모님이 더 자주 이 사건 주택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 이 사건 관련 작업은 김○○가 주택주변 정리를 해 줄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고 미리 비용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맡겼고, 2018. 10. 8. 부모는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소개 받아 작업을 진행 후, 비용을 직업소개소에 입금하였다(입금자: ○○(김○○ 母)개인 명의로 입금/법인명 아님).

4) (주)○○

- 사업장명: (주)○○
- 임원: (사내이사) ○○ / (감사) 김○○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사업종류: (산재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고용보험) 교육시설 운영업

5) 청구인은 체험학습관 창고 정리 등 대표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이유로 하여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조사 신청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조사내용 확인에 따르면,

- 청구인의 작업 중 일부는 체험학습관 창고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
- 청구인은 작업 당시 대표자의 아버지로 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
- 작업종료 후 청구인의 일당은 김○○ 개인 명의로 인력소개소에 입금하였다(비용은 법인과는 무관하고, 진술 상 토지 소유자인 김○○가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나, 진술 외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 법인 소유인 체험학습관에는 CCTV가 있으나 사고 당일 녹화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유선 확인).

6) 2019. 3. 18. 이 사건 관련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험학습관 창고 작업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류되었고, 2019. 6. 19. 심사장이 재해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였다.

가) 청구인이 단독주택 외 체험학습관의 옥상 창고에서 일부 물건 정리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 출장 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자택에 없었고,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재해 당일은 물론 퇴직 후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옥상창고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져 있었다(화분, 고가구, 각종 집기들 등).

나) 또한 청구인은 재해 당일 ○○ 대표(모가 / ○○학교 대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가 청구인의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주장

- 청구인의 작업을 도왔다는 부부(조 사장 부부)는 확인 결과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

하는 부부이며, 부인은 조경관리사였다. 이들은 대표가 화초를 좋아하며, 고가구나 특이한 물건을 수집하고 있어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였다(거래품목: 화초, 고가구, 된장 등 다양).

- 화초를 구매하면, 화초를 배달해 주고 주변의 화분이나, 정원수 등을 오랜 단골에 대한 서비스로 관리해 주고 있으며, 당일도 화분을 납품하였고, 납품 차 간 김에 정원수에 대한 조경을 잠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19. 3. 18. 이 사건 관련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험학습관 창고 작업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류되었다.

- 2019. 7. 10. 이 사건 관련 2차 심의회의가 개최되었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은 당시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을 때 연락처를 받고 큰길로 나가면 빨간 지붕집이 보인다고 했고, 가보니 “옹달샘과 아이들”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평소에는 목수일을 하였으나, 일이 없어서 나가게 되었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로 알고 나갔다. 오전에는 주차장에서, 즉 건물 앞 약 400평 정도의 공터에서 풀 정리를 하였고, 오후에는 옥상에서 정리 작업을 하였다. 그 전에도 한번 갔었고,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재해의 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 라.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2호
-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호
-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5조(정의) 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구 내 고용활동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법인인 체험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하였으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10. 8. 대표의 요청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체험학습관과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의 환경정리 및 창고 물품 정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체험 학습관은 (주)○○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청구인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을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당일 시행한 작업은 지휘감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 풀 정리, 옥상의 창고 정리 등도 상당시간 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의 자녀의 소유인 주택의 가구 내 고용 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는 어렵고, 체험관의 주변 정리를 위해서 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에 채용되어 임금을 수령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팀장의 지휘 아래 근무하였는데, 팀장은 국내 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모바일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3026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중국 A회사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1. 4. 8:50경 넘어지는 코일에 양쪽 다리가 협착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쇼크,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4-5번), 외상성 뇌실내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심부정맥혈전증 NOS,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NOS’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발생 현장은 중국현지에서 설치·시공하는 기계장치공사(공사명: 제품 설치 공사)이고, 업무의 내용 및 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할 때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관련규정에 의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III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국 A회사 제품 조립공장에 공장시찰 및 중국근로자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4. 코일에 양쪽다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A회사는 B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업체와 계약이 원칙인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 처리상 존재하는 업체일 뿐, ○○의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A회사와는 부가세 외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⁷⁾.

한편, 원처분기관은 A회사와 ○○가 체결한 형식적인 건설공사 시공계약서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해외파견자로 판단하였으나,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A회사는 ○○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 본사가 모든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이 건 재해발생일은 2018. 11. 4.이나 건설공사 시공계약은 2018. 11. 5. 체결 되었기에 해외출장자로 판단해야 함이 분명하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인 국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국현지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마땅히 국내 산재법을 적용받아 본사에 흡수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재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이 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7)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취지 및 이유서에서 이 건 조립공사의 발주 구도는 ○○-○○물산-B회사-A회사(○○)이나, 이중 A회사는 중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대행업체로서 원 발주처인 B 회사에서 중국 내 업체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A회사와는 부가세 외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 및 회계 업무만 처리하기로 하고 모든 업무는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나. 사실 관계

-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11. 4. 8:50경 중국 A회 제품 조립 공장 시찰 중 코일이 전도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가 협착되어 양쪽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고,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를 땅에 부딪혀 뇌손상 등이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 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시공사)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표자: 김○○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등 부속품 제조업
- 성립일자: 2018. 4. 23.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내역: 없음

나) 재해발생 현장 개요

- 공사명: ○○설치공사
- 소재지: 중국
- 발주자: ○○회사(발주방식: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제작, 설치)
- 원수급인: 주식회사○○
- 공사내용: ○○ PJT에 들어가는 제품 공장 조립 및 설치
- 공사기간: 2018. 10. 25. ~ 2019. 1. 25.(3개월)
- 공사금액: 1,200,000인민폐(세금포함)
- 계약체결일: 2018. 11. 5.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다) 재해자 근로관계

- 입사일: 2018. 10. 10.
- 담당업무: 공장 조립 및 설치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프로젝트별 계약)
- 근무시간: 8:00 ~ 18:00(토요일 8:00 ~ 13:00)

라) 재해자 및 동료근로자 현지 담당업무

- 재해자: 제품 조립 및 설치, supervisor
- 동료1: 현장총괄(공장조립, 현장반입 총괄, 현지 외주업체 조정)
- 동료2, 동료3: 제품조립(공장), supervisor

마) 기타 확인내용

- 국내 본사에서 임금 지급함
- 재해자는 입사 당일인 2018. 10. 10. 중국으로 출국함
- 중국현지 업무는 총괄팀장이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하며 동 내용을 팀원에게 전달·공유함
- 재해자는 취업비자 신청하였으나 사고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고, 다른 동료근로자는 발급 받음
- 해외 출국에 필요한 비용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처리 함

바) 원처분기관 조사결과 및 판단(요약)

- 의무기록지 및 시공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국 ○○회사에서 주식 회사○○에 제품 설치공사를 발주한 중국 현지의 동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서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임의가입) 대상으로 판단됨. 재해자는 중국에서 제품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 10. 10. 채용되어 같은 날 출국한 후 중국

현지에서 제품 조립 및 설치, supervisor 업무를 수행하였음. 중국에 취업 비자를 신청 하였으나 동 사고로 재해자의 취업 비자 발급은 되지 않았지만 동료근로자들은 취업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재해자의 업무수행 장소가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에 노출되는 점 등 업무의 내용 및 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험현장은 건설업으로 분류됨. 재해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나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국내 산재 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동 재해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심사청구 이후 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는 건설 및 도소매업(클린룸설치 및 공사, 건축자재, 무역, 컨설팅)을 운영하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회사로서, 2018. 4. 2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중국 현지에 별도 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청구인은 국내 본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외출장 품의서상 재해자를 포함한 동료근로자의 출장기간은 2018. 10. 10. ~ 2018. 11. 30.이고, 출장 목적은 중국인프라 구축(출장자 중국 취업비자 진행 및 공장 인프라 구축 외)으로 확인된다.

라) 중국 현장관리자인 팀장이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하였고, 모바일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현장공정 진행률, 직원 관리 등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5. 28.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대리인) 해외 출장과 파견의 쟁점은 형식적인 사용자가 A회사인데,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이 한 것임. 지휘명령을 해외 본사에서 하였다면 출장으로 봐야 할 것임. 기술지도가 출장 목적이고 지휘체계는 현지 팀장이 있었으며, 팀장이 국내 본사에 보고를 하는 체계임”이라고 진술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중의 사고)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바.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적용계획부-3498, 2018. 8. 29.)

❖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 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 ①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 (문서 보고, 구두 보고 등 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 지침 시행일: 2018. 8. 14.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국내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국현지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산재보험을 국내 본사에 흡수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11. 4. 중국 현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인 (주)○○이엔지에 채용되어 임금을 수령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팀장의 지휘 아래에서 근무하였는데, 팀장은 국내 업체인 (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모바일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해외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2018. 11. 4.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 받았으며, 국내 사업장에 주로 업무보고 및 지휘를 받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서 봄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518호
- ➔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 중국판매법인에 파견된 자로서 2018. 10. 18. 중국내 거래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2019년 전략회의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외상성 경막하출혈’를 진단받아 2019. 1. 15.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중국 현지 판매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재자는 국내 ○○에서 9년간 근무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해외근무를 지시 받았으며, 해외출장 기간 중 임금 역시 국내 ○○에서 지급받아 왔음. ○○에 2000. 1. 25. 입사 후 사고 발생일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주) 중국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중국 해외출장 명령 및 복귀 역시 중국 법인이 아닌 국내 ○○의 인사 발령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급여 역시 국내 ○○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 국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재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해외 파견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해외출장 판단시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피재자는 국내 ○○ 중국사업부를 위한 업무를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로부터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재자가 속한 국내 ○○ 중국사업부는 물론,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 자체가 대표이사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피재자의 실제 업무내용 및 방식 역시 국내 사업부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이는 적어도 중국 현지법인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장으로 부터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재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 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해외출장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 따라서 처분기관의 판정은 관련규정 및 판정기준(지침)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유사한 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정을 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10. 18. 21:00경 ○○호텔 서측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인 화물차량에 치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근무내역
 -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해외지역별 별도 해외 법인을 설립함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 해외 지역별 해외법인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가입 승인 받은 내역 없음
- 입사일: 2010. 1. 25.
- 원소속 부서명: ○○(주)

3) 중국판매법인

- 법인 지분: ○○(주) 100% 투자해서 설립
- 설립 일자: 1996. 3. 18.
- 업무 내용: 판매

4) 청구인의 중국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기간: 2018. 7. 1. ~ 2019. 7. 31

나) 파견사유

○ 중국총괄 법인 차기 주재 후보군('19, '20년 주재 파견예정)

- 현장전문가 파견 통한 법인 현장 경험 및 업무 역량 배양

○ 중국 전략수립 및 집행

- 판매 전략 수립
- 당사 대응 전략 수립
- 프로모션/마케팅 활동 계량화 및 온라인 시장 경쟁력 제고

다) 파견 부서명: 영업팀

라) 담당업무: 거래선 전략적 협업 추진, 법인과 본사간 커뮤니케이션 수행, 1차 거래선 관리, 영업 관리, 수명 업무 등

5) 해외파견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사 지급내역

| 지급항목 | 지급월 | | | | |
|-------|------------|------------|------------|------------|--------------------------------|
| | 2018. 8 | 2018. 9 | 2018. 10 | 2018.11 | 비고 |
| 기준금 외 | 5,262,000원 | 5,262,000원 | 5,262,000원 | 5,262,000원 | 2018. 9 추석 상여 3,508,000원 지급 |

나) 중국법인 지급내역

| 지급항목 | 지급월 | | | | |
|------|-----------|---|-----------|---------|-----------------------------|
| | 2018. 8 | 2018. 9 | 2018. 10 | 2018.11 | 비고 |
| 주재수당 | 24,936.77 | 16,320.00 2018.9 부임수당(1회) 7,420.00 | 16,320.00 | - | RMP(인민화) 지급 (환율 170원) |

다) 해외근무자의 기본급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주재수당은 중국법인에서 별도 지급함

라) 기타 복리후생: 중국법인에서 주택지원비를 지원하고 전기, 수도 비용은 해외근무자 부담(주재수당에서 공제함)

6) 2018년 10월 행사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사목적: 중국내 매출목표 달성 핵심거래선(45명)을 상대로 인센티브 여행

나) 일정 및 장소: 2018. 10. 18. ~ 2018. 10. 21. ○○도

다) 행사관련 계획수립 및 비용부담 주체: 중국법인에서 전담

라) 본사 사전허가 및 사전 승인 여부: 본사의 사전허가 또는 승인 불필요(중국법인 자체 의사결정에 의한 진행)

7) 해외 근무 중 업무지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중국법인 부서장의 업무 지시를 받음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나) 해외 근무 중 본사로부터 업무지시(커뮤니케이션)를 받는 내용

(1)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 수행

- 제품별 향후 판매 물량 예측, 신모델 유통채널 운영 전략수립
- 부진 재고모델 처리방안 수립, 영업 관련 주요 동향 / 트렌즈 센싱 및 보고
- 영업정책, 물량 공급 관련 본사 요청사항 커뮤니케이션

(2) 보고주기: 발생시

(3) 연락방법: 메일, 전화, 메신저 등

8) 취업규칙 및 인사, 평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 근무 중 출장업무 및 휴가 사용시 승인 결정은 중국법인副本부장 엄재훈 상무가 최종 결재함

나) 인사평가

- 현장전문가는 양성고과 대상으로 실제 업무 성과를 낸 부서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총 5단계 평가 중 상위 2번째 수준의 평가를 인정하며, 양성 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할 경우 현지 법인장의 평가에 따라 상위 고과 가능

다) 부서이동

- 현장전문가는 부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없음. 다만, 파견법인 내 조직 개편을 통한 부서 변경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에서 진행함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9. 1. 7. ○○병원)

1)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8. 10. 19.(최초 진료: 2018. 10. 18.)

- 2)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보행자 교통사고
- 3)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현재 환자 표현능력 없음
- 4) 종합소견: 현재 식물상태에 GCS 8, MMSE 0 상태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CT 및 관련 자료, 재해경위로 보아 상병 타당, 기간 타당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다.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해외근무 기간 중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받았으며, 국내 사업장에 주로 업무보고 및 지휘를 받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18.

○ III.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10. 18. 재해는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IV

추가상병 및 재요양

1. 추가상병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A large, bold number '1'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one above and one below, and a gray circle below them. The background consists of a dark gray upper half and a light gray lower half, separated by a curved line.

1

추가상병

1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IASP 진단 기준 4개의 증상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의 3개 범주에 해당되고, 4개의 징후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등 2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ASP식 진단 인정기준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해 추가상병 신청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을 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243호
- ➔ 사건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2.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좌측 종아리 부위의 피부결손 및 괴사,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를 승인 받아 요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을 진단 받아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영상 검사 결과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호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CRPS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 상 복합통증증후군이며, 청구인의 몸 상태가 복숭아 뼈 있는 곳이 탱자나무 가시에 찢린 것처럼 아프며, 그 안쪽 검은 불뚱이 튼 것처럼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통증이 심하며 아직도 피부가 물먹은 비누 같으며 앉으면 다리 전체가 당기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V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8. 2. 11. 공사 현장에서 문짝 운반 작업 중 엘리베이터에 문짝을 싣는 과정에서 안방 문짝 4개(1개당 15kg)가 넘어지면서 왼쪽 뒤통치 부위를 가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요 요양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상병: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좌측 종아리 부위의 피부결손 및 괴사,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나) 요양 기간: 2018. 2. 11. ~ 2019. 5. 13.(입원 40일, 통원 388일, 재가 29일)

다) 주요 수술내역

- 2018. 2. 11. 피부이식 수술

- 2018. 3. 2. 좌측 종아리 부위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 이식술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추가상병소견서, ○○병원 2018. 9. 21.)

1) 추가상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

2) 추가상병 사유: 수상 후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상과 증후를 확인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임.

3)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 고정,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 가능

4)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과 이후 고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정형외과적으로 더 치료할 게 없는 상태로 환자의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짐.

5) 검사결과

나. 청구인 제출 진단서

1) 진단서(병원 2019. 2. 15.)

청구인의 임상적인 양상 및 검사 소견으로 볼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의 극심한 통증은 감소양상이나 돌발통이 계속 지속되는 양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함

2) 진단서(대학교병원 2019. 3. 14.)

청구인은 본원에서 QSART 검사 시행받으신 분으로 본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allodynia, skin color change, sweating change(QSART에서 이상 확인), skin trophic change가 동반된 것으로 생각됨. 기타 다른 검사는 ○○병원에서 시행한 상태로 확인되지는 않음. 임상적으로는 CRPS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개최일 2019. 1. 15.)

1) 종합소견: 영상 검사 결과 및 이학적 검사 상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호전 단계임. 사고 후유증에 의한 경과라고 판단됨. CRPS 인정하기 어려움

2) 해당되는 증상 및 증후에 대한 소견(증상 2범주 해당, 징후 2범주 해당)

○ IV. 추가상병 및 재요양

| 증상(Symptom) | | | |
|--|---|---|--|
| (1) 감각이상 <input type="checkbox"/> 감각과민 <input type="checkbox"/> 이질통 | | ✓ | |
| (2) 혈관이상 <input type="checkbox"/> 혈관 확장 또는 수축 <input type="checkbox"/> 피부 온도의 비대칭 <input type="checkbox"/> 피부색의 변화 | | ✓ | |
| (3) 부종 또는 발한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종 <input type="checkbox"/> 다한증 또는 저한증 | ✓ | | |
| (4)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input type="checkbox"/> 운동 가동역 감소 <input type="checkbox"/> 운동부진 <input type="checkbox"/>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input type="checkbox"/>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 | ✓ | | |
| 징후(Sign) | | | |
| (1) 감각이상 <input type="checkbox"/> 통각과민 <input type="checkbox"/> 이질통 | | ✓ | <input type="checkbox"/> N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G/NCS |
| (2) 혈관이상 <input type="checkbox"/> 혈관 확장 또는 수축 <input type="checkbox"/> 피부 온도의 비대칭 <input type="checkbox"/> 피부색의 변화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상 골스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촬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온 측정 <input type="checkbox"/> 사진촬영(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류기록지(필수) <input type="checkbox"/> 단순방사선 <input type="checkbox"/> 초음파 <input checked="" type="checkbox"/> MRI |
| (3) 부종 또는 발한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종 <input type="checkbox"/> 다한증 또는 저한증 | ✓ | | |
| (4)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input type="checkbox"/> 운동 가동역 감소 <input type="checkbox"/> 운동부진 <input type="checkbox"/>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input type="checkbox"/>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BMD <input type="checkbox"/> CT촬영 <input type="checkbox"/> 사진촬영 |
| 해당되는 증상 및 징후 범주의 총 개수 | | | |
| (1) 증상 : 4범주 중 총 (3) 범주에 해당 (2) 징후 : 4범주 중 총 (3) 범주에 해당 | | | |

5 관계법령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 나.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 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2014-22호, 2014. 8. 28.)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추가상병 신청한 상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구술 참석한 청구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각종 검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IASP 진단 기준 4개의 증상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의 3개 범주에 해당 되고, 4개의 징후 중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등 2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ASP식 진단 인정기준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 발목 및 발’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복부피판술 후 고정으로 인해 금번 동결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해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4319호
- ➔ 사건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5.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상병명 ‘좌측 제2-3-4-5수지 외상성 절단’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상병명 ‘좌측 어깨관절의 동결건’을 추가로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일회성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지 절단으로 인한 좌측 상지의 운동 부족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손가락 절단 부위에 대한 복부피판술(3주)을 시행받은 후유증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

- 2019. 1. 26. 15:30경 작업장에서 좌측 손가락이 프레스에 압착되는 사고로 수지 절단의 부상을 입음

2)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발취

- 2019. 1. 26. ○○병원(이하 같다)/ 좌측 제2-3-4-5수지 절단/ 프레스에 수상 후 119 통해 내원/ OP: 재접합술 시행

- 2019. 2. 19. OP: 금속제거술 및 복부피판술(피부 괴사로 인해)

- 2019. 3. 7. 피판분리술 시행

- 2019. 4. 11. △△병원(이하 같다)/ left 2-4수지 수술 부위 crust 제거 및 necrotic tissue 제거 후 제2-4수지는 치유 될 된 부분이 있어 재봉합함. 제3수지는 봉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드레싱 예정. pip 운동장애 매우 심해 brisement 시행하였으나, 운동제한 심함

- 2019. 4. 26. 손은 washing 다음부터 시작. 좌측 어깨 손 다친 후 이차적인 frozen shoulder 발생함/ subacromial injection: 트리암 1a left shoulder, 건초내 주사: biceps, 트리암 1a

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추가상병신청서, △△병원, 2019. 4. 26.)

- 추가상병명: 좌측 어깨관절의 동결견/ 추가상병의 발생 사유: 좌측 수부 다발성 절단 손상으로 타 병원에서 복부피판술 시행한 이후 2차적인 어깨 동결견이 발생/ 추가 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수부 외상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9. 5. 15.)

- 청구인은 2019. 1. 26.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제2-3-4-5수지 절단의 재해를 입고 요양 중임. 2019. 4. 26. 의무기록지에 좌측 어깨관절의 동통과 운동 제한을 호소한 기록으로 보아 일회성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지 절단으로 인한 좌측 상지 운동 부족 등으로 판단되며, 추가 상병은 이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임상 소견과 병력상 동일 부위 수술로 인하여 일정 기간 (좌측 어깨)관절을 고정한 병력이 있는바, 이차성 동결견이 발생할 수 있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

다.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수지 절단’ 사고에 따른 치료를 위해 시행받은 ‘복부피판술의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추가상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 다. 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복부피판술 후 고정으로 인해 금번 동결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여, 추가상병은 2019. 1. 26.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상병은 당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은 재해 당시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하게 느끼고 있고, 요추 및 흉추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당하여 수상이 중하였으며, 심리검사에서 불면, 우울증상 등이 있어 신청 상병명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진단 기준에 부합하나 적응장애는 발병시기 등에 비추어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6640호
- 사건명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4. 24.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등 처분 중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의 다발성 골절(L1,L2,L3), 흉추의 다발성 골절(T10,T11,T12), 늑골의 다발성 골절(Lt. 5th, Rt. 8th)’을 승인받고 요양 종결하여 장애급여 제9급을 지급 받은 후,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4. 5.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의 “불면, 신체가 놀람 등 증상이 확인되는 등 재해자의 의학적 면담 및 관련자료, 상기자의 사고 이후, 정신의학적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적응 장애 상병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며, 신청 요양기간 취업요양으로 승인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됨.”이라는 의학적 심의소견에 따라,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신청 상병을 상병명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리상태 및 심리검사에서 신청 상병 소견과 면담 상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신청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므로, 신청한 추가상병을 변경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등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청구인은 2017. 12. 21. 16:00경 창호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하차작업 중 적재해 놓은 유리가 넘어지면서 깔리는 사고로 상병명 ‘요추의 다발성 골절(L1,L2,L3), 흉추의 다발성 골절(T10,T11,T12), 늑골의 다발성 골절(Lt.5th, Rt. 8th)’을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제9급을 지급 받았다.
- 2) 청구인은 2019. 4. 3. 병원에서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을 추가로 진단 받아 2019. 4. 5.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에 대하여는 불승인 받고, 신청 상병을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요양신청기간 2019. 3. 6. ~ 6. 30.에 대해 취업치료 가능소견 안내함.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재활보상1부-2806, 2019. 4. 24.)
 - 2019. 6. 19. 진료계획서를 접수하여 요양기간 2019. 7. 1. ~ 2019. 9. 30.에 대하여 2019. 6. 21. 취업요양으로 요양기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의무기록 발췌(○○대학교병원)

- 외래진료기록지(2019. 3. 6.): 2017. 12. 21. 작업 중에 1톤 트럭위에 있던 통창처럼 큰 유리 4장 바람에 넘어지면서 환자를 덮쳐서 요추골절이 발생, 이후 치료 중에 폐암이 발견되어 2018. 3. 수술받고 치료되었고 현재는 약물 복용하면서 F-U 중임. / 현재: 잠을 잘려고 하면 잠을 못자고 새벽에 일찍 깨서 힘들고, 배는 나오고 살이 찌고, 발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리고, 허리에 힘이 없고, 통증이 있고,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파트 9층에 사는데 삶의 의욕도 없고, 불쑥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 외래진료기록지(2019. 4. 3.): 일상생활을 못한다 / 운전도 못한다, 깜짝 놀래는 증상으로(우짚) / 잘려고 하다가도 한번 움짚하면 잠도 깨고 / 수면: 약을 먹고 조금 더 잔다 / 놀래는 증상은 여전하고 / 낮에 정신이 붕 뜨는 느낌, 잠이 온다, 며칠 동안 잠을 못자면 걸을 때 붕 뜨는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다 / 걱정이 많고 재미도 없고

4) 검사 결과 발췌(2019. 3. 2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 Reason for referral: 2017. 12.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요추골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발에 전기가 오듯 저리거나 허리의 힘이 없고 통증이 많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수면상의 곤란 및 의욕 감퇴, 우울감 및 자살생각 등의 문제점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소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 환자로서 산재평가를 목적으로 종합심리평가가 의뢰됨
- Behavioral observation: 큰 키에 다소 통통해 보이는 체격이었으며, 야구모자와 안경을 착용했고, 큰 소리로 노크를 하고서 벌크 문을 열고 혼자 검사실에 입실했음. 목소리가 매우 작고 힘이 없었으며, 말수가 적었지만 검사가 진행되면서 더 나아졌고, 눈마주침이 잘 되지 않은채 결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볼 때가 많았음. 검사자의 지시에 순종적인 태도로 묵묵히 검사에 임했으며, 다소 성급하게 수행을 하다가 실수를 범하기도 했음. B-GT에서 빠른 속도로 도형을 옮겨 그렸으며 HTP에서 작고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고, 그림에 대한 질문에 단답식으로만 짧게 보고했음. 지능검사에서 대체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정답을 잘 모를 때 멋쩍게 웃으면서 눈치를 살피기도 했음. SVLT에서 빠르게 몇 개의 단어만 회상하고서 모르겠다고 했지만, 검사자가 좀 더

해볼 것을 격려하자 수행이 좀 더 나아졌음. 지남력은 적절했으며, 자신의 신상 및 사고이후 문제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호소하지 않았고, 검사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했음

- Tests administered: K-WAIS, B-GT, MMPI-2, SCT, HTP, Rorschach test, SCL-90-R, MMSE-K, BPRS, ASI, IIP-PD, SVLT, 실행증 검사, 좌-우 구분검사, CDT, 성인 진단적 이해력 검사, SDS, BDI-2, BAI.
- Conclusion: 현재 진단적으로는 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및 ② ‘Depressive Disorder with Somatization Tendency and Anxious Distress’를 각각 rule out할 필요가 있겠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1) 추가상병소견서(2019. 4. 3. 발행)

-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2019. 3. 6.
- 추가상병 일반적인 발병원인: 2017. 12. 21. 작업 중 통유리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서 요추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받음
-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사고 이후 불면, 신체통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 3. 6. ○○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초진 후 종합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음
- 환자의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참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증상을 주로 보이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치료 필요

2) 소견서(2019. 7. 24. 발행)

- 2017. 12. 21. 작업중에 트럭위에 있던 통유리가 환자를 덮치면서 요추골절이 발생하여 대증적 치료를 받았음. 사고이후 불면, 우울, 신체통증 및 신체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9. 3. 6. 정신의학과에서 초진 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2019. 7. 17.까지 외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 심리검사(19. 3. 21.)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고, 실제로 면담상에서 불면, 자살사고, 흥미와 재미상실 등의 우울증상과 과각성, 회피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부정기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불면, 신체가 놀람 등 증상이 확인되는 등 재해자의 의학적 면담 및 관련자료, 상기자의 사고 이후, 정신의학적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적응장애 상병으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며, 신청 요양기간 취업요양으로 승인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심리상태 및 심리검사에서 신청 상병 소견과 면담 상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치의소견으로 신청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므로, 신청한 추가상병을 변경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의무기록 등에서 청구인은 2017. 12. 21. 재해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하게 느끼고 있고, 요추 및 흉추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당하여 수상이 중하였으며, 심리검사에서 불면, 우울증상 등이 있어 신청 상병명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적응장애는 발병시기 등에 비추어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추가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 중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V

간병료 및 요양비

1. 요양비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 large, bold number '1'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one above and one below, and a small gray dot above the '1' circle.

1

요양비

1

»

고인의 상병상태는 의식저하와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양한 경우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233호
- ➔ 사 건 명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2. 25.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1. 진단된 상병명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후,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의 병행 진료(통원)를 승인받아 요양 중, 2018. 1. 24.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요양비(2017. 12. 22. ~ 2018. 1. 21. 입원 진료비)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의 진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상태가 심각하여 2017. 12. 22.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더 이상 치료해줄 것이 없다고 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는 병실도 없고 고인에게 맞는 진통제도 없다 하여 응급실에 방치된 채 사경을 헤매다가 고인을 받아준다는 ○○요양병원으로 부득이 다시 전원하여 입원하게 된 사정이 있음에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2017. 12. 22. ~ 2018. 1. 21.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양을 받아야 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고인은 ○○(주)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이력으로 2016. 4. 11. 상병명 ‘폐암’을 진단받고 2016. 8. 16.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8.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고인은 요양을 받던 중 2018. 1. 24. 사망하였다.
- 2) 고인에 대한 진료계획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승인 기간 | 승인 의료기관 | 결정일 | 비고 |
|---------------------------------|---------|---------------|------|
| 2017. 6. 9. ~ 2017. 12. 31.(통원) | △△병원 | 2017. 6. 12. | |
| 2017. 6. 9. ~ 2017. 12. 31.(통원) | ○○대학교병원 | 2017. 6. 16. | 병행진료 |
| 2018. 1. 1. ~ 2018. 3. 31.(통원) | △△병원 | 2017. 12. 28. | |
| 2018. 1. 1. ~ 2018. 3. 31.(통원) | ○○대학교병원 | 2018. 1. 3. | 병행진료 |

- 3) 고인은 위 진료계획 승인 외에 2017. 12. 22. ~ 2018. 1. 21. 양병원에 입원하였던 바, 해당 진료기록에서 “상기 환자 SCLC c bont, brain meta. 환자로 항암하지 못하고 supportive care 중인 환자로 poor oral intake로 conservative tx. 위해 본원 adm.함”의 내용이 확인된다.
- 4) 고인은 위 요양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대학교병원과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 되고, 각 병원의 진료기록 및 소견서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대학교병원

(1) 응급환자기록지

- 2017. 12. 21. 기록: 전신에 심한 통증 호소하며, 대화가 되지 않고, 괴성을 지르는 등 mental change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혈압 110/70mmHg, 체온 36.2℃, 맥박수 95회/분, 호흡수 30회/분, SPO2 95%, 의식상태 Verbal, 응급 중증도 3등급

- 2017. 12. 22. 기록: 09:10 퇴실, 퇴실 시 최종진료구역-응급환자 진료구역, 의식 상태 Alert, 기도유지 가능, 혈압 100/60mmHg, 체온 37.4℃,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18회/분, SPO2 97%

(2) 간호기록지

- 2017. 12. 21. 17:14 Mental change 호소하며 이동침대로 내원함
- 2017. 12. 22. 09:10 구급차 이용하여 응급구조사 동승하에 △△병원으로 전원감

나) 고인에 대한 2017. 12. 22. △△병원의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2019. 4. 16. 발행한 소견서 상 “2017. 12. 22. ○○대병원에서 연고지 관계로 본원으로 전원 왔으나, 본원 병실이 없는 관계로 응급실에서 바로 타 병원으로 전원함”의 내용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나.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에서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V. 간병료 및 요양비

나. 청구인은 고인이 응급 상황임에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기간 고인의 상병상태는 의식저하와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나 고인이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이 2017. 12. 22. ~ 2018. 1. 21.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동료근로자가 무빙워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일 불안감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로도 불안, 불면, 사고의 재경험, 악몽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한 요양비 중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목적인 진료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490호
- ➔ 사 건 명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3.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 중 승인상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료 비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이 건 재해발생 일자는 2018. 3. 28.로 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3. 28. 16:26경 (주)○○에서 동료근로자가 무빙워크 핸드레일 장력 조정 확인 작업 중 무빙워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후 사고 당시 아무 것도 못했다는 죄책감 등으로 공황장애, 불면증에 시달리다 2018. 6. 7.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 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여 2019. 1. 30. 승인⁸⁾ 받은 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18. 3. 28. ~ 2019. 2. 15.(○○병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2018. 3. 28. ~ 2018. 5. 28. 진료비는 재해일 이전이므로 부지급 타당하며, 2018. 6. 13 ~ 2018. 6. 16., 2018. 6. 26., 2018. 7. 5. ~ 2018.

8) 다만,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을 승인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최초 진단일인 2018. 6. 7.을 재해발생일로 결정함

7. 9., 2018. 7. 11. ~ 2019. 2. 14. 진료비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8. 3. 28. 사건 당일 현장에서 아끼는 동생이 눈앞에서 무빙워크에 깔려서 죽은 걸 직접 보았다. 2시간 가량 구조 활동에서 이사, 부장, 소장은 참여가 미비했고, 전적으로 청구인이 참여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죽은 동생을 병원까지 구조원 이랑 같이 가고, 사망 신고도 청구인이 처음으로 받았다. 그날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오셔서 병원으로 가서 안정제(3방)를 맞았는데도 진정이 안 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불면증, 이명, 환각 증세가 심해져서 5월 중순에 병원 정신과로 갔었는데 그쪽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셔서 6월 5일부터 병원으로 가서 통원 치료를 시작하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2018. 3. 28.에 사고를 목격하고 그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안정제를 처방 받았으며, 당시 응급실 기록지 상 상병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상병이 기록 되어 있다. 2018. 5. 28. 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등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재해일자를 결정하였다. 2018. 3. 28.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승인 받고 직접 치료 받았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일을 2018. 3. 28.로 변경하고, 요양비를 전액 지급해주길 바란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 보아 청구기간에 대해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최초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2018. 3. 28.'로, 재해경위는 '2018. 3. 28. 4명에서 2인 1조로 작업하는 중 다른 조의 동료가 위에서 작업하는 도중 무빙워크로 빨려 들어가 죽은 것을 그대로 목격, 사건 당시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 등 너무 많이 힘들'으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의 신청 상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요약)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8. 3. 28.(수) 오후 4시 26분경 (주)○○ 무빙워크 2호기의 팔레트 일부를 제거한 상태에서 직장동료 작업자와 함께 핸드레일 장력 조정 확인 작업 중 팔레트가 제거된 개구부(가로 1,000mm×세로 1,215mm)를 통해 무빙워크 팔레트 하부 공간으로 떨어져 가동 중인 팔레트와 트러스 내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 및 구조하는 과정에서 외상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후 신청인도 같은 승강기 정기점검 및 고장발생시의 수리 작업을 하고 있어 본인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사건의 회상이 반복되는 증상도 발생 원인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사고 이후에도 작업환경에서 사건의 재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3)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 "다)"의 판정결과에 따라 최초요양을 승인하면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일자를 ○○대학교병원에서 상병명"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은 날짜인 2018. 6. 7.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4) 청구인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8. 3. 28. 응급실 임상기록지
 - C.C: carpopedal spasm
 - P.I: 내원 당일 동료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난 후 저녁 6시경부터 발생한 carpopedal spasm 주소로 내원
 - impression: 급성 스트레스 반응

○ V. 간병료 및 요양비

나) 정형외과 진료기록

○ 2018. 3. 29. 정형외과 초진기록

C/C) RT ANKLE PAIN

P/I) TRAUMA HX -

Impression: ACHILLES TENDINITIS, RT

○ OS(정형외과) 재진기록

- 2018. 4. 2.: pain -

- 2018. 7. 5: BRIEF OP NOTE

Dx: 1. fx. old lateral malleolar ankle Lt

2. ATL ligament rupture ankle Lt

Op name: 1. OR IF + screw fixation

2. ligament repair

- 2018. 7. 9.: dressing done, 경과 호전되어 금일 퇴원 후 외래 f/u

○ OS(정형외과) 경과기록

- 2018. 6. 13.: S: Lt. ankle bone union

O: x-ray: bone union

A: ATL ligament rupture & Fracture old lateral malleolar ankle Lt

P: metal removal on the ankle Lt

- 2018. 6. 14.: 지방간 심하고, 비만으로 체중 관리와 식이 조절 교육함
수술 중, 후 toxic hepatopathy 가능성 높음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심장내과 의뢰

- 2018. 6. 15.: 금일 장 내시경하고 내일 당뇨검사까지 하고 퇴원하도록 함

- 2018. 6. 16.: 어제 소화기내과 면담 함. 내과적 문제 호전되면 수술 결정하도록 함

- 2018. 7. 11. dressing
- 2018. 7. 20. s/o
- 2019. 2. 14.

○ 간호기록지

- 2018. 6. 13.: 2016년 왼쪽 발목 수술했던 환자로 핀 제거 위해 6/13 외래 통해 입원함
- 2018. 6. 14.: 수술 취소 됨
- 2018. 6. 16. 퇴원
- 2018. 7. 5.: 내원 전 유리에 수상당해 ER 통해 입원함
postop Dx: Lacerration NOS elbow Rt(근막에 대한 봉합술)
2018. 7. 5. ~ 7. 9. 입원

다) 심장내과 진료기록

2018. 6. 26./ 2018. 7. 23/ 2018. 8. 27./ 2019. 2. 15.

라) 정신과 진료기록

- 정신과 초진기록(2018. 5. 9.)
C.C (by patient): 불안, 초조
- 진료의뢰서(2018. 6. 5., 정신과)
 - 상병명: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상기 환자 동료 사망 목격 후 극심한 불안, 초조, 공포감, 사고의 재경험, 불면, 악몽 등의 증상 있어 2018. 5. 9. 본과에서 약물 및 정신치료 받았으나 환자분 외래 힘들어 하셔서 지속적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뢰드림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대병원, 2018. 7. 9.)

-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8. 6. 7.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8. 3. 28., 불안, 불면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불안, 회피, 불면, 재경험(밖에 못 나가고, 불안, 쇠골 뺨기는 느낌, 무빙워크 보면 떨리고 눈이 감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18. 3. 28. ~ 2018. 5. 28. 진료비는 재해일 이전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며, 2018. 6. 13 ~ 2018. 6. 16., 2018. 6. 26., 2018. 7. 5. ~ 2018. 7. 9., 2018. 7. 11. ~ 2019. 2. 14. 진료비는 승인 상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

재해인의 승인상병은 사고일인 2018. 3. 28.의 사고 목격 이후 발생했으므로 승인일자인 2018. 6. 7. 이전의 진료비도 지급함이 타당함. 즉 재해일자를 2018. 3. 28.로 변경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및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 3. 28.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일자를 2018. 3. 28.로 변경하고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3. 28. (주)○○에서 무빙워크 핸드레일 장력 조정 확인 작업 중 동료근로자가 무빙워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일 불안감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로도 불안, 불면, 사고의 재경험, 악몽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은 것으로, 재해일자는 사고를 목격한 날이자 증상이 발현되어 처음으로 요양을 시작한 날인 2018. 3. 28.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승인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요양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8. 3. 28. ~ 2019. 2. 15. 기간 청구한 요양비 중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목적인 진료 관련 비용에 한하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재해발생 일자 2018. 3. 28.로 판단되므로, 그 날 이후 발생한 승인상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료 비용은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해발생일인 2018. 3. 28. 이후 발생한 승인 상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료 비용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1. 평균임금
2. 휴업급여



1

평균임금

1

»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을 180,000원으로 본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23호
- ➔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5.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11. 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평소 ○○(사업주는 아니며, 현장 소장으로 부름)의 작업지시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에서 작업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이 건 재해일 이전에도 사업주를 달리하여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주)에 제출한 이 건 사고현장의 기성청구서상 총 인건비와 ○○(주)이 동일한 금액을 ○○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일당이 7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당 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평균임금은 적법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VI

평균임금 및 부지급처분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8. 5. 29. 옥상 방화문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승인받았으나, 기 산정된 평균임금이 부당하여 평소 받던 임금인 일당 180,000원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2018. 5. 29. 입사 당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철강공업(주)와 근로계약서, 근로임금약정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필증, 신체검사, 혈압, 맥박체크 기록지 등을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재해일을 입사일이라고 처분하였다.
- 다. 대한건설협회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서를 보면 창호공의 일당은 175,176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숙련된 창호공이다. ○○철강공업(주) 차○○ 과장도 이를 인정하였다.
- 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와 통장거래내역서 그리고 동료들도 이를 사실 확인서로 증명해 주고 있고, ○○철강공업(주) 차○○ 과장, 양○○ 소장과의 녹취록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일당이 18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성청구 등을 얘기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재해일이 입사일도 아니며, 그 동안 일당 180,000원을 받았는데 일당이 70,000원이라는 사업주의 서류만 보고 처분한 것은 편파적인 결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당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5. 29. 7:00경 1공구 7동 24층과 옥상 방화문 수리 중 휘어진 방화문을 고정하여 맞게 세우다가 각목이 이탈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6년부터 ○○ 소장 밑에서 일을 하였고 소장은 ○○(주) 지역 소장으로 불리웠고 청구인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곳에서 일했다. △△ 현장 등 모두 ○○(주)으로부터 수주한 현장이므로 재해일이 입사일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노무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7. 8월 청구인이 **동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듯이 현장 일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어 왔고, 청구인의 작업일지에도 그때부터 계속하여 2018. 5월까지 일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 사업주가 제시한 노무비지급현황 및 일용노무비명세서상 청구인의 일당이 70,000원으로 기록된 5월 4일, 8일, 9일, 11일은 실제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한 날이 아니라, △△ 현장에서 일한 날이므로 ○○(주)이 제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 또한 일당 179,000원(11일간)으로 작성된 △△현장도 ○○(주)에서 관리하는 현장인데 일한 날수와 일당, 총액만 맞고 그 외 일한 날, 일한 현장 등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다.
 - 양○○ 소장은 십여 년 전부터 △△에서 방화문 설치 및 A/S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소장이 2012년 쯤 △△에서 먼저 독립하여 팀을 꾸려 일을 하였고, 저는 2016년부터 소장 팀으로 합류하면서 2017년 9월부터는 기술을 인정받아 일당 180,000원에 식비 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장 밑에서 일을 했다.
 - 급여 계산을 위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와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일한 날수에 따라 일당이 계산되므로 일한 날수와 총액만 맞으면 다른 사항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저 또한 그 관행대로 따랐을 뿐이며, 동료들도 이를 사실 확인서로 증명 해주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서상 창호공의 일당은 175,176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저는 일을 깔끔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숙련공으로 ○○(주) 과장도 이를 인정하였다.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3) 청구인에 대한 최초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재해현장 공사개요

- 공사명: 아파트 공사
- 공사기간: 2015. 6. 19. ~ 2018. 12. 10.
- 발주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건설
- 하도급사: ○○(주)

나) 이 건 공사는 ○○건설(주)가 시공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하도급업체인 ○○(주)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장에게 작업을 의뢰하였고, 소장이 청구인을 이 건 공사현장에 2018. 5. 29. 일용직으로 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공사 기성청구서(양○○ 소장 ⇨ ○○(주))

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마) 입·출 거래내역(○○(주) ⇨ 양○○)

- 거래일시: 2018. 6. 15.
- 이체 금액: 3,458,310원

※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양○○이 ○○(주)에 제출한 기성 청구서상 총인건비와 동일한 금액을 ○○(주)에서 양○○에게 입금한 내역임

- 거래일시: 2018. 6. 15.
- 거래금액: 5,091,360원

※ ○○(주)가 시공한 다른 현장의 2018. 5월 공사 인건비를 ○○(주)에서 양○○에게 입금한 내역임

바) 양○○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장별 출력내역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작업현황 및 급여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현황

- 작업 기간: 2018. 2. 11. ~ 2018. 3. 10.
- 작업 기간: 2018. 3. 11. ~ 2018. 4. 10.
- 작업 기간: 2018. 4. 11. ~ 2018. 5. 10.
- 작업 기간: 2018. 5. 11. ~ 2018. 5. 29.(2018. 5. 29. 재해발생)

(2) 수신 기간별(입금) 거래내역 / 고객용

| 날짜 | 적 요 | 거래금액 | 합계 | 의뢰인 |
|--------------|-----|-----------|-----------|---------|
| 2018. 3. 9. | 급여 | 3,627,320 | 3,964,320 | ○○테크(주) |
| 2018. 3. 15. | 양○○ | 337,000 | | 김△△ |
| 2018. 4. 10. | 급여 | 3,674,750 | 5,100,750 | ○○테크(주) |
| 2018. 4. 16. | 김○○ | 1,426,000 | | 김○○ |
| 2018. 5. 10. | 급여 | 4,752,080 | 4,850,080 | ○○테크(주) |
| 2018. 5. 10. | 김○○ | 98,000 | | 김○○ |
| 2018. 6. 11 | 김○○ | 1,180,000 | 1,180,000 | |

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현황(일부 발췌)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공사현장의 일급은 70,000원으로 신고 됨

자)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양○○과 유선통화 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화일시: 2019. 4. 9. 14:32
- 내용: 2018. 5. 29.자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하자 등 A/S를 하였기 때문에 일이 많지 않아 70,000원을 주었고 작업자는 혼자 작업을 하였다. 당일 작업자가 재해 발생하여 마무리 작업은 본인이 하였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
-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 및 임금 수령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발생 공사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 건설 현장 일용 잡부 일당이 최소 120,000원 이상임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 사건 재해 발생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이 모두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 한편,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2018. 6. 11. 김○○로부터 받은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 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

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숙련된 창호공으로서 일당이 180,000원이므로 녹취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발생 공사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일당 7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직전 공사현장에서는 일당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 건설현장 일용 잡부 일당이 최소 120,000원 이상임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이 모두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 한편, 청구인의 통장내역상 2018. 6. 11. 김○○로부터 받은 1,180,000원은 일당 180,000원의 5일치 임금과 식대 100,000원, 전월 미수령액 140,000원, 재해당일 2시간 임금 4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발생 현장에서 받은 일당은 180,000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병원에서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4,100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860호
- ➔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3. 10.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2014.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경부 및 상지 통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하며 2018. 12. 18. 원처분 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중 2018. 2. 23. 재해⁹⁾에 따른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면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8. 8. 1. ~ 2018. 8. 6.(6일)이고, 동 기간 중 근로한 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은 2013. 10. 26. 발생한 재해로 2014. 7. 31. 치료 종결 후, 이 사건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인 2018. 2.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 받아 2018. 7. 31.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로 인한 재요양 개시일은 2018. 8. 7.이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 이전 3개월 중에서 2018. 2. 23. ~ 2018. 7. 31.은, △△건설(주)에서 근로하던 중 발생한 2018. 2. 23. 재해로 승인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한 2017. 12. 2. ~ 2018. 2. 23. 및 2018. 8. 1. ~ 2018. 8. 6. 중 가장 최근의 일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가장 최근의 일당은 2018. 2. 23. △△건설(주)에서 지급받은 일당 170,000원에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한 124,1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 8. 1. ~ 2018. 8. 6.(6일) 기간 동안 근로한 내역은 없으나, 동 기간도 이 건 경추부위 상병악화에 따른 요양치료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병원에서 2018. 12. 2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2018. 2. 23. 재해로 인해 경추 추간판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되므로 2018. 8월에도 증상악화가 지속되어 근력을 요하는 노동 작업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한방병원이 2018. 12. 29. 발급한 진단서에서도 노동 작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8. 8. 1. ~ 2018. 8. 6.은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느바,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10. 26. 벽돌 쌓기 작업을 하던 중 외부 비계 2단(3.6m)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을 승인 받아 2014.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 이후인 2018. 2. 23. △△건설(주)가 시공하는 공영 주차장 석면철거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위쪽 스텔트를 해체하던 중 목재가 붕괴하면서 추락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 받아 2018. 7. 31.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
- 3) 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로 경부 및 상지 통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8. 9. 11. 원처분기관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4)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정보 조회 결과 및 ○○병원 수술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수술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2. 4.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 2018. 9. 28.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 5) 청구인에 대한 요양내역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3. 10. 26. 재해(1차 재해)
 - (1) 사업장명: ○○건설(주)
 - (2) 승인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
 - (3)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13. 10. 26. ~ 2014. 7. 31.(입원 162, 통원 354)

- 재요양: 2018. 8. 7. ~ 2019. 3. 31.(사유: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4) 임금: 일급 100,000원

(5) 재요양 당시 취업여부: 취업사실 없음

(6) 평균임금

- 최초요양 평균임금: 73,000원(통상근로계수 적용, 100,000원×73/100)

- 재요양 평균임금: 재요양 이전 취업사실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8. 8. 1. ~ 8. 6.)¹⁰⁾

나) 2018. 2. 23. 재해(2차 재해)

(1) 사업장명: △△건설(주)

(2) 승인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

(3) 요양기간: 2018. 2. 23. ~ 2018. 7. 31.(입원 28일, 통원 131일)

(4) 임금: 일급 170,000원

(5) 평균임금: 124,100원(통상근로계수 적용, 170,000원×73/100)

6) 재요양 신청 당시 작성한 문답 내용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8. 1. ~ 2018. 8. 6.)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재산정(2017. 12. 2. ~ 2018. 2. 23., 2018. 8. 1. ~ 2018. 8. 6.)한 후, 가장 최근의 일당 170,000원에

10) 2013. 10. 26. 재해로 인한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5. 7. ~ 2018. 8. 7.)에는 2018. 2. 23. 발생한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2018. 5. 7. ~ 2018. 7. 31.)이 포함되어 있어 동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재해일 이전 90일(2018. 5. 7. ~ 2018. 8. 6.) 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2018. 2. 24. ~ 2018. 7. 31.)을 고려하면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 8. 1. ~ 2018. 8. 6.(6일)으로 확인된다.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 8. 1. ~ 2018. 8. 6.이고, 동 기간 중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8) 청구인은 이 건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2018. 5. 3. ~ 2018. 7. 31. ○○한방병원 진료차트 상 “경혈침술(두·경부+요배부)(예풍, 신수), 척추간 침술(대추), 침전기자극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자락관법(두·경부+요배부) 등”으로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9) 청구인은 2019. 4. 3.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불인정된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함. 2018. 7. 30.까지 다친 요추를 치료 받았고, 직종을 바꿔서 2차재해 때에는 임금이 상승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4 전문가 의견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서(○○병원, 2018. 12. 27.)

- 병명(임상적 추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6번간 추간판탈출증), 제1번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조건: 상기 환자는 2018. 2월경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발생한 요추 1번 골절로 치료 받았으며, 사고 이후 경추 추간판질환이 악화되어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6개월이 지난 2018년 8월에도 증세 지속 및 악화되어 본원 신경외과에 2018. 8. 7. 내원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증세 호전 되지 않아 2018. 9. 28. 전방경유 경추4-5-6번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한 환자로 2018년 2월부터는 요통, 후경부통, 양측상지방사통 및 상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 뿐만 아니라 근력을 요하는 노동 작업은 불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입원기간: 2018. 9. 27. ~ 2018. 10. 31.

나. 진단(진료소견)서(○○한방병원, 2018. 12. 29.)

- 병명: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 진료소견: 상환은 2018. 2. 23. 작업중 2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발병한 요추 1번 골절로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지속적인 등 통증 및 요통 호소하셔서 침구치료 및 한약 치료 시행하였음. 2018. 6. 2. 본원 방사선 검사상 Compression Fx at T12-L1 소견 있었으며, 이로 인한 통증 및 척추 불균형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감 있었으며, 근력을 요하는 노동은 상기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치료 중 경추부 통증도 함께 호소하시어 경추부 치료(대추혈) 침구치료도 시행되었음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
-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 사.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변경지침(제2009-42호)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에서 확인되므로 최근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124,1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2. 23. 재해로 2018. 7. 31. 까지 요양한 것이 확인되고, 금번 2013. 10. 26. 재해의 재요양에 따른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2018. 5. 3. ~ 2018. 7. 31. 기간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두·경부+요배부)(예풍, 신수), 척추간 침술(대추), 침전기자극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자락관법(두·경부+요배부) 등”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치료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18. 2. 23.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4,100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2018. 2. 23.이고,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재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에서는 일당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료 근로자 진술 및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할 때, 청구인의 일당은 18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183호
-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9. 5.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원처분기관은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16,800원(일당 160,000원×통상근로계수)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임금으로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당은 160,000원 일 뿐, 청구인·팀장·동료근로자의 진술 외에 이를 정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건설과 일당 16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팀장으로부터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일당 18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신축건설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로하던 자로서, 2018. 9. 5. 도배 작업대 위에서 내려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2019. 3. 12.까지 요양하였다.
- 2)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건설과 2018. 8. 6.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 3) 원처분기관은 당초에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116,800원(일당 160,000원×통상근로계수)으로 산정하였다.

가) 청구인과 (주)□□건설과의 근로계약서

- 근로기간: 2018. 8. 6. ~ 작업종료 시
- 일당: 160,000원
- 직종: 기공
- 임금 지급 방법: 익월 20일에 계좌 이체

나) 임금확인서(주)□□건설 이사, 2018. 9. 28.)

- 근로기간: 2018. 8. 7. ~ 2018. 9. 4.
- 일당: 160,000원
- 직종: 경량공
- 임금 지급 방법: 계좌 이체(청구인의 누나 윤○○ 명의)

다) 소속 사업장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상 청구인 관련 내역

| 근무월 | 근무일수 | 일당 | 총임금액 | 세금공제 | 지급액 |
|----------|------|----------|-----------|----------|------------|
| 2018. 8월 | 22일 | 160,000원 | 3,520,000 | 116,160원 | 3,403,840원 |

라) 국세청 소득신고: 위 임금대장 신고 금액과 일치.

마) 통장 이체 내역

- 이체 당사자: (주)□□건설 → 윤○○(청구인의 누나)
- 이체일: 2018. 9. 6.
- 이체금액: 3,403,840원

4) 청구인의 임금에 대하여 팀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팀장이 2018. 12. 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근로계약서 상 일당 16만원으로 체결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현장 투입 전 1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통장에 18만 원씩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팀장이 작성한 출력일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임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월 | 근무일수 | 일당 | 총임금액 | 세금공제 | 지급액 |
|----------|------|----------|-----------|------|-----|
| 2018. 8월 | 19일 | 180,000원 | 3,420,000 | - | - |

다) 팀장은 2018. 11. 27.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주)□□건설은 최저 단가인 일당 16만원으로 모든 노무자들의 임금을 맞춘 후 물량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주)□□건설의 노무비 대장은 실제 근무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 노무자들의 실제 근로 유무는 팀장 본인이 기록한 후, 근무일 대비 임금을 더 받은 팀원에게는 돈을 걷고, 반대의 경우에는 돈을 더 주는 형태로 정산을 해준다.
- 2018. 9월에 청구인은 4일(1./ 3./ 4./ 5.) 근무하였다.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5) 청구인의 동료근로자는 2018. 12. 12.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였고, (주)□□건설은 일당 16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팀장으로부터 2만원을 더 받았다.
 - 임금대장 상으로는 대략 20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그 금액을 이체 받지만, 이후 팀장이 실제 근무일에 따라 조정해준다.
- 6) 청구인이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근무일에 대한 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을 다시 계산한 후 팀장 조○○에게 반환하거나, 조○○으로부터 추가 지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 거래일자 | 거래당사자 | 입금액 | 출금액 | 비고 |
|-------------|---------|------------|----------|--|
| 2018.9.6. | (주)□□건설 | 3,403,840원 | | 8월 일당(22일) |
| 2018.9.15. | 조○○ | | 591,000원 | 회사로부터 더 받은 금액 돌려줌(19일 근무) ※ 기본금액(50만원)+초과분(9만원)+수수료 1천원 → 3,403,840원-3,307,140원(18만원×19일-세금(3.3%))=96,700원 → 천원 이하 절사 지급 |
| 2018.10.15. | (주)□□건설 | 541,520원 | | 9월 일당(3.5일) |
| 2018.10.16. | 조○○ | 154,720원 | | 회사로부터 덜 받은 금액 받음(4일 근무) ※ 696,240원(18만원×4일-세금(3.3%))-541,520원 = 154,720원 |

※ 위 표에서 “비고” 부분은 청구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역임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및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실제로 일당 18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2018. 9. 5. 재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에서는 일당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료 근로자 진술 및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할 때, 청구인의 일당은 18만원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16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발생 현장에서 받은 일당은 180,000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청구인은 사업주가 출근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하지 아니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부가세경감세액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미배차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부가세경감세액 또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 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578호
-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응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5. 4. ○○운수(주)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뇌진탕, 좌 견관절 염좌’를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최초평균임금을 143,905원45전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2018. 9. 20.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균임금을 산정한 기간(2018. 5. 4. ~ 5. 14.) 중 2018. 5. 8.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②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였던 “부가세경감세액”에 대해서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정정 신청 사유 중 ①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2018. 5. 8.을 휴무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와 관련하여 “부가세경감세액”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만일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등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에 대하여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출근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하지 아니한 기간인 2018. 5. 8.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부가세경감세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부가세경감세액이 평균임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근무하지 않은 2018. 5. 8.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입사일자 및 근무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입사일자: 2018. 5. 4.

나) 담당업무: 택시 운전원

다) 근무형태

- 근로형태: 1일 2교대제로 6일 근로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

- 근로시간: 5시간 30분(오전근무 05:00 ~ 15:00, 오후근무 17:00 ~ 03:00)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휴게시간: 4시간 30분
- 휴일: 월 4~5일

라) 2017년 ○○기업(주) 임금협정서 내역(일부 발췌)

※ ○○기업(주)는 현 ○○운수(주)가 상호 변경하기 전의 구 명칭임

- 제3조(근로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간근로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 제5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6일 근무 1일 휴무제로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최초 평균임금 및 정정(심사청구와 별개 사유) 내역

| 구분 | | 정정 전 (2018.5.4. ~ 5.14.) | 정정 후 (2018.5.4. ~ 5.13.) | 차액 |
|--------------------------------|-------------|-----------------------------|-----------------------------|--|
| 총 일 수 | | 11일 | 10일 | |
| 급여명세서 | 기본급 | 269,731원 | 245,210원 | -24,521원 |
| | 승무수당 | 102,159원 | 91,944원 | -10,215원 |
| | 야간수당 | 88,100원 | 79,290원 | -8,810원 |
| | 기타수당 | 10,000원 | 9,000원 | -1,000원 |
| | 소계 | 469,990원 | 425,444원 | -44,546원 |
| 운전자별 월계 | 초과운송 수익금 | 972,840원 | 947,460원 | -25,380원 (환급금: 8,000원 포함/ 5월14일 초과운송수익금 33,380 제외) |
|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추가 지급한 금원 | 사납금 | 44,000원 | 44,000원 | 이 사건과 별개의 사항 |
| | 미지급 임금 | 96,130원 | 96,130원 | |
| 총 액 | | 1,582,960원 | 1,513,034원 | 69,926원 |
| 평균임금 | | 143,905.45원 | 151,303.40원 | - |

-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당초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18. 5. 4. ~ 2018. 5. 14. (11일)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이 업무시작일인 2018. 5. 14.로 재확인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18. 5. 4. ~ 2018. 5. 13.(10일)로 변경 후 평균임금을 151,303원 40전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휴업급여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였음

3) 청구인의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 2018. 5. 8. 사업주 귀책사유로 배차를 받지 못하여 근무를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부당 승무정지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판정일 당일(2018. 9. 3.) 현재 재직중 발생한 승무정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음
- 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5. 8. 배차과장이 상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차량을 미배치했다고 진술하나, 사업장은 청구인이 평소 1일 12시간 근무, 운전거리 300킬로미터 이상의 무리한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상무이사가 청구인과 2018. 5. 8. 면담을 한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배차과장에게 지시했으나 청구인이 면담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다고 하며 당사자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2018. 5. 8. 미배차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음

4) 기타 청구인의 근무상황과 임금지급 관련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6일 근무 1일 휴무” 원칙임
- 사업장은 청구인의 입사일인 2018. 5. 4.부터 2018. 5. 14.까지 총 11일의 근무일 중 나머지 10일은 근무하고 하루만 근무하지 않은 2018. 5. 8.을 휴무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위와 같은 사유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하는 2018. 5. 8.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 의하면 ○○운수(주)는 청구인에게 2018. 8. 21. 사납금 차액(44,000원), 부가세경감세액 차액(85,407원), 미지급 임금차액(96,130원) 등 총 합계 225,537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5) 이 사건 “부가세경감세액” 관련 판례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택시부가환급금)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나) 고등법원(노동쟁의중재 재정재심결정취소)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중재재정상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은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체로서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재재정은 전부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재재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사업주가 출근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하지 아니한 날인 2018. 5. 8.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부가세경감세액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2018. 5. 8. 청구인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상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주의 미배차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부가세경감세액 또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8. 5. 8.은 근로기준법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세경감 세액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두 금액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원처분은 위법하고 실제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989호
- ➔ 사건명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4. 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통상임금 121,800원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2. 15. 아프리카에서 해외파견 업무 수행 중 차량이 전복되는 재해로 상병명 ‘경추부 염좌’를 승인 받아 2019. 1. 20. ~ 2019. 3. 28.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평균임금 시, 국외근무수당은 해외 근무자들에게만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라는 사업장의 확인으로 제외하고, 기본급, 통신비, 능률제고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을 합산하여 105,075원 33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회사 소속으로 2018. 12. 15. 14:00경 아프리카에 해외 파견 업무 수행 중, 자재 구입하고 맨홀 작업 현장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틀린 자료이며, 평균임금이 현저히 작을 시에는 통상 임금을 적용하는데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상 임금: 월 약정액 575만원/(22×8) = 시간당 32,670원, 1일당 261,360원).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105,075원 33전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한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청구인은 2018. 12. 15. 발생한 재해로 2019. 1. 20. ~ 2019. 3. 28.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평균임금 105,075원 33전으로 2019. 2. 1. ~ 2019. 3. 5.(33일)까지 휴업급여 2,427,240원을 수령하였다.
- 2)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내역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임금 산정내역

원처분기관은 사업장 확인 결과, 통신투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였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300%를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여 상여금 합계에 산입하였고, 국외근무수당은 해외 근무자들에게만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 원처분기관 평균임금: 105,075원33전
- 입사일자: 2018. 11. 30.
- 국외파견일자 2018. 12. 3.

| 산출내역 | | | | | |
|--------|------------------|---|--------------------------------------|------------|------------|
| 임금계산기간 | | | 2018-11-30 | 2018-12-01 | 계 |
| | | | 2018-11-30 | 2018-12-14 | |
| 총일수 | | | 1 | 14 | 15 |
| 기본급 | | | 72,050 | 976,170 | 1,048,220 |
| 통신비 | | | 1,670 | 22,580 | 24,250 |
| 능률제고수당 | | | 6,010 | 81,350 | 87,360 |
| 초과근무수당 | | | 10,600 | 143,630 | 154,230 |
| 총계 | 0 | 0 | 90,330 | 1,223,730 | 1,314,060 |
| 평균임금 | (임금총액) 1,576,130 | | /(총일수) 15 | | 105,075.33 |
| 통상임금 | 0.00 | | | | |
| 상여금 내역 | | | 연월차수당 내역 | | |
| 상여금합계 | 262,070 | | 연월차수당 | | |
| 반영액 | 262,070 | | (---262,070---*---15---/---15---)--- | | |

나) 2018년 12월 급여대장(2018. 11. 30. ~ 2018. 12. 31.)

- 기본급 2,233,550원
- 통신비 51,670원
- 능률제고수당: 186,140원
- 초과근무수당 169,620원¹¹⁾
- 성과급: 558,400원
- 국외근무수당: 2,104,840원(2018. 12. 3. ~ 2018. 12. 31.산정)
- 단체보험료 29,900원¹²⁾

※ 지급총액(세전): 5,334,120원 / 실지금액(세후): 5,011,890원

11) 초과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출근보조비는 산정기간은 전월 16일~당월 15일(산재심사실에서 사업장 담당자 유선확인 '19.5.8)

12) 해외근무자에게 단체보험료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었다가 바로 공제하는 단체보험료임(산재심사실에서 사업장담당자 유선확인필 '19.5.8.)

다)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제1조(근무장소/담당업무): 글로벌사업팀 지정장소, 가봉 백봉암 CAB4+ 구축 현장/ 공사시공, 현장감독, 기술지원

제3조(근로계약기간): 2018. 11. 30. ~ 2019. 4. 30.

제4조(소정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1일 8시간, 주 40시간)

제5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① 항목별 지급 조건(단, 3내지 5호는 급여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

1. 기본급: 금 2,161,500원(209시간×시간급(유급 주휴시간 포함))

2. 초과근무수당: 포괄산정 기본 연장근무수당 318,020원(연장근무시간(20.5시간)×시간급×1.5,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단, 포괄 산정한 기본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포괄 산정되지 않은 휴일, 휴무일, 심야 근무 등 초과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3. 복리후생비

가. 출근보조비: 100,000원/일

나. 중식보조비: 150,000원/일

다. 통신비: 50,000원/일

4. 능률제고수당: 기본급의 100%를 매월 균등 분할 지급

5. 성과급: 기본급의 300%를 매월 균등 분할 지급

② 지급방법: 본 조 제1항의 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③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무년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청구인은 심시청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는 ‘국외근무수당’이라는 용어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조작한 사항이며, 여기서 임시라는 용어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 가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 “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며, 영터리 회사라고 주장함.

나) 청구인은 건설현장 잡부도 10만원이고 외국 노동자도 10만원인데, 청구인은 최고급 엔지니어이며 사우디에서도 1억 이상 받았다.

다)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은 특급 일임금액이 322,738원이다(※ 청구인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발급 특급기술자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심사 청구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해외근무자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일부 발췌

12. 급여

가. 해외근무직원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항의 급여량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단 보수규정 상의 출근보조비는 제외한다.

13. 평균임금 및 퇴직금

해외근무직원의 사망, 공상 또는 퇴직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내 근무 시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4. 국외근무수당

가.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에게는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국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은 <별표>¹³⁾와 같다.

나) 『보수규정』 주요 내용 일부 발췌

제2조(정의)

11.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월통상임금은 기본월봉(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으로 한다.

다) 『보수규정시행지침』 주요 내용 일부 발췌

제8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본월봉(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출퇴근보조비, 차량유지비를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직무연봉 및 연차휴가보상 수당을 12등분한 금액

13) 회사에서 제출한 별표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외근무수당은 2,250,000원임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조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마. 관련 행정해석

(해외근무수당) 국외에 주재 또는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임금68207-389, 1994.7.1.)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05,075원 33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통상임금 261,36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두 금액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원처분은 위법하며, 청구인의 산정된 평균임금은 105,075원 33전은 타당하나, 통상임금을 산정해 보면, 기본급, 통신비, 능률제고수당, 성과급, 출근보조비 및 중식보조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일급 통상임금은 121,800원 이므로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121,8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 121,800원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A large, bold number '2'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his circle is part of a larger, light gray shape that resembles a stylized speech bubble or a cluster of bubbles, extending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center.

2

휴업급여

1

»

우 폐하엽 절제술 시행 후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이 면역치료 및 추적 관찰 시행한 상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7924호
- ➔ 사 건 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9. 1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의료기관에 입원 요양한 기간 및 실 통원한 날에 대하여 부지급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6. 1. 15. 진단받은 상병명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8. 1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2016. 3. 3. ~ 2018. 8. 16.)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주치의사의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과 자문의사의 “폐암의 병기가 1기이며 폐기능 검사 등이 정상 소견이므로 수술 후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정상 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2016. 4. 1. 이후 취업치료 가능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4. 1. 이후는 ○○병원에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날 및 △△병원 입·통원한 날)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6. 2. 18. 우측 폐암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과거 폐결핵, 늑막염으로 인해 치료 받은 이력으로 폐가 퍼지지 않고 계속 물이 차 2회에 걸친 흉막 유착술(2016. 2. 23., 2016. 2. 25.)까지 시행 받아 다른 환자들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져 수술 후 15일 후애나 퇴원이 가능하였으며 이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나. 2016. 9. 23. ○○병원 정기검진 상 좌측 폐에도 암으로 보이는 결절이 있었으며, 그것이 커지거나 진행하면 암일 확률이 높으므로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고, 결국 2018. 10. 25. 좌측 폐까지 절제술을 받게 되었으며 조직검사 상 폐암(선암)으로 진단 받았다.
- 다. 2018. 10. 25. 좌측 폐 절제술을 받고 폐암이란 결과가 나왔음을 볼 때 △△ 병원에서의 요양기간은 절대 불필요한 기간이 아니었으며 이미 우측 폐를 절제하였고, 좌측 폐도 잘라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를 접어두고 취업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어려울 것이며,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면역치료가 아니었다면 암이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다.
- 라. 개흉술 후 정상 생활을 위해 두 달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15일분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간만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 1) 청구인은 ○○탄광(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11년 10개월간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6. 1. 15.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16. 12. 28.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전문 조사 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8. 3. 22.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16. 2. 18. 병원에서 '우하엽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018. 10. 25. 같은 병원에서 '좌하엽 썬기절제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3) 청구인이 이 사건 휴업급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서 접수일자: 2018. 8. 16.
 - 나) 청구기간(일수): 2016. 3. 3. ~ 2018. 8. 16.(897일)
 - 다) 지급내역
 - 2016. 3. 3. ~ 2016. 3. 31.(29일분) 1,916,920원
 - 2016. 4. 8. ~ 2018. 6. 22.(실 통원 13일분) 884,030원
- 4) 청구인의 의료기관별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병원
 - 2016. 1. 15. 폐암 진단
 - 2016. 1. 15. ~ 2016. 2. 16.(통원)
 - 2016. 2. 17. ~ 2016. 3. 2.(입원, 2016. 2. 18. '우하엽 절제술' 시행)
 - 2016. 3. 3. ~ 2018. 10. 23.(통원)
 - 2018. 10. 24. ~ 2018. 10. 28.(입원, 2018. 10. 25. '좌하엽 썬기절제술' 시행)
 - 2018. 10. 29. ~ 현재(통원)

나) △△병원

- 2016. 3. 31. ~ 2016. 6. 16.(입원)
- 2016. 11. 10. ~ 2016. 12. 22.(입원)
- 2018. 4. 27. ~ 2018. 5. 25.(입원)
- 2017. 3. 22. 외 통원 수 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소견(○○병원, 2016. 12. 23.)

- 치료예상기간
 - 입원: 2018. 5. 23. ~ 2018. 8. 14.
 - 통원: 2016. 1. 15. ~ 2021. 1. 5.(사유: 폐암 수술 후 5년간의 정기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함)
- 취업치료 여부: 정상 취업치료 가능

2) 진단서(△△병원, 2018. 6. 18.)

- 질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소견: 우측 폐암으로 2016. 2. 18. ○○병원에서 수술 받았으며 최근 좌측 폐에 종양 의심되는 소견 보여 추적관찰 중입니다. 본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 받으면서 질환 관리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면역치료와 추적관찰 요합니다.

3) 소견서(○○병원, 2018. 6. 22.)

- 질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소견: 폐암으로 2016. 2. 18. 우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정기적인 검사 및 관찰 중임. 2018. 3. 16. 시행한 흉부 CT 상 폐암의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좌 폐하엽의 결절 크기는 약간 증가한 상태임. 향후 주기적인 검사 및 관찰이 요망됨.

4) 진단서(○○병원, 2018. 9. 21.)

- 질병명: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소견: 폐암으로 우 폐하엽 절제술을 받았으며 향후 주기적인 검사 및 관찰을 요함. 수술 후 2달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했었음

5) 진단서(○○병원, 2018. 11. 9.)

- 질병명: 폐암(우하엽), 폐암(좌하엽)
- 소견: 우하엽 폐암으로 2016. 2. 18. 우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크기가 증가하는 좌하엽 폐결절의 악성 가능성으로 2018. 10. 25. 좌하엽 췌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되었음
- 2016. 2. 17. ~ 2016. 3. 2., 2018. 10. 24. ~ 2018. 10. 28. 입원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뢰 사항
 - 2016. 3. 3. ~ 2018. 8. 16. 휴업급여 지급 타당 여부
 - 2016. 2. 18. 우하엽 절제술 후 6개월 간격으로 외래 추적 관찰 중으로 2016. 3. 2. ○○병원 퇴원 후 2016. 3. 31. ~ 2016. 12. 22. 노인요양병원 △△병원에서 입원 요양함
- 자문의 소견: 폐암의 병기가 1기이며 폐기능 검사 등이 정상 소견인 상태여서 수술 후 1개월 정도 경과하면 통증 등이 호전되고 정상 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2016. 4. 1. 이후 취업치료 가능한 상태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여기서 취업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6. 4. 1. 이후 병원에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2016. 2. 18. 우 폐하엽 절제술 시행 후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이 면역치료 및 추적 관찰 시행한 상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병 상태 상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입원 요양한 기간은 전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기간 중 입원기간과 실 통원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의료기관에 입원 요양한 기간 및 실 통원한 날에 대하여 부지급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551호
- ➔ 사 건 명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6. 11. 2. 04:30경 야채구입 후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고 요양한 후 2018. 12. 7.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2016. 12. 14. ~ 2017. 7. 29.(228일))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 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기간(통원 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업무지침을 변경(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방법 알림(보험급여 관리부-4153: 2018. 8. 1.))한 사실이 있다.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른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 통원 요양 중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 나. 청구인은 재해발생 후 통원 기간 중 사업의 경영만을 관장하였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업주이자 주방장으로서 3명의 인원인 주방을 총괄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재해로 인하여 주방 운영이 되지 않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368일간 총 28,665,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 다. 따라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2016. 12. 14. ~ 2017. 7. 29.)에 대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자로서 통원기간 중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치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사실 관계
- 1)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04:30경 야채구입 후 운전 중 가드레일을

-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고 2016. 11. 2. ~ 2017. 7. 29.(입원 42일, 통원 228일)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입원기간: 2016. 11. 2. ~ 2016. 12. 13.(42일)
 - 통원기간: 2016. 12. 14. ~ 2017. 7. 29.(228일)
- 2) 청구인은 2016. 11. 2.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업태: 음식 및 숙박업
 - 종목: 음식점
 - 사업장 상태: 계속(정상)
- 4) 청구인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6. 12. 14. ~ 2017. 7. 29.(228일)) 중 총 7일간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 ○○병원: 2016. 12. 16./ 2017. 2. 10./ 4. 7./ 7. 14./ 7. 29.(5일)
 - ○○의원: 2017. 3. 6./ 3. 13.(2일)
- 5) 원처분기관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8. 12. 31.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6) 청구인이 상기 재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은 총 1,988,650원으로서 요양승인 기간(2016. 11. 2. ~ 2017. 7. 29.) 중 297일분에 해당한다.

7) 한편, 청구인은 2018. 5. 25. 동일기간(2016. 12. 14. ~ 2017. 7. 29.(228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18. 7. 5. 『통원치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1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 최초요양신청 시 소견서

-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 요양기간: ① 2016. 11. 2. ~ 2016. 11. 16.(입원) ⇨ 2016. 11. 2. 도수정복 및 골수정 삽입술 ② 2016. 11. 17. ~ 2017. 7. 29.(통원) ⇨ 경과 관찰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요양기간 등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2012. 11. 15.)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한다.

다.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알림(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4153, 2018. 8. 1.)

-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개선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므로 ①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입원·통원·재가요양 중이면서 ②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휴업급여 지급기준〉

| 기 존 | 개 선 |
|--|---|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부지급 |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가족 등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지급 |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아 통원 요양한 2016. 12. 14. ~ 2017. 7. 29.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한 것으로,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양 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통원 기간 중인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28,665,000원의 인건비가 지급 되었으므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아 통원 요양한 2016. 12. 14. ~ 2017. 7. 29.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한 것으로,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 기간(2016. 12. 14. ~ 2017. 7. 29.)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재해일 이후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수술 이전에도 취업요양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간 전체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한 반면, 사업장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 9,860,000원은 공제(조정)함이 타당해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909호
- ➔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1.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3. 7. ~ 2018. 8. 29.’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단, 휴업급여 기지급일 제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병명 ‘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회막염’을 승인(업무상 질병)받아 요양한 후 원처분기관에 2018. 3. 7. ~ 2019. 1. 22. 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청구인이 2018년 4월에 10일간, 2018년 5월에 17일간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조사결과와 ‘2018. 8. 30. (수술일)부터 취업치료가 불가하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수술일(2018. 8. 30.) 이후 전체 기간(2018. 8. 30. ~ 2019. 1. 22.)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수술일 이전 기간(2018. 3. 7. ~ 2018. 8. 29.)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15일(2018. 3. 7., 3. 14., 3. 22., 3. 26., 4. 2., 4. 24., 5. 1., 5. 7., 5. 21., 6. 7., 6. 19., 8. 13., 8. 17., 8. 23., 8. 24.)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만, 원처분기관에서는

산정한 휴업급여액(금 15,294,020원)에서 청구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사업주(하수급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금 9,860,000원)을 조정(공제)한 후의 금액(5,434,02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8. 3. 7. 재해발생일부터 손목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부목(splint)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2018. 8. 30. 수술을 시행받았는 바, 수술 이전 기간에도 전혀 취업치료를 할 수 없는 상병상태였다.

청구인에 대한 2018년 4월~5월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2018년도에 (유)△△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장에서 착오로 신고한 것이다.

또한 ○○건설주식회사의 하수급 사업장인 (유)□□건설에서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금 9,860,000원)은 전액 '재해위로금'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액 조정(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

- 2018. 3. 7. 자재를 옮기던 중 우측 손목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한의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8. 13. ○○정형외과의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함

2)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발취

- 2018. 3. 7. ○○병원/ 우측 손목이 아프다. 10일 전부터, 금일 무리하게 망치질 한 후 더 심해졌다. R/O ganglion cyst. 일주일 후 F/U
- 2018. 3. 14. ○○병원/ SAS(※ Short Arm Splint)
- 2018. 3. 22. ○○병원/ 통증은 조금 나아 졌다. 금일 TPI, 2주 후 외래
- 2018. 3. 26. ○○한의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4. 2. ○○병원/ 통증은 똑같다. P) thumb spica. 2주 후 외래
- 2018. 4. 24. ○○한의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5. 1. ○○한의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5. 7. ○○정형외과의원/ 우측 완관절 통증 및 압통 부종
- 2018. 5. 21. ○○정형외과의원/ 우측 완관절 통증 및 압통 부종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 지속됨.
- 2018. 6. 7. ○○정형외과의원/ 우측 아래팔의 힘줄염
- 2018. 6. 19. ○○정형외과의원/ 우측 완관절 통증 및 압통 부종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 지속됨
- 2018. 8. 13. 수사랑정형외과의원(이하 같다.)/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 우측 손목 통증
- 2018. 8. 17.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
- 2018. 8. 23.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2018. 8. 24. 요골 경동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 통증 지속됨. OP recommend.
Dequervain dz Rt.

- 2018. 8. 30. OP: 건 및 인대성형술 시행

3) 청구인의 취업내역(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

- 2018. 3. 1. ~ 2018. 3. 31. 총 19일 근무(○○건설주식회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무 날짜는 총 19일(2018. 3. 1.~3. 4., 3. 6., 3. 8., 3. 10., 3. 11., 3. 16.~3. 18., 3. 20.~3. 21., 3. 23.~3. 24., 3. 26., 3. 28., 3. 30.~3. 31.)로 확인되나,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에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상 '실제로는 2018. 3. 7. 이후 근무이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됨.

- 2018. 4. 1. ~ 2018. 4. 30. 총 10일 근무((유)△△건설)

- 2018. 5. 1. ~ 2018. 5. 31. 총 17일 근무((유)△△건설)

※ 청구인은 2018년 4월~5월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건설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에서도 '2018년도에 본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바 있음

4) 청구인에 대한 휴업급여 처리내역

- 2018. 3. 7. ~ 2018. 8. 29.: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15일(2018. 3. 7., 3. 14., 3. 22., 3. 26., 4. 2., 4. 24., 5. 1., 5. 7., 5. 21., 6. 7., 6. 19., 8. 13., 8. 17., 8. 23., 8. 24.)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지급

- 2018. 8. 30. ~ 2019. 1. 22.: 전 기간 휴업급여 지급

5) 사업주와의 합의 관련 주장 내용

- 청구인과 (유)□□건설(○○건설주식회사의 하수급인)간의 합의서(2018. 4. 2.)에는 '본 사고에 따른 병원비를 제외한 휴업 및 위로금 조'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에 (유)□□건설 현장소장은 청구인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일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일당 외에 '그동안 일 못한 것과 위로금 조'로 2차에 걸쳐 총 9,8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청구인은 일당 외에 금 9,8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전액 '재해 위로금'이라고 주장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에 관련 법에 따라 청구 및 재심을 요청하겠다'라고 진술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조회서, ○○병원, 2019. 1. 7.) 2018. 3. 27.까지 단상지 부목 상태로 활동이 불편함
- (주치의 소견조회서, ○○정형외과, 2019. 2. 15.) 재발 가능성 있으나 취업치료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9. 1. 28.)

- 2018. 8. 30.(수술일)부터 취업치료 불가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해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수술(2018. 8. 30.)을 받기 이전 기간에도 손목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전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병상태였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재해 위로금'에 대한 조정(공제)없이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재해일 이후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수술(2018. 8. 30.) 시행 이전에도 상병상태상 취업요양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18. 3. 7. ~ 2018. 8. 29. 기간에 대해서도 전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한 반면, 사업장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 9,860,000원은 공제(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3. 7. ~ 2018. 8. 29.'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8. 3. 7. ~ 2018. 8. 29.'의 기간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단, 휴업급여 기지급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청구인은 요양원에 입사하기 이전 시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가세 신고내역을 보면 요양원 입사한 이후 기간에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2206호
- ➔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2. 28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10. 16. 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0. 28. 19:00경 팔, 다리 배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2018. 10. 2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상병명 ‘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 중, 원처분 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2018. 10. 29. ~ 2018. 11. 22. 기간, 총 22일)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청구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날(4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2. 5. ‘△△’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8년 10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요양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요양원 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옴’ 질병이 발생하여 2018. 10. 31. 근무를 종료하였다.

이후 4개월 동안은 취업하지 못했으며, △△ 사업장은 운영을 안한 상태로 생활의 고충으로 인해 요양원에 취업하였으나 질병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고 △△ 사업자도 폐업하였고, 취업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재해(질병) 발생 후 2019. 10. 29. 청구인이 내원한 ○○의원의 (초진) 진료 기록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 음? 1일 전 가려움? 복용 중인 약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거병력(+) 결핵
부작용(-), 임신(-), 방문경로: 기타, 탈모. 진료계획(-)

〈Diagnosis〉
(B86) 음, (L239)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호: △△
- 종목: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 개업일: 2018. 2. 5.
- 폐업일: 2018. 12. 31.

3) 청구인과 소속 사업장 사업주(요양원 대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15. ~ 2019. 1. 31.로 하고, 중도 퇴사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정식 수리된 후에 퇴직 처리됨
- 나) 담당업무: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하고, 업무장소는 ○○요양원2로 함
- 다) 근로형태: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함
- 복합근무(주-주-야-야-휴-휴)
 - 근무시간: 주간(D) 09:00 ~ 19:00, 야간(N) 19: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주간근무 중 휴게시간 90분(총 90분), 야간근무 중 주간휴게 1시간, 야간 휴게 5시간(총 6시간)
- 라) 임금: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5일에 청구인이 지정한 통장에 지급하며, 임금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함

〈매월 임금구성 항목 및 금액〉

|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 | 장기근속수당 | 기타수당 | 월지급 임금총액 |
|-----------|---------|--------|-------|-----------|
| 1,533,490 | 114,530 | | 1,980 | 1,650,000 |

- 4) 청구인의 고용보험 취득이력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 취득일자 | 상실일자 |
|-------------------------------------|------------|------------|
| 요양원1 | 2018-10-16 | 2018-11-02 |
| 요양원2 | 2018-07-16 | 2018-07-23 |
| 요양원3 | 2018-04-02 | 2018-05-25 |
| 복지센터 | 2017-12-06 | 2017-12-13 |
| 요양원4 | 2017-08-08 | 2017-08-12 |
| 요양원5 | 2017-03-22 | 2017-06-24 |
| 데이케어 | 2016-11-01 | 2016-11-12 |
| 요양센터 | 2016-01-19 | 2016-01-20 |
| ○○구청[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1단계-건물등종합관리사업)] | 2012-01-02 | 2012-03-31 |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5) 요양원 대표자의 2018. 11. 22.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8. 10. 16. 입사하여 2018. 10. 17. 첫 근무를 시작 후 2일간 근무 후에 면담 요청하여 일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하여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2018. 10. 29.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2018. 11. 1. 09:00) 후에 사무실에 와서 약국 영수증을 보이고 계산해 달라고 해서 지급해 드렸음
- 2018. 11. 1. 19:00에 야간근무 예정이었는데 18:00 경에 전화로 금일부터 출근 안하고 퇴사 하겠다고 통보해 옴. 2018. 11. 2. 오후 2시경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 요양원에 옴 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받고 서류 제출하였고, 2018. 11. 2. 오후 4시경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본 요양원 방문 후 현장 조사 후 철수함
- 이후 2018. 11. 3.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산재 처리 접수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2018. 11. 5. 청구인의 아들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한달치 월급을 주든 지, 아니면 산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

6) 원처분기관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서, 청구인의 채용일자 2018. 10. 15.이고, 고용형태는 상용으로, 재해발생일(2018. 10. 29.) 이전 14일간 근무하여 745,161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7) 2019. 5. 15.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 유선통화 결과, 청구인은 2018년 2월부터 ‘△△’라는 사업장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사업(강아지를 이동해 주는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2018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취업하였음. 요양원에 취업한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다가 2018년 말에 폐업처리 하였음
- 청구인의 아들과 유선통화 결과, 사업자등록한 ‘△△’는 구청에 등록하고,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지정 장소로 이동해 주는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2명에서 2018년 2월부터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2018년 10월에 어머니는 요양원에 취업하고 본인도 현재 다른 일을 하였음. 사업자등록 후에 처음

에는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매출액을 어느정도 신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 8) 2019. 5. 29. 청구인으로부터 2018년 부가세 신고내역을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이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 신고기한 | 과세표준금액 | 비고 |
|------|------------------------|------------|---------------------------|
| △△ | 2018. 2. 1. ~ 9. 30. | 5,231,000원 | 2018. 12. 31. 사업부진(폐업) |
| | 2018. 10. 1. ~ 12. 31. | 210,000원 | |
| 합 계 | | 5,441,000원 | |

- 9) 청구인은 2019. 6. 5.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아들과 함께 참석하여 청구인은 '장사가 안 되어서 12월에 폐업을 했음. 일을 많이 못 했음.'이라고, 아들은 '어머니가 10월에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일을 안 했음. 이후로 거의 수입이 없었음.'이라고 각각 구술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의원)

통원기간(2018. 10. 29. ~ 2018. 11. 20.)에 대해, 요양원 근무 중 옴을 옮았다고 함, 가려움 많이 좋아졌으며, 약물치료로 호전 예상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요양원에서 옴환자 보호 및 케어 중 옴의 이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부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음. 신청 상병이 진료기록부에 확인됨. 요양기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참고자료(질의회시 등)

1)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보상 6602-758, 2003. 5. 24.)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2)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보상팀-9193, 2012. 11. 23.)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 명목의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되,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자영업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투잡 형태의 근로자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상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발생이 전제된 개념으로서 상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다.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알림(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4153, 2018. 8. 1.)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므로 ①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입원·통원·재가요양 중이면서 ②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휴업급여 지급기준〉

| 기존 | 개선 |
|---|--|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부지급 |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가족 등 대체인력 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지급 |

- 라. 중소기업사업주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방법 알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1663, 2019. 3. 28.)

◆ 2018. 8. 1. 시행한 중소기업사업주의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은 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시기 바람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4개월 동안은 취업하지 못했고, 요양원에 취업한 후에는 △△ 사업장은 운영을 하지 않다가 폐업을 하였으므로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요양원에 입사하기 이전 시점인 2018. 2. 5. ‘△△’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8년 부가세 신고 내역을 보면 2018. 2. 1. ~ 9. 30. 기간에는 과세표준금액이 5,231,000원인 반면, 2018. 10. 1. ~ 12. 31. 기간은 21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요양원 입사한 2018. 10. 16. 이후 기간에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급여 청구기간(2018. 10. 29. ~ 2018. 11. 22.)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9. 2. 28.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신고된 소득금액 19,370,968원 중 본인 의료비 등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법률상 휴업급여와 성격이 동일한 금품에 한해 휴업급여를 조정함이 타당해 원처분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5992호
- ➔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2012. 5. ~ 2012. 11.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법령 상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 중 휴업급여에 상당하지 아니한 금품과 2013. 12. 14. 이후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통원한 날(단, 실제 취업일 제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2. 4. 30. 진단 받은 상병명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후, 상병명 ‘구각 구순염,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기타비장질환(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조기 난소부전’을 추가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자로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청구기간 2012. 4. 30. ~ 2019. 2. 22.)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2. 5. 1. ~ 2012. 11. 30. 기간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19,370,968원)이 해당 기간 휴업급여 금액(14,166,286원)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의 ‘상병명 및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2013. 12. 13. 이후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기간 중 2012. 5. 1. ~ 2012. 11. 30.에 대하여는 부지급을, 2012. 12. 1. ~ 2013. 12. 13.에 대하여는 지급을,

2013. 12. 14. 이후 기간의 경우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2012. 5. 25. ~ 2012. 11. 23. 기간 중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9,370,968원 중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2,935,483원에 한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나. ○○병원 전문의의 취업능력 평가소견서 상 청구인은 2014. 4. 17.까지 취업치료가 불가하다는 소견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 1. 최초로 부분 취업을 하였던 바, 당시는 산재로 승인되기 이전이었던 터라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비의 부담으로 무리하여 취업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2. 31.까지는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3쟁점 및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주) 공장에 재직하던 자로서, 2012. 4. 30. 진단 받은 상병명 '재생불량성 빈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고, 상병명 '구각 구순염,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기타 비장질환(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조기 난소부전'을 추가상병 승인 받아 요양 하던 중,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청구기간 2012. 4. 30. ~ 2019. 2. 22.)를 청구하였다.
 -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최초요양 승인상병명: 재생불량성빈혈

○ VI.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추가상병 승인상병명: 구각구순염,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기타비장질환(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조기 난소부전

- 요양 승인 기간: 2012. 4. 30. ~ 2019. 5. 17.(입원 8일, 통원 2,566일)

3) 청구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기간 | 지급일수 | 평균임금(원) | 지급액(원) | 사유 |
|-------------------------------|------|------------|------------|-----------|
| 2012. 04. 30. ~ 2012. 11. 30. | - | - | - | 사업장 임금 지급 |
| 2012. 12. 01. ~ 2013. 04. 29. | 150 | 94,568.33 | 9,929,700 | 취업치료 불가능 |
| 2013. 04. 30. ~ 2013. 12. 13. | 228 | 99,013.04 | 15,802,450 | |
| 2013. 12. 14. ~ 2016. 12. 26. | - | - | - | 취업치료 가능 |
| 2016. 12. 27. ~ 2017. 01. 02. | 7 | 109,401.35 | 536,060 | 입원기간 |
| 2017. 01. 03. ~ 2019. 02. 22. | - | - | - | 취업치료 가능 |
| 계 | 385 | | 26,268,210 | |

4)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 내역

(단위: 원)

| 년월 | 급여액 | 세액 | 년월 | 급여액 | 세액 |
|----------|-----------|---------|-----------|-------------------|----------------|
| 2012. 5. | 1,500,000 | 9,800 | 2012. 9. | 7,788,851 | 644,000 |
| 2012. 6. | 1,435,483 | 8,220 | 2012. 10. | 2,900,001 | 83,550 |
| 2012. 7. | 999,999 | - | 2012. 11. | 1,180,501 | - |
| 2012. 8. | 3,566,133 | 200,650 | 합계 | 19,370,968 | 946,220 |

5) 2012. 5. ~ 2012. 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서(사업장 제출)

(단위: 원)

| 년월 | 공통급 | 직능급 | 근속수당 | 급여총액 | 본인 의료비 | 선택적 복리후생 | 계 |
|----------|-----------|---------|--------|-----------|-----------|----------|-----------|
| 2012. 5. | 1,286,000 | 149,000 | 65,000 | 1,500,000 | | | 1,500,000 |
| 2012. 6. | 1,230,688 | 142,591 | 62,204 | 1,435,483 | | | 1,435,483 |
| 2012. 7. | 857,333 | 99,333 | 43,333 | 999,999 | | | 999,999 |
| 2012. 8. | 857,333 | 99,333 | 43,333 | 999,999 | 2,566,134 | | 3,566,133 |

| 년월 | 공통급 | 직능급 | 근속수당 | 급여총액 | 본인 의료비 | 선택적 복리후생 | 계 |
|-----------|-----------|---------|---------|-----------|------------|-------------|------------|
| 2012. 9. | 802,022 | 92,925 | 40,538 | 935,485 | 5,033,866 | 319,500 | 6,288,851 |
| 상여금(9월) | 1,286,000 | 149,000 | 65,000 | 1,500,000 | | | 1,500,000 |
| 2012. 10. | 428,667 | 49,667 | 21,667 | 500,001 | 2,400,000 | | 2,900,001 |
| 2012. 11. | 428,667 | 49,667 | 21,667 | 500,001 | | 680,500 | 1,180,501 |
| 계 | 7,548,221 | 874,560 | 381,520 | 8,370,968 | 10,000,000 | 1,000,000 | 19,370,968 |

6) 요양기간 중 취업 내역

- 청구인 진술

| 근무기간 | 사업장명 | 월급여(원) |
|---------------------------------|--------|-----------|
| 2012. 12. 15. 퇴사 ¹⁴⁾ | ○○(주) | |
| 2016. 1. ~ 2016. 4. 12. | 피부관리실 | 700,000 |
| 2016. 6. 23. ~ 2016. 8. 4. | ○○화장품 | 1,200,000 |
| 2016. 8. 23. ~ 2016. 10. 31. | ○○쇼핑몰 | 1,200,000 |
| 2017. 3. 4. ~ | △△ 쇼핑몰 | 1,400,000 |

- 4대보험 취득신고 내역

| 근무기간 | 사업장명 | 월급여(원) |
|-----------------------------|-------|-----------|
| 2004. 8. 1. ~ 2012. 12. 15. | ○○(주) | 1,200,000 |
| 2016. 8. 23. ~ 2016. 11. 1. | (주)△△ | 1,300,000 |
| 2017. 6. 1. ~ | △△쇼핑몰 | 1,400,000 |

-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

| 근무기간 | 사업장명 | 보수총액(원) |
|------------------------------|----------|-----------|
| 2016. 6. 23. ~ 2016. 8. 4. | (주)○○서비스 | 1,796,841 |
| 2016. 12. 5. ~ 2016. 12. 26. | ○○물류 | 1,325,000 |
| 2017. 3. 1. ~ 2017. 3. 7. | △△ | 700,000 |

14) 청구인은 2012. 3. 16.부터 휴직하여 복직하지 않고 2012. 12. 15. 퇴사함

- 7) 요양비 지급 청구 관련 자료 상 청구인은 2013. 12. 14. 이후 다수의 기간 동안 통원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취업능력 평가소견(○○병원, 2018. 6. 20.)

- 상병명: 재생불량성빈혈
- 현재 상병 상태: 완전관해상태(완치)
- 현재기준 노동능력: 전일 가능
- 치료종결 후 예상업무 능력: 원직 복귀가능
- 취업관련 업무수행 가능 여부: 현재는 취업 가능, 2012. 2. 15. ~ 2014. 4. 17. 적극적인 치료와 경과관찰 필요해 업무 불가능
- 취업에 따른 부상질병 상태의 악화 가능 여부: 현재는 취업 가능, 2012. 7. 골수이식 후 2014. 4. 17. 외래 방문까지는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불가능
- 증상 고정 예상시점: 현재로서는 증상 고정 상태(2014. 4. 17. 이후)

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2016년부터 근무 이력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제출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병원 2013. 11. 26. ~ 2013. 12. 13. 입원기간 이후 합병증 등 추적관찰을 요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상병명과 상병상태로 보아 2013. 12. 13. 퇴원 이후 취업치료 병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병 및 상병 상태가 아닐 것으로 사료됨. 2013. 12. 13. 퇴원 이후 통원기간은 취업치료 병행 가능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다.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 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 2)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은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요양사실이 있어야 함

-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어야 하며 그 요양이란 입원,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임(※ 재가요양기간이란 상병의 특성 및 그 경과상 재가요양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야 함

-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료계획과 연계, 상병의 정도나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 요양 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나. 청구인은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인 2,935,483원에 한하여 휴업급여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014. 4. 17.까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 및 산재 승인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무리한 취업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2015. 12. 31.까지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상병 상태 상 2013. 12. 14. 이후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2. 5. ~ 2012. 11. 기간 신고된 소득금액 19,370,968원 중 본인 의료비 등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3. 12. 14.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법률상 휴업급여와 성격이 동일한 금품에 한해 휴업급여를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12. 5. ~ 2012. 11. 지급 받은 근로소득금액 중 휴업급여와 성격이 동일한 금품에 한해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상병 상태 상 2013. 12. 14. 이후 기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통원한 날(단, 실제 취업일 제외)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2. 5. ~ 2012. 11.에 대한 산재보험법령 상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 중 휴업급여에 상당하지 아니한 금품과 2013. 12. 14. 이후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통원한 날(단, 실제 취업일 제외)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VII

장해급여

1.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



1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

1

»

좌측 반신마비, 인지 기능의 상당한 저하로 정상적인 식사나 배변활동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우안 실명상태, 좌안 시야 협착 등으로 인한 반맹이 관찰되므로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심사결정 제7845호
- ➔ 사건명 장애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8.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제2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4. 1. 15.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양안 외상성 시신경 위축, 신경인성 방광, 흡인성 폐렴, 위막성 대장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장 운동기능 이상, 장폐색’에 대하여 2015. 4. 30. 까지 요양 후, 장애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되어 장애연금 수급 중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나. 원처분기관은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 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정도의 사지마비와 구음장애의 합병 등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고도의 치매나 감정과 의지의 황폐와 같은 정신 증상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처분기관이 부축 하에 실내에서 근거리 보행이 가능하다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앉아서 식사가 가능하다거나,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따라 장해등급을 2급으로 재판정한 것은 재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일부에 국한된 것을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일반화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판정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04. 1. 15.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양안 외상성 시신경 위축, 신경인성 방광, 흡인성 폐렴, 위막성 대장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장 운동기능 이상, 장폐색'의 상병을 요양 승인 받았다.
- 2) 청구인은 2015. 4. 30.까지 요양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로 장해등급을 결정 받았다.
- 3) 청구인은 2018. 3. 16.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교병원에서 2018. 4. 2. 부터 2018. 6. 26.까지 6차례에 걸쳐 장해등급 재판정에 필요한 특별진찰을 받았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진단서, 2018. 10. 29.)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역제된 신경병성 방광’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휠체어 이동에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성인 1인 이상)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우안 와전 실명, 좌안 30% 시력).

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대학교병원, 2018. 6. 18.)

- 검사 상 환자는 추정되는 병전기능(90~95의 평균정도)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환자의 지적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FSIQ: 64 / 주요 인지기능 지수: 언어이해: 74,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84, 처리속도: 55)으로 언어적 구사력이나 추론 능력, 비언어적 추론능력, 시각적 정보 처리 및 정신운동속도 등에서 저조한 기능을 보인다. 기억 면에서 언어 및 시각적 정보의 기억등록 및 유지, 인출 전반에서 저조한 면이 시사된다(전체 기억지수 (MQ): 54, 언어기억지수: 63, 시각기억지수: 62). 청각적 주의력은 다소간 낮은 수준이며, 언어능력 면에서는 comprehension 능력이 다소간 저조한 면이 시사되고 naming 능력 또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력이 저조한데, 이는 환자의 시력 문제로 인한 영향도 일부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두엽 관리기능 면에서 새로운 규칙 습득에서의 곤란과 motor planning 곤란, inhibitory control, mental flexibility 등 많은 부분에서 기능저하를 보인다(관리기능지수 EFQ: 60). 환자는 면담에서 자신의 증상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불편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다가 여러 투사검사들도 제대로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론에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수상 이후 손상된 신체기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감과 좌절된 욕구가 많고, 우울감, 불안감, 혼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대인관계 상에서도 병전과는 달리 상당히 철수된 면이 시사된다.

○ VII. 장애급여

- 진단 상 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가 고려된다. 인지기능 저하 및 신체적인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보이는 바, 보호자 및 주변의 지지자원들의 intensive care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재판정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8. 6. 27.)

1) 진찰소견

- 대화 시 이름, 고향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함
- 근력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3/5~4/5 정도의 근력을 보이는데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는 동작을 보이니 굉장히 세게 손을 잡으며 놓아 주지 않으려는 행동 보임
- 하지 근력도 3/5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 걷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며 타인 부축 하에 실내에서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다고 함
- 동작 지시에 좌측 팔은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2) 일상 활동 수행 정도

- 이동시에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하며, 식사는 스스로 수행 시 음식을 흘리는 경향을 보여 타인 도움 하에 시행하고 배뇨는 평소 기스모를 통한 배뇨 시행하며 외출 시 기저귀 착용한다고 함

3) Brain MRI (2018. 4. 11.)

- 우측 측두엽과 두정엽, 기저핵 등에서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 보이며, 이러한 우측 대뇌의 광범위 뇌연화증으로 인하여 우측 측뇌실이 확장된 양상을 보임

4) 뇌파 검사 소견(2018. 4. 11.)

- 우측 대뇌의 구조적 이상과 부분 간질에 해당하는 소견 (structural lesion and skull defect in right hemisphere, partial seizure disorder)

5) 임상심리검사 (2018. 6. 18.)

- 전체 지능 IQ 64, 기억지수 54, 관리기능지수 60으로 전체적인 뇌기능 저하 소견

6) 신경계손상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

- 뇌손상이 발생하였던 자로서 금번 시행한 MRI 검사에서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며,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에 상기자의 임상 증상 및 신경학적 상태,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뇌파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7) 안과 소견

- 2018. 4. 2. 안과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우안 최대 교정시력 광각불인지, 좌안 최대 교정시력 0.8이며 시야검사에서 좌안의 이측반맹 소견 보임. 좌안의 우안 직접 동공반사 장애 및 구심성 동공운동장애 소견 관찰되었음. 안저검사 및 시신경 광학 단층촬영 검사에서 양안의 시신경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기 상병에 합당한 소견임

라.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개최일자 2018. 8. 2.)

- 환자 인지기능의 저하와 사지의 근력저하 호소하였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인지기능의 저하 뚜렷했으며 사지의 근력저하 호소하였음. 보호자에 의하면 식사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대소변 조절은 안 된다 하였음. 특진 소견에서도 근력은 전체적으로 3/5-4/5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특히 악력은 4/5 이상 정도 되는 상태로 기술하였음. 또 하지의 근력은 3/5 이상 된다 하였으며 독립적 보행은 안 되지만 부축 하에 실내에서 근거리 보행은 가능하다 하였음. 2018. 4. 11. 시행한 두부MRI에서 우측 대뇌부의 광범위한 뇌연화증과 우측 측뇌실의 보상적 확장 인지되었으며 2018. 4. 11. 시행한 뇌파검사에서도 구조적 이상 소견 인지되었음. 2018. 6. 18.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되었음. 안과 검사에서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광각 불인지,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8이며 시야검사서 좌안 이측반맹 소견, 좌안 우안 직접 동공반사 장애,

구심성 등공운동장애 소견과 양안 시신경 위축 소견 관찰된다 하였음.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수시 간병 급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수시 간병 급여 대상

5 관계법령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애급여)제1항
- 나. 산재보험법 제59조(장애등급 등의 재판정)
-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애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애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애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
-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임에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전체적인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상태만으로 부당하게 제2급으로 재판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1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좌측 반신 마비, 인지 기능의 상당한 저하가 관찰되며, 정상적인 식사나 배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우안 실명상태, 좌안 시야 협착 등으로 인한 반맹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판이 2018. 8.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제2급 재판정 결정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재판정 장애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특별진찰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뇌 MRI 상 우측 전두엽의 심한 손상 외에 뇌 위축, 뇌실질 확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뇌 MRI 상 혈관성 병변이 심하고, 수두증 및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심사결정 제8335호
- ➔ 사 건 명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8. 5.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승인 받아 2018. 7. 31.까지 요양 후, 2018. 8. 8. 원처분 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노동력은 있으나 경도의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뇌 위축 확인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18. 9. 21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생활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고려가 결여된 채 피상적으로 평가하여 4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공통적으로 제12급에 해당하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4명의 심사 소견 모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심사 방식은 청구인을 앞에 두고 짧은 시간 면담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큰 목소리로 잘 하는 반면, 목표 지향적 행동을 구성, 계획, 실행하지 못하고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기능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며 지시가 주어져야 수행을 하는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적절히 평가하기에는 심층적이지 않은 부족한 평가방식이었다. 짧은 시간 인터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청구인의 행동양식을 면밀히 살피거나, 최소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라도 아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특별진찰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 청구인은 가이드가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능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리능력이 65로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하기 때문에, 장애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면 인터뷰만으로 살피게 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은 목소리도 우렁차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주 멀쩡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장애 특징에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의 진행 방식을 비춰보면,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특별진찰에서 장애상태가 보다 상세히 파악되므로, 특별진찰 소견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에서 부합하는 장애등급으로 재결정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원처분기관의 결정보다 상향 된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08. 5. 9. 일을 하다 두통이와 쉬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재해를 입고, 2018. 7. 31.까지 ○○병원, △△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병원, 서울○○병원 등에서 3,736일간 입원 요양을 하였다.
- 2)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정보 조회 결과에서 청구인의 수술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7. 31. 단락술 또는 축로조성술(○○병원)
 - 2012. 9. 12. 천두술(△△병원)
- 3)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해 2018. 8. 9. ~ 2018. 9. 8. 근로복지공단○○병원에 심리검사를 의뢰하였고, 2018. 9. 3.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한 결과, 지능은 FSIQ 83(GAI 98)으로 평균 하 수준(low average level)이며, 전두엽-관리지능(EFQ)은 65로 장애 수준(defec -tive level)에 해당한다. 또한 단기기억(STM)은 87로 평균 하 수준이고 장기 기억지수(MQ)는 60으로 기억장애 수준(memory disorder)으로 나타났다. 기억능력은 이미 학습한 기억의 재생은 비교적 보존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의 손상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순행성 기억장애), 또한 환자는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양호하나, 가이드가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능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frontal dysfunction과 관계되며,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집행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지 결함은 환자의 수행 정도가 익숙하고 단순한 작업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장해급여청구서, ○○병원, 2018. 7. 31.)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 장애부위: 신경정신계통증 대뇌 우측 전두엽
- 주요 치료내용: 정신치료, 약물치료(충돌조절제, 항정신병 약물)
- 장애상태: 주요 정신기능 영역에서 감정과 의지 장애의 다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판단력(문제해결능력), 사고력(비논리적이고 모호하며 부적절한 언어사용), 정서이상(자극 과민성, 정동적 흥분, 사회활동 욕구저하), 인지 저하(실행기능제한, 판기기능부족, 정신운동지연) 등 전반적 정신기능저하와 현저한 인격변화 있으며 청결유지의 어려움, 적절한 대화기술 부족, 규칙적인 약물복용 곤란, 금전관리의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불가 등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기능 수행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개호를 일생동안 받아야 함

나. 소견서(장애진단전문의료기관 특별진찰소견, ○○병원, 2018. 9. 10.)

2018. 9. 3. 본원에서의 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 65로 평균 하 수준, 전두엽 관리지능은 65로 장애 수준, 단기기억은 87로 평균 하 수준, 장기 기억지수 60으로 기억장애 수준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다.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8. 9. 19.)

- 통합심사결과: 신경정신 12급(노동력은 있으나 경도의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뇌 위축 확인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심사 의견 1: 경도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뇌 위축 확인되며 노동력은 잔존하나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평가됨

○ VII. 장애급여

- 심사의견 2: 경도의 인지 기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보이고, 진료기록상 행동조절 불가, 인격변화 등이 확인되는 바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해당됨
- 심사의견 3: 현재 경도의 기억력 저하 및 두부 MRI상 뇌손상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 남아 있는 상태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해당
- 심사의견 4: 걸어서 입장함. 특별한 신체적 불편감 없는 상태이며,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 호소함. 뇌 MRI에서 우측 전두엽의 뇌연화증 및 뇌 위축 소견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해당됨

5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애급여)제1항
-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애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
-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제9항
-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제1항 별표 4
- 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별표 5

6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애등급은 장애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애부위 및 장애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특별진찰 소견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특별진찰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뇌 MRI 상 우측 전두엽의 심한 손상 외에 뇌 위축, 뇌실질 확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뇌 MRI 상 혈관성 병변이 심하고, 수두증 및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종 장애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청구인의 경우 뇌 MRI상 좌측 뇌의 손상으로 언어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시신경의 완전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남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 2급에 해당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심사결정 제6552호
-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제5호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3.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 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을 승인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의 “환자는 우반신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의 파행과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현재 두부 손상에 따른 기질적 손상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심한 정신지체와 기억력 장애가 심한 상태로 의학적으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나.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배우자) 잘 알지 못하여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말하자면 우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밥을 먹으라고 하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밥을 차려 놓으면 그때서야 밥을 먹으려고 하고, 오늘이 며칠 인지도 모르며, 손녀를 함께 키운 지 12년이 넘었는데 손녀의 얼굴은 알아보는 것 같지만 이름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 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5살 수준도 못된다.
- 다. 또한, 샤워도 청구인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본인(배우자)이 샤워를 해주고 있다. 혼자서는 머리도 못 감고 석션 해놓은 곳에 물이 들어 갈까봐 본인(배우자)이 항상 옆에서 씻겨 준다. 집안에서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서성이다 움직이면서 어딘가 부딪혀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 인지기능의 문제로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청구인이 말을 못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바를 본인(배우자)이 잘 알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화를 내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신경외과 주치의의 “현재 K-MBI 검사상 77점으로 일상생활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우측 상하지 근력 Gr4로 스스로 보행 가능하나 균형능력 저하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신체적인 부분에 힘이 없어서 소변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방에서 소변 통에다 보고 대변은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본인(배우자)이 항상 뒤처리를 해준다. 보행은 청구인 혼자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지 못하며, 마주 오는 사람 또는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주 부딪히고, 조그마한 물체에도 걸려서 쉽게 넘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가래가 생겨 석션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손을 심하게 떨어져 젓가락질도 하기 힘들어하며, 식사는 밥을 차려주면 먹기는 먹지만 떠먹으면서 손을 너무 떨어 반 이상 흘리면서 먹어 국을 줄 수도 없는 상태이다. 비록 Gr4로 측정되었으나 조금만 혼자 움직여도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 환자와 다를 바 없다.

- 마. 청구인은 이비인후과 주치의의 “현재 실어증이 심하여 전혀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성대 쪽이 막혀서 석션을 해놓은 상태로 전혀 말을 못하는 상태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우측 눈에 시야가 협착 되어 우측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식탁에 앉아 조금이라도 우측에 있는 그릇은 보지를 못하여 항상 고개를 돌려주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청구인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식사, 대소변, 샤워 등을 위해 본인(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 바. 청구인의 장해판정 당시 의사선생님들도 환자의 상태를 보았고, 뇌손상이 심하며 언어장애와 우측에 운동장애 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 하였음에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 제2급이 아닌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청구인이 움직일 수 있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 가 추정되지만 인지기능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고,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동작들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태로 청구인의 마비상태 이외에 정신기능의 장애 및 실어증과 안과장애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보다 상위 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원처분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7. 3. 1. ○○빌딩 지하에서 배선 정리를 위해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 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 요양기간: 2017. 3. 1. ~ 2019. 4. 30.(입원 189일, 통원 602일)

○ 수술내역

- 2017. 3. 1.: 혈중제거수술
- 2017. 12. 25.: 관혈적 기관 절개술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 9. 16.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구술 출석하여 "(배우자) 남편은 24시간 상병상태가 간병비가 필요한 상태인데, 소변은 방에서 소변 통으로 보고 있고 대변은 환자가 신호를 하면 대변기에 앉혀 두고 뒤처리를 해줌. 석션하다가 화를 내면 환자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물건을 던지기도 함. 혼자서 양말도 옆드려서 못 신음. 바지도 끼워줘야 하고, 내 시간은 1분도 낼 수 없음."이라고 진술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장애진단 소견(○○요양병원, 2019. 4. 30.)

- K-MBI 77점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우측 상하지 근력 Gr4.4로 스스로 보행 가능하나 균형능력 저하 보여, SUPERVISION 필요, MMSE 3점 실어증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 불가능하다.
- 두부 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 2019. 3. 23. 심리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지능 검사상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기억 검사 상 정확한 기억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고, 전두엽 실행기능 평가도 심각한 정도로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5. 22.)

(자문의사 1) brain CT, MRI에서 좌측 측두엽의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견되며, 두정엽과 후두엽의 일부까지 뇌손상이 있음. 언어장애가 심하고, 우측 운동장애가 있음. 보호자에 의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스스로 하는 것은 없다고 함. 불면증이 심하다고 함.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본 재해자는 2017. 3. 1. 뇌출혈 수상하였음. 기관 절개술 상태이며 인지 저하, 실어증 및 우측 근력저하 상태 관찰됨. 보행 및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 동작은 보호자 감독 하에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임. 이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3) 환자는 2017. 3. 1.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외상성경막하 출혈을 입었고 이후 두부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도 초래되었다. 환자는 우반신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의 파행과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문의사 4)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 및 양측 경막하출혈 있었던 재해자임. 좌측 측두엽, 두정엽 뇌연화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9년 3월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측두엽 전반과 두정엽, 후두엽 일부의 뇌연화 반응과 좌측 반구의 광범위한 뇌위축이 보임. 기관 절개술 후 상태임. 자가 보행 가능함. 실어증이 있음. 투약 없으면 수면 이상이 있음. 개인위생은 간병자의 감독 하에 할 수 있으나, 잠긴 문을 여는 것 등의 동작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함

(자문의사 5) 2017년 3월 경막하 출혈 및 왼쪽 후두엽 및 두정엽의 변성 보이고 있음.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의 제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 우측 운동장애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장애급여)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애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6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2항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3급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 등급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VIII

진폐

1. 진폐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 large, bold number '1'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one above and one below, and a small gray dot above the '1' circle.

1

진폐

1

»

고인은 2018. 12. 18.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말기 췌장암이지만, 심폐기능에 있어 일초량이 고도 장애 수준이었고, 췌장암 진단은 사망 2개월전 복통에 따른 검사로 진단된 것으로 일반적인 췌장암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고인은 진폐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결정 함. 그러나, ‘유족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7151호
-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7. 1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내용

- 가. 재해자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함)는 주식회사○○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3. 8. 19. ‘진폐’를 진단받고, 장애등급 제11급(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고인은 2007. 4. 2. ‘진폐’를 재진단받고 ‘진폐병형 4형, 합병증 tba, em, bu’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며, 요양을 하던 중 2018. 12. 18.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 ‘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고인의 유족(자녀)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 청구를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관련기록 검토결과,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 합병증 관련성은 낮아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7. 10.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광업소, △△광업소에서 1968. 2. 5. ~ 2002. 4. 1.까지 채탄부로 총 16년 10개월간 근무하였다. 2007. 4. 2. ~ 4. 7. 진폐정밀진단 후 진폐병형 4형, 합병증 tba, em, bu로 요양 판정받아 요양 중 복통을 호소하다 2018. 11. 30.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8. 12. 18. 사망하였다. 고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증 등으로 요양하면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을 자주 실시하였고, 복통에 의해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진폐증 등 기존 질병과 췌장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노동보험전산 시스템상 확인되는 고인의 분진경력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명 | 업종 | 직종 | 근무기간 |
|------------|-------|----|----------------------------|
| △△광업소 | 무연탄광업 | 광원 | 1972. 7. 20. ~ 1989. 3. 6. |
| 주식회사 ○○광업소 | 무연탄광업 | 광원 | 1990. 5. 2. ~ 1994. 6. 13. |
| 주식회사 ○○광업소 | 무연탄광업 | 광원 | 1995. 6. 27. ~ 2002. 4. 1. |

2)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진단 일자 | 정밀진단의료기관 | 진폐심사 결과 | | | |
|--------------|----------|---------|--------------|----------|------------|
| | | 진폐 병형 |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 | 폐기능 | 판정결과 |
| 2003. 8. 19. | ○○병원 | 4형(4A) | tbi | 정상(F0) | 장해 대상(11급) |
| 2004. 6. 15. | 의료법인○○병원 | 4형(4A) | tbi | 정상(F0) | 장해 대상(11급) |
| 2005. 4. 8. | △△병원 | 4형(4A) | - | 경도장해(F1) | 장해 대상(5급) |
| 2006. 2. 2. | □□병원 | 4형(4A) | pt | 경도장해(F1) | 장해 대상(5급) |
| 2006. 6. 13. | ○○병원 | 4형(4A) | - | 경도장해(F1) | 장해 대상(5급) |
| 2007. 4. 2. | □□병원 | 4형(4A) | tba, em, bu | - | 요양 대상 |

- 고인은 2003. 8. 19. 진단받은 진폐로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고인은 2005. 4. 8. 재진단받은 진폐로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으로 결정되었으며, 2007. 4. 2. 진폐를 재진단받고 '진폐병형 제4형, 합병증 tba, em, bu'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8. 12. 18. '직접사인 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3) 의료기관 경과기록

○ ○○대학병원

- 2018. 11. 30. 입원

- 현재질병상태: 본 76세 남환 CWP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2개월 전 시작된 RUQ pain 주소로 ○○병원 경유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하였음

- 2018. 12. 6.

- Malignant Pleural Effusion
s/p Thoracentesis
Pleural fluid cytology에서 악성세포 확인됨

- 2018. 12. 8.

- Malignant Pleural Effusion

s/p Thoracentesis

Pancreatic tail cancer with liver metastasis & peritoneal carcinomatosis

Intramural hematoma (Infrarenal abdominal aorta)

Pancreatic cancer terminal임

통증을 비롯하여 식욕부진, 장마비, 숨찬증세 악화, 갑작스런 산증 진행 가능성 충분히 있음. Conservative care

- 2018. 12. 12.

L-tube drainage 함에도 Abdominal discomfort 지속됨

전신에 전이된 상태로 기대여명 얼마남지 않은 상태임

- 2018. 12. 17.

- 갑작스런 Expire가능성 있음을 설명드림. Morphine fluid 조절. Conservative care

- 2018. 12. 18.

- 본 76세 남환 Malignant Pleural Effusion, Pancreatic cancer with terminal, Liver metastasis, Peritoneal carcinomatosis 진단하 입원치료 하였으며, cancer terminal stage로 Conservative care하였음. 기대여명 얼마남지 않은 상태로 대증적 치료받았으며, 금일 아침 Expire하였음

4) 의무기록지상 심폐기능 검사결과

| 일자 | FVC | FEV1/FVC | FEV1 | 의료기관 |
|--------------|-----|----------|------|-------------|
| 2018. 7. 12. | 74% | 30% | 34% | 근로복지공단 ○○병원 |
| 2018. 10. 5. | 71% | 39% | 36% | 근로복지공단 ○○병원 |
| 2018. 12. 7. | 43% | 41% | 27% | ○○대학병원 |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대학병원, 2018. 12. 18.)

- 사망의 일시: 2018. 12. 18. 07:10
- 사망 원인
 - (가) 직접사인: 말기 췌장암
 -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나. 주치의사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12. 21.)

- 병명: 탄광부진폐증, 폐기종, 기관지염
-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산재요양되어 장기간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평소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고 자주 호흡기 감염이 재발하고 있는 상태였음. 사망 당시 췌장암이 발생하고 악화되 사망하였으나, 진폐증과 폐기종 상태로 보아 췌장암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수명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다. 주치의사 진단서(○○대학병원, 2019. 3. 18.)

- 병명: 췌장 미부암, 악성 흉막 삼출, 간 전이, 탄광부 진폐증,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기침 변이형 천식, 양성 전립선 비대증
- 소견: 상기 환자 탄광부 진폐증, 폐색성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 악성 흉막 삼출로 본원으로 내원하였음. 검사 결과 췌장 미부암, 간 전이, 악성 흉막 삼출로 진단하였음. 췌장암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기저 질환인 진폐증과 폐색성 폐질환으로 인해 더 빠르게 안 좋아졌고 사망에 이르렀음. 기저 질환이 없었다면 항암치료를 하고 기대여명을 늘릴 수 있었으나 진폐증과 폐색성 폐질환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하여서 항암치료를 할 수 없었음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관련기록 검토결과, 취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 합병증 관련성은 낮아 보임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마. 산재보험법 부칙 <제10305호, 2010. 5. 20.>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바. 진폐예방법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사.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제5조(유족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아.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상 ‘취장암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기저 질환인 진폐증과 폐색성 폐질환으로 인해 더 빠르게 안 좋아졌고 사망에 이른 경우’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유족위로금’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고, ‘유족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유족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 라.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고인은 2018. 12. 18.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말기 취장암이지만, 심폐기능에 있어 일초량이 2018. 7. 12. 34%, 2018. 10. 5. 36%로 고도 장해 수준이었고, 취장암 진단은 사망 2개월전 복통에 따른 검사로 진단된 것으로 일반적인 취장암 진단에 따른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고인은 취장암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진폐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2018. 12. 18.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유족위로금’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2019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Ⅸ

기타

1. 기타
2. 부당이득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A large, bold number '1'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o the left of this circle are two smaller white circles, and further left, a small gray circle. The background consists of a dark gray upper half and a light gray lower half, separated by a curved line.

1

기타

1

»

청구인과 동거인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연금)를 일부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8 제7663호
- ➔ 사 건 명 유족급여(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재해자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고인은 (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6. 25. 현장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진단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된다”는 판정 결과와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장제를 지내고 고인의 사망(2015. 6. 25.)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배우자)에 해당되나, 이후 ‘최○○(55년생, 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시점(2018. 2. 20.) 이후부터는 ‘사실혼의 관계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의비는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유족급여(연금)는 2015. 7. 1. ~ 2018. 2. 28.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 아들과 같이 한우농장(현재 약 50마리)을 운영하면서 지내 오다가 2017년 12월경 아들이 ○○으로 이사를 가면서 혼자 농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던 중 평소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최○○(55년생, 남)'가 한우농장에 관심을 표시하여 축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아들이 쓰던 방을 무료로 내어주고 추후에 소 2마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최○○가 '동거인'으로 등록된 이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2018. 2. 20.)를 하면 추후에 최○○ 본인이 직접 한우사육을 할 경우 축협조합원 가입이나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등록을 한 것이지 결코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실혼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발췌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2018. 7. 16.)상 확인내역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이전 세대주 사망(2015. 7. 9.)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성명: 1. 본인 구○○(청구인) 본인 2. 자녀 3. 동거인 최○○(55년생, 남, 2018. 2. 20. 신고)

나) 청구인의 진술내역 발췌

- 청구인은 2015. 6. 25. 고인의 사망 당시의 유족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만 19세 이상의 자녀 2인이 있으며, 혼인한 딸은 분가하여 서울에서 살고 미혼인 아들은 청구인과 함께 살다가 2018년 봄에 직장생활을 위해 ○○으로 분가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2018. 2. 20.)된 '최○○(55년생, 남)'는 본인의 집에 거주하여 본인에게 농장일을 배우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임. 청구인은

최○○의 전도로 최○○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함

- 고인은 사망 이전에 주로 한우 축산업(청구인의 딸 명의로 등록)에 종사하였고, 필요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였음.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관리했던 축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최○○'을 본인의 집에 무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는 대신,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축사관리를 해주되 독립할 때 소 2마리를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독립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다) 원처분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은 한우 축사와 연결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외부 출입문, 주방, 화장실, 거실 각각 한 개와 방 두 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현장조사 중 청구인은 동거인 '최○○'과 자신은 각자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하고, 최○○의 냉장고 등은 주택 외부의 창고에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해당 창고는 한쪽 벽과 출입문이 없어 그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냉장고도 확인되지 않았고, 농기구와 지푸라기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창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라) 원처분기관의 추가 조사내용 발췌

- 고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던 중 청구인의 딸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모친인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유족급여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유선 문의한 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측에서도 '청구인과 최○○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사무총사원(송○○)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음

※ 2019. 1. 24.(목) 13:30 ~ 13:45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유선으로 공인노무사측의 사무총사원 송○○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최○○과 사실혼이 맞다'고 진술함. 또한 동거인 '최○○'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시아주버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일, 청구인은 소 100마리를 여자 혼자 힘으로 기를 수 없어 다른 남자와 다시 혼인(사실혼)하는 게 불가피

했다고 진술하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혼이 아닌 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녹취 파일도 이러한 내용임

2) 원처분기관 판단 내용 발췌

-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유족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우리 공단에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는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인으로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과 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측 사무종사원이 청구인과 동거인 최○○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과 동거인 최○○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동거인 최○○의 전입일(2018. 2. 20.)에 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8. 3. 1. 이후 유족급여(연금)을 지급 정지함이 타당함

※ 원처분기관에서는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2015. 7. 1.)부터 수급자격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8. 2. 28.)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유족급여(연금)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하였음

3) 청구인 제출 추가 자료

가) 가축사육업 등록증(○○시장, 2011. 6. 17.)

- 사업장 명칭: 한성농장
- 성명: 이○○(청구인의 딸)
- 소재지: ○○시 ○○면
- 가축의 종류: 한우

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농지표시: ○○시 ○○면(지목: 축사)

- 임대인: 이○○(청구인의 딸)/ 임차인: 최○○(동거인)
- 농지의 명도는 2018. 2. 3.로 함
- 임대인 부담 비용: 축사관리 조건으로 소 2마리를 임차인에 줌
- 임차인 부담 비용: 축사 관리
- 임대차 기간은 2018. 2. 3. ~ 2020. 2. 2.(24개월)

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확인서

- 최초등록일자: 2018. 8. 20.
- 경영주: 최○○(동거인)
- 주소: ○○시 ○○면 ○○길 10(사육시설 소재지)
- 시설면적(㎡): 공부 150, 실제 1,179
- 사육 규모: 2
-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 제출 추가 자료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

-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타인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지목은 ‘축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시)에 확인한 결과 ‘축사’는 원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임대인 부담 비용란에 ‘축사관리 조건으로 소 2마리를 임차인에게 줌’으로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소 2마리를 최○○(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현장조사 시에 ‘축사관리를 해주되 독립할 때 소 2마리를 주기로 약정했으며 독립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최초의 진술과 배치됨

-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했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완 또는 불상의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산재심사실의 증거조사 내용 발췌

- 담당 심사장이 2019. 3. 29. 청구인의 자택이 소재 마을에 출장하여 '고인과 청구인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 후 교회에서 소개해 준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와 현재까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와 같이 살고는 있다', '고인 사망 후 얼마 뒤부터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가 들어와 살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은 이 남자를 신랑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음

4 관계법령

- 가.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나. 산재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다. 산재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라. 산재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최○○'와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므로 유족급여(연금)를 계속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과 동거인 '최○○'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연금)를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A decorative graphic at the top of the page features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A large, bold number '2' is centered within a white circle that has a gray border. This circle is part of a larger, light gray shape that resembles a stylized speech bubble or a cluster of bubbles, extending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center.

2

부당이득

1

»

청구인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사정이 궁급하여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벽 5:30 출근하여 업무 후 오후 2~3시경 퇴근한 것이 확인되고, 동 기간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으므로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급여액의 2배의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 ➔ 사건번호 2019 제3692호
- ➔ 사 건 명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8. 3. 29. 업무상 재해로 '안면부, 경부, 우측상지, 좌측 수부, 체간부, 복부, 배부의 31% 2~3도 화상'에 대하여, 2019. 1. 23.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1. 25.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정상 출근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 지급받은 휴업급여 중 입·통원일자를 제외한 휴업급여의 배액(금 11,875,860원)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통원 치료를 받던 차에, 책임자로서 회사사정이 궁급하여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주요업무가 아닌 기계점검, 패턴 찾아주는 일을 했다는 점, 회사에서 출근 권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료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사고와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 10개를 발치하고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를 하는 상황이었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1) 재해 경위 및 산재 처리 내역

- 재해일시: 2018. 3. 29.
- 재해경위: 인조규사와 알코올로 용해된 용금을 담은 래들의 부분보수를 진행하던 도중 알코올이 비산 발화하여 화상을 당함
- 승인 상병명: 안면부, 경부, 우측 상지, 좌측 수부, 체간부, 복부, 배부의 31% 2-3도 화상
- 요양기간: 2018. 3. 29. ~ 2019. 1. 23.(입원 90일, 통원 183일, 재가 1일, 총일수 274일)

2) 휴업급여청구 및 지급내역

- 휴업급여청구서상 취업사실 여부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체크함
- 요양 중 2018. 3. 30. ~ 2018. 11. 25.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총 8회에 걸쳐 24,570,700원 지급받았음

3) 부정수급 조사 및 결과

가) 근무이력 확인

- 출퇴근기록: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문인식 출퇴근 결과 조회대장에 2018. 11. 25.까지는 출퇴근시각 기록이 없고, 2018. 11. 26.부터 출퇴근시각 기록이 있음
- 급여지급내역: 9월, 10월 급여대장에는 급여 지급내역이 없고, 11월은 금 972,715원(40시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하이패스기록: '18년 9월~11월까지 자택과 사업장 간 순로의 톨게이트 이용내역이 9월 14건, 10월 56건, 11월 55건으로 확인됨
- 총 59일간 직장에 복귀하여 아침 5시 30분경 출근하여 하루 작업에 필요한 목형을 찾아주는 일을 하였고 정상 종료시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근

나) 사업장 조사

- 근무시간: 정상근무 06:00 ~ 14:30, 연장 근무 시 14:30 ~ 18:00
- 생산제품: 육상용 밸브주조
- 사업장관계자(상무이사) 문답 확인(2019. 3. 8.)
 - 사고 후 회사 나온 시기: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며칠씩 잠시 왔다 갔다 함
 - 출근일 및 출근시간: 2019. 9. 28.부터 11월까지 05:30분경 회사에 나왔다가 오후 2~3시경 집으로 귀가함
 - 담당업무: 작업에 필요한 패턴을 찾아주는 일을 함
 - 작업지시 여부: 사업장 확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회사에 나온다고 말하여 나와서 패턴(목형)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2018년 9월~11월 급여이체 확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사업장측은 해당금액을 2016년 및 2017년 연말정산 입금액이라고 설명함

| 거래일시 | 입금금액 | 상대예금주 | 비고 |
|--------------|------------|-------|--------|
| '18. 11. 2. | 2,000,000원 | (주)○○ | 연말정산16 |
| '18. 11. 20. | 787,960원 | (주)○○ | 연말정산16 |
| '18. 11. 20. | 1,000,000원 | (주)○○ | 연말정산17 |
| '18. 12. 20. | 666,615원 | (주)○○ | 급여 |

다) 청구인 면담 조사 결과(2018. 2. 28.)

- 직장복귀일: 산재요양기간 중 일한 사실이 없고, 2018. 11. 26.부터 직장에 복귀하였다고 주장함. 회사에는 2018. 9. 28.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정상근무는 아니었으며 직원들에게 목형위치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고 함
- 급여대장: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아 출퇴근 결과 조회대장에 출근기록이 없으며 급여 대장에도 지급된 급여 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함. 사업장에 머무른 시간이 9시간 정도는 맞으나 정상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라) 부정수급조사부 조사결과에 따른 휴업급여 부정수급 배액징수결정

- ① 이 사건 부당이득 관련 조사는 요양기간 중 청구인이 정상 출퇴근을 하였다는 제3자 제보에 따라 조사 착수 진행하였음
- ② 요양기간 중 2018. 9. 28 ~ 2018. 11. 25.까지 직장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정상출근, 정상퇴근하면서 패턴(목형)을 찾아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계속적, 지속적임) 수행하였음이 하이패스 등 교통기록에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아울러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채권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일 뿐이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요양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하지 않았어야 하는 휴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님
- ③ 또한 원래 단 한 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모두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체크하여야 함에도, 59일간 06:00 정상출근, 정상 14:30 정상 퇴근을 하면서도 지문을

전혀 찍지 않은 점,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함’에 체크한 점 등을 볼 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음

- ④ 수개월간 정상출퇴근하면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님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아 휴업급여 배액징수를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2018. 9. 28. ~ 2018. 11. 25.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 8,702,130원(지급일수: 59일) 중 실제 진료 받은 날에 대한 정상지급액 2,764,200원을 제외한 5,937,930원의 배액 11,875,860원을 부당이득징수 결정함

| 구분 | 부당금액(원) | 부당이득기간(일자) | 일수 | 비고 |
|------|---------------------------|-----------------------|-----|--------------------------------------|
| 휴업급여 | 6,040,300원 ¹⁵⁾ | '18. 9. 28. ~ 11. 25. | 59일 | 휴업급여 청구서 내 취업사실 여부 확인란에 “취업하지 못함” 체크 |

- ⑤ 현재 형사적으로는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의뢰한 상태임(부정수급예방부-2830, 2019. 5. 23. 수사의뢰).

4)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발췌)

- 화사랑 외과의원 진료계획서상 '18. 9. 26. ~ 12. 26.(통원 91) 화염 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 후 비후성 반흔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취업치료 불가능)

5) 대법원 판례 경향 등 법리검토

- 배액징수의 법적 성격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15) 2018. 3. 29. ~ 2018. 11. 25. (59일간) 기간 중 2018. 10. 31.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102,380원 제외. 58일간 휴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배액징수(11,875,860원)대상

- 청구인의 직업·직무·학력·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업급여의 의도적이고 계속적 편취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재해발생 당시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액 징수(1회에 한정하며 2회분 이상의 계속적 수령 제외)함이 타당함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마. 휴업급여 지급 여부 문의사항에 대한 회시 및 전파(보상부-6313, 2013. 11. 29.)

-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① 상병명,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취업하지 못한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에 있어야 하고 ② 그 기간내에 사실상 취업하지 않았어야 함)을 충족하여야 함.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판단 및 결론

-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애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장해등급의 기준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화상과 치아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휴업급여 지급 기간 중 새벽 5:30 출근하여 업무 후 오후 2~3시경 퇴근한 것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 휴업급여 청구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8. 9. 28. ~ 2018. 11. 25. 기간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휴업급여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수령한 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19)

발행일 : 2020년 5월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길2길 8, 5층
TEL : 02-2109-3626, FAX : 0502-267-0310

인쇄처 :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TEL : 031-360-5670~2

※ 이 책은 무단복사, 복제를 불허합니다.

〈비매품〉